

|                      |
|----------------------|
| 발간등록번호               |
| 11-1543000-000349-10 |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        |           |       |       |
|--------|-----------|-------|-------|
|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연구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 광 선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 도 채 | 부연구위원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 경 찬 | 연구원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 은 영 | 연구원   |





## 총 목 차

---

### ◇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            |   |
|------------|---|
| □ 총괄 ..... | 1 |
|------------|---|

### ◇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     |
|--------------|-----|
| □ 강원도 .....  | 93  |
| □ 충청북도 ..... | 125 |
| □ 충청남도 ..... | 207 |
| □ 전라북도 ..... | 259 |
| □ 경상북도 ..... | 309 |
| □ 경상남도 ..... | 363 |
| □ 제주도 .....  | 401 |



- 제1부 -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 광 선    연 구 위 원  
민 경 찬    연 구 원



## 차 례

---

###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9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 12

### 제2장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17
-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 20
-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 25

### 제3장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 55
-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59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 68

부록 1 2016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 74

부록 2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 77

부록 3 2016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80

참고문헌 ..... 90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 | 15 |
|--|----|

### 제2장

|  |    |
|--|----|
|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                                 | 18 |
|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                            | 20 |
|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                  | 22 |
|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                   | 22 |
|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                          | 26 |
|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                                  | 27 |
|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                                  | 28 |
|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28 |
|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                | 30 |
|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30 |
|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                           | 31 |
|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32 |
|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                   | 33 |
|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33 |
|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                     | 34 |
|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                                | 35 |
|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36 |
| 표 2-18.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 .....                                | 37 |
| 표 2-19. 최저주거기준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37 |



|  |    |
|--|----|
| 표 2-20.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                    | 38 |
| 표 2-21.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39 |
| 표 2-22.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                   | 40 |
| 표 2-23.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40 |
| 표 2-24.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 .....            | 41 |
| 표 2-25. 대중교통 이행실태 .....                      | 42 |
| 표 2-26. 대중교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43 |
| 표 2-27.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                    | 44 |
| 표 2-28.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45 |
| 표 2-29.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            | 46 |
| 표 2-30.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    | 48 |
| 표 2-31.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                    | 49 |
| 표 2-32.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49 |
| 표 2-33. 방범용 CCTV 설치 이행실태 .....               | 50 |
| 표 2-34. 방범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51 |

### 제3장

|   |    |
|---|----|
|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                   | 57 |
|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                | 59 |
|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 63 |
| 표 3-4. 2015-2016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 | 66 |

## 그림 차례

---

### 제2장

- 그림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에 대한 경찰청 의견 ... 52
- 그림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소방 출동 항목에 대한 국민안전처 의견 ... 54

# 제 1 장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공표하여 관련 사업 추진
  - 동 특별법에 의해 15개 관련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5년 단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동 기본계획을 통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의 14대 주요 과제, 139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5년마다 ‘도 삶의 질 향상계획’과 ‘시·군 삶의 질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추진
  -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5년(2005-09) 간 22.3조 원의 투융자 지원 시행

- 그러나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늘 낙후성을 면치 못해왔음.
  - 시·군별, 면적당, 인구 수당 공공서비스 시설의 분포와 같은 분포밀도를 기준으로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투입을 하였기 때문임.
  - 이는 기존 정책이 농어촌의 여건 변화와 특수성, 농어촌 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투자로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하를 초래하였음을 의미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말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짐.
  -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등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초안 마련
  -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영국, 독일 등 현지 출장을 통해, 농촌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등의 선진국 경험과 성과를 조사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을 주로 조사·검토

####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sup>1</sup>**

- 1985년 발생한 광우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영국의 농촌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라는 문제 심화
- 이후 영국은 정부는 광우병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

- 농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부처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
- 그 결과 영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 일환으로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농촌 발전의 비전 제시
- 특히 「농촌백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농촌발전의 비전과 관련하여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공포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됨. 즉 2000년 처음 발표된 것은 14개 부문 35개 기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1개 부문 35개 기준, 그리고 2006년에는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간소화됨 - ① 교육 및 아동 서비스, ② 광대역 통신망(학교), ③ 사회적 돌봄, ④ 우체국 서비스, ⑤ 보건, ⑥ 인터넷 접속, ⑦ 긴급서비스(구급·소방·경찰), ⑧ 교통.
- 영국은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중단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최소 수준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임. 둘째,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상이한 여건과 차별성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공통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더 이상 운용하는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임.

○ 국내·외의 관련 논의와 연구, 실제 사례 검토 등 토대로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준거 모델로 삼아 한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작업 추진(김광선 등, 2010)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를 의미하며, 한국농촌경

<sup>1</sup>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 작업을 통해 8개 부문의 30개 서비스기준 항목(안) 도출

- 도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안)에 대해 100명의 관련 전문가 검토, 세 차례의 지역별(강원·영남·호남권) 공청회, 국회 토론회, 관련 부처 실무자 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09년 말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안 마련
- 동 최종안은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삶의 질 향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2대 기본제도(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 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2009년 12월 삶의 질 향상 본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 제출됨.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 동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제3조 6호),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제44조 1항)고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동법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시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동법 시행령 별표에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내용’을 고시(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5년 12월 29일자 제2015-176호 고시)

**참고: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 제3조 제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
- 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 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음.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자문기구 및 전문지원기관 설치·운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
  - 동 협의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자문 제공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근거해 2012년 4월 19일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고유 업무의 하나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를 매년 점검·분석
-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운용하면서 1차례 수정에 의한 개정과 1차례의 제도개편 추진
  - 당초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부터 ‘안전’ 부문과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는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수정하여 운용
  - 2014년에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 이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7개 부문 17개 항목의 ‘핵심 항목’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선택 항목’으로 2원화 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개편



-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으로 편성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7대 부문과 일치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함.
- 연차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실태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 이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차별 공통추진업무’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연관 업무를 발굴하여 수행
  - 2015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직접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에 이행실태를 점검·평가(2016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 지자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연구원 간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 개편 이전 |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
|-------|---|--|
| 2011  |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br>① 공식통계 구축<br>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br>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br><br>(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br>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br>② 핵심 이행지수 |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br>① 기본계획 분석<br>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br>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br><br>(4) 사례지역 심층조사<br>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br>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br>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

|       |   |   |
|-------|---|---|
| 2012  |   | (3)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br>①농어촌 도로·교통 부문<br>(4)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br>①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br>②농어촌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br>(5)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 사례 발굴→‘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
| 2013  | (1)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br>①공식통계 구축<br>②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br>③지자체 행정조사 실시<br>(2)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br>①종합·부문별 이행지수 | (3)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br>①문화 부문 심층연구<br>(4)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br>①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br>②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br>(5)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
| 2014  | (1)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br>①공식통계 구축<br>②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br>③지자체 행정조사 실시<br>(2)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br>①종합·부문별 이행지수 | (3)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br>①개편안의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 구성<br>(4)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
| 개편 이후 | 국가 관리 ‘핵심 항목’   | 지자체 자율 ‘선택 항목’  |
| 2015  | (1)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2)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1)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br>(2)주요 업무: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
| 2016  | (1)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br>(2)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1)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br>(2)주요 업무: 선택 항목 수정 및 목표치 확정,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

## 제 2 장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핵심 항목 세부항목별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의 서비스기준을 명시하여 현재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함. 또한 개별 시·군의 달성 정도도 함께 점검함.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나타냄. 아래 <표 2-1>은 핵심 항목의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수치와 중기 목표치를 나타냄.

-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향후 5년 동안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기준치 (baseline)로 삼음.
-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됨. 예를 들면,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의 항목의 경우, 2014년 수치는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음. 또한 정주생활기반의 난방 부문의 경우 기존에 세부기준으로 삼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을 2015년도부터는 ‘도시 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 한다’로 변경함.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14년(%) | '19년 목표(%) |
|----------|----------|---|---------|------------|
| 1. 보건 복지 | 1) 진료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76.8    | 80         |
|          | 2)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71.8    | 97         |
|          | 3)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74.1    | 80         |
|          | 4)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71.0    | 80         |
| 2. 교육    | 5)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98.1    | 100        |
|          | 6) 평생교육  |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 21.1    | 40         |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14년(%) | '19년<br>목표(%) |
|------------------------|-----------------------|--|---------|---------------|
| 3. 정주<br>생활<br>기반      | 7)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 88.3    | 95            |
|                        | 8) 상수도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 62.9    | 82            |
|                        | 9)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50.8    | 65            |
|                        | 10)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90.4    | 100           |
|                        | 11) 광대역 통합망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 77.3    | 90            |
| 4. 경 제<br>활 동·<br>일 자리 | 12) 창업 및 취업<br>컨설팅·교육 |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100           |
| 5. 문 화·<br>여 가         | 13) 문화시설 및<br>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92.0    | 100           |
| 6. 환 경·<br>경 관         | 14) 하수도               | 하수도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79.4    | 85            |
| 7. 안 전<br>(생활<br>안전)   | 15)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32.7    | 60            |
|                        | 16)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100.0   | 100           |
|                        | 17)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45.4    | 55            |

##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 가능함.
- 핵심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기준별 점검 방법 및 수단이 필요함. 점검 방법은 아래 <표 2-2>와 같이 설정하며,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함.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 부문       | 핵심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1. 보건 복지 | 1) 진료 서비스                                       |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i) 전국사업체조사(읍·면단위 제공)<br>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 공식통계<br>공식통계 |
|          | 2) 응급 서비스                                       |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국민안전처: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 행정조사         |
|          | 3)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포함)          | 공식통계         |
|          |   |   |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 행정조사         |
| 4) 영유아   |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 i) 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br>ii)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 공식통계  |              |
| 2. 교육    | 5) 초·중학교  |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 협조자료         |
|          |   |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 협조자료         |
|          | 6) 평생교육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 협조자료         |

| 부문                  | 핵심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3. 정주<br>생활<br>기반   | 7) 주택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통계청 협조자료                                    | 협조자료 |
|                     | 8) 상수도                           |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 환경부: 상수도현황                                  | 공식통계 |
|                     | 9) 난방                            |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 협조자료 |
|                     |                                  |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 협조자료 |
|                     | 10) 대중교통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공식통계 |
|                     |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 행정조사 |
| 11) 광대역 통합망         |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미래창조과학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 협조자료  |      |
| 4. 경제<br>활동·<br>일자리 | 12) 농어촌<br>창업 및<br>취업 컨설<br>팅·교육 |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지자체 조사                                      | 행정조사 |
| 5. 문화·<br>여가        | 13) 문화시설<br>및 프로<br>그램           |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협조자료 |
|                     |                                  |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협조자료 |
|                     |                                  |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 협조자료 |
| 6. 환경·<br>경관        | 14) 하수도                          |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 공식통계 |
| 7. 안전<br>(생활<br>안전) | 15) 방범설비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행정조사 |
|                     | 16)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 협조자료 |
|                     | 17) 소방 출동                        |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국민안전처: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 협조자료 |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31개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공식통계로 구득 가능한 통계는 10개, 중앙행정기관 협조자료는 13개, 지자체 행정조사가 필요한 통계는 총 8개 항목임<표 2-3>.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 7개 부문    | 서비스 기준 | 세부 기준 | 통계 확충 범위 | 구득 가능 통계 | 통계 보완     |          | 기타 |
|----------|--------|-------|----------|----------|-----------|----------|----|
|          |        |       |          |          | 중앙행정기관 협조 | 지자체 행정조사 |    |
| 보건·복지    | 4      | 4     | 9        | 6        | 1         | 2        | -  |
| 교육       | 2      | 3     | 3        | 0        | 2         | 1        | -  |
| 정주생활기반   | 5      | 7     | 7        | 2        | 5         | 0        | -  |
| 경제활동·일자리 | 1      | 1     | 4        | 0        | 0         | 4        | -  |
| 문화·여가    | 1      | 3     | 3        | 1        | 2         | 0        | -  |
| 환경·경관    | 1      | 1     | 1        | 1        | 0         | 0        | -  |
| 안전       | 3      | 3     | 4        | 0        | 4         | 1        | -  |
| 계        | 17     | 22    | 31       | 10       | 14        | 8        | -  |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의 기준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인 2015년으로 설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직 공표되지 못한 통계는 2014년도 통계를,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2016년도 통계를 사용함. 덧붙여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통계는 2010년 이므로 이를 사용하도록 함.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 부문       | 관련항목  | 통계명                                   | 기준년도 | 구축여부         |
|----------|-------|---------------------------------------|------|--------------|
| 보건<br>복지 | 진료서비스 |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1차 진료 현황      | 2016 | ○<br>(공식통계)  |
|          |       |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 2016 | ○<br>(지자체조사) |



| 부문                                 | 관련항목       | 통계명  | 기준년도        | 구축여부              |
|------------------------------------|------------|--|-------------|-------------------|
| 보건<br>복지                           | 응급서비스      | 각 응급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 2016        | ○<br>(국민안전처협조)    |
|                                    |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신청자현황)                          | 2015        | ○<br>(공식통계)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급여자(인정자)현황)                      | 2015        | ○<br>(공식통계)       |
|                                    |            |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 2015        | ○<br>(공식통계)       |
|                                    |            |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 2016        | ○<br>(지자체조사)      |
|                                    | 영유아        |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 2015        | ○<br>(공식통계)       |
|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보육통계>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현황) |            | 2015   | ○<br>(공식통계) |                   |
| 교육                                 | 초·중학교      | 시·군별 초/중학교 현황                                  | 2016        | ○<br>(교육부협조)      |
|                                    |            |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 2016        | ○<br>(교육부협조)      |
|                                    | 평생교육       |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 2015        | ○<br>(교육부협조)      |
| 정주<br>생활<br>기반                     | 주택         |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2010        | △<br>(통계청협조)      |
|                                    | 상수도        |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 2014        | ○<br>(공식통계)       |
|                                    | 난방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 2015        | ○<br>(한국도시가스협회협조) |
|                                    |            |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                           | 2016        | ○<br>(산업통상자원부협조)  |
|                                    | 대중교통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운행 횟수별 마을 수                  | 2010        | △<br>(공식통계)       |
|                                    |            |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 2015        | ○<br>(해양수산부협조)    |
|                                    | 광대역<br>통합망 |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 2016        | ○<br>(미래창조과학부협조)  |

| 부문                           | 관련항목                     | 통계명  | 기준년도 | 구축여부             |
|------------------------------|--------------------------|--|------|------------------|
| 경제<br>활동<br>·<br>일<br>자<br>리 | 창업 및<br>취업컨설팅<br>·<br>교육 |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 2016 | ○<br>(지자체조사)     |
|                              |                          |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2016 | ○<br>(지자체조사)     |
|                              |                          |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담인력 고용 여부              | 2016 | ○<br>(지자체조사)     |
|                              |                          |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 2016 | ○<br>(지자체조사)     |
| 문화<br>·<br>여<br>가            | 문화시설<br>및<br>프로그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br>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2015 | ○<br>(공식통계)      |
|                              |                          |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 2015 | ○<br>(문화체육관광부협조) |
|                              |                          |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 2015 | ○<br>(문화체육관광부협조) |
| 환경<br>·<br>경<br>관            | 하수도                      |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 2014 | ○<br>(공식통계)      |
| 안<br>전                       | 방법설비                     |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 2016 | ○<br>(지자체조사)     |
|                              | 경찰 순찰                    |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 -    | X<br>(경찰청협조)     |
|                              |                          |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또는 실적 현황                      | -    | X<br>(경찰청협조)     |
|                              | 소방 출동                    |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 -    | X<br>(국민안전처협조)   |

###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 3.1. 보건복지 부문

##### 3.1.1.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진료 서비스 항목은 각 시·군 내에서 주요 과목의 1차 진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시·군별 내과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을 조사하였으며,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 본 항목 점검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공개된 과목별 병원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102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73.9%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지역 중에는 47곳(57.3%), 도농복합시 중에는 55곳(98.2%)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함.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 지역구분       |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              | 비고 |
|------------|----------------|--------------|----|
|            | 조건 충족 시·군 수    | 조건 충족 시·군 비율 |    |
| 군          | 47 / 82        | 57.3         | -  |
| 도농복합시      | 55 / 56        | 98.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2 / 138      | 73.9         | -  |

- 중요 진료과목별 병원 실태를 살펴보면,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정형외과는 대부분의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하고 있음.
  - 내과병의원은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고, 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은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으며, 정형외과는 7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음.
  - 정형외과가 없는 7개의 지역에서는, 모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물리치료실 현황은 별도의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함).
  
- 반면, 35개의 시·군(25.4%)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66개 지역(47.8%)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어촌의 많은 지역들이 산부인과 진료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완책으로 37개의 시·군(26.8%)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체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으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시·군도 43개에 달함.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 구분          | 내과병의원   | 한방병의원   | 치과병의원   | 정형외과    | 산부인과    | 분만 가능  |
|-------------|---------|---------|---------|---------|---------|--------|
|             |         |         |         |         |         |        |
| 진료 가능 시·군 수 | 136/138 | 138/138 | 138/138 | 131/138 | 103/138 | 72/138 |
| 달성률         | 98.6    | 100.0   | 100.0   | 94.9    | 74.6    | 52.2   |

주: 산부인과 분만 가능 여부는 공식통계가 없어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함.

### 3.1.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응급서비스 항목은 시·군 단위별로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총 응급출동 건 수) × 100 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국민안전처에서 구득한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데이터를 통해 전체 138개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14개 시·군에 대한 응급서비스 점검·평가가 가능하였음.
- 농어촌 114개 시·군의 2016년 총 응급서비스 출동 건수는 약 66.1만 건으로 그 중 65.2만 건에 해당하는 98.6%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지역 97.8%, 도농복합시 98.9%로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가 조금 높게 나타남.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99.9  | 92.7 | 97.8 | -  |
| 도농복합시      | 100.0 | 95.0 | 98.9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92.7 | 98.6 | -  |

○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의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97%를 달성한 시·군은 114개 시·군 중 97개(85.1%) 시·군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군은 58개 중 42개(72.4%)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56개 중 55개(98.2%) 지역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42/58        | 72.4      | -  |
| 도농복합시      | 55/56        | 98.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97/114       | 85.1      | -  |

### 3.1.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노인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총 인원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위 식을 산출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혜자’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정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분석 결과 138개 시·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총 39.5만여 명이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27.7만여 명으로 나타나 이행실태는 70.1%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이 70.0%, 도농복합시가 70.2%로 비슷한 수준임.
- 2014년과 비교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36.6만 명에서 39.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혜를 받는 노인의 수는 26.2만 명에서 27.7만 명으로 소폭 상승하여 전체 비율은 71.8%에서 70.1%로 줄어듦.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2014년 21.0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2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는 3.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소폭 상승함.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1.8 | 53.3 | 70.0 | -  |
| 도농복합시      | 83.7  | 56.1 | 70.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1.8 | 53.3 | 70.1 | -  |

○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80%를 넘은 시·군 비율은 2014년 대비 15.9%에서 8.0%로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80%를 달성한 시·군은 총 11개에 불과하며 특히 도농복합시의 달성 시·군 감소가 두드러짐.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9 / 82       | 11.0      | -  |
| 도농복합시      | 2 / 56       | 3.6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1 / 138     | 8.0       | -  |



### 3.1.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5년에 1,403개 읍·면 가운데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의 수는 총 1,400개로 이 중 실제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969개 읍·면임.
  - 본 기준의 이행실태는 약 69.2%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지역별로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62.8%였으며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8.4%로 도농복합시의 보육시설 여건이 군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15.4 | 62.8 | -  |
| 도농복합시      | 100.0 | 28.6 | 78.4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15.4 | 69.2 | -  |

- 영유아 항목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80%를 달성한 시·군은 총 57개 시·군(전체 시·군 중 41.3%)으로, 2014년도 목표치 달성 시·군 비율(전체 시·군 중 43.5%)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 개선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26 / 82      | 31.7      | -  |
| 도농복합시      | 31 / 56      | 55.4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57 / 138     | 41.3      | -  |

## 3.2. 교육 부문

### 3.2.1. 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초등학교·중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운영되어야 함.
  - 2015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부터는 해당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1개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2016년 전체 1,403개 읍·면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개교 이상 모두 유지되고 있는 곳은 1,007개 읍·면으로 이행실태는 71.8%임.
  -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71.3%,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2.5%로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27.3 | 71.3 | -  |
| 도농복합시      | 100.0 | 40.0 | 72.5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27.3 | 71.8 | -  |

-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100%를 달성한 지역은 21개 시·군으로, 전체 시·군의 15.2%가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14.6%, 도농복합시의 16.1%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2016년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율은 2015년과 비교할 때 13.8%에서 1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12 / 82      | 14.6      | -  |
| 도농복합시      | 9 / 56       | 16.1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21 / 138     | 15.2      | -  |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수단 서비스 제공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35개교 중 2,336개교에서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행실태는 59.4%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지역 전체 초·중학교의 64.2%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의 53.7%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15.6 | 64.2 | -  |
| 도농복합시      | 100.0 | 11.1 | 53.7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11.1 | 59.4 | -  |

### 3.2.2.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항목은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됨. 준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교 시설을 의미하며,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외의 시설을 의미함.

-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는 비형식 시설이 적합하여 위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음.
- 전국 농어촌 지역 1,403개 읍·면 중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수는 277개의 지역으로 이행실태는 19.7%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142개 읍·면(17.1%)에서 도농복합시는 135개 읍·면(23.5%)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수치는 비형식시설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조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이행실태는 81.8%로 크게 증가함.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83.3 | 0.0 | 17.1 | -  |
| 도농복합시      | 85.7 | 0.0 | 23.5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85.7 | 0.0 | 19.7 | -  |

- 평생교육 항목에 대한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40%를 달성한 시·군은 138개의 시·군 중 21개(15.2%)로 조사됨.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중 모든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1곳으로 작년(4곳)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7 / 82      | 8.5       | -  |
| 도농복합시      | 14 / 56     | 25.0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21 / 138    | 15.2      | -  |

### 3.3. 정주생활기반 부문

#### 3.3.1.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시·군별 총 가구 수) × 100의 기준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통해 138개 농어촌 시·군을 조사한 결과, 전체 638.0만 가구 중 약 563.6만 가구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가구 대비 88.3%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84.0%, 도농복합시는 89.8%의 이행실태를 보임.

표 2-18.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92.1 | 60.6 | 84.0 | -  |
| 도농복합시      | 96.5 | 75.3 | 89.8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96.5 | 60.6 | 88.3 | -  |

○ 그러나 주택항목 서비스기준의 중기 목표치인 95%를 달성한 지역은 전체 138개 시·군 중 3곳뿐으로,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 비율은 2.2%에 불과함.

- 지역별로, 군지역은 서비스기준의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곳이 없었으며, 도농복합시 3곳만 달성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19. 최저주거기준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0 / 82       | 0.0       | -  |
| 도농복합시      | 3 / 56       | 5.4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3 / 138      | 2.2       | -  |

### 3.3.2.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 항목은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수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전체 농어촌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9.3%로 중기 목표치인 82%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3.4%,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4.7%인 것으로 조사됨.
- 작년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 부문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작년 조사의 전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7.8%, 군지역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0.8%,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3.7%였음.

표 2-20.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21.5 | 63.4 | -  |
| 도농복합시      | 100.0 | 29.2 | 74.7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21.5 | 69.3 | -  |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중기 목표치인 82%를 달성한 곳은 작년과 동일하게 32개 시·군이며 전체 시·군의 23.2%인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지역 16곳(19.5%), 도농복합시 16곳(28.6%)만이 중기 목표치를 만족시키고 있음.



표 2-21.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16 / 82      | 19.5      | -  |
| 도농복합시      | 16 / 56      | 28.6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32 / 138     | 23.2      | -  |

### 3.3.3.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정주생활 기반’ 부문에 속한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읍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지역 전체 가구 수) × 100으로 측정함.
- 난방 항목은 읍지역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따라서 읍지역이 없는 웅진군, 계룡시, 거제시는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함. 위 3개 시·군을 제외한 총 135개 농어촌 시·군의 읍지역 전체 가구 수는 약 191.2만 가구이며 이 중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 수는 약 108.9만 가구임.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7.0%임.
  -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분리하여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군지역 이행실태는 46.0%,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66.5%로 지역별 차이가 큼.

표 2-22.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95.1  | 0.0 | 46.0 | -  |
| 도농복합시      | 106.7 | 0.0 | 66.5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6.7 | 0.0 | 57.0 | -  |

- 서비스기준 목표치(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 65% 이상)를 달성한 지역은 전체 135개 시·군 중 31개 시·군이며 23.0%를 차지함.
  - 목표치를 달성한 곳을 지역으로 분류하면 군지역은 9곳(11.1%), 도농복합시는 22곳(40.7%)이 해당함.

표 2-23.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9/81         | 11.1      | -  |
| 도농복합시      | 22/54        | 40.7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31/135       | 23.0      | -  |

- 난방항목의 보완지표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공급하여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마을 가구 수를 조사하고,  $[LPG \text{ 소형 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 / (\text{읍·면지역 총 가구 수} - \text{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times 100$ 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 분석 결과 이행실태는 0.1에 그치고 있음.
  - 2016년 기준 전체 읍·면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277.1만호 중 4,126호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이 이루어져 전체 이행실태는 0.1%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난방비 저감정책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또는 가구)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24.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56 | 0.00 | 0.16 | -  |
| 도농복합시      | 0.95 | 0.00 | 0.13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56 | 0.00 | 0.15 | -  |

### 3.3.4.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교통 부문 대중교통 항목 세부 중심 기준은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임. 이에 대한 이행실태는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을 통해 계산됨.

-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여부와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관련 기준은 보완 세부기준임.
- 대중교통 항목 이행실태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활용하여 점검함.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으로 총 행정리 수는 36,295개 임. 이 중 32,820개 행정리(90.4%)에서 위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 나뉘보면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88.7%, 도농복합시는 92.8% 나타남.

표 2-25.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98.7  | 69.1 | 88.7 | -  |
| 도농복합시      | 100.0 | 73.7 | 92.8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69.1 | 90.4 | -  |

- 대중교통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행실태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모든 행정리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한 곳은 계룡시 밖에 없었음. 즉, 전체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 이행 실태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현실에서는 같은 시·군 내에도 대중교통 취약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이 필요함.

표 2-26. 대중교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0/82         | 0.0       | -  |
| 도농복합시      | 1/56         | 1.8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138        | 0.7       | -  |

- 보완기준인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 조사를 실시함.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138개 시·군 중 80.4%인 111개 시·군이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으로는 공영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미니버스 포함), 콜택시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군이 82곳 중 71곳(86.5%), 도농복합시가 56곳 중 40곳(71.4%)로 도농복합시에 비해 많은 군에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준대중교통 프로그램과 더불어 또 다른 보완지표인 도서지역의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 운항여부를 조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행정기관(읍·면사무소)이 위치해 있는 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138개 농어촌 시·군 중 군이 8곳, 도농복합시가 2곳으로 총 10개 시·군이며, 본도의 수는 총 34개임.
  - 34개의 본도 중 1일 1회 이상 왕복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은 34개로 분기기준의 이행실태는 100%로 나타남.

### 3.3.5. 광대역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이행실태는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행정리 수 / 구축 대상 행정리 수) × 100의 방법으로 점검함.
- 미래창조과학부 기준 2016년 광대역통합망 구축 대상 행정리 수는 총 36,104개로 이 중 92.8%에 해당하는 33,503개 행정리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92.2%, 도농복합시는 93.5%로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음.

표 2-27.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65.3 | 92.2 | -  |
| 도농복합시      | 100.0 | 71.1 | 93.5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65.3 | 92.8 | -  |

- 중기 목표치인 90%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00개 시·군으로 72.5%에 해당함. 특히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군지역은 59개(72.0%), 도농복합시는 41개(73.2%) 지역으로 나타남.

표 2-28.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59 / 82      | 72.0      | -  |
| 도농복합시      | 41 / 56      | 73.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 / 138    | 72.5      | -  |

- 추가적으로 세대 수를 기준으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살펴보면, 전체 3,858,555세대 중 95.9%에 해당하는 3,698,697세대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음.

### 3.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이행실태

#### 3.4.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별 1) 창업보육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지원 센터 유무 2) 일자리 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3)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연간 운영 횟수 자료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음.
  - 본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3)의 자료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조사결과 작년과 동일하게 45개 시·군을 제외한 93개의 시·군(67.4%)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43개, 도농복합시는 50개의 시·군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최소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이행실태를 보면 도농복합시가 군지역보다 이행실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군 간에 연간 프로그램 실시 횟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양주시의 경우 연간 106회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실시하지 않은 도농복합시도 많음.

표 2-29.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단위: 개, %

| 지역구분       |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              | 비고 |
|------------|----------------|--------------|----|
|            | 조건 충족 시·군 수    | 조건 충족 시·군 비율 |    |
| 군          | 43/82          | 52.4         | -  |
| 도농복합시      | 50/56          | 89.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93/138         | 67.4         | -  |

### 3.5.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문

#### 3.5.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려면 개별 시·군별로 ①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자료, ②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프로그램 현황,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자료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를 얻어 자료를 구득함.<sup>2</sup>
  - 본 항목의 점검 공식은 ‘문화 시설 존재 여부와 문화 프로그램 관람여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설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과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봄.
  
- 실제 이행실태 점검 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현황과 해당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점검
  -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크므로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1년 간 공연 및 전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합의 평균이 월 1회 이상인지를 검토함.
  -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 설치·운영 현황,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참고 자료로 제시함.
  
-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웅진군을 제외한 137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이 있고, 해당 시설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시·군은 127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92.0%임.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89.0%, 도농복합시는 96.4%로 나타남.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둘 다 만족하는 시·군은 54개 시·군으로 39.1%로 나타남.

---

<sup>2</sup> 부처 협조자료 중 지방문화원 자료는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를 활용함. 지역 문화행사에는 제향, 세시풍속, 연례행사, 축제, 공모전, 공연, 경시대회, 전시회 등을 포함함.

표 2-30.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단위: 개, %

| 지역구분       |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              | 비고 |
|------------|----------------|--------------|----|
|            | 조건 충족 시·군 수    | 조건 충족 시·군 비율 |    |
| 군          | 73/82          | 89.0         | -  |
| 도농복합시      | 54/56          | 96.4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27/138        | 92.0         | -  |

### 3.6. 환경·경관 부문

#### 3.6.1.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주거 부문 하수도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수) × 100으로 점검함.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사용한 통계는 2014년 기준 ‘하수도통계연보’를 활용함. 이를 활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81.0%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64.8%, 도농복합시는 85.6%로써 지역적 차이가 나타남.

표 2-31.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92.1 | 1.3  | 64.8 | -  |
| 도농복합시      | 98.0 | 20.6 | 85.6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98.0 | 1.3  | 81.0 | -  |

- 중기 목표치인 85%를 달성한 시·군은 전체 36개 시·군으로 26.1%에 해당함. 특히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군지역은 6개(7.3%)에 불과하여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이 시급함.

표 2-32.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6 / 82       | 7.3       | -  |
| 도농복합시      | 30 / 56      | 53.6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36 / 138     | 26.1      | -  |

### 3.7. 안전 부문

#### 3.7.1.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총 행정리 수) × 100을 통해 점검함.
- 각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얻은 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전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6,216개 행정리 중 15,654개 행정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43.2%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군지역의 이행실태는 44.8%,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41.2%로 나타나 도농복합시보다 군지역에서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남.

표 2-33. 방범용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이행실태 | 비고 |
|------------|-------|-----|------|----|
| 군          | 100.0 | 0.0 | 44.8 | -  |
| 도농복합시      | 100.0 | 0.0 | 41.2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0 | 0.0 | 43.2 | -  |

- 서비스기준의 중기 목표치인 60%를 달성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29개 시·군으로 전체 농어촌의 21.0%의 시·군이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음.
  - 전체 군의 25.6%인 21개의 군지역이 위의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14.3%인 8개의 시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음.

표 2-34. 방법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 개

| 지역구분       |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 비고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21 / 82      | 25.6      | -  |
| 도농복합시      | 8 / 56       | 14.3      | -  |
| 전체 농어촌 시·군 | 29 / 138     | 21.0      | -  |

### 3.7.2. 경찰 순찰(경찰청 자료 미제공)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안전 부문 경찰 순찰 이행실태 점검은 범죄취약 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자료가 필요함.
  - 범죄취약 지역이란 지난 해(2016년 이행실태 점검의 경우 2015년을 의미) 5대 강력범죄<sup>3</sup>가 발행한 마을(행정리)을 의미
  - 이행실태 점검사항은 위와 같은 범죄취약 지역을 마을(행정리) 단위로 2016년 일정기간 동안에 또는 2016년 조사 시점에서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는지의 여부임.
  
- 그러나 삶의 질 향상위원회 사무국의 자료 요청에 경찰청에서는 공문 및 검토의견을 통해 동 기준 항목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보내왔음.
  - 경찰청에서는 2016년 10월 20일자 공문(생활안전과-5470)을 통해 ‘행정리(마을)별 일일 순찰계획(횟수) 통계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함.
  - 또한 공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 ‘수용불가’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있음을 재확인함.

<sup>3</sup>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 향후 동 기준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경찰청 간 해당 항목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상호 협조가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이전에는 사후 대응에 해당하는 Code 1 신고에 대응한 ‘경찰 출동’ 항목이 있었으나, 이를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찰 순찰’ 항목으로 개편한 의의를 살릴 수 있어야 함.

그림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에 대한 경찰청 의견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 경 찰 청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  
(경유)

제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실적(통계)자료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1.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908('16.9.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실적(통계)자료 제출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농어촌서비스 기준인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의 통계자료 제출항목으로 요청받은 ‘행정리(마을)별 일일 순찰계획(횟수)’ 통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13.10.11 생활안전과-4956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개념 정의 및 통계 정비(안) 검토결과 회신」 공문에서,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 ‘수용불가’ 의견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음(붙임 참고)

붙임.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개념 정의 및 통계 정비(안) 검토 결과 회신’ 공문 및 붙임파일(검토의견) 각 1부. 끝.

### 3.7.3. 소방 출동(국민안전처 자료 미제공)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화재 발생 시의 ‘5분 대응론’에 근거한 기준 항목임.
  -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 이론은 ‘5분 대응론’과 ‘8분 대응론’이 있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5분 또는 8분이 지나면 거의 전소(全燒) 단계에 이르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기에 그 이전에 화재 진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5분 대응론’에 입각하여 ‘소방 출동’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동 기준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소방 출동 항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국민안전처는 ‘화재 신고 후 5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은 ‘대도심에 대한 목표기준’이라 평가하면서, 실제 농어촌에서는 본 기준항목의 달성 정도가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동 기준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그러나 농어촌 주민들도 대도심 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이며, 대도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만큼 농어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함.
  - 화재의 특성 상 (5분 대응론을 기준으로 볼 때) 발생 직후 5분 내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움.
  - 더욱이 2014년도에 동 기준항목의 목표 달성률이 45.4%였음을 감안하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서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부처에서 목표(55%)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명시적으로 더 기울여야 함.


- 동 항목의 2014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동 지역이 포함된 도농복합시 까지 농어촌 지역에 포함한 결과임.

그림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소방 출동 항목에 대한 국민안전처 의견

가족행복,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 국 민 안 전 처



국민안전처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  
(경유)

제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관련 통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2908(2016. 9. 6.)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실적(통계)자료 제출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관련 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자료 항목별 내역」 중 안전부분 ‘소방출동’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문 | 항목   |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검토결과   |
|----|------|------------------------------------|---------------------------------------|--|
| 안전 |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신고 후 5분 이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소방관서가 조밀하게 배치된 대도시에 대한 목표기준임</li> <li>○ 도심지역에 비해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의 실제 현장 도착비율은 20% 수준임.</li> <li>○ 20% 달성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 중 ‘소방출동’ 항목 삭제 필요</li> </ul> |

끝.



## 제 3 장

---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전반적인 기준 달성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응급서비스의 기준 달성 정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항목은 모두 기준 달성도가 감소하였음.
  - 이 중 진료서비스의 기준 달성도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부문의 경우 농어촌의 평생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1.8%를 달성하여 현상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8.1%p 증가하여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는 비교적 개선된 모습을 보임.
  - 반면, 읍·면별 평생교육 여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해당 기준의 중기 목표가 40%이지만 현재 19.7%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이마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결과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경우 전반적인 기준 달성률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난방, 광대역 통합망 항목 모두에서 기준 달성률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광대역 통합망 항목의 경우 달성률이 전년 대비 7.0%p 가량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중기 목표인 90%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주택과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점검할 수 없음.
  
-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은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안전 부문은 관계부처의 자료 협조 미흡으로 이행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시·군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음.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7.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반면, 나머지 두 항목, 즉 경찰 순찰과 소방 출동 항목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의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함.
  
-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2015년 대비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향상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수는 9개, 하락한 것은 4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 것은 4개로 나타남.
  -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3개 기준 항목 중 목표 달성률이 향상된 항목의 비중은 69.2%이며, 하락된 항목의 비중은 30.8%임.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 ('19) | 2015 | 2016 | 15-16 증감 |
|--------------|--------------------|--|----------|------|------|----------|
| 1. 보건 복지     | 1) 진료 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 80       | 76.8 | 73.9 | ↘        |
|              | 2) 응급 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97       | 98.4 | 98.6 | ↗        |
|              | 3)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0       | 71.8 | 70.1 | ↘        |
|              | 4)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80       | 69.7 | 69.2 | ↘        |
| 2. 교육 여건     | 5) 초·중 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 100      | 71.1 | 71.8 | ↗        |
|              | 6) 평생 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40       | 21.8 | 19.7 | ↘        |
| 3. 정주 생활 기반  | 7)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95       | -    | -    | ×        |
|              | 8)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82       | 67.8 | 69.3 | ↗        |
|              | 9)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70       | 53.1 | 57.0 | ↗        |
|              | 10) 대중 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100      | -    | -    | ×        |
|              | 11)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 90       | 85.8 | 92.8 | ↗        |
| 4. 경제 활동·일자리 |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 67.3 | 67.4 | ↗        |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100      | 91.3 | 92.0 | ↗        |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 ('19) | 2015 | 2016 | 15-16 증감 |
|---------------|-----------|--|----------|------|------|----------|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5       | 80.8 | 81.0 | ↗        |
| 7. 안전 (생활 안전) | 15) 방법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 60       | 35.8 | 43.2 | ↗        |
|               | 16)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100      | -    | -    | X        |
|               | 17)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55       | 41.1 | -    | X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2)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과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점검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목표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기준 항목별로 2019년까지 달성할 중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시·군의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경우가 적지 않음.

-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이상 보건·복지), 평생교육(교육) 등 4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등 8개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방법설비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함.
- 이는 응급서비스, 초·중학교,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법설비 등의 기준항목의 경우 이행실태가 전년 대비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향후에는 개별 시·군이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기준항목일지라도,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 부문          | 핵심 항목                 | 군(82개) |           | 도농복합시(56개) |           | 전체 농어촌 시·군(138개) |            |
|-------------|-----------------------|--------|-----------|------------|-----------|------------------|------------|
|             |                       | 2015년  | 2016년     | 2015년      | 2016년     | 2015년            | 2016년      |
| 1. 보건<br>복지 | 1) 진료서비스              | 51     | <b>47</b> | 55         | 55        | 106              | <b>102</b> |
|             | 2) 응급서비스              | 64     | <b>42</b> | 53         | 55        | 117              | <b>97</b>  |
|             | 3) 노인                 | 11     | <b>9</b>  | 11         | <b>2</b>  | 22               | <b>11</b>  |
|             | 4) 영유아                | 27     | <b>26</b> | 33         | <b>31</b> | 60               | <b>57</b>  |
| 2. 교육<br>여건 | 5) 초·중학교              | 11     | 12        | 8          | 9         | 19               | 21         |
|             | 6) 평생교육               | 8      | <b>7</b>  | 16         | <b>14</b> | 24               | <b>21</b>  |
| 3. 정주생활기반   | 7) 주택                 | 0      | 0         | 3          | 3         | 3                | 3          |
|             | 8) 상수도                | 16     | 16        | 16         | 16        | 32               | 32         |
|             | 9) 난방                 | 4      | 9         | 22         | 22        | 26               | 31         |
|             | 10) 대중교통              | 0      | 0         | 1          | 1         | 1                | 1          |
|             | 11) 광대역통합망            | 38     | 59        | 34         | 41        | 72               | 100        |
| 4. 경제활동·일자리 | 12) 창업 및 취업<br>컨설팅·교육 | 53     | <b>43</b> | 40         | 50        | 93               | 93         |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br>프로그램    | 75     | <b>73</b> | 51         | 54        | 126              | 127        |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7      | <b>6</b>  | 28         | 30        | 35               | 36         |
| 7. 안전       | 15) 방범설비              | 13     | 21        | 11         | <b>8</b>  | 24               | 29         |
|             | 16) 경찰순찰              | -      | -         | -          | -         | -                | -          |
|             | 17) 소방 출동             | 20     | -         | 8          | -         | 28               | -          |

주 1) 응급서비스의 경우 2015년은 전체 138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데 반해 2016년에는 소방서가 입지한 114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2) 난방 항목은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인천시의 군지역(강화·옹진)은 진료서비스,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의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특히 진료서비스 항목의 목표 달성률은 0.0%임.

- 부산시의 군지역(기장)은 노인과 초·중학교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그 외 대도시의 군지역(달성·울진)은 모든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는 모든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보임.
- 그렇지만 노인, 초·중학교, 상수도,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방범설비 등의 일부 기준항목에서 중기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기도 함.
- 강원도는 주로 정주생활기반 부문과 안전 부문 등 총 6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 매우 다양한 부문 및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특히 안전 부문 방범설비 항목의 목표 달성률은 26.9%로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나타내고 있음.
- 충청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총 6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특히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임.

- 충청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부문의 총 5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노인,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과 난방,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전라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8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난방과 광대역통합망,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전라북도의 경우 보건·복지 부문의 이행실태가 타 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라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총 10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가장 많은 기준항목인 총 10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환경·경관 부문)이 9개 도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남.

- 경상북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총 10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특히 경상북도는 주택, 대중교통,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하수도 등 총 4개 기준항목에 대해 9개 도 중 가장 낮은 이행실태 수준을 보임.
- 경상남도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안전 부문의 총 8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노인과 영유아,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와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난방, 대중교통,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특히 경상남도는 교육 부문의 영유아 항목에서 9개 도 중 가장 낮은 이행실태 수준을 보임.
- 제주도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총 3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주택, 난방, 광대역통합망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기준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특기할 점은 제주도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가 0.0%로 나타남.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구분/<br>점검 목표 | 1. 보건복지          |                  |           |            | 2. 교육                        |                 | 3. 정주생활기반 |            |                         |                  |                  |
|--------------|------------------|------------------|-----------|------------|------------------------------|-----------------|-----------|------------|-------------------------|------------------|------------------|
|              | 진료<br>서비스<br>80% | 응급<br>서비스<br>97% | 노인<br>80% | 영유아<br>80% | 초·중학교/<br>(통학수단제공학교)<br>100% | 평생<br>교육<br>40% | 주택<br>95% | 상수도<br>82% | 난방/<br>(LPG저장탱크)<br>65% | 대중<br>교통<br>100% | 광역<br>통합망<br>90% |
| 부산(기장)       | 100.0            | 99.4             | 58.0      | 100.0      | 60.0 (33.3)                  | 40.0            | 89.1      | 100.0      | 86.4 (0.0)              | 95.7             | 92.8             |
| 대구(달성)       | 100.0            | 99.2             | 93.4      | 100.0      | 100.0 (20.9)                 | 44.4            | 90.2      | 99.9       | 93.7 (0.0)              | 93.6             | 100.0            |
| 인천(강화옹진)     | 0.0              | 98.1             | 71.2      | 80.0       | 70.0 (78.4)                  | 10.0            | 86.8      | 41.2       | 59.8 (0.1)              | 87.3             | 91.5             |
| 울산(울진)       | 100.0            | 99.6             | 77.6      | 75.0       | 83.3 (20.4)                  | 33.3            | 91.2      | 75.6       | 95.1 (0.0)              | 97.6             | 99.1             |
| 경기도          | 100.0            | 98.9             | 71.9      | 92.1       | 75.2 (44.5)                  | 41.1            | 93.6      | 80.5       | 78.6 (0.2)              | 95.8             | 99.9             |
| 강원도          | 66.7             | 97.8             | 76.8      | 79.7       | 78.2 (93.1)                  | 23.5            | 87.3      | 59.5       | 18.6 (0.2)              | 88.7             | 92.9             |
| 충청북도         | 90.9             | 98.7             | 72.4      | 68.6       | 61.8 (64.6)                  | 19.6            | 88.1      | 63.7       | 58.1 (0.2)              | 89.7             | 95.2             |
| 충청남도         | 86.7             | 99.6             | 68.9      | 77.6       | 70.8 (69.5)                  | 21.1            | 90.0      | 60.4       | 50.8 (0.1)              | 92.7             | 91.2             |
| 전라북도         | 61.5             | 98.3             | 67.6      | 58.5       | 73.0 (87.8)                  | 13.2            | 88.8      | 80.5       | 40.3 (0.2)              | 93.2             | 86.3             |
| 전라남도         | 61.9             | 97.6             | 66.7      | 65.9       | 75.5 (49.6)                  | 14.8            | 87.9      | 63.9       | 38.7 (0.1)              | 89.6             | 90.9             |
| 경상북도         | 60.9             | 98.4             | 70.2      | 60.8       | 71.4 (47.3)                  | 14.7            | 82.6      | 64.3       | 52.0 (0.1)              | 85.2             | 92.1             |
| 경상남도         | 77.8             | 98.5             | 67.4      | 57.1       | 63.3 (53.4)                  | 15.8            | 87.0      | 69.9       | 51.4 (0.1)              | 88.0             | 97.1             |
| 제주도          | 100.0            | 99.2             | 74.2      | 100.0      | 100.0 (19.6)                 | 33.3            | 86.7      | 100.0      | 0.0 (0.2)               | 93.0             | 75.6             |
| 농어촌<br>시·군   | 73.9             | 98.6             | 70.0      | 69.2       | 71.8 (59.4)                  | 19.7            | 88.3      | 69.3       | 57.0 (0.1)              | 90.4             | 92.8             |

표 3-3.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계속)

| 구분         | 4. 경제활동·일자리            |      | 5. 문화·여가            |             | 6. 환경·경관    |             | 7. 안전         |              |  |
|------------|------------------------|------|---------------------|-------------|-------------|-------------|---------------|--------------|--|
|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br>100% | 100%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br>100% | 0.0         | 하수도<br>85%  | 방범설비<br>60% | 경찰 순찰<br>100% | 소방 출동<br>55% |  |
| 부산(기장)     | 100.0                  |      | 0.0                 | 89.5        | 100.0       | -           | -             | -            |  |
| 대구(달성)     | 100.0                  |      | 100.0               | 81.9        | 57.9        | -           | -             | -            |  |
| 인천(강화옹진)   | <b>50.0</b>            |      | <b>50.0</b>         | <b>43.1</b> | <b>23.4</b> | -           | -             | -            |  |
| 울산(울진)     | 100.0                  |      | 100.0               | 91.7        | 49.0        | -           | -             | -            |  |
| 경기도        | 100.0                  |      | 93.3                | 87.4        | 51.3        | -           | -             | -            |  |
| 강원도        | 86.7                   |      | 100.0               | 84.1        | <b>26.9</b> | -           | -             | -            |  |
| 충청북도       | 100.0                  |      | 100.0               | 81.8        | 50.6        | -           | -             | -            |  |
| 충청남도       | 93.3                   |      | 100.0               | <b>72.4</b> | 44.5        | -           | -             | -            |  |
| 전라북도       | 76.9                   |      | <b>69.2</b>         | <b>76.6</b> | 63.0        | -           | -             | -            |  |
| 전라남도       | 85.7                   |      | 95.2                | <b>70.5</b> | <b>29.6</b> | -           | -             | -            |  |
| 경상북도       | <b>65.2</b>            |      | <b>91.3</b>         | <b>72.1</b> | 46.2        | -           | -             | -            |  |
| 경상남도       | 100.0                  |      | 94.4                | 87.9        | <b>31.0</b> | -           | -             | -            |  |
| 제주도        | 100.0                  |      | 100.0               | 91.1        | 48.8        | -           | -             | -            |  |
| 농어촌<br>시·군 | 67.4                   |      | 92.0                | 81.0        | 43.2        | -           | -             | -            |  |

- 2015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총 13개 기준항목 중 2016년에 9개 도 전 지역에서 모두 이행실태가 향상된 기준항목은 2개 항목임.
  -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 항목의 경우 9개 도 모두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음.
  - 이 외에도 난방, 광대역통합망,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하수도, 방범 설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8개 도에서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음.
  
- 반면,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등 3개 기준항목은 5~8개 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실태가 낮아졌음.
  - 노인 항목의 경우 경상남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졌으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목표 달성률 하락 정도가 7.1%p로 가장 큼.
  - 영유아 항목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실태 수준이 낮아짐.
  - 평생교육 항목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하락하였음.

표 3-4. 2015-2016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 부문                | 항목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
|                   |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 1. 보건<br>복지       | 1) 진료<br>서비스                 | 100.0 | 100.0 | 66.7  | 66.7 | 81.8  | 90.9  | 93.9 | 86.7 | 69.2 | 61.5 | 71.4 | 61.9 | 60.9 | 60.9 | 77.8  | 77.8  | 100.0 | 100.0 |
|                   | 2) 응급<br>서비스                 | 98.7  | 98.9  | 97.7  | 97.8 | 98.8  | 98.7  | 99.6 | 99.6 | 97.8 | 98.3 | 97.6 | 97.6 | 98.2 | 98.4 | 98.3  | 98.5  | 99.4  | 99.2  |
|                   | 3) 노인                        | 76.2  | 71.9  | 82.0  | 76.8 | 75.6  | 72.4  | 69.6 | 68.9 | 67.8 | 67.6 | 69.8 | 66.7 | 71.9 | 70.2 | 63.8  | 67.4  | 81.3  | 74.2  |
|                   | 4) 영유아                       | 93.6  | 92.1  | 78.8  | 79.7 | 70.6  | 68.6  | 78.9 | 77.6 | 59.1 | 58.5 | 65.9 | 65.9 | 63.7 | 60.8 | 55.1  | 57.1  | 91.7  | 100.0 |
| 2. 교육<br>여건       | 5) 초·중<br>학교                 | 75.2  | 75.2  | 78.2  | 78.2 | 61.8  | 61.8  | 70.8 | 70.8 | 72.3 | 73.0 | 75.5 | 75.5 | 71.0 | 71.4 | 60.7  | 63.3  | 100.0 | 100.0 |
|                   | 6) 평생<br>교육                  | 46.1  | 41.1  | 24.4  | 23.5 | 22.5  | 19.6  | 23.0 | 21.1 | 12.6 | 13.2 | 17.0 | 14.8 | 17.6 | 14.7 | 16.8  | 15.8  | 41.7  | 33.3  |
| 3. 정주<br>생활<br>기반 | 7) 주택                        | 93.6  | 93.6  | 87.3  | 87.3 | 88.1  | 88.1  | 90.0 | 90.0 | 88.8 | 88.8 | 87.9 | 87.9 | 82.6 | 82.6 | 87.0  | 87.0  | 86.7  | 86.7  |
|                   | 8) 상수도                       | 80.5  | 80.5  | 58.2  | 59.5 | 59.8  | 63.7  | 56.8 | 60.4 | 76.7 | 80.5 | 59.5 | 63.9 | 62.3 | 64.3 | 67.2  | 69.9  | 100.0 | 100.0 |
|                   | 9) 난방                        | 76.4  | 78.6  | 19.0  | 18.6 | 56.5  | 58.1  | 47.6 | 50.8 | 29.4 | 40.3 | 34.9 | 38.7 | 47.9 | 52.0 | 46.7  | 51.4  | 0.0   | 0.0   |
|                   | 10) 대중<br>교통                 | 95.8  | 95.8  | 88.7  | 88.7 | 89.7  | 89.7  | 92.7 | 92.7 | 93.2 | 93.2 | 89.6 | 89.6 | 85.2 | 85.2 | 88.0  | 88.0  | 93.0  | 93.0  |
| 4. 경제<br>활동<br>자리 | 11) 광대역<br>통합망               | 98.5  | 99.9  | 91.5  | 92.9 | 84.5  | 95.2  | 90.4 | 91.2 | 69.8 | 86.3 | 77.6 | 90.9 | 86.8 | 92.1 | 94.3  | 97.1  | 94.8  | 75.6  |
|                   | 12) 창업 및<br>취업<br>컨설팅·<br>교육 | 100.0 | 100.0 | 100.0 | 86.7 | 100.0 | 100.0 | 93.3 | 93.3 | 76.9 | 76.9 | 61.9 | 85.7 | 65.2 | 65.2 | 100.0 | 100.0 | 100.0 | 100.0 |

| 부문            | 항목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진북   |      | 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
|               |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 5. 문화·여가      | 13)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 800  | 93.3 | 100.0 | 100.0 | 90.9 | 100.0 | 93.3 | 100.0 | 92.3 | 69.2 | 90.5 | 95.2 | 95.7 | 94.4 | 100.0 | 94.4 | 100.0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86.7 | 87.4 | 83.5  | 84.1  | 75.2 | 81.8  | 76.5 | 76.6  | 76.6 | 76.6 | 70.3 | 70.5 | 77.1 | 86.9 | 89.5  | 87.9 | 89.5  | 91.1  |
|               |                  |      |      |       |       |      |       |      |       |      |      |      |      |      |      |       |      |       |       |
| 7. 안전 (생활 안전) | 15) 방범 설비        | 48.9 | 51.3 | 30.3  | 26.9  | 41.8 | 50.6  | 50.7 | 44.5  | 63.0 | 23.3 | 29.6 | 39.1 | 46.2 | 23.6 | 47.7  | 31.0 | 47.7  | 48.8  |
|               | 16) 경찰 순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소방 출동        | 26.8 | -    | 39.6  | -     | 58.8 | -     | 61.7 | -     | 43.3 | -    | 52.4 | 28.5 | -    | 33.7 | 46.2  | -    | 46.2  | -     |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 3.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수정·보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과 광대역통합망 항목 제외 필요
  - 주택 항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5년마다 실시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5% 이상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왔으나, 해당 통계 조사가 주거실태조사로 바뀌면서 조사 방식의 차이로 시·군별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없게 되었기에 해당 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동 항목의 이행실태는 이미 2010년도 기준으로 88.3%에 이르고 있고, 그 비율 역시 중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도 굳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경우 현재 목표 달성률이 중기 목표(90%)를 초과 달성한 92.8%로 중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항목 자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변경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6호(시행 2015.12.2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의 부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안전부문의 ‘경찰순찰’ 항목명이 경우에 따라 ‘경찰출동’으로 표기되고 있는바, ‘경찰순찰’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에는 “7. 안전 / 나. 경찰 순찰 / 범죄 취약 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로 명기됨.
  - \* 동 시행령의 동 별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6호(시행 2015.12.2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에는 “7. 안전 / 나. 경찰 출동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고 고시됨.
  - 해당 항목의 세부 내용 상 항목명을 ‘경찰 순찰’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기준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보완 필요
  - 보건·복지 부문 응급서비스 항목의 경우 현재 소방서(119 구급대)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114개 시·군에 한해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있어 이행실태가 과대평가될 수 있음. 향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포함한 138개 농어촌 시·군 전체에 대한 응급서비스 현황 자료를 응급서비스를 요청한 농어촌 주민이 위치한 시·군별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안전 부문의 ‘경찰 순찰’과 ‘소방 출동’ 항목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임.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및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2. 관련 조직 및 제도운영 개선 방향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활성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운영하여 매년 1~2회씩 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2년(2015-16) 동안에는 동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과 관련된 부처의 과장급 실무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와 농어촌 주민이 함께 참여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최근 오랫동안 동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부처 간 의견교환이나 전문가들의 자문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음. 그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해와 협력 부족, 문제점 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초래하였음.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를 보다 정례화 하여 (년 2회) 개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필요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의 조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처별 예산사업으로 구성되어 매년 계획·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준 항목별로 관계 부처에서 다음 연도에 이행실태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만큼의 물량(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인가를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그 내용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에 보고한 후 이를 추진하여야 함.



- 다음 해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는 전년도의 이러한 사업성과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수준 향상 여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다시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이행실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계획에 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처별 계획과 성과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정책사업들이 국민적 지지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3.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개편 방향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중기 목표(5년 간 달성 목표)의 이행실태 수준이나 목표달성 가능성이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적지 않게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기간(2015-19)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기준과 지자체 자율의 선택기준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원하였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
  - 예를 들어 진료서비스(강화군, 옹진군), 난방(강원도, 제주도), 하수도(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행실태 수준의 지역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설정 등에 있어 부처 간 갈등이나 비협조도 문제
  - 소방 출동과 같이 최근 이행실태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중기 목표치 설정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설정된 것 자체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일부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자료 구득 및 취합의 문제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함.

- 지역별 여건과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관계부처들의 간섭과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20-24) 시행을 목표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함.
  - 첫째(제1안),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을 폐지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권한을 모두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
  - 둘째(제2안),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을 존치하되 기준 항목과 내용만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중기 목표 수치는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과 지역발전 목표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 제1안: 핵심 항목 폐지 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권한 지자체로 이양
  -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폐지하되, 대신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 향상 시·도계획에 반드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담아 이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동 계획에 수립하고, 시·도 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
  - 시·도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및 전문지원 기관에서는 전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원방안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조치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에서는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 개선안 등을 자문
  
- 제2안: 국가관리 핵심 항목 존치 및 세부적인 항목 내용과 중기 목표치는 지자체가 결정
  - 국가관리 핵심 항목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종전과 같이 운용하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 대신, 각 시·도별로 핵심기준과 선택 항목을 모두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중기 목표치를 조례를 통해 고시
-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 향상 시·도계획에 반드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담아 이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동 계획에 수립하고, 시·도 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1안과 동일)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및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전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함.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원방안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조치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에서는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 개선안 등을 자문

####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2007년 이후 폐지**

- 영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2000년에 도입하여 몇 차례 개편하면서 2006년까지 운용
- 그러나 지역별 차별성에 대한 고려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2016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 모든 조사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 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보건<br>복지 | 진료<br>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 요과목 의사 진료가능 하다. | 시·군내 물리치료실 현황<br>* 보건(지)소 및 일반 병의원 내 물리치료실 포함(단 물리치료사 상근하는 곳 에 한함) | ( )개소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 5 )개소       |
|          |           |  | 시·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 여 / 부       |                       | 년<br>월 | 여             |
| 보건<br>복지 |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군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수  | ( )개소 분만 가능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 1 )개소 분만 가능 |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대상) 수혜자 현황                             | ( )명        |                       | 년<br>월 | ( 403 )명      |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 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교육       |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 지역 제외)  |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br>※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법)<br>※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인륜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비형식 기관과 관련된 | ( )개 읍면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 10 )개 읍면   |
| 정주 생활 기반 |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시·군별 준중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br>(예: 지자체 자체 운영, 순환버스, 콜택시 비용 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등)<br>* <u>별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세사업 제외</u>  | ( )개 프로그램<br><프로그램 명칭><br>-<br>-<br>-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 5 )개 프로그램<br>- 지자체 자체 운영버스<br>- 콜택시 비용 지원<br>- 마중택시 운영<br>- 카풀 조직 지원<br>- 미니버스 운영 등등 |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 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경제 활동 · 일자리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군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유 / 무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무             |
|             |             |   | 시·군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유 / 무          |                       |        | 유             |
|             |             |   | 시·군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전담인력) 고용 여부 | 여 / 부<br>( ) 명 |                       |        | 여<br>( 2 ) 명  |
| 안전          | 방범 설비       | 범의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시·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 연 ( ) 회        | ( )실·과<br>성명:<br>Tel: | 년<br>월 | 연 ( 7 ) 회     |
|             |             |   |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행정리) 수 (동 지역 제외)        | ( ) 개 행정리      |                       |        | ( 225 ) 개 행정리 |

부록 2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 부문       | 관련 항목 | [2015년 개편인]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통계  | 구축 기관 |
|----------|-------|--|------------------------|---|-------|
| 보건 복지    |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응급구조 전문인력이 구급차에 동승     | 출동 시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인력의 동승 여부 표시 자료(건 별)   | 국민안전처 |
| 보건 복지    |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br>i) 각 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단위 까지 명시) 및 출동소요시간 자료<br>ii) 행정리별 평균 출동 소요시간 | 국민안전처 |
| 교육       |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 육성     | 읍·면별 초등/중학교 현황  | 교육부   |
| 교육       |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읍·면별 각 초등/중학교의 통학수단 제공 현황   | 교육부   |
| 정주 생활 기반 |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5% 이상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통계청   |

| 부문       | 관련 항목   | [2015년 개편안]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통계  | 구축 기관    |
|----------|---------|---|--|---|----------|
| 정주 생활 기반 |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 기초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                        | 환경부      |
| 정주 생활 기반 |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70% 이상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보급률                             | 한국도시가스협회 |
| 정주 생활 기반 |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도시가스 미보급 가구 중 설치 가구 수) | 산업통상자원부  |
| 정주 생활 기반 |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 해양수산부    |
| 정주 생활 기반 |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90% 이상            |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



| 부문       | 관련항목           | [2015년 개편안]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통계   | 구축 기관       |
|----------|----------------|---|---|--|-------------|
| 문화<br>여가 | 문화시설 및<br>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br>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br>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br>램을 관람할 수 있다. | 월 1회 이상<br>문화프로그램<br>개최(관람 가능)                | 시·군별 지방문화원의 관람 가능한<br>문화행사 프로그램 수(월별)  | 문화체육<br>관광부 |
| 문화<br>여가 | 문화시설 및<br>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br>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br>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br>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분기별 1회 이상<br>전문공연프로그램<br>개최(관람 가능)            | 시·군별 문예회관(문화예술회관) 공<br>연프로그램 수(분기별)  | 문화체육<br>관광부 |
| 안전       |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br>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범죄취약 마을에<br>1일 1회 이상<br>순찰 실시                 | 행정리(마을)별 5대 강력범죄 발생<br>현황(건 수)   | 경찰청         |
| 안전       |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br>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범죄취약 마을에<br>1일 1회 이상<br>순찰 실시                 | 행정리(마을)별 일일 순찰계획(회수)   | 경찰청         |
| 안전       |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br>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신고 접수 후<br>화재현장에 5분<br>내 도착 비율을<br>55% 이상으로 함 |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br>i) 각 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단위<br>까지 명시) 및 출동소요시간 자료<br>ii) 행정리별 평균 출동 소요시간 | 국민안전처       |



| 구분  | 1. 보건복지          |   |                                      | 2. 교육                                    |   |                                   | 3. 경주생활기반                              |                                  |                                       |  | 광역<br>통합       |                      |      |        |        |
|-----|------------------|---|--------------------------------------|--|---|-----------------------------------|--|----------------------------------|---------------------------------------|--|----------------|----------------------|------|--------|--------|
|     | 진료서비스            | 응급서비스   | 노인                                   | 영유아                                      | 초·중학교                                       | 평생교육                              | 주택                                     | 상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                      |      |        |        |
| 시도명 |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br>진수비율(%) 97% 이상<br>(소방서 없는 시군은 -포사) | 도움이 필요한 노인층에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률(%) 80% 이상 | 영유아 3명 이상 영미스 1개소 이상 있는 읍면수 비율(%) 80% 이상 | 초·중학교 총유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읍면수 비율(%) 100% 이상 | 총유면수중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수 비율(%) 40% 이상 | 총기구수중 취직유망 기회조사 결과 우수 기업수 비율(%) 95% 이상 | 면지역주민 등록인구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82% 이상 | 읍면도사기스 미보급세마을 중 소회JPC 정착센터 공공기구 비율(%) | 도비15분내 전부작성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100% 이상 | 중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 광역 통합만 구축률(%) 90% 이상 |      |        |        |
|     | 시군명              |   |                                      |  |   |                                   |  |                                  |                                       |  |                |                      |      |        |        |
| 강원도 | 춘천시              | 1   | 98.24                                | 76.80                                    | 80.00                                       | 100.00                            | 20.00                                  | 89.55                            | 62.80                                 | 0.00                                     | 0.00           | 86.9                 | 1    | 100.00 |        |
|     | 원주시              | 1   | 99.03                                | 68.31                                    | 100.00                                      | 33.33                             | 33.33                                  | 90.82                            | 29.83                                 | 73.86                                    | 0.52           | 93.9                 | 1    | 90.00  |        |
|     | 강릉시              | 1   | 98.79                                | 77.33                                    | 87.50                                       | 50.00                             | 100.00                                 | 86.64                            | 63.15                                 | 0.00                                     | 0.00           | 95.9                 | 1    | 94.52  |        |
|     | 삼척시              | 1   | 98.39                                | 80.92                                    | 75.00                                       | 75.00                             | 100.00                                 | 80.78                            | 43.47                                 | 0.00                                     | 0.31           | 88.1                 | 1    | 100.00 |        |
|     | 홍천군              | 1   | 96.04                                | 67.87                                    | 70.00                                       | 90.00                             | 100.00                                 | 84.62                            | 45.22                                 | 68.07                                    | 0.00           | 86.7                 | 1    | 80.10  |        |
|     | 횡성군              | 1   | 97.66                                | 78.54                                    | 88.89                                       | 100.00                            | 100.00                                 | 84.16                            | 52.00                                 | 41.26                                    | 0.00           | 88.6                 | 1    | 65.34  |        |
|     | 영월군              | 1   | 96.62                                | 101.83                                   | 33.33                                       | 88.89                             | 100.00                                 | 78.63                            | 61.09                                 | 38.80                                    | 0.44           | 96.0                 | 1    | 91.53  |        |
|     | 평창군              | 0   | 95.15                                | 76.85                                    | 100.00                                      | 100.00                            | 100.00                                 | 85.50                            | 76.87                                 | 0.00                                     | 0.00           | 69.1                 | 1    | 98.94  |        |
|     | 정선군              | 0   | 95.80                                | 72.69                                    | 100.00                                      | 100.00                            | 100.00                                 | 79.14                            | 60.98                                 | 0.00                                     | 0.31           | 85.6                 | 1    | 100.00 |        |
|     | 철원군              | 1   | 98.84                                | 76.63                                    | 40.00                                       | 36.36                             | 100.00                                 | 89.94                            | 76.96                                 | 0.00                                     | 0.23           | 92.7                 | 0    | 100.00 |        |
|     | 화천군              | 0   | -                                    | 81.07                                    | 100.00                                      | 80.00                             | 31.58                                  | 40.00                            | 83.80                                 | 52.39                                    | 0.00           | 0.61                 | 1    | 100.00 |        |
|     | 양구군              | 1   | -                                    | 77.47                                    | 100.00                                      | 100.00                            | 100.00                                 | 86.79                            | 63.75                                 | 0.00                                     | 0.00           | 86.8                 | 1    | 100.00 |        |
|     | 인제군              | 1   | 92.66                                | 75.18                                    | 100.00                                      | 100.00                            | 100.00                                 | 86.50                            | 80.02                                 | 0.00                                     | 0.46           | 86.9                 | 1    | 83.33  |        |
|     | 고성군              | 0   | 98.54                                | 82.15                                    | 83.33                                       | 66.67                             | 30.00                                  | 85.15                            | 85.13                                 | 0.00                                     | 0.38           | 93.7                 | 0    | 100.00 |        |
|     | 양양군              | 0   | 95.19                                | 89.11                                    | 66.67                                       | 66.67                             | 100.00                                 | 86.06                            | 76.94                                 | 0.00                                     | 0.00           | 92.8                 | 1    | 100.00 |        |
|     | 홍주시              | 1   | 98.53                                | 65.31                                    | 69.23                                       | 61.54                             | 73.33                                  | 7.69                             | 89.86                                 | 62.94                                    | 0.08           | 0.25                 | 93.7 | 1      | 94.59  |
|     | 제천시              | 1   | 97.70                                | 79.32                                    | 75.00                                       | 87.50                             | 55.56                                  | 25.00                            | 88.64                                 | 60.02                                    | 26.53          | 0.00                 | 87.6 | 1      | 87.95  |
|     | 청주시              | 1   | 99.40                                | 75.70                                    | 100.00                                      | 69.23                             | 59.09                                  | 30.77                            | 91.03                                 | 64.20                                    | 95.50          | 0.00                 | 97.6 | 1      | 100.00 |
|     | 보은군              | 1   | 98.50                                | 67.46                                    | 27.27                                       | 27.27                             | 76.19                                  | 18.18                            | 81.23                                 | 21.50                                    | 1.71           | 0.00                 | 83.4 | 1      | 97.19  |
| 옥천군 | 1                | 99.21   | 58.61                                | 44.44                                    | 44.44                                       | 63.16                             | 11.11                                  | 84.26                            | 64.83                                 | 43.06                                    | 0.55           | 89.0                 | 1    | 97.26  |        |
| 영동군 | 1                | 98.35   | 72.52                                | 63.64                                    | 72.73                                       | 62.50                             | 9.09                                   | 80.31                            | 61.02                                 | 34.48                                    | 0.38           | 72.2                 | 1    | 86.96  |        |
| 진천군 | 1                | 99.52   | 73.05                                | 100.00                                   | 57.14                                       | 85.00                             | 28.57                                  | 87.16                            | 76.93                                 | 44.94                                    | 0.21           | 91.4                 | 1    | 96.09  |        |
| 괴산군 | 1                | 96.88   | 72.90                                | 54.55                                    | 54.55                                       | 65.22                             | 9.09                                   | 81.34                            | 46.39                                 | 30.15                                    | 0.16           | 93.2                 | 1    | 94.62  |        |
| 음성군 | 1                | 98.19   | 76.74                                | 88.89                                    | 77.78                                       | 65.63                             | 44.44                                  | 92.07                            | 83.44                                 | 53.00                                    | 0.21           | 81.1                 | 1    | 98.44  |        |
| 단양군 | 0                | -   | 72.41                                | 62.50                                    | 75.00                                       | 54.55                             | 12.50                                  | 83.91                            | 41.42                                 | 13.58                                    | 0.00           | 95.3                 | 1    | 85.14  |        |
| 증평군 | 1                | 99.60   | 66.11                                | 100.00                                   | 50.00                                       | 28.57                             | 50.00                                  | 91.98                            | 85.20                                 | 74.48                                    | 0.90           | 97.0                 | 0    | 96.04  |        |
| 친안시 | 1                | 99.82   | 75.37                                | 83.33                                    | 50.00                                       | 65.79                             | 50.00                                  | 90.82                            | 43.90                                 | 64.85                                    | 0.44           | 96.2                 | 1    | 98.58  |        |
| 공주시 | 1                | 99.36   | 66.84                                | 100.00                                   | 85.71                                       | 30.00                             | 87.55                                  | 54.24                            | 0.00                                  | 0.00                                     | 0.00           | 90.5                 | 1    | 89.20  |        |
| 보령시 | 1                | 99.51   | 67.32                                | 72.73                                    | 72.73                                       | 72.73                             | 9.09                                   | 90.52                            | 46.47                                 | 0.00                                     | 0.00           | 93.6                 | 0    | 94.49  |        |
| 아산시 | 1                | 99.68   | 66.90                                | 90.91                                    | 90.91                                       | 52.38                             | 92.16                                  | 85.09                            | 81.62                                 | 0.00                                     | 0.00           | 95.7                 | 1    | 99.20  |        |

충청  
북도

충청  
남도



| 구분       | 1. 보건복지          |   |                                   | 2. 교육                                       |                                       |                                      | 3. 경주생활기반                   |                              |  |   | 광역<br>통합양      |               |       |      |      |        |       |
|----------|------------------|---|-----------------------------------|---|---------------------------------------|--------------------------------------|-----------------------------|------------------------------|--|---|----------------|---------------|-------|------|------|--------|-------|
|          | 진료서비스            | 응급서비스   | 노인                                | 영유아   | 초·중학교                                 | 평생교육                                 | 주택                          | 상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               |       |      |      |        |       |
| 시도명      |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br>진수비율(%) 97% 이상<br>(소방서 없는 시군은 -포사) | 도움이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 영유아 3명 이상 영미스 1개소 이상<br>있는 읍면수 비율(%) 80% 이상 | 총유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읍면수 비율(%) 100% 이상 | 총유면수중 합교수중 통학유치 학교 재용하는 비율(%) 40% 이상 | 총기구수중 취지주거 기구수 비율(%) 95% 이상 | 면지역주민 등록인구중 기구수 비율(%) 82% 이상 | 읍면도사기스 미보급세미수 중 소행ITC 적자행크 품급 기구 비율(%) | 도비15분내 장부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100% 이상 | 중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 광역 통합양 90% 이상 |       |      |      |        |       |
|          | 시군명              |   |                                   |   |                                       |                                      |                             |                              |  |   |                |               |       |      |      |        |       |
| 경상<br>북도 | 구례군              | 0   | 12                                | 0   | 58.55                                 | 25.00                                | 50.00                       | 50.00                        | 12.50                                  | 87.72                                   | 35.96          | 0.00          | 0.66  | 96.1 | 1    | 99.34  |       |
|          | 고령군              | 1   | 30                                | 0   | 65.82                                 | 73.00                                | 87.50                       | 62.16                        | 6.25                                   | 88.36                                   | 52.89          | 0.00          | 0.00  | 94.4 | 1    | 70.10  |       |
|          | 보성군              | 1   | 22                                | 0   | 65.08                                 | 50.00                                | 58.33                       | 53.33                        | 16.67                                  | 84.89                                   | 30.36          | 0.00          | 0.00  | 94.0 | 1    | 77.53  |       |
|          | 화순군              | 1   | 17                                | 0   | 68.25                                 | 23.08                                | 69.23                       | 51.85                        | 7.69                                   | 83.34                                   | 75.50          | 84.08         | 0.00  | 90.2 | 1    | 97.38  |       |
|          | 장흥군              | 1   | 20                                | 0   | 60.02                                 | 70.00                                | 80.00                       | 50.00                        | 10.00                                  | 81.70                                   | 69.89          | 10.04         | 0.00  | 92.3 | 1    | 82.11  |       |
|          | 강진군              | 1   | 13                                | 0   | 74.88                                 | 54.55                                | 72.73                       | 56.52                        | 0.00                                   | 87.68                                   | 38.04          | 0.00          | 0.00  | 88.7 | 1    | 97.59  |       |
|          | 해남군              | 1   | 40                                | 0   | 61.87                                 | 64.29                                | 71.43                       | 60.00                        | 7.14                                   | 86.53                                   | 44.00          | 62.66         | 0.00  | 89.5 | 1    | 99.61  |       |
|          | 영암군              | 0   | 25                                | 1   | 55.96                                 | 90.91                                | 90.91                       | 44.83                        | 36.36                                  | 88.62                                   | 65.56          | 71.53         | 0.00  | 90.9 | 1    | 92.39  |       |
|          | 무안군              | 0   | 39                                | 0   | 62.18                                 | 88.89                                | 88.89                       | 40.00                        | 33.33                                  | 90.12                                   | 71.29          | 67.68         | 0.00  | 85.5 | 1    | 99.00  |       |
|          | 함평군              | 0   | 18                                | 1   | 60.01                                 | 100.00                               | 77.78                       | 63.16                        | 11.11                                  | 84.37                                   | 58.22          | 28.50         | 0.00  | 93.4 | 1    | 95.94  |       |
|          | 영광군              | 0   | 23                                | 0   | 71.34                                 | 54.55                                | 72.73                       | 50.00                        | 18.18                                  | 88.05                                   | 86.42          | 34.40         | 0.25  | 93.5 | 1    | 97.26  |       |
|          | 장성군              | 0   | 20                                | 0   | 78.68                                 | 36.36                                | 63.64                       | 66.67                        | 9.09                                   | 83.79                                   | 76.22          | 49.78         | 0.00  | 89.7 | 1    | 94.85  |       |
|          | 완도군              | 1   | 24                                | 0   | 71.53                                 | 83.33                                | 100.00                      | 41.03                        | 8.33                                   | 90.49                                   | 93.74          | 0.00          | 0.28  | 75.2 | 1    | 88.21  |       |
|          | 진도군              | 1   | 9                                 | 0   | 76.68                                 | 100.00                               | 100.00                      | 41.67                        | 14.29                                  | 86.17                                   | 98.75          | 0.00          | 0.00  | 82.6 | 0    | 94.63  |       |
|          | 신안군              | 1   | 21                                | 0   | 60.00                                 | 85.71                                | 100.00                      | 30.00                        | 0.00                                   | 82.09                                   | 86.05          | 0.00          | 0.54  | 69.7 | 1    | 70.55  |       |
|          | 포항시              | 1   | 66                                | 0   | 66.27                                 | 71.43                                | 100.00                      | 38.00                        | 7.14                                   | 89.22                                   | 69.73          | 69.73         | 79.42 | 0.00 | 88.0 | 0      | 91.20 |
|          | 경주시              | 1   | 13                                | 0   | 68.46                                 | 91.67                                | 75.00                       | 36.59                        | 33.33                                  | 83.71                                   | 64.14          | 64.14         | 43.81 | 0.00 | 89.2 | 0      | 92.13 |
|          | 김천시              | 1   | 28                                | 0   | 69.25                                 | 53.33                                | 60.00                       | 53.57                        | 6.67                                   | 83.30                                   | 50.01          | 50.01         | 0.00  | 0.19 | 90.5 | 0      | 94.31 |
|          | 안동시              | 1   | 34                                | 1   | 64.37                                 | 71.43                                | 71.43                       | 51.52                        | 14.29                                  | 77.74                                   | 63.14          | 63.14         | 2.13  | 0.00 | 88.4 | 0      | 87.96 |
|          | 구미시              | 1   | 45                                | 0   | 75.77                                 | 62.50                                | 87.50                       | 50.00                        | 12.50                                  | 91.41                                   | 83.00          | 57.46         | 0.50  | 86.3 | 0    | 93.45  |       |
| 영주시      | 1                | 23  | 0                                 | 75.45                                       | 60.00                                 | 40.00                                | 68.75                       | 10.00                        | 76.67                                  | 43.53                                   | 43.53          | 1.53          | 0.60  | 80.4 | 0    | 92.46  |       |
| 영천시      | 1                | 11  | 0                                 | 71.33                                       | 63.64                                 | 90.91                                | 46.43                       | 27.27                        | 75.32                                  | 82.28                                   | 82.28          | 52.66         | 0.29  | 92.8 | 0    | 85.14  |       |
| 상주시      | 1                | 21  | 0                                 | 83.70                                       | 38.89                                 | 66.67                                | 46.15                       | 11.11                        | 76.43                                  | 44.92                                   | 44.92          | 0.00          | 0.00  | 82.6 | 1    | 80.11  |       |
| 문경시      | 1                | 15  | 0                                 | 70.00                                       | 66.67                                 | 66.67                                | 55.00                       | 11.11                        | 80.40                                  | 73.23                                   | 73.23          | 0.00          | 0.00  | 85.2 | 1    | 95.81  |       |
| 경산시      | 1                | 57  | 0                                 | 67.42                                       | 75.00                                 | 50.00                                | 30.77                       | 50.00                        | 86.13                                  | 94.56                                   | 94.56          | 106.67        | 0.00  | 98.7 | 1    | 100.00 |       |
| 군위군      | 0                | 8   | 1                                 | 74.62                                       | 37.50                                 | 62.50                                | 84.62                       | 12.50                        | 60.86                                  | 60.24                                   | 60.24          | 0.00          | 0.00  | 77.7 | 0    | 92.31  |       |
| 의성군      | 1                | 16  | 0                                 | 76.31                                       | 35.29                                 | 55.56                                | 65.63                       | 5.56                         | 61.83                                  | 58.24                                   | 58.24          | 0.00          | 0.00  | 80.0 | 1    | 92.50  |       |
| 철송군      | 0                | 2   | 0                                 | 81.22                                       | 75.00                                 | 87.50                                | 58.82                       | 0.00                         | 60.56                                  | 59.24                                   | 59.24          | 0.00          | 0.00  | 86.0 | 1    | 100.00 |       |
| 영양군      | 0                | 2   | 1                                 | 60.66                                       | 66.67                                 | 66.67                                | 83.33                       | 16.67                        | 62.61                                  | 82.08                                   | 82.08          | 0.00          | 0.00  | 81.6 | 1    | 98.25  |       |
| 영덕군      | 0                | 14  | 1                                 | 67.87                                       | 44.44                                 | 77.78                                | 60.00                       | 22.22                        | 77.23                                  | 85.26                                   | 85.26          | 0.00          | 0.72  | 77.5 | 1    | 94.12  |       |



## 2016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 구분      | 4. 경제활동, 일자리            |                         |  | 5. 문화, 여가                |                               |                                   | 6. 환경, 경관 |        | 7. 안전 |                 | 소방출동 |
|---------|-------------------------|-------------------------|--|--------------------------|-------------------------------|-----------------------------------|-----------|--------|-------|-----------------|------|
|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운영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인자리센터등취업상담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창업및사업개발, 교육사업운영, 취업상담을위한전문인력(직담인력)고용여부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 방범설비   | 경찰순찰  | 소방출동5분내 도착비율(%) |      |
| 부산      | 0                       | 1                       | 13   | 1                        | 0                             | 0                                 | 89.51     | 100.00 | -     | -               | -    |
| 대구      | 0                       | 1                       | 2  | 1                        | 1                             | 1                                 | 81.93     | 57.89  | -     | -               | -    |
| 인천      | 1                       | 1                       | 0  | 1                        | 1                             | 1                                 | 45.40     | 20.43  | -     | -               | -    |
| 울진군     | 0                       | 0                       | 0  | 0                        | 0                             | 0                                 | 35.78     | 30.67  | -     | -               | -    |
| 울주군     | 1                       | 1                       | 2  | 1                        | 1                             | 1                                 | 91.73     | 49.03  | -     | -               | -    |
| 평택시     | 0                       | 1                       | 21   | 1                        | 0                             | 1                                 | 82.10     | 16.55  | -     | -               | -    |
| 남양주시    | 0                       | 1                       | 16   | 1                        | 0                             | 0                                 | 95.73     | 27.54  | -     | -               | -    |
| 용인시     | 0                       | 1                       | 33   | 1                        | 1                             | 1                                 | 92.66     | 99.35  | -     | -               | -    |
| 과천시     | 0                       | 1                       | 21   | 1                        | 1                             | 1                                 | 93.10     | 23.58  | -     | -               | -    |
| 이천시     | 0                       | 1                       | 18   | 1                        | 1                             | 1                                 | 89.72     | 96.72  | -     | -               | -    |
| 안성시     | 0                       | 1                       | 11   | 1                        | 0                             | 1                                 | 78.11     | 26.38  | -     | -               | -    |
| 김포시     | 0                       | 1                       | 18   | 1                        | 0                             | 1                                 | 84.23     | 100.00 | -     | -               | -    |
| 화성시     | 0                       | 1                       | 32   | 1                        | 1                             | 1                                 | 82.61     | 42.86  | -     | -               | -    |
| 광주시     | 0                       | 1                       | 14   | 1                        | 1                             | 1                                 | 92.19     | 97.13  | -     | -               | -    |
| 양주시     | 1                       | 1                       | 12   | 1                        | 1                             | 0                                 | 90.98     | 36.00  | -     | -               | -    |
| 포천시     | 1                       | 1                       | 15   | 1                        | 0                             | 1                                 | 61.40     | 24.30  | -     | -               | -    |
| 여주시     | 0                       | 1                       | 2  | 1                        | 0                             | 1                                 | 73.16     | 58.15  | -     | -               | -    |
| 연천군     | 0                       | 1                       | 3  | 1                        | 0                             | 1                                 | 84.21     | 34.38  | -     | -               | -    |
| 가평군     | 0                       | 1                       | 6  | 1                        | 0                             | 1                                 | 75.86     | 30.95  | -     | -               | -    |
| 양평군     | 0                       | 1                       | 12   | 1                        | 1                             | 1                                 | 80.14     | 80.67  | -     | -               | -    |
| 춘천시     | 1                       | 1                       | 3  | 1                        | 0                             | 1                                 | 93.00     | 11.17  | -     | -               | -    |
| 강원도 원주시 | 1                       | 1                       | 3  | 1                        | 1                             | 1                                 | 86.78     | 6.11   | -     | -               | -    |

| 구분   | 4. 경제활동, 일자리            |                          |                                    | 5. 문화, 여가                |                               |                                   | 6. 환경, 경관               |                   | 7. 안전                 |                 |
|------|-------------------------|--------------------------|------------------------------------|--------------------------|-------------------------------|-----------------------------------|-------------------------|-------------------|-----------------------|-----------------|
|      |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내인자리 센터등취업상담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창업및사업제운영,취업상담을위한전문인력(전담인력)고용여부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기획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출동            |
| 시·군명 | 육지원센터등창업및사업제운영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인자리 센터등취업상담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창업및사업제운영,취업상담을위한전문인력(전담인력)고용여부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기획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 구역인구보급률 (%) | 행정리(CCTV)설 치비율(%) | 행정리1인회 이상경찰순찰 실시비율(%) | 소방출동5분내 도착비율(%) |
| 시도명  | 강릉시                     | 1                        | 27                                 | 1                        | 1                             | 1                                 | 89.20                   | 32.88             | -                     | -               |
|      | 삼척시                     | 1                        | 2                                  | 1                        | 1                             | 1                                 | 85.48                   | 0.00              | -                     | -               |
|      | 홍천군                     | 0                        | 3                                  | 0                        | 1                             | 1                                 | 73.50                   | 30.10             | -                     | -               |
|      | 횡성군                     | 0                        | 3                                  | 0                        | 1                             | 1                                 | 54.91                   | 16.00             | -                     | -               |
|      | 영월군                     | 0                        | 2                                  | 0                        | 1                             | 1                                 | 72.48                   | 32.60             | -                     | -               |
|      | 평창군                     | 0                        | 2                                  | 0                        | 1                             | 1                                 | 67.39                   | 63.35             | -                     | -               |
|      | 정선군                     | 1                        | 1                                  | 0                        | 1                             | 1                                 | 83.25                   | 19.23             | -                     | -               |
|      | 철원군                     | 0                        | 1                                  | 0                        | 1                             | 1                                 | 78.66                   | 56.64             | -                     | -               |
|      | 화천군                     | 0                        | 1                                  | 0                        | 1                             | 1                                 | 66.25                   | 0.00              | -                     | -               |
|      | 양구군                     | 0                        | 2                                  | 0                        | 1                             | 1                                 | 82.86                   | 34.94             | -                     | -               |
|      | 인제군                     | 0                        | 1                                  | 0                        | 1                             | 1                                 | 82.14                   | 73.81             | -                     | -               |
|      | 고성군                     | 0                        | 1                                  | 0                        | 1                             | 1                                 | 91.67                   | 19.53             | -                     | -               |
|      | 양양군                     | 0                        | 1                                  | 0                        | 1                             | 0                                 | 60.96                   | 29.84             | -                     | -               |
|      | 충주시                     | 1                        | 1                                  | 5                        | 1                             | 1                                 | 92.21                   | 40.24             | -                     | -               |
|      | 제천시                     | 0                        | 1                                  | 3                        | 0                             | 1                                 | 95.01                   | 49.68             | -                     | -               |
|      | 청주시                     | 1                        | 1                                  | 6                        | 1                             | 1                                 | 91.12                   | 58.04             | -                     | -               |
|      | 보은군                     | 1                        | 1                                  | 2                        | 0                             | 1                                 | 69.72                   | 12.55             | -                     | -               |
|      | 옥천군                     | 1                        | 1                                  | 2                        | 0                             | 1                                 | 85.68                   | 42.73             | -                     | -               |
|      | 영동군                     | 1                        | 0                                  | 1                        | 0                             | 1                                 | 68.77                   | 94.78             | -                     | -               |
|      | 진천군                     | 0                        | 1                                  | 1                        | 1                             | 1                                 | 73.75                   | 29.07             | -                     | -               |
|      | 괴산군                     | 1                        | 1                                  | 4                        | 0                             | 1                                 | 43.43                   | 79.36             | -                     | -               |
|      | 음성군                     | 0                        | 1                                  | 1                        | 0                             | 1                                 | 52.29                   | 66.16             | -                     | -               |
|      | 단양군                     | 1                        | 1                                  | 6                        | 1                             | 1                                 | 72.81                   | 47.68             | -                     | -               |
|      | 증평군                     | 1                        | 1                                  | 4                        | 0                             | 1                                 | 92.09                   | 16.82             | -                     | -               |
|      | 천안시                     | 1                        | 1                                  | 3                        | 0                             | 1                                 | 93.72                   | 57.60             | -                     | -               |
|      | 공주시                     | 0                        | 1                                  | 1                        | 0                             | 1                                 | 67.79                   | 84.27             | -                     | -               |
|      | 보령시                     | 0                        | 1                                  | 2                        | 0                             | 1                                 | 66.54                   | 100.00            | -                     | -               |
|      | 이산시                     | 0                        | 1                                  | 12                       | 1                             | 1                                 | 68.87                   | 37.04             | -                     | -               |
|      | 서산시                     | 1                        | 1                                  | 4                        | 0                             | 1                                 | 70.00                   | 49.24             | -                     | -               |
|      | 논산시                     | 1                        | 1                                  | 3                        | 1                             | 1                                 | 60.32                   | 33.18             | -                     | -               |
|      | 계룡시                     | 0                        | 1                                  | 2                        | 0                             | 1                                 | 94.72                   | 59.38             | -                     | -               |
|      | 담양시                     | 0                        | 1                                  | 5                        | 1                             | 1                                 | 61.10                   | 29.41             | -                     | -               |
|      | 금산군                     | 0                        | 0                                  | 0                        | 0                             | 1                                 | 71.01                   | 29.41             | -                     | -               |

충청  
북도

충청  
남도



| 구분   | 4. 경제활동, 일자리        |                          |                                    | 5. 문화, 여가                |                               |                                   | 6. 환경, 경관 |        | 7. 안전 |      |
|------|---------------------|--------------------------|------------------------------------|--------------------------|-------------------------------|-----------------------------------|-----------|--------|-------|------|
|      |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내인자리 센터등취업상담을위한지원센터유무 | 시·군내창업및사업제운영,취업상담을위한전문인력(전담인력)고용여부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기획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출동 |
| 시·군명 | 1                   | 1                        | 0                                  | 1                        | 1                             | 1                                 | 49.79     | 12.47  | -     | -    |
| 부여군  | 0                   | 1                        | 3                                  | 1                        | 1                             | 1                                 | 49.95     | 19.62  | -     | -    |
| 서천군  | 0                   | 1                        | 2                                  | 0                        | 0                             | 1                                 | 50.28     | 81.97  | -     | -    |
| 청양군  | 1                   | 1                        | 6                                  | 1                        | 1                             | 1                                 | 63.54     | 32.26  | -     | -    |
| 홍성군  | 1                   | 1                        | 3                                  | 0                        | 1                             | 1                                 | 56.72     | 41.42  | -     | -    |
| 예산군  | 1                   | 1                        | 2                                  | 0                        | 1                             | 1                                 | 50.42     | 67.55  | -     | -    |
| 태안군  | 0                   | 1                        | 2                                  | 1                        | 1                             | 1                                 | 92.10     | 40.95  | -     | -    |
| 군산시  | 1                   | 1                        | 2                                  | 1                        | 1                             | 1                                 | 86.14     | 57.49  | -     | -    |
| 익산시  | 1                   | 1                        | 9                                  | 0                        | 0                             | 1                                 | 73.37     | 81.80  | -     | -    |
| 경유시  | 0                   | 1                        | 11                                 | 1                        | 0                             | 1                                 | 79.43     | 59.58  | -     | -    |
| 남원시  | 0                   | 1                        | 1                                  | 1                        | 0                             | 1                                 | 58.61     | 55.54  | -     | -    |
| 김제시  | 1                   | 1                        | 2                                  | 1                        | 1                             | 1                                 | 77.55     | 55.82  | -     | -    |
| 완주군  | 0                   | 1                        | 1                                  | 0                        | 0                             | 0                                 | 71.01     | 37.34  | -     | -    |
| 진안군  | 0                   | 0                        | 0                                  | 1                        | 0                             | 0                                 | 72.37     | 94.00  | -     | -    |
| 무주군  | 0                   | 0                        | 0                                  | 1                        | 0                             | 0                                 | 62.48     | 100.00 | -     | -    |
| 장수군  | 0                   | 0                        | 2                                  | 1                        | 0                             | 0                                 | 57.13     | 99.22  | -     | -    |
| 임실군  | 0                   | 1                        | 2                                  | 1                        | 0                             | 1                                 | 47.13     | 71.66  | -     | -    |
| 순창군  | 0                   | 1                        | 2                                  | 1                        | 0                             | 1                                 | 60.74     | 65.19  | -     | -    |
| 고창군  | 0                   | 1                        | 2                                  | 1                        | 0                             | 1                                 | 58.65     | 47.06  | -     | -    |
| 부안군  | 1                   | 1                        | 1                                  | 1                        | 0                             | 1                                 | 83.77     | 14.90  | -     | -    |
| 여주시  | 1                   | 1                        | 2                                  | 1                        | 0                             | 1                                 | 91.00     | 16.31  | -     | -    |
| 순천시  | 1                   | 1                        | 5                                  | 1                        | 0                             | 1                                 | 60.65     | 6.05   | -     | -    |
| 나주시  | 0                   | 1                        | 1                                  | 1                        | 1                             | 1                                 | 92.27     | 10.34  | -     | -    |
| 광양시  | 1                   | 1                        | 1                                  | 1                        | 1                             | 1                                 | 71.06     | 39.47  | -     | -    |
| 담양군  | 0                   | 0                        | 0                                  | 1                        | 1                             | 1                                 | 67.54     | 6.99   | -     | -    |
| 곡성군  | 0                   | 1                        | 2                                  | 1                        | 0                             | 1                                 | 88.88     | 6.58   | -     | -    |
| 구례군  | 0                   | 1                        | 0                                  | 1                        | 0                             | 1                                 | 49.94     | 100.00 | -     | -    |
| 고흥군  | 0                   | 1                        | 0                                  | 1                        | 0                             | 1                                 | 57.43     | 26.90  | -     | -    |
| 보성군  | 0                   | 1                        | 2                                  | 0                        | 1                             | 0                                 | 76.87     | 12.43  | -     | -    |
| 화순군  | 1                   | 1                        | 2                                  | 1                        | 1                             | 1                                 | 60.26     | 62.14  | -     | -    |
| 장흥군  | 0                   | 1                        | 1                                  | 1                        | 1                             | 1                                 | 56.76     | 32.42  | -     | -    |
| 강진군  | 0                   | 1                        | 1                                  | 1                        | 0                             | 1                                 | 49.98     | 54.86  | -     | -    |
| 해남군  | 0                   | 0                        | 0                                  | 1                        | 0                             | 1                                 | 72.99     | 47.95  | -     | -    |
| 영암군  | 0                   | 0                        | 0                                  | 1                        | 1                             | 1                                 |           |        | -     | -    |

전라북도

전라남도

| 구분   | 4. 경제활동, 일자리                         |                             | 5. 문화, 여가                |                               | 6. 환경, 경관                      |                                  | 7. 안전            |                       |                      |
|------|--------------------------------------|-----------------------------|--------------------------|-------------------------------|--------------------------------|----------------------------------|------------------|-----------------------|----------------------|
|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시·군별 문화예술진흥,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기획 이상 프로그램 공연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 구역 인구 보급률 (%)) | 행정리(CIV)실 치비율(%) | 행정리1인회 이상점점수관 실시비율(%) | 소방출동 소방출동5분내 도착비율(%) |
| 시·군명 | 0                                    | 1                           | 1                        | 0                             | 1                              | 60.28                            | 19.23            | -                     | -                    |
| 시도명  | 0                                    | 1                           | 1                        | 0                             | 0                              | 54.23                            | 11.40            | -                     | -                    |
|      | 0                                    | 1                           | 1                        | 1                             | 1                              | 53.30                            | 33.22            | -                     | -                    |
|      | 0                                    | 1                           | 8                        | 1                             | 1                              | 56.48                            | 0.00             | -                     | -                    |
|      | 1                                    | 0                           | 0                        | 1                             | 1                              | 49.32                            | 16.60            | -                     | -                    |
|      | 0                                    | 1                           | 1                        | 1                             | 1                              | 59.89                            | 18.60            | -                     | -                    |
|      | 0                                    | 0                           | 0                        | 1                             | 0                              | 33.20                            | 9.62             | -                     | -                    |
|      | 1                                    | 1                           | 1                        | 1                             | 1                              | 80.07                            | 26.51            | -                     | -                    |
|      | 0                                    | 1                           | 3                        | 0                             | 1                              | 90.20                            | 35.83            | -                     | -                    |
|      | 0                                    | 1                           | 0                        | 1                             | 1                              | 72.56                            | 26.64            | -                     | -                    |
|      | 1                                    | 1                           | 1                        | 1                             | 1                              | 77.75                            | 38.32            | -                     | -                    |
|      | 1                                    | 1                           | 1                        | 1                             | 1                              | 97.97                            | 47.09            | -                     | -                    |
|      | 1                                    | 1                           | 4                        | 1                             | 1                              | 85.95                            | 86.93            | -                     | -                    |
|      | 0                                    | 1                           | 3                        | 0                             | 1                              | 70.00                            | 45.82            | -                     | -                    |
|      | 1                                    | 1                           | 3                        | 1                             | 1                              | 67.07                            | 19.56            | -                     | -                    |
|      | 0                                    | 1                           | 0                        | 0                             | 1                              | 81.53                            | 43.06            | -                     | -                    |
|      | 0                                    | 1                           | 2                        | 0                             | 1                              | 90.72                            | 32.48            | -                     | -                    |
|      | 0                                    | 0                           | 0                        | 0                             | 1                              | 41.54                            | 100.00           | -                     | -                    |
|      | 0                                    | 1                           | 1                        | 1                             | 1                              | 44.10                            | 44.25            | -                     | -                    |
|      | 0                                    | 0                           | 0                        | 0                             | 1                              | 42.53                            | 74.26            | -                     | -                    |
|      | 0                                    | 0                           | 1                        | 0                             | 1                              | 44.64                            | 45.22            | -                     | -                    |
|      | 0                                    | 1                           | 1                        | 0                             | 1                              | 74.04                            | 50.98            | -                     | -                    |
|      | 0                                    | 0                           | 0                        | 0                             | 0                              | 53.56                            | 38.68            | -                     | -                    |
|      | 0                                    | 0                           | 0                        | 1                             | 1                              | 59.75                            | 42.11            | -                     | -                    |
|      | 0                                    | 0                           | 0                        | 1                             | 1                              | 35.57                            | 100.00           | -                     | -                    |
|      | 1                                    | 1                           | 4                        | 1                             | 1                              | 71.81                            | 30.05            | -                     | -                    |
|      | 1                                    | 1                           | 5                        | 0                             | 1                              | 40.86                            | 45.66            | -                     | -                    |
|      | 0                                    | 0                           | 0                        | 0                             | 0                              | 61.82                            | 40.76            | -                     | -                    |
|      | 0                                    | 1                           | 1                        | 1                             | 1                              | 68.54                            | 67.69            | -                     | -                    |
|      | 0                                    | 0                           | 0                        | 0                             | 1                              | 1.28                             | 28.00            | -                     | -                    |
|      | 1                                    | 1                           | 5                        | 1                             | 1                              | 95.98                            | 13.72            | -                     | -                    |
|      | 0                                    | 1                           | 1                        | 0                             | 1                              | 91.60                            | 4.45             | -                     | -                    |

경상  
북도

경상  
남도

| 구분  | 4. 경제활동, 일자리                               |  |   |   | 5. 문화, 여가                |                               |                                   | 6. 환경, 경관               |        | 7. 안전            |        |                        |         |              |        |
|-----|--|--|---|---|--------------------------|-------------------------------|-----------------------------------|-------------------------|--------|------------------|--------|------------------------|---------|--------------|--------|
|     | 시·군내강연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취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시·군내강연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취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시·군내창업 및 사업제출,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인력) 고용여부 | 시·군내창업 및 사업제출,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인력) 고용여부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 구역인구보급률(%)) | 85% 이상 | 행정리(CIV)실 치비율(%) | 60% 이상 | 행정리 1인회 이상 집합시설 시비율(%) | 100% 이상 | 소방출동 도착비율(%) | 55% 이상 |
| 시도명 | 시·군명                                       | 통영시  | 0   | 1   | 1                        | 0                             | 0                                 | 1                       | 80.75  | 15.05            | 15.05  | -                      | -       | -            | -      |
|     |  | 사천시  | 0   | 1   | 1                        | 0                             | 0                                 | 1                       | 92.33  | 16.38            | 16.38  | -                      | -       | -            | -      |
|     |  | 김해시  | 0   | 1   | 2                        | 0                             | 0                                 | 1                       | 95.13  | 20.80            | 20.80  | -                      | -       | -            | -      |
|     |  | 밀양시  | 0   | 1   | 1                        | 0                             | 0                                 | 1                       | 72.10  | 18.87            | 18.87  | -                      | -       | -            | -      |
|     |  | 거제시  | 0   | 1   | 6                        | 1                             | 1                                 | 1                       | 82.54  | 54.73            | 54.73  | -                      | -       | -            | -      |
|     |  | 양산시  | 1   | 1   | 7                        | 0                             | 0                                 | 1                       | 96.35  | 25.78            | 25.78  | -                      | -       | -            | -      |
|     |  | 의령군  | 0   | 1   | 1                        | 0                             | 0                                 | 1                       | 61.39  | 13.45            | 13.45  | -                      | -       | -            | -      |
|     |  | 함안군  | 0   | 1   | 1                        | 0                             | 0                                 | 1                       | 50.62  | 41.83            | 41.83  | -                      | -       | -            | -      |
|     |  | 창녕군  | 0   | 1   | 1                        | 0                             | 0                                 | 1                       | 67.53  | 21.40            | 21.40  | -                      | -       | -            | -      |
|     |  | 고성군  | 0   | 1   | 1                        | 0                             | 0                                 | 1                       | 57.74  | 46.01            | 46.01  | -                      | -       | -            | -      |
|     |  | 남해군  | 0   | 1   | 1                        | 0                             | 0                                 | 1                       | 67.41  | 36.94            | 36.94  | -                      | -       | -            | -      |
|     |  | 하동군  | 0   | 1   | 1                        | 0                             | 0                                 | 1                       | 66.42  | 51.10            | 51.10  | -                      | -       | -            | -      |
|     |  | 산청군  | 0   | 1   | 1                        | 0                             | 0                                 | 1                       | 63.87  | 31.82            | 31.82  | -                      | -       | -            | -      |
|     |  | 함양군  | 0   | 1   | 1                        | 0                             | 0                                 | 1                       | 72.99  | 19.31            | 19.31  | -                      | -       | -            | -      |
|     |  | 거창군  | 0   | 1   | 1                        | 0                             | 0                                 | 1                       | 80.77  | 100.00           | 100.00 | -                      | -       | -            | -      |
|     |  | 합천군  | 0   | 1   | 1                        | 0                             | 0                                 | 1                       | 55.51  | 30.03            | 30.03  | -                      | -       | -            | -      |
| 제주도 | 시·군명                                       | 제주시  | 1   | 1   | 12                       | 1                             | 1                                 | 1                       | 90.76  | 45.83            | 45.83  | -                      | -       | -            | -      |
|     |  | 서귀포시                                       | 1   | 1   | 5                        | 0                             | 0                                 | 1                       | 92.22  | 52.63            | 52.63  | -                      | -       | -            | -      |

## 참고문헌

---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부 -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2016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조 근 식    부연구위원  
강 종 원    연 구 위 원





## 차 례

---

### 제1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

|                            |     |
|----------------------------|-----|
|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 | 97  |
|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   | 98  |
|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 101 |
|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 102 |

### 제2장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                   |     |
|-------------------|-----|
| 1. 교육여건 .....     | 104 |
| 2. 정주생활기반 .....   | 112 |
| 3. 경제활동·일자리 ..... | 114 |
| 4. 문화·여가 .....    | 117 |

### 제3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 수범사례: 강원에듀버스 사례

|                         |     |
|-------------------------|-----|
| 1. 강원에듀버스 도입 및 운영 ..... | 120 |
| 2. 강원에듀버스 핵심 운영성과 ..... | 121 |
| 3. 강원에듀버스 문제점 .....     | 123 |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 101 |
|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 103 |

### 제2장

|   |     |
|---|-----|
|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6) ..... | 107 |
|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을 .....            | 109 |
| 표 2-3. 교육여건 - 평생교육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       | 111 |
|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              | 113 |
|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활성화 .....           | 116 |
|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                 | 118 |
| 표 2-7.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 목표치 .....    | 119 |

# 제 1 장

##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

###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표 선정
  - 국가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강원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선택 항목의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달성률 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성 강화 도모
-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강원도가 추구하고자하는 장기비전을 기본으로 하고자 함.
  - 강원도는 2011년 민선5기 발전전략과 실천의지를 담은 도정구호와 방침을 제시하였음. 도정구호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이며, 도정방침은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평화와 번영”으로 정함.
  -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 농어촌서비스 기준 역시 강원도 도

정구호와 도정방침을 기본으로 하고자 함.

- 강원도 농어촌의 특성인 산간지역의 특성 반영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항목은 도서·벽지지역을 위한 여객선 운항 등 강원도 산간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 농어촌 지역 간 물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도만의 서비스기준을 선택 항목으로 추가 발굴
  - 향후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준 마련

##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 2.1. 교육 부문

- 학교교육 부문
  - 정부는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으로는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율 확대, 학생수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 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임.
  - 강원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정부정책대로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황폐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강원도는 2015년 기준 전체 학교 348개교 중 210개교(54.7%)가 폐교 대상임.
  -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 학교의 폐교는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유출의 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임.

#### ○ 평생교육 부문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특히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100세 시대에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농어촌 교통의 부족,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평생학습 기회조차 불리한 상황임.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학습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코자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도 내 시·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행복학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 단위의 센터 설치·운영은 더욱 어려움.
- 따라서 시·군별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의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군에 1개소 이상 확대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 2.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림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며,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6차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강원도 농어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6차 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만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임
  -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되는 지역임. 식품생산의 형태는 농가형 생산에서 품목별 또는 마을단위 조직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는 농림수산물의 1차 생산과 2차 가공을 접목하고 체험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유통·관광 등의 측면에서는 미약한 상태임.
- 강원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화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함.
    - 농림 생산물의 2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차 가공산업은 마을단위, 광역단위의 단지 및 거점화를 통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3차 산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효산업은 시식, 음식점, 체험,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면서 6차 산업화 추진이 필요함.
  - 강원도에서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산업화, 농상공연대, 향토산업 등의 농촌관련 부가가치 제고 사업들 중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지정 상황을 통해 강원도 내 농촌경제 활성화를 분석함.

### 2.3. 문화·여가 부문

-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영화상영관이 없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혜택을 주기위해 상영관 설치를 추

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이 아니라 복합상영관 설치를 통해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최신 개봉 영화 상영이 가능한 복합상영관이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지역 상황을 선정함.

###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부문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
| 1. 교육       | 1)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br>-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br>강원에듀버스 운영<br>- 시·군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br>-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를 확대한다. |
|             | 2)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2. 정주생활 기반  | 3)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br>*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
| 3. 경제활동·일자리 | 4) 농촌경제활성화        |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 4. 문화·여가    | 5) 문화격차 해소        | 모든 시·군에 영화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

####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기존 지표들 중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문화격차해소와 관련된 지표는 유지하되, 그 외 지표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함.
- 교육 부문 중 희망만들기 학교 지표 변경
  - 기존:  $(\text{희망만들기 학교} / \text{대상학교}) \times 100$
  - 변경:  $(\text{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학교} / \text{대상학교}) \times 100$
  - 변경사유
    - 기존 시범사업으로 학교별 운영되던 희망만들기 학교가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지표의 변경사유 발생
    -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1학교 1개 교육과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존재
- 교육 부문 중 강원에듀버스 지표 추가
  - 기존:  $(\text{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text{총 시·군 수}) \times 100$
  - 추가:  $(\text{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text{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times 100$
  - 추가사유
    -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에듀버스가 2015년말 기준 강원도 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어 운영
    - 이에 따라 기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목표치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비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함.



## ○ 경제활동·일자리 중 6차산업화 지표의 변경

- 기존: {현재년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전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 수 + 전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100
- 변경: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100
- 변경 사유
  - 분모인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증가율이 분자인 6차 산업화인증사업자 증가율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기존 지표를 3개 부분 합계의 증가율로 변경하여 제시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부문                                   | 선택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1. 교육                                | 1)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 (희망만들기 교육과정운영 학교 / 대상학교) × 100  | 교육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 협조 자료 |
|                                      |                   |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교육청: 강원에듀버스 사업       | 협조 자료 |
|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 100 |                   | 교육청: 강원에듀버스 사업  | 협조 자료                |       |
|                                      | 2)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 (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 (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원=1, 미지원=0)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 협조 자료 |
| 2. 정주생활 기반                           | 3) 주거환경 개선        |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교체 주택수 /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수) × 100                          |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지자체 조사 | 협조 자료 |
| 3. 경제활동·일자리                          | 4) 농촌경제 활성화       |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100                           | 강원농촌융복합 지원센터         | 협조 자료 |
| 4. 문화·여가                             | 5) 문화격차 해소        | (영화관 설립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지역균형발전사업             | 협조 자료 |

1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기업형새농촌마을 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기업형새농촌으로 명칭 변경

## 제 2 장

###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 1. 교육여건

##### 1.1.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체육 등), 지역사회와 소통, 인성교육·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 등을 위해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음악,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의 병행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임.
- 강원도는 2016년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초·중학교 수가 256개교로 전체 초·중학교(551개교) 수의 46.46%임.
  -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통폐

합 대상<sup>2</sup> 기준 학생 수

- 2015년 강원도는 통폐합 대상학교 259개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는 총 68개교로 이중 희망학교 25개교, 선도학교 43개교임.
  -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작은학교의 선도모델을 육성 및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희망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컨설팅으로 2015년 이후 모든 작은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적용할 수 있는 집중 컨설팅 대상학교임.
  - 선도학교는 희망학교 미지정 학교 중,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시설을 갖춘 학교로 1~2가지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학교임.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2015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세분화되어 확대 운영되었음.
- 이에 따라 2016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행실태는 기존 희망학교 및 선도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
  - 특성화 교육과정: 작은학교의 선도모델 육성 및 확산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화
  - 공동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일반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학교는 2016년 현재 60명 이하 초·중학교이나 2017년 이후부터는 1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할 예정임.

<sup>2</sup>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기준

- 따라서 향후 대상학교 확대에 따른 목표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중복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나, 1개교 1개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을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256개 대상학교 중 205개 학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학교 중 교육과정 도입율 80.08%를 달성하였음.
  - 특성화 교육과정은 256개 대상학교 중 8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은 256개 대상학교 중 7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공통 교육과정은 256개 대상학교 중 5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강원도 내 시·군별로는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철원군이 100% 이상<sup>3</sup>을 달성하였으며, 횡성군은 47.62%로 도입율이 가장 낮음.
- 평균 도입율 80.08%보다 낮은 지역은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임.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sup>3</sup> 100% 이상을 도입한 지역은 대상학교 모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1개 대상학교가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임.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6)

| 구분         | 대상학교 |     |    | 희망 만들기 학교 |          |    |    |              |    |    |         |    | 도입율 (%) |        |
|------------|------|-----|----|-----------|----------|----|----|--------------|----|----|---------|----|---------|--------|
|            | 합계   | 초   | 중  | 합계        | 특성화 교육과정 |    |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    |    | 공동 교육과정 |    |         |        |
|            |      |     |    |           | 계        | 초  | 중  | 계            | 초  | 중  | 계       | 초  |         | 중      |
| 강원도        | 256  | 192 | 64 | 205       | 81       | 65 | 16 | 73           | 54 | 19 | 51      | 35 | 16      | 80.08  |
| 춘천시        | 13   | 8   | 5  | 13        | 5        | 3  | 2  | 8            | 5  | 3  | 0       | 0  | 0       | 100.00 |
| 원주시        | 20   | 14  | 6  | 18        | 6        | 4  | 2  | 8            | 5  | 3  | 4       | 4  | 0       | 90.00  |
| 강릉시        | 11   | 9   | 2  | 13        | 5        | 5  | 0  | 4            | 2  | 2  | 4       | 4  | 0       | 118.18 |
| 속초시<br>양양군 | 21   | 18  | 3  | 17        | 6        | 4  | 2  | 1            | 1  | 0  | 10      | 10 | 0       | 80.95  |
| 동해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태백시        | 7    | 6   | 1  | 7         | 4        | 3  | 1  | 3            | 3  | 0  | 0       | 0  | 0       | 100.00 |
| 삼척시        | 20   | 12  | 8  | 17        | 4        | 3  | 1  | 7            | 5  | 2  | 6       | 3  | 3       | 85.00  |
| 홍천군        | 31   | 24  | 7  | 22        | 8        | 6  | 2  | 10           | 7  | 3  | 4       | 3  | 1       | 70.97  |
| 횡성군        | 21   | 15  | 6  | 10        | 8        | 6  | 2  | 2            | 1  | 1  | 0       | 0  | 0       | 47.62  |
| 영월군        | 22   | 15  | 7  | 17        | 6        | 5  | 1  | 4            | 2  | 2  | 7       | 2  | 5       | 77.27  |
| 평창군        | 13   | 11  | 2  | 12        | 5        | 4  | 1  | 7            | 6  | 1  | 0       | 0  | 0       | 92.31  |
| 정선군        | 18   | 11  | 7  | 11        | 5        | 4  | 1  | 3            | 3  | 0  | 3       | 0  | 3       | 61.11  |
| 철원군        | 6    | 6   | 0  | 9         | 3        | 3  | 0  | 1            | 1  | 0  | 5       | 5  | 0       | 150.00 |
| 화천군        | 14   | 12  | 2  | 10        | 6        | 6  | 0  | 4            | 4  | 0  | 0       | 0  | 0       | 71.43  |
| 양구군        | 11   | 7   | 4  | 9         | 3        | 2  | 1  | 4            | 3  | 1  | 2       | 0  | 2       | 81.82  |
| 인제군        | 14   | 12  | 2  | 9         | 4        | 4  | 0  | 3            | 2  | 1  | 2       | 2  | 0       | 64.29  |
| 고성군        | 14   | 12  | 2  | 11        | 3        | 3  | 0  | 4            | 4  | 0  | 4       | 2  | 2       | 78.57  |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 강원에듀버스 운영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중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강원에듀버스는 각 학교별로 관리하던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노선별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차량 공동 활용 제도임.
- 2014년 현재 강원에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총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등이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 이에 따라 기존 제시한 에듀버스 운영 시·군 확대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음.
  - 따라서 기존의 선택 항목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의 추가적 제시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의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함.
  - 에듀버스지원율(%) =  $\frac{\text{지원학교수}}{\text{초·중·고등학교수}} \times 100$
- 2016년 현재 강원도 전체 675개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는 327개교로 지원율 48.44%를 달성함.
  - 에듀버스 지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군(91.67%)이며, 다음으로 정선군(88.57%), 양구군(84.21%), 평창군(81.25%) 순임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율

| 구분      | 2015 |            |           |       | 2016 |            |           |       |
|---------|------|------------|-----------|-------|------|------------|-----------|-------|
|         | 도입   | 초중고<br>학교수 | 지원<br>학교수 | 지원율   | 도입   | 초중고<br>학교수 | 지원<br>학교수 | 지원율   |
| 강원도     | 18   | 683        | 256       | 37.48 | 18   | 675        | 327       | 48.44 |
| 춘천시     | 1    | 77         | 17        | 22.08 | 1    | 77         | 18        | 23.38 |
| 원주시     | 1    | 88         | 10        | 11.36 | 1    | 88         | 23        | 26.14 |
| 강릉시     | 1    | 62         | 13        | 20.97 | 1    | 62         | 19        | 30.65 |
| 속초시·양양군 | 2    | 44         | 10        | 22.73 | 2    | 44         | 20        | 45.45 |
| 동해시     | 1    | 28         | 4         | 14.29 | 1    | 28         | 4         | 14.29 |
| 태백시     | 1    | 25         | 6         | 24.00 | 1    | 25         | 6         | 24.00 |
| 삼척시     | 1    | 46         | 26        | 56.52 | 1    | 43         | 27        | 62.79 |
| 홍천군     | 1    | 50         | 20        | 40.00 | 1    | 49         | 29        | 59.18 |
| 횡성군     | 1    | 38         | 22        | 57.89 | 1    | 36         | 22        | 61.11 |
| 영월군     | 1    | 36         | 29        | 80.56 | 1    | 36         | 33        | 91.67 |
| 평창군     | 1    | 33         | 26        | 78.79 | 1    | 32         | 26        | 81.25 |
| 정선군     | 1    | 35         | 12        | 34.29 | 1    | 35         | 31        | 88.57 |
| 철원군     | 1    | 26         | 18        | 69.23 | 1    | 26         | 18        | 69.23 |
| 화천군     | 1    | 23         | 9         | 39.13 | 1    | 23         | 9         | 39.13 |
| 양구군     | 1    | 19         | 15        | 78.95 | 1    | 19         | 16        | 84.21 |
| 인제군     | 1    | 29         | 14        | 48.28 | 1    | 29         | 20        | 68.97 |
| 고성군     | 1    | 24         | 5         | 20.83 | 1    | 23         | 6         | 26.09 |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1.2. 평생 교육 여건 기반 조성

- 고령화, 조기은퇴 등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 역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 강원도 내 평생교육도시는 2016년 현재 10개 시·군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등 1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
- 2015년까지 강원도 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9개 시·군이었으나, 2016년 영월군이 평생교육도시로 새로이 지정되어 10개 시·군으로 증가하였음.
- 2016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2015년 10개 시·군보다 3개 시·군이 증가하였음.
  - 춘천시, 태백시, 영월군이 새로 배치된 지역임.
- 2016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임.
- 강원도의 행복학습센터는 2016년 현재 201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6년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은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 2개 시·군(강릉시, 동해시)이 선정되었음.



표 2-3. 교육여건 - 평생교육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 구분  | 2015년                           |                                  |                                 | 2016년                           |                                  |                                 |
|-----|---------------------------------|----------------------------------|---------------------------------|---------------------------------|----------------------------------|---------------------------------|
|     | 평생교육<br>도시<br>(지정=1,<br>미지정 =0) | 평생교육사<br>배치<br>(배치=1,<br>미배치 =0) | 행복학습<br>센터<br>(지원=1,<br>미지원 =0) | 평생교육<br>도시<br>(지정=1,<br>미지정 =0) | 평생교육사<br>배치<br>(배치=1,<br>미배치 =0) | 행복학습<br>센터<br>(지원=1,<br>미지원 =0) |
| 강원도 | 9                               | 10                               | 6                               | 10                              | 13                               | 6                               |
| 춘천시 | 0                               | 0                                | 0                               | 0                               | 1                                | 0                               |
| 원주시 | 0                               | 0                                | 0                               | 0                               | 0                                | 0                               |
| 강릉시 | 1                               | 1                                | 1                               | 1                               | 1                                | 1                               |
| 동해시 | 1                               | 1                                | 1                               | 1                               | 1                                | 1                               |
| 태백시 | 0                               | 0                                | 1                               | 0                               | 1                                | 1                               |
| 속초시 | 0                               | 0                                | 0                               | 0                               | 0                                | 0                               |
| 삼척시 | 1                               | 1                                | 1                               | 1                               | 1                                | 1                               |
| 홍천군 | 1                               | 1                                | 0                               | 1                               | 1                                | 0                               |
| 횡성군 | 1                               | 1                                | 0                               | 1                               | 1                                | 0                               |
| 영월군 | 0                               | 0                                | 0                               | 1                               | 1                                | 0                               |
| 평창군 | 1                               | 1                                | 1                               | 1                               | 1                                | 1                               |
| 정선군 | 0                               | 1                                | 0                               | 0                               | 1                                | 0                               |
| 철원군 | 1                               | 1                                | 0                               | 1                               | 1                                | 0                               |
| 화천군 | 1                               | 1                                | 0                               | 1                               | 1                                | 0                               |
| 양구군 | 0                               | 0                                | 0                               | 0                               | 0                                | 0                               |
| 인제군 | 1                               | 1                                | 1                               | 1                               | 1                                | 1                               |
| 고성군 | 0                               | 0                                | 0                               | 0                               | 0                                | 0                               |
| 양양군 | 0                               | 0                                | 0                               | 0                               | 0                                | 0                               |

자료: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2. 정주생활기반

### ■ 주거환경개선사업

-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환경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함.
- 2011년 시범사업 당시 강원도의 슬레이트 주택은 49,908동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개량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10,342동을 처리하였고 잔여 물량이 39,566동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은 홍천군으로 1,032동이 철거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태백시가 855동, 춘천시가 826동, 영월군이 747동, 고성군이 719동 순임.
- 2011년을 슬레이트 주택 수를 기준으로 2016년 현재 강원도 내 슬레이트 주택 교체율은 20.72%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구군(93.53%)이며, 다음으로 화천군(47.99%), 횡성군(46.04%), 홍천군(46.04%), 춘천시(42.95%) 순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으로 해당 지역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각각 11.51%, 11.78%, 11.68%, 11.79%임.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 구분  | 슬레이트<br>주택수 | 2015  |                   |            | 2016   |                   |            |
|-----|-------------|-------|-------------------|------------|--------|-------------------|------------|
|     |             | 처리수   | 잔여<br>슬레이트<br>주택수 | 달성률<br>(%) | 처리수    | 잔여<br>슬레이트<br>주택수 | 달성률<br>(%) |
| 강원도 | 49,908      | 8,632 | 41,276            | 17.30      | 10,342 | 39,566            | 20.72      |
| 춘천시 | 1,923       | 712   | 1,211             | 37.03      | 826    | 1,097             | 42.95      |
| 원주시 | 4,446       | 432   | 4,014             | 9.72       | 544    | 3,902             | 12.24      |
| 강릉시 | 5,837       | 548   | 5,289             | 9.39       | 672    | 5,165             | 11.51      |
| 동해시 | 3,302       | 343   | 2,959             | 10.39      | 389    | 2,913             | 11.78      |
| 태백시 | 2,655       | 672   | 1,983             | 25.31      | 855    | 1,800             | 32.20      |
| 속초시 | 1,862       | 258   | 1,604             | 13.86      | 306    | 1,556             | 16.43      |
| 삼척시 | 5,076       | 487   | 4,589             | 9.59       | 593    | 4,483             | 11.68      |
| 홍천군 | 2,242       | 877   | 1,365             | 39.12      | 1,032  | 1,210             | 46.03      |
| 횡성군 | 1,314       | 488   | 826               | 37.14      | 605    | 709               | 46.04      |
| 영월군 | 3,857       | 642   | 3,215             | 16.65      | 747    | 3,110             | 19.37      |
| 평창군 | 2,892       | 393   | 2,499             | 13.59      | 463    | 2,429             | 16.01      |
| 정선군 | 3,775       | 366   | 3,409             | 9.70       | 445    | 3,330             | 11.79      |
| 철원군 | 1,474       | 371   | 1,103             | 25.17      | 441    | 1,033             | 29.92      |
| 화천군 | 969         | 401   | 568               | 41.38      | 465    | 504               | 47.99      |
| 양구군 | 479         | 378   | 101               | 78.91      | 448    | 31                | 93.53      |
| 인제군 | 2,547       | 379   | 2,168             | 14.88      | 447    | 2,100             | 17.55      |
| 고성군 | 3,694       | 585   | 3,109             | 15.84      | 719    | 2,975             | 19.46      |
| 양양군 | 1,564       | 300   | 1,264             | 19.18      | 345    | 1,219             | 22.06      |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3. 경제활동·일자리

#### ■ 농촌경제 활성화(기존 '6차 산업화 활성화'에서 변경)

- 기존 지표에서 전년도의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비 현재 년도의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비율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새농어촌우수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해당 마을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르면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의 증가 속도를 초월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 새농어촌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모두 지정과 지정탈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율의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새농어촌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의 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지표로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지표는 새농어촌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합계의 증가율로 산정함.
  - 농촌경제 활성화 증가율의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음.
 
$$\text{증가율} = \frac{\text{현재연도 해당마을 수} - \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text{전년도 해당마을 수}} \times 100$$
- 강원도는 자체 농촌개발사업으로 1999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2016년까지 선정된 강원도의 새농어촌우수마을은 총 355개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2개 마을임. 또한 6차 산업화인증사업자 수는 116개임.

- 2016년 현재 새농어촌우수마을이 가장 많은 지역은 횡성군으로 31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다음으로 양양군이 26개 마을,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이 25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 2016년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제군으로 20마을이 지정되었음. 다음으로 평창군 19개 마을, 춘천시 17개 마을, 횡성군 15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 2016년 강원도의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는 116개소로 횡성군이 15개소로 가장 많고,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이 각 11개소씩 선정되었음.
- 강원도는 2015년 대비 새농어촌우수마을 20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17개소가 증가하였음.
- 강원도는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8.93%임.
  - 농촌경제활성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백시(42.86%)이며 다음으로 춘천시(29.41%), 횡성군(15.09%), 홍천군(12.50%), 인제군(12.50%), 영월군(10.81%) 순임.
- 2016년 현재 강릉시는 2015년 대비 농촌경제활성화 지표가 6.67% 감소하였으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임.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 활성화

| 구분  | 2015 |                      |                  |                        | 2016 |                      |                  |                        | 증가율(%) |
|-----|------|----------------------|------------------|------------------------|------|----------------------|------------------|------------------------|--------|
|     | 계    | 새<br>농어촌<br>우수<br>마을 | 농촌체<br>험휴양<br>마을 | 6차산<br>업화<br>인증사<br>업자 | 계    | 새<br>농어촌<br>우수<br>마을 | 농촌체<br>험휴양<br>마을 | 6차산<br>업화<br>인증사<br>업자 |        |
| 강원도 | 604  | 335                  | 170              | 99                     | 653  | 355                  | 182              | 116                    | 8.93   |
| 춘천시 | 34   | 17                   | 10               | 7                      | 44   | 19                   | 17               | 8                      | 29.41  |
| 원주시 | 38   | 18                   | 10               | 10                     | 40   | 19                   | 10               | 11                     | 2.56   |
| 강릉시 | 45   | 24                   | 16               | 5                      | 42   | 25                   | 12               | 5                      | -6.67  |
| 동해시 | 12   | 10                   | 2                | 0                      | 12   | 10                   | 2                | 0                      | 0.00   |
| 태백시 | 7    | 5                    | 1                | 1                      | 10   | 6                    | 2                | 2                      | 42.86  |
| 속초시 | 12   | 7                    | 3                | 2                      | 12   | 7                    | 3                | 2                      | 0.00   |
| 삼척시 | 36   | 24                   | 10               | 2                      | 38   | 25                   | 10               | 3                      | 2.70   |
| 홍천군 | 40   | 22                   | 10               | 8                      | 45   | 25                   | 12               | 8                      | 12.50  |
| 횡성군 | 53   | 29                   | 14               | 10                     | 61   | 31                   | 15               | 15                     | 15.09  |
| 영월군 | 37   | 20                   | 7                | 10                     | 41   | 21                   | 9                | 11                     | 10.81  |
| 평창군 | 44   | 17                   | 18               | 9                      | 48   | 18                   | 19               | 11                     | 6.67   |
| 정선군 | 34   | 20                   | 10               | 4                      | 36   | 21                   | 10               | 5                      | 5.88   |
| 철원군 | 32   | 19                   | 11               | 2                      | 34   | 20                   | 11               | 3                      | 6.25   |
| 화천군 | 34   | 21                   | 8                | 5                      | 35   | 22                   | 7                | 6                      | 2.94   |
| 양구군 | 33   | 17                   | 8                | 8                      | 33   | 17                   | 8                | 8                      | 0.00   |
| 인제군 | 48   | 23                   | 17               | 8                      | 54   | 25                   | 20               | 9                      | 12.50  |
| 고성군 | 22   | 18                   | 2                | 2                      | 23   | 18                   | 2                | 3                      | 4.55   |
| 양양군 | 43   | 24                   | 13               | 6                      | 45   | 26                   | 13               | 6                      | 4.65   |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4. 문화·여가

### ■ 문화격차 해소

- 도농복합시 및 시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 농어촌 지역은 개봉관이 없어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시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음.
  - 이와 같은 번거로움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 내에는 총 11개 시·군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및 작은 영화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시지역과 도농복합시를 제외하고는 5개의 농어촌 지역에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음.
  - 일부지역에서는 인근 시지역의 대형 영화관과의 계약을 통해 문화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주말에 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나 영화 상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2015년 현재 작은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으로 화천군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2016년 삼척시, 평창군, 철원군 3개 지역에 추가로 영화관이 설치되었음.
- 횡성군은 2016년 7월 18일 작은 영화관 기공식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건립 중임.
- 정선군은 작은 영화관 아리아리시네마가 2015년말 개관 예정임.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 영화관 설치<br>운영시·군(설치=1, 미설치 0) | 영화관 설치<br>운영시·군(설치=1, 미설치 0) |
| 강원도 | 8                            | 11                           |
| 춘천시 | 1                            | 1                            |
| 원주시 | 1                            | 1                            |
| 강릉시 | 1                            | 1                            |
| 동해시 | 1                            | 1                            |
| 태백시 | 0                            | 0                            |
| 속초시 | 1                            | 1                            |
| 삼척시 | 0                            | 1                            |
| 홍천군 | 1                            | 1                            |
| 횡성군 | 0                            | 0                            |
| 영월군 | 1                            | 1                            |
| 평창군 | 0                            | 1                            |
| 정선군 | 0                            | 0                            |
| 철원군 | 0                            | 1                            |
| 화천군 | 1                            | 1                            |
| 양구군 | 0                            | 0                            |
| 인제군 | 0                            | 0                            |
| 고성군 | 0                            | 0                            |
| 양양군 | 0                            | 0                            |



표 2-7.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증기 목표치

| 부문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목표치                            |                                |                                |                                 |
|------------------|--------------------------------|--|--------------------------------|--------------------------------|--------------------------------|---------------------------------|
|                  |                                |  | '16                            | '17                            | '18                            | '19                             |
| 교육<br>여건         | 소규모<br>농어촌<br>학교<br>활성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br>교육과정 운영  | 80%                            | 81%                            | 82%                            | 83%                             |
|                  |                                | 강원<br>에듀<br>머스<br>운영   | 시·군별 도입                        | 100%<br>(달성)                   | 100%<br>(달성)                   | 100%<br>(달성)                    |
|                  | 전체학교 대비<br>에듀머스 지원<br>학교<br>비율 |  | 48%                            | 50%                            | 52%                            | 54%                             |
|                  | 평생교육<br>여건<br>기반조성             | 시·군별 평생교육도시<br>지정, 평생교육사 배<br>치, 행복학습센터 설치   | -도시: 10<br>-교육사 : 10<br>-센터: 8 | -도시: 10<br>-교육사 : 11<br>-센터: 8 | -도시: 10<br>-교육사 : 11<br>-센터: 9 | -도시: 11<br>-교육사 : 12<br>-센터: 10 |
| 정주<br>생활<br>기반   | 주거환경<br>개선                     | 농어촌주택의 석면 슬<br>레이트 소재 지붕을<br>개량 <sup>4</sup>                                       | 20%                            | 22%                            | 25%                            | 28%                             |
| 경제<br>활동<br>·일자리 | 농촌경제<br>활성화                    | 기업형 새농촌, 농촌체험<br>휴양마을, 6차산업화<br>인증사업자 확대를 통<br>해 농어촌 일자리 확<br>대 및 지역경제 활성<br>화를 도모 | 전년대비<br>8%<br>증가               | 전년대비<br>8%<br>증가               | 전년대비<br>8%<br>증가               | 전년대비<br>8%<br>증가                |
| 문화<br>·여가        | 문화격차<br>해소                     | 시·군별 영화관 설치·<br>운영   | 9개소                            | 10개소                           | 11개소                           | 12개소                            |

<sup>4</sup> 개량 대상 석면 슬레이트 총량은 2013년 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수치임

## 제 3 장

###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 수범사례: 강원에듀버스 사례

#### 1. 강원에듀버스 도입 및 운영

- 강원에듀버스는 강원도 내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 강원도는 면적이 넓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등의 통학여건이 열악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외활동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지역별 통학여건의 격차 역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원에듀버스를 도입하였음.
  - 강원에듀버스의 목표는 학생·학부모의 통학 부담 해소,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맞춤형 통학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임.
- 강원에듀버스는 직영차량과 지역 교통인프라를 모두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직영차량만으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 구체적으로 직영차량은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통학여건 개선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강원에듀버스는 운영과 관련하여 통학차량 운영방식의 개편, 통학지원 행정의 혁신, 통학 및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 작은학교 통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통학버스의 관리주체를 일선 학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면서 강원에듀버스의 조기 확대가 가능해짐.
- 강원에듀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학여건 개선협의회 운영, 통학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지역사회 교통인프라 최대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원에듀버스는 직영차량, 통학직통버스, 통학택시, 통학전세버스, 군부대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음.

## 2. 강원에듀버스 핵심 운영성과

- 17개<sup>5</sup> 전 지역 통학 및 교외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

---

<sup>5</sup> 강원도는 18개 시·군이나 교육지원청은 속초시와 양양군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17개 지역으로 표현하였음.

- 강원에듀버스 노선 확대
  - (2015년) 256개교 323개 노선 공동 운영
  - (2016년) 327개교 420개 노선 공동 운영
  - 71개교 97개 노선 증가
  
- 강원에듀버스 등·하교 지원 확대
  - (2015년) 등교 7,059명, 하교 5,620명 등 총 12,679명 지원
  - (2016년) 등교 8,317명, 하교 6,372명 등 총 14,689명 지원
  - 등·하교 지원 인원 2,010명 증가
  
- 강원에듀버스 교외 교육활동 지원 확대
  - (2015년) 교외활동 6,539회 지원
  - (2016년) 교외활동 10,247회 지원
  - 교외 교육활동 지원 3,708회 증가
  
- 통학차량 지원 행정의 개선
  - 강원도 내 직영 통학차량 295대 관리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
  - 통학버스에 대한 학교의 배타적 소유권을 배제하고 차량관리(재배치, 교체, 구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
  - 이에 따라 운전직 공무원 정원조정 및 재배치,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 중심 학교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변경
  
- 강원도 내 직영 통학차량 295대 중 280대(강릉오성학교(특) 차량 5대 포함)의 관리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학교장 공동명의)으로 변경하여 배타적 소유권을 배제하고 통학차량 운영을 지역 전체 학교 공동 활용 체제로 전환
  
- 강원도 내 특수학교 차량 15대(춘천계성학교 1대, 춘천동원학교 5대, 원주청원학교 5대, 속초청해학교 4대)의 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유지하여 특수학생 통학지원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강원에듀버스 운영에서 제외

- 지역 공동 활용을 위해 중복 노선을 제거하고 노후차량 교체 시 차형변경 (소형→중형, 중형→대형)과 지역별 보유차량 수요에 맞게 재배치 등을 통하여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요를 충족

### 3. 강원에듀버스 문제점

- 에듀버스가 노선 상 여러 곳을 경유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통학거리나 통학 시간이 증가한 지역이 존재
-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통학대상이 되어 탑승인원의 한계도 존재
- 이에 따라 몇몇 지역은 1교 1차를 기준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향후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강원에듀버스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2016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 차 례

---

### 제1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배경 ..... 13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현황 ..... 132
3. 3차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평가결과 ..... 135
4. 3차 농어촌서비스 기준 및 평가기준 ..... 140

### 제2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151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158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71
4.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 175

### 제3장 정책제언

1. 정책적 제언 ..... 187
2.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안) ..... 188

### 제4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우수사례

1. 안전한 농촌 만들기 ..... 192
2. 옥천 안남면 무료 마을순환버스 ..... 199
3.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 204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                     | 140 |
|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                | 142 |
|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           | 144 |
| 표 1-4. 충청북도 선택 항목 최종 지표 .....               | 146 |
| 표 1-5.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 | 149 |
| 표 1-6.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 | 150 |

### 제2장

|                                    |     |
|------------------------------------|-----|
| 표 2-1. 최종 지표 선정 .....              | 154 |
| 표 2-2.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서비스기준 .....    | 157 |
| 표 2-3.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   | 160 |
| 표 2-4.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 마을 현황 .....    | 162 |
| 표 2-5.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     | 163 |
| 표 2-6.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비교 .....  | 163 |
| 표 2-7.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          | 165 |
| 표 2-8. 시·군별 노인 자살률 현황 .....        | 167 |
| 표 2-9. 시·군별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락망 .....    | 168 |
| 표 2-10.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 | 170 |
| 표 2-11. 주거환경 정비 현황 .....           | 172 |
| 표 2-1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       | 172 |
| 표 2-13. 마을기업 현황 .....              | 173 |
| 표 2-14. 노인 자살비율 현황 .....           | 174 |
| 표 2-15. HD급 CCTV 현황 .....          | 174 |

|  |     |
|--|-----|
| 표 2-16.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            | 175 |
| 표 2-17.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        | 177 |
| 표 2-18. 주거환경 비율 .....                      | 178 |
| 표 2-19. 시·군별 마을회관~700m이상 버스승강장 마을 현황 ..... | 179 |
| 표 2-20.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                | 180 |
| 표 2-21.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                 | 181 |
| 표 2-22. 마을기업 비율 .....                      | 182 |
| 표 2-23.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                | 183 |
| 표 2-24. 노인자살률 비율 .....                     | 184 |
| 표 2-25. 시·군별 CCTV 현황 .....                 | 185 |
| 표 2-26. HD급 CCTV 비율 .....                  | 186 |

#### 제4장

|  |     |
|--|-----|
| 표 4-1. 방범용 CCTV 성능 비교 .....                    | 193 |
| 표 4-2. 2016 추진계획 .....                         | 193 |
| 표 4-3. 도내 자연마을 및 CCTV 설치현황('16. 10월말 기준) ..... | 194 |
| 표 4-4. 자연마을별 CCTV 현황 및 계획 .....                | 195 |
| 표 4-5. 도내 경찰서별(연도별) 농작물 도난 발생 및 검거수 .....      | 196 |
| 표 4-6. 시·군별 방범용 CCTV 관리현황 .....                | 198 |
| 표 4-7.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 204 |



# 제 1 장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배경

- 최근 정부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량의 감소로 인해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하는 기초생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됨에 따라 도농간 격차와 삶의 질 서비스 격차가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음.
  -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의 변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획일적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어 왔음.
  -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체감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정책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음.

-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제시
- 서비스 공급자인 공공부문의 정책달성 목표 설정 및 성과판단의 준거 마련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만한 정책 목표 기준 제시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현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각 부처의 장관과 지자체장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책 추진의 토대로 활용하고 기준이행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3농 혁신 정책’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내 119 소방서가 없는 2개 군에 소방서를 설치(단양군은 부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설치가 늦어지고 있음)하도록 도정정책 방향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위원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과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자문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
  
-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8개 부문 32개 항목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후 시행과정에서 현실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음.
  
- 최근 농어촌 지역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안전’ 부문 및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등 항목을 ‘안전’ 부문으로 이관 및 항목명칭을 변경하였음.

- 교육부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과 보건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은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안전부문으로 이관된 ‘도난방지’ 항목은 ‘방법설비’로 항목명칭 및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2013년 9월 9일자로 개정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3년 9월 10일자로 고시

-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음.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제2기 삶의 질 사업예산은 총 34조 5천 4백억 원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목표달성(기준이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사업과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사업과 예산이 삶의 질 향상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32개 항목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사업예산 규모는 2013년 3조 4천 2백억 원 정도로, 2012년도 대비 11.6% 증가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18개 부·처·청이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고 있음.

- 2018년까지 3년 동안 기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2016년에는 2015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가운데 61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2015년 시행계획과 2015년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실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 수는 총 105개였음.
  - 그 가운데 2015년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 수는 최소 22개이며, 달성한 것으로 명확하게 보고된 과제 수는 52개였음.
- 한편, 평가위원단은 2015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 과제 중 61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과제와 개선 필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3. 3차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평가결과

- 평가를 실시한 8개 정책군별 61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sup>6</sup>.

#### 1)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 안전망 구축

- 첫째, 전국 단위 정책 사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수혜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가령,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과제는 농촌 지역의 사업체 업종 및 종사자의 연령 및 국적 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기초생활 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 역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sup>6</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연구정책센터,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 농어촌삶의질 정책컨퍼런스, 2016. 12 발표자료 요약 인용

- 둘째, 전국의 농가 중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농가의 비중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수혜 조건을 개선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가령, ‘농업인 노후 안정 농지연금 지원 사업’, ‘경영 이양 고령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 여성 및 농어업 후계자의 가입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함.

## 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 지역의 교육청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의견이 제출되었음.
  - 예를 들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낙후한 농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낙후한 지역 일수록 학생 수가 적거나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임.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 의견도 있었음. ‘농어촌 학교 간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되었음.

## 3)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정책군에 속한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예산 확보 수준, 성과목표 달성 측면은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음. 그러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농어촌 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정비 사업’은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연계 추진의 전제 조건은 사업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부처 간, 사업 주체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정책군에 속한 사업을 평가할 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사업별 성과지표는 대부분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등의 단편적인 지표임. 사업체의 순익, 소득, 부가가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이 같은 정책 사업들이 농어촌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 규제와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예를 들어, ‘농어업인의 제조가공 활동 규제 완화’, ‘지역특화발전 지구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과 같은 사업이 해당됨.

#### 5)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었음. 다만, 부분적으로 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 문화 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농어촌 작은영화관 조성’ 등의 시설 건립 사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계획 집행 성과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
  - 다만, 수요 조사 및 농촌 주민의 시설 활용도 조사와 같은 작업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음.
- 정책군에 속하는 사업 중 일부는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음. 가령 ‘지역문화지수’ 사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동일한 지수로 비교할 경우 농촌의 문화 여가 여건이 열위에 있다는 결과만 드러낼 뿐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사업’의 경우 그 실행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비해 예산 규모는 작아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평가

### 7)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정책군에 속한 사업들이 내용상 관련이 있고, 성과 측면에서 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들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
  - 가령,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유산 지정 관리’,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연계 추진할 필요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 ‘농업유산 지정 관리 사업’은 점검평가 시점에서 사업진도율이 5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남.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확대 사업’의 경우 경관보전협약 체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8)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평가 의견
  - 예컨대 ‘수리시설 안전 관리’, ‘소하천 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사업이 추진 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 예산 감소, 농특회계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임. 안전 문제에 관한 정책사업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예산 지원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평가

### 9) 평가위원단의 의견종합 및 정책 제안

- 첫째,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신규 사업 추진과 더

불어 기존사업 관리 및 운영비용을 확보해 그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

- 가령 ‘교육농장 육성 사업’은 사업을 처음 도입했던 때와 비교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원인. 그럼에도 일몰 예정이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마찬가지로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수리시설 안전관리’, ‘소하천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사업도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 존재

- 둘째, 정책성고가 우수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하며, ‘6차 산업화 모델정책 사업’의 경우,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영체들의 매출 규모가 평균 23.6% 증가했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비율이 86%에 이르는 등 성과를 보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을 농촌 지자체가 널리 확산할 수 있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 성과가 우수한 중앙정부 부처 사업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 시야에서 볼 때 지자체 예산만으로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
  - 예를 들어,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간(2015년) 18개소 내외의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거나 동일 시·군내 사업량을 증대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
- 넷째, 정책사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려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 완도군청은 국가농업유산, 경관보전직불제, 슬로시티 지정 등 여러 사업을 연계 추진한 사례로 청산도에 대한 대중적 인지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냄.

-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타의 농어촌 시 군으로도 확대할 필요
- 제도적으로는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의 관련 조례, 사업 시행 매뉴얼, 사업 주체 간 협약 및 협정, 경관관리 체계 등의 요소를 여타 지자체에도 알리는 노력 필요

#### 4. 3차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평가기준

-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을 의미함
  - 7개 부문 16개의 국가관리의 핵심 항목 <표 1-1>과 지자체 자율관리의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방법은 <표 1-2>와 같음.
  - 지자체 자율관리의 선택 항목은 7대 부문 24개 항목 <표 1-3>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평가항목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Base line(%) | '19년 목표(%) |
|---------|----------|--|--------------|------------|
| 1. 보건복지 | 1) 진료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 76.8         | 80         |
|         | 2)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1.8         | 97         |
|         | 3)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4.1         | 80         |
|         | 4)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71.0         | 80         |

| 부문            | 핵심 항목              | 국가최소기준   | Base line(%) | '19년 목표(%) |
|---------------|--------------------|--|--------------|------------|
| 2. 교육         | 5)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98.1         | 100        |
|               | 6)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1.1         | 40         |
| 3. 정주생활 기반    | 7)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88.3         | 95         |
|               | 8)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62.9         | 82         |
|               | 9)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50.8         | 70         |
|               | 10)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90.4         | 100        |
|               | 11)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 77.3         | 90         |
| 4. 경제활동·일자리   |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100        |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92.0         | 100        |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9.4         | 85         |
| 7. 안전 (생활 안전) | 15)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32.7         | 60         |
|               | 16)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100.0        | 100        |
|               | 17)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45.4         | 55         |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 부문      | 핵심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1. 보건복지 | 1) 진료서비스  |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i) 전국사업체조사 (읍·면단위 제공)<br>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 공식 통계          |
|         |   |  |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 행정 조사          |
|         | 2) 응급서비스  |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소방방재청: 각 건별 주소 (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 협조 자료          |
|         | 3)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이용현황 포함)<br>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 공식 통계<br>행정 조사 |
| 4) 영유아  |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 i) 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 (주민등록인구 데이터)<br>ii)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 시설 현황                | 공식 통계   |                |
| 2. 교육   | 5) 초·중학교  |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 협조 자료          |
|         |   |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 협조 자료          |
|         | 6) 평생교육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 협조 자료          |



| 부문           | 핵심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3. 정주 생활 기반  | 7) 주택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통계청 협조자료                                    | 협조자료 |
|              | 8) 상수도                        |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 환경부: 상수도현황                                  | 공식통계 |
|              | 9) 난방                         |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 현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 협조자료 |
|              |                               |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 산업통상자원부(한국LPG산업협회)                          | 협조자료 |
|              | 10) 대중교통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공식통계 |
|              |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 행정조사 |
| 11) 광대역 통합망  |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 방송통신위원회: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 협조자료  |      |
| 4. 경제 활동·일자리 |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시·군별 관련 서비스센터 운영 및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지자체 조사                                      | 행정조사 |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협조자료 |
|              |                               |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br>*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협조자료 |
|              |                               |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br>*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 협조자료 |

| 부문                  | 핵심 항목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 6.<br>환경·경관         | 14) 하수도   |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시·군별 인구 수) × 100     |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 공식 통계 |
| 7.<br>안전<br>(생활 안전) | 15) 방법설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경찰청: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 협조 자료 |
|                     | 16) 경찰 출동 |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경찰청: 시·군별 CODE 1 건별 출동소요시간    | 협조 자료 |
|                     | 17) 소방 출동 |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소방방재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 협조 자료 |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 부문          | 선택 항목(예시)                    | 세부 내용(예시)   |
|-------------|------------------------------|---|
| 1.<br>보건 복지 | 1) 순회방문                      |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의 80% 이상의 마을에서 월 1회 이상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변화를 돕는 전문팀의 순회방문을 받을 수 있다. |
|             | 2) 알코올중독 예방 및 상담             | 모든 시·군에서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             | 3) 청소년                       | 모든 시·군에 학대 및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및 그룹홈을 1개소 이상씩 확충 한다.                          |
|             |                              | 모든 시·군에 학교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
|             | 4) 사회복지 서비스                  | 모든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을 2명 이상 배치한다.   |
|             | 5) 자살예방                      | 노인 자살시도 발생시 1년 동안 주1회 사례관리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
| 6) 정신건강     | 모든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1개소 설치·운영한다. |   |
| 2.<br>교육    | 7)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8) 방과후학교                     | 농어촌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             |                              | 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

| 부문          | 선택 항목(예시)                  | 세부 내용(예시)  |
|-------------|----------------------------|--|
|             | 9) 교사임용                    | 학교·지역단위 임용제를 통한 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
|             | 10) 교사배치                   |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행정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
|             | 11) 평생교육                   | (농어촌 문해조사를 실시하고) 문맹자에게 면단위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 3. 정주 생활기반  | 12) 석면슬레이트                 |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전면 개량한다.<br>*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
|             | 13) 공동목욕탕                  | 읍·면별로 공동목욕탕을 운영한다.   |
|             | 14) 도서지역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 5. 경제활동·일자리 | 15)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 읍·면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 및 매개하는 일자리를 1인 이상 배치·운영한다.                                       |
|             | 16)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지원 프로그램   |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5가지 이상 운영한다.  |
|             | 17)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구인구직 서비스 | 시·군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             | 18) 농산어촌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기업인 포럼 | 시·군 내외의 기업인들끼리 정보 제공 및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
| 4. 문화·여가    | 19) 문화향유                   | 전문 문화시설(예: 문예회관, 미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             | 20) 생활체육                   |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 21) 영화관람                   | 모든 시·군에서 언제나 최신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
|             | 22) 문화여가인력                 | 모든 읍·면에 문화여가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주민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6. 환경·경관    | 23) 생활쓰레기 수거               | 모든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다.  |
| 7. 안전(생활안전) | 24) 경찰순찰                   | 읍·면별로 파출소를 설치·운영하며, 범죄취약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

표 1-4. 충청북도 선택 항목 최종 지표

| 부문            | 선택 항목             | 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1. 정주 생활 기반   | 1) 석면 슬레이트        |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매년 5% 이상 감소시킨다.                                       | (석면슬레이트 개선 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            | '03년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 및 각 지자체 협조    |
|               |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                                   | 시내버스수혜 마을수 / 시내버스미운행마을총수                        | 충청북도청 협조                       |
|               | 3) 마을리더 양성        | 시·군 단위에서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마을리더(간사)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행정리에서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코스를 연 1코스(최소 3주) 이상 실시한다.                     | (10인 이상 마을 중 지역리더 프로그램 실행 마을 / 10인 이상 마을) × 100 | 각 지자체 협조                       |
|               | 4) 커뮤니티 조직        | 시·군 단위에서 농촌서비스 및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양성한다.               |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단체를 읍·면 당 2개소 이상 양성한다.                        | NGO현황 조사  | 각 지자체 협조                       |
|               | 5) 난방설비           | 가족규모 축소에 따른 난방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시킨다.                   | 겨울철 농촌주택 1인당 난방비를 00원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 1인당 12~2월 난방비조사                                 | 에너지공급 기관 통계, 지역 주유소 통계(난방용 등유) |
| 2. 경제 활동/ 일자리 | 1) 도농교류 프로그램      | 시·군 단위에서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촌체험, 로컬푸드 판매 등이 이루어진다. | 6차산업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한다.                               | 6차산업 지원센터                                       | 충북도청 협조                        |
|               | 2) 법률 서비스         | 경제활동 및 근로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불이익을 감소시킨다.                   |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서비스센터를 충청북도종합계획상 4개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한다. | 법률서비스센터 설치 여부 조사                                | 각 지자체 협조                       |

| 부문            | 선택 항목     | 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2. 경제 활동/ 일자리 | 3) 마을기업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 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 당 00개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 | (각 유형별 단체 수 / 총 읍·면수) × 100                  | 각 지자체 협조           |
|               | 4) 직업교육   | 지역에 알맞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지역 특산물의 생산, 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  | 각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 협조 |
|               | 5) 농촌 일자리 | 비 농번기 농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운영한다.              | 비 농번기에 대체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 -  | 각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 협조 |
| 3. 보건 복지      | 1) 자살률    | 자살률을 감소시킨다.                                 |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 (자살예방센터 설치 보건소 수 / 총 보건소 수) × 100            | 보건소 협조             |
|               | 2) 노인복지   | 노인종합서비스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문화를 제공한다          | 각 마을 경로당에 노인도우미를 1명 이상 배치한다.                                  | (노인도우미 배치 경로당 수 / 총 경로당 수) × 100             | 각 지자체 협조           |
|               | 3) 아동     | 방과 후 아동방치율 해소를 위 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한다.   | 읍면당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센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 (돌봄서비스 센터 설치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각 지자체 협조           |
|               | 4) 영유아    | 생활권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가능하다.                   | 읍·면당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센터 설치 읍·면 / 총 읍·면) × 100         | 각 지자체 협조           |
|               | 5) 문화 다양성 | 지역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갈등을 완화시킨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2회 이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 문화다양성 교육 현황 조사                               | 각 지자체 협조           |
|               | 6) 건강     | 알콜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알콜중독환자 수를 감소시킨다.            | 알콜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마을마다(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알콜중독예방 프로그램 실시 마을 수 (리) / 총 마을 수 (리)) × 100 | 보건소 협조             |
|               | 7) 건강     | 금연클리닉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여 금연율을 높인다.               | 금연성공률이 50% 이상 달성  | (금연성공사례 수 / 총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00             | 보건소 협조             |

| 부문       | 선택 항목         | 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점검방법   | 점검수단        |
|----------|---------------|--|--|--|-------------|
| 4.<br>안전 | 1) 방법설비       | CCTV 설치의<br>실효성을 높이기 위해<br>기존 설치된 방법용<br>CCTV를 HD급<br>이상으로 개선한다. | 기 설치된 CCTV<br>화질을 120만 화소<br>이상으로 개선한다.                                    | (HD급 CCTV<br>설치 개수 / 총<br>CCTV 설치 개수)<br>× 100 | 각 지자체<br>협조 |
|          | 2) 화재예방       | 농촌주택에<br>초기화재진압이<br>가능한 소화기를<br>비치한다.                            | 농촌주택<br>소화기보급률 00%<br>이상으로 개선한다.   | 농촌주택 소화기<br>보급률 조사                             | 소방본부<br>협조  |
|          | 3) 치안<br>인프라  | 농어촌 지구대·파출소<br>경찰공무원 1인당<br>담당인구 및<br>관할면적을 적정<br>수준으로 유지한다.     | 농어촌 경찰공무원<br>1인당 담당인구를<br>00이하로 낮추거나<br>관할면적을 00m <sup>2</sup><br>이하로 낮춘다. | 경찰공무원 1인당<br>담당 인구/면적<br>조사                    | 통계자료        |
|          | 4) 응급<br>상황관리 | 응급 및 안전 교육을<br>실시하여 응급상황에<br>대비한다.                               | 응급 안전<br>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br>마을회관에서 연 1회<br>이상 실시한다.                           | 응급 안전<br>교육프로그램 실시<br>여부 조사                    | 소방본부<br>협조  |
|          | 5)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br>사용가능 한<br>구급장비를<br>적재적소에<br>구비한다.                   | 1개 리에<br>1세트(00,00,00)<br>이상의 응급환자에<br>대처할 수 있는<br>구급장비를 배치한다.             | 자동제세동기를<br>포함한 구급장비<br>구비 여부 조사                | 소방본부<br>협조  |

표 1-5.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 구분      | 선택 항목                                  | 총주  | 제천     | 청주     | 보은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증평     |       |
|---------|--|---|--------|--------|--------|--------|--------|--------|--------|--------|-------|--------|-------|
| 보건복지    | 진료 서비스                                 |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br>(1=가능, 0=불가)            | 1.0    | 1.0    | 1.0    | 1.0    | 1.0    | 1.0    | 0.0    | 1.0    | 0.0   | 1.0    |       |
|         |  | 물리치료실                                       | 67     | 34     | 104    | 12     | 30     | 16     | 7      | 2      | 16    | 6      |       |
|         |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br>(1=운영, 0=미운영)            | 0      | 0      | 0      | 0      | 0      | 1      | 1      | 1      | 0     | 1      |       |
|         |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 사군<br>(운영 - 1, 비운영-0)        | 1      | 1      | 1      | 0      | 0      | 1      | 1      | 0      | 0     | 0      |       |
|         | 응급 서비스                                 | 현장도착시간30분이내건수비율(%), 97%이상                   |        |        |        |        |        |        |        |        |       |        |       |
|         | 노인                                     | 도움이필요한노인중재가노인복지서비스수혜자비율(%), 80%이상           | 68.69  | 81.20  | 81.27  | 59.30  | 62.12  | 78.47  | 73.19  | 75.22  | 77.45 | 73.92  | 66.82 |
| 영유아     | 영유아3명이상읍면수대비보육시설1개소이상있는읍면수비율(%), 80%이상 | 76.92                                       | 75.00  | 100.00 | 27.27  | 44.44  | 63.64  | 100.00 | 54.55  | 100.00 | 62.50 | 100.00 |       |
| 교육      | 초·중학교                                  | 총읍면수중초중학교운영학교가있는읍면수비율(%), 100%이상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90.91  | 100.00 | 100.00 | 87.50 | 100.00 |       |
|         |  | 전체초중학교수중통학수단제공하는학교비율(%)                     | 70.00  | 55.56  | 55.56  | 71.43  | 63.16  | 62.50  | 75.00  | 100.00 | 59.38 | 50.00  | 28.57 |
|         | 평생교육                                   | 총읍면수중비형식평생교육시설이있는읍면수비율(%), 40%이상            |        |        |        |        |        |        |        |        |       |        |       |
| 정주생활기반  | 주택                                     | 총가구수중최저주거기준이상가구수비율(%), 95%이상                | 89.86  | 88.64  | 91.03  | 81.23  | 84.26  | 80.31  | 87.16  | 81.34  | 92.07 | 83.91  | 91.98 |
|         | 상수도                                    | 면지역주민등록인구중급수인구비율(%), 82%이상                  | 56.21  | 59.56  | 50.60  | 21.43  | 64.70  | 61.72  | 74.83  | 45.35  | 83.27 | 44.77  | 85.72 |
|         | 난방                                     | 읍부도도시가스보급률(%)<br>70%이상(읍이없는시·군은-표시)         | 0.11   | 27.75  | 100.00 | 0.00   | 36.22  | 20.04  | 40.70  | 26.61  | 46.78 | 13.76  | 69.38 |
|         |  | 읍면부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수 중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   | 0.11   | 27.75  | 100.00 | 0.00   | 0.51   | 0.00   | 0.00   | 0.00   | 0.56  | 0.00   | 0.00  |
|         | 대중교통                                   | 도보15분내정류장, 버스3회이상운행마을비율(%)<br>100%이상        | 93.7   | 87.6   | 97.6   | 83.4   | 89     | 72.2   | 91.4   | 83.2   | 81.1  | 95.3   | 97    |
|         |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 6      | 1      | 3      | 1      | 8      | 2      | 0      | 2      | 1     | 2      | 2     |
|         | 광대역통합망                                 | 광대역통합망구축률(%), 90%이상                         | 83.48  | 87.35  | 93.05  | 80.72  | 80.37  | 82.61  | 82.21  | 72.04  | 88.16 | 85.81  | 87.13 |
| 경제활동일자리 |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등창업및사업체운영을위한지원센터유무(운영-1, 비운영-0) | 1      | 0      | 0      | 0      | 1      | 1      | 0      | 0      | 0     | 1      |       |
|         |  | 시·군내일자리센터등취업상담을위한지원센터유무(운영-1, 비운영-0)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시·군내창업및사업체운영, 취업상담을위한전문인력(전담인력)고용여부         | 5      | 1      | 6      | 2      | 1      | 1      | 5      | 8      | 1     | 1      | 2     |

| 구분       | 선택 항목  | 충주  | 제천                           | 청주    | 보은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증평    |       |
|----------|--|---|------------------------------|-------|--------|-------|-------|-------|-------|-------|-------|-------|-------|
|          | 시·군내창업,사업체운영,취업관련 전문프로그램운영횟수(월간1회이상-1,1회미만-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 시·군별농어촌창업및취업컨설팅,교육관련서비스센터운영및지원프로그램운영여부(운영-1,비운영-0)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문화<br>여가 | 문화<br>시설<br>및<br>프로<br>그램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여부(운영-1, 비운영-0)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 31.67                        | 18.25 | 60.92  | 16.42 | 13.67 | 6.00  | 6.17  | 1.08  | 15.17 | 5.25  | 4.58  |
|          |  |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 89                           | 52    | 175.25 | 24.25 | 37    | 12.75 | 11    | 0     | 40.75 | 13    | 10.75 |
|          |  | 월1회이상문화프로그램및분기별1회이상전문공연프로그램관람여부(가능-1,불가능-0) | 0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환경<br>경관 | 하수도  | 하수도보급률(공공하수처리구역인구보급률(%), 85% 이상)            | 92.21                        | 84.72 | 58.20  | 70.65 | 84.86 | 69.01 | 71.67 | 42.62 | 50.16 | 70.70 | 89.64 |
| 안전       | 방법<br>설비   | 행정리CCTV설치비율(%), 60%이상                       | 30.33                        | 54.78 | 23.08  | 17.41 | 40.91 | 97.83 | 20.63 | 74.73 | 58.54 | 41.06 | 17.31 |
|          |  | 경찰순찰<br>순찰                                  | 행정리1일1회이상경찰순찰실시비율(%), 100%이상 |       |        |       |       |       |       |       |       |       |       |
|          |  | 소방<br>출동                                    | 소방출동5분내도착비율(%), 55%이상        | 59.32 | 51.43  | 53.76 | 45.76 | 65.33 | 61.22 | 67.89 | 46.38 | 64.71 | 44.00 |

표 1-6.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 구분          | 선택 항목    | 충주                                       | 제천    | 청주    | 보은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증평    |       |
|-------------|----------|--|-------|-------|-------|-------|-------|-------|-------|-------|-------|-------|-------|
| 보건복지        | 노인 자살    | 노인 인구의 자살비율을 30%로 감소                     | 37.66 | 42.22 | 34.44 | 57.14 | 50.00 | 57.14 | 33.33 | 78.57 | 35.41 | 64.28 | 36.00 |
| 정주<br>생활기반  | 석면 슬레이트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사업을 매년 총량 대비 5% 이상 감소 추진 | 211   | 312   | 13.72 | 3.69  | 3.29  | 3.39  | 7.07  | 7.11  | 3.45  | 12.08 | 11.66 |
|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혜 마을의 비율 95%로 상승                   | 90.39 | 92.81 | 96.71 | 95.93 | 94.97 | 87.39 | 90.54 | 96.50 | 97.13 | 92.21 | 85.81 |
| 경제활동<br>일자리 | 마을기업     | 각 읍면동 1개에 유형별 단체 2개이상                    | 90.39 | 92.81 | 96.71 | 95.93 | 94.97 | 87.39 | 96.50 | 97.13 | 92.21 | 85.81 | 90.54 |
| 안전          | 방법<br>설비 | HD급 CCTV로 100% 교체                        | 100   | 100   | 27.20 | 100   | 18.78 | 100   | 100   | 19.29 | 14.58 | 100   | 100   |



## 제 2 장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1.1. 지표 선정 목적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선택 항목으로 선정된 4개 분야 5개 지표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택지표를 선정
  -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충청북도의 경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15~’19)”이 수립되었으나, 삶의 질 지표와 관련 부서 및 지자체에서 동 계획을 활용하려는 의지와 실행계획으로서의 집행력이 낮은 상황으로 3차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는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충청북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선택 항목 지표를 선정토록 하며, 선정된 지표의 달성률 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함
  - 농업특화도인 충청북도의 다양한 현실 반영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어 선택 항목 선정시 배제한 상태에서 선정함.
  
- 따라서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충청북도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선택 항목으로 추가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함
  - 또한 충청북도 및 11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삶의 질 서비스기준과 관련성 높은 항목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고자 함.

## 1.2. 선정배경

- 충청북도의 삶의 질을 서비스 기준에 대한 충족도 여부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현황과 도정목표 및 정책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 충북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삶의 질 현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5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반영
  - 충청북도 민선 5기와 6기의 공약 중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 높은 지표를 분석하여 반영여부를 결정

### 1.2.1. 충청북도 삶의 질 현황

-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삶의 질 현황 점검
  -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는 각 9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를 9개 분야, 32개의 점검·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삶의 질 현황을 점검

### 1.2.2.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가. 지표(안) 선정 과정

- 2016년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과정에서 충북연구원 연구팀에서 제안한 선택 항목(안)에 대해 전문가 워크숍과 도 및 11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선택 항목 지표안이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선택 항목 선정지표에 대한 서비스기준 및 점검 방법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선정한 바 있음.

#### 나. 최종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방법

- 최종 선택 항목 지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함.
  - 정리된 지표(안)을 전문가 및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중요도가 높은 지표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를 선정하도록 함(선정 개수의 제한은 없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을 취합하여 중요도를 점수화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함.

#### 다. 최종 선택 항목 지표

- 최종 선택 항목은 각 부문별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지표를 선정

- 선택 항목 선정 원칙으로 5~6개의 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선택 항목 후보에 4개 부문 중에서 한 부문은 두 개의 지표를 선정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16점 동점으로 두 개 지표를 선정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13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마을기업 지표를 선정함.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15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살률 지표를 선정함.
- 안전 부문에서는 16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방범 설비를 선정함.

표 2-1. 최종 지표 선정

| 부문             | 선택 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합계 |
|----------------|------------------------|---|---|---|---|---|---|---|---|---|----|
| 1.정주<br>생활기반   | 1)석면슬레이트               | ● | ● | ● | - | ● | ● | ● | ● | ● | 16 |
|                | 2)대중교통<br>취약지역<br>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16 |
|                | 3)마을리더양성               | - | - | △ | △ | - | ● | △ | △ | △ | 7  |
|                | 4)커뮤니티조직               | - | - | ● | ● | - | ● | △ | △ | △ | 9  |
|                | 5)난방설비                 | - | ● | ● | - | △ | ● | ● | △ | △ | 11 |
| 2.경제활동/일<br>자리 | 1)도농교류프로<br>그램         | - | △ | ● | - | - | △ | △ | △ | ● | 8  |
|                | 2)법률서비스                | - | △ | △ | - | ● | △ | ● | △ | △ | 9  |
|                | 3)마을기업                 | ● | ● | ● | ● | △ | ● | ● | △ | △ | 13 |
|                | 4)직업교육                 | - | △ | △ | - | - | △ | △ | △ | △ | 6  |
|                | 5)농촌일자리                | - | ● | ● | - | ● | △ | △ | △ | △ | 10 |

| 부문      | 선택 항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합계 |
|---------|----------|---|---|---|---|---|---|---|---|---|----|
| 3.보건/복지 | 1)자살률    | ● | ● | △ | ● | ● | ● | △ | △ | ● | 15 |
|         | 2)노인복지   | - | ● | △ | ● | - | △ | ● | △ | △ | 10 |
|         | 3)아동     | - | - | ● | ● | - | ● | ● | △ | ● | 11 |
|         | 4)영유아    | - | ● | ● | ● | △ | ● | ● | △ | ● | 14 |
|         | 5)문화다양성  | - | ● | △ | - | ● | ● | ● | △ | ● | 12 |
|         | 6)건강     | - | - | △ | - | - | △ | △ | △ | ● | 6  |
|         | 7)건강     | - | - | △ | - | - | △ | △ | ● | ● | 7  |
| 4.안전    | 1)방법설비   | ● | ● | ● | - | ● | ● | ● | ● | ● | 16 |
|         | 2)화재예방   | - | ● | ● | - | - | ● | ● | △ | △ | 10 |
|         | 3)치안인프라  | - | ● | △ | △ | ● | ● | ● | △ | △ | 12 |
|         | 4)응급상황관리 | - | ● | ● | - | - | ● | ● | △ | ● | 11 |
|         | 5)응급서비스  | - | ● | ● | ● | - | ● | ● | ● | ● | 14 |

주1. ●: 2점 , △: 1점

주2. ①~⑦: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

⑧~⑨: 지자체 담당 공무원

### 1.2.3. 선택 항목 목표치

○ 선택 항목의 목표치는 '15년 실적대비 서비스 기준과 선정된 세부기준, 점검지표를 기반으로 '15년 선정된 점검방법을 통해 16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음.

-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15년 실적치인 4.47%에서 목표연도까지 매년 5%씩 감소시킨다.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5년 93.64%에서 '16년~17년

95%, '18~19년 96%로 확대한다.

- 마을기업의 경우 '15년 1.42개소를 '16~19년까지 매년 면소재지 마다 2개소씩 운영하도록 한다.
- 자살률은 '15년 실적 40.23%를 16년 39%, '17년 36%, '18년 34%, '19년 39%로 자살율을 감소시킨다.
- 방법설비는 '15년 실적 40.15%를 '16년 40%, '17년 43%, '18년 46%, '19년 50%로 확대시킨다.

표 2-2.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서비스기준

| 부문           | 선택 항목          | 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점검방법   | 점검지표   | 15년 실적 |     |     |     |
|--------------|----------------|--|--|--|--|--------|-----|-----|-----|
|              |                |  |  |  |  | 16     | 17  | 18  | 19  |
| 1.경주 생활 기반   | 석면슬레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매년 5% 이상 감소시킨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총슬레이트 주택수</li> </ul>    | 5%     | 5%  | 5%  | 5%  |
|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 전체마을수)-(마을버스정류장거리가 700m이상인 마을)/(시·군 전체마을 수) × 1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내버스 운행마을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수</li> </ul>     | 95%    | 95% | 96% | 96% |
| 2.경제 활동/ 일자리 | 마을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의활동에 도움을 준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당 2개 이상 운영 되도록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유형별 단체 수/총 읍·면 수) × 1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기업단체수, 사회적기업 단체수, 협동조합 단체수</li> </ul> | 2개소    | 2개소 | 2개소 | 2개소 |
|              | 자살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시·군의 60세 이상 노인인구자살자수/시·군 전체 연령 자살사망자 수) × 1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 이상 자살자수, 총 자살자수</li> </ul>          | 39%    | 36% | 34% | 30% |
| 4.안전         | 방법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법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설치된 CCTV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D급 CCTV 설치개수/총 CCTV 설치개수) × 1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D급 CCTV 설치개수, 총 CCTV 설치 개수</li> </ul>  | 40%    | 43% | 46% | 50% |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2.1. 정주환경기반

#### 2.1.1. 석면슬레이트

#####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우리나라 농촌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으며, 약 8년 이상 된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 해결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석면 분진은 미국산업 안전 보건청(OSHA)이 선정한 1급 발암 물질 중 하나로 석면이 인체에 들어오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전면 중지된 상황임.
  -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석면 많은 사람들이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 슬레이트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충청북도는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철거대상으로 2021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비용 지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 6,048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는 지붕 1,80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한 동당 336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함.

##### 나.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text{석면슬레이트개선사업해당주택수})}{(\text{총슬레이트주택수})} \times 100$$

-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각 시·군별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대상 지붕 현황에서 전체 총 슬레이트 주택의 수를 나눈 비율 자료를 사용
-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대상 주택의 비율인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감소율로 서비스를 점검
-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자료는 충청북도 도청에서 제공 받았으며, 총 슬레이트 주택 수는 ‘13년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 및 각 지자체 협조 자료를 점검 수단으로 사용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 목표: 감소율 매 5%씩 달성

- 충청북도에는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를 77,2936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으로 2,082개 건물을 개선하여 2.8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 중 청주 5.06%, 단양 11.57%로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 사용이 많은 충주는 1.71%의 감소를 보였으며, 영동 1.83%, 옥천 2.07%, 음성 2.23%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중 개선 사업률이 증가한 곳은 제천 0.05%, 보은 0.75%로 두 곳이 유일하나 변화 정도가 미미하며, 충청북도 내 시·군의 개선 사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단위: 호, %, 개소)

| 구 분 | 석면 슬레이트<br>현황 | 석면 슬레이트<br>개선사업<br>해당 주택수 | 개선사업률 | 2015년도<br>개선사업률 | '15/'16 사업률<br>비교증감 |
|-----|---------------|---------------------------|-------|-----------------|---------------------|
| 청주  | 7,191         | 364                       | 5.06  | 8.1             | -3.04               |
| 충주  | 11,373        | 194                       | 1.71  | 2.11            | -0.4                |
| 제천  | 5,397         | 171                       | 3.17  | 3.12            | +0.05               |
| 보은  | 4,124         | 183                       | 4.44  | 3.69            | +0.75               |
| 옥천  | 13,462        | 278                       | 2.07  | 3.29            | -1.22               |
| 영동  | 12,620        | 231                       | 1.83  | 3.39            | -1.56               |
| 증평  | 1,967         | 76                        | 3.86  | 11.66           | -7.8                |
| 진천  | 5,109         | 167                       | 3.27  | 7.07            | -3.8                |
| 괴산  | 7,981         | 238                       | 2.98  | 7.11            | -4.13               |
| 음성  | 8,069         | 180                       | 2.23  | 3.45            | -1.22               |
| 단양  | 1,020         | 118                       | 11.57 | 12.08           | -0.51               |
| 총계  | 77,293        | 2,082                     | 2.81  | 4.47            | -1.66               |

## 2.1.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충청북도 전체 행정리는 2,933개이고 이 중 4.02%에 해당하는 118개 마을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버스정류장까지 700m이상 떨어져 있으며,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도 0.99%인 29개로 나타남.
  - 버스정류장과 700m이상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471명, 5,23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젊은 사람들에게 700m가 사실상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정류장과 떨어진 마을은 인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령자인 것을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은 농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농촌 문제 중 대중교통문화와 교통서비스의 점진적 기준은 필요함.

#### 나.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공급한다.

$$\frac{(\text{시·군 전체마을수}) - (\text{마을과버스정류장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text{시·군 전체 마을(행정리)수})} \times 100$$

#### 다. 점검방법 및 수단

- 마을의 수는 행정리를 기준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시내버스 정류장과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현황은 충청북도 내부 자료인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료를 활용함.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대중교통 수혜 마을의 비율 95%로 상승
- 충청북도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2,933개의 행정리를 운행 중에 있으나, 운행되지 않는 소외지역 118개의 마을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지자체 중 충주 32개, 영동 29개, 음성 15개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 7개, 괴산 8개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로 보았을 때 단양군이 85.81%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산군은 97.13%로 가장 높은 운행마을 비율을 보임.

표 2-4.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 마을 현황

(단위: 마을, 세대, 명)

| 구분 | 버스운행<br>마을수 | 마을수<br>(마을회관~최단거리 버스승강장 거리)(개) |                 |                 |                 |             | 시내버스<br>운행마을<br>비율 |
|----|-------------|--------------------------------|-----------------|-----------------|-----------------|-------------|--------------------|
|    |             | 소계                             | 0.7km<br>~1.0km | 1.0km~<br>1.2km | 1.2km<br>~1.5km | 1.5km<br>이상 |                    |
| 청주 | 584         | 580                            | -               | -               | -               | -           | -                  |
| 충주 | 333         | 333                            | 31              | 10              | 3               | 5           | 13                 |
| 제천 | 157         | 143                            | -               | -               | -               | -           | -                  |
| 보은 | 247         | 220                            | -               | -               | -               | -           | -                  |
| 옥천 | 223         | 210                            | -               | -               | -               | -           | -                  |
| 영동 | 230         | 230                            | 161             | 115             | 23              | 23          |                    |
| 증평 | 107         | 105                            | 2               |                 |                 |             | 2                  |
| 진천 | 289         | 259                            | -               | -               | -               | -           | -                  |
| 괴산 | 281         | 264                            | -               | -               | -               | -           | -                  |
| 음성 | 331         | 330                            | -               | 0               | -               | -           | -                  |
| 단양 | 151         | 141                            | 14              | 8               | 3               | 1           | 2                  |
| 총계 | 2,933       | 2,815                          | 208             | 133             | 29              | 29          | 17                 |

- 시내버스 정류장과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회관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은 정기적인 교통수요가 적은 오지마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충청북도에서는 농촌 낙후지역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교통 오지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면이나 읍내 마을까지 버스요금만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일반택시회사에서 기사별로 순번을 정해 교통 오지마을 주변 마을이나 택시 대기소에서 대기하다가 주민이 호출을 할 시에 오지마을의 마을회관으로 가서 주민을 태우고 환승이 가능한 정류장에 내려주는 체계

표 2-5.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단위: 마을, 세대, 명)

| 구 분 | 운행마을 수  |         | 세대수   | 주민수    | 비고 |
|-----|---------|---------|-------|--------|----|
|     | '16년 1월 | '16년 7월 |       |        |    |
| 청주  | 20      | 20      | 610   | 1,104  |    |
| 충주  | 26      | 35      | 1,153 | 2,418  |    |
| 제천  | 6       | 7       | 67    | 119    |    |
| 보은  | 10      | 10      | 263   | 497    |    |
| 옥천  | 9       | 13      | 244   | 445    |    |
| 영동  | 28      | 28      | 815   | 1,775  |    |
| 증평  | 2       | 2       | 41    | 57     |    |
| 진천  | 5       | 16      | 460   | 868    |    |
| 괴산  | 6       | 17      | 490   | 914    |    |
| 음성  | 25      | 25      | 997   | 2,096  |    |
| 단양  | 13      | 6       | 90    | 178    |    |
| 총계  | 150     | 179     | 5,230 | 10,471 |    |

주: 세대수, 주민수 모두 2016년 7월 기준

표 2-6.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비교

(단위: 마을, 세대, 명)

| 구분 | 행복택시<br>운행마을 수 | '15/'16 비교 | 운행세대 수 | '15/'16 비교 | 이용주민 수 | '15/'16 비교 |
|----|----------------|------------|--------|------------|--------|------------|
| 청주 | 20             | +8         | 610    | +127       | 1,104  | +21        |
| 충주 | 35             | +20        | 1,153  | +655       | 2,418  | +1,381     |
| 제천 | 7              | +1         | 67     | -6         | 119    | -10        |
| 보은 | 10             | +5         | 263    | +170       | 497    | +347       |
| 옥천 | 13             | +7         | 244    | -12        | 445    | -21        |
| 영동 | 28             | +13        | 815    | +470       | 1,775  | +1,013     |
| 증평 | 2              | -1         | 41     | -41        | 57     | -72        |
| 진천 | 16             | +11        | 460    | +82        | 868    | +192       |
| 괴산 | 17             | +13        | 490    | +403       | 914    | +751       |
| 음성 | 25             | +11        | 997    | +441       | 2,096  | +979       |
| 단양 | 6              | -9         | 90     | -140       | 178    | -132       |
| 총계 | 173            | 103        | 5,140  | +2149      | 10,293 | +4,449     |

## 2.2. 경제활동/일자리

###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의미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법상 회사이지만 비영리 단체인 기업
-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자의 계층에 있는 하청업체, 소규모 농장을 가진 농장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력하여 만든 단체를 의미함.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취업의 기회, 경제적 이익,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에 3가지의 단체가 활성화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농민들 이익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 나.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 다. 점검방법 및 수단

- 각 유형별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현황은 충청북도 도청과 지자체 내부 자료를 활용

$$\frac{\text{각유형별 단체수}}{\text{총시·군의 읍면수}} \times 100$$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당 2개소씩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
- 충청북도에는 153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마을기업 75개, 사회적 기업 119개, 협동조합 259개로 각1개 읍면동당 1.42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주와 증평이 읍면동 기준 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천 0.29개, 보은 0.73개, 단양 0.88개로 낮게 나타남.

표 2-7.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 구 분 | 각 유형별 단체 현황 |           |         | 읍,면,동 수 | 각 1개 읍, 면, 동 단체 수 |
|-----|-------------|-----------|---------|---------|-------------------|
|     | 마을 기업(개)    | 사회적 기업(개) | 협동조합(개) |         |                   |
| 청주  | 12          | 61        | 129     | 43      | 3.00              |
| 충주  | 9           | 11        | 33      | 25      | 1.32              |
| 제천  | 5           | 9         | 22      | 17      | 1.29              |
| 보은  | 6           | 5         | 8       | 11      | 0.73              |
| 옥천  | 6           | 7         | 9       | 9       | 1.00              |
| 영동  | 10          | 6         | 18      | 11      | 1.64              |
| 증평  | 4           | 4         | 6       | 2       | 3.00              |
| 진천  | 6           | 5         | 2       | 7       | 0.29              |
| 괴산  | 9           | 4         | 16      | 11      | 1.45              |
| 음성  | 4           | 3         | 9       | 9       | 1.00              |
| 단양  | 4           | 4         | 7       | 8       | 0.88              |
| 총계  | 75          | 119       | 259     | 153     | 1.42              |

주: 각 1개 읍, 면, 동 단체 수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100을 곱하지 않음

## 2.3. 보건/복지

###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충북의 노인인구는 전국 평균의 6.84%보다 1.56%가 높은 8.4%로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돌입
- 충북의 '15년의 자살자는 477명으로 그 중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는 183명(38.36%)임.
- 특히, 노인인구의 자살 비율이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취약하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사업과 이를 재측할 판단 기준이 필요
  -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 나.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자살률을 감소시킨다.

###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text{시·군 60세 이상(노인)자살사망자수}}{\text{시·군 전체연령 자살사망자수}} \times 100$$

- 자살률의 점검방법은 각 시·군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자살 사망자 수와 시·군 전체 연령에서의 자살인구의 비율로 점검·평가
- 연도별 시·군 전체 인구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부 자료를 이용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노인 인구의 자살비율을 19년 30%로 감소를 목표로 매년 감소목표율을 정하며,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충청북도 노인 자살비율은 2010년 39.25%, 2011년 40.9%, 2012년 43.36%, 2013년 40.23%, 2014년 48.43%로 매년 자살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주와 진천이 20.83%~35.38%로 노인 자살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충주와 보은은 42.11%~70.00%로 노인 자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 시·군별 노인 자살률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
|     | 전체 연령 | 60대 이상     | 전체 연령 | 60대 이상     | 전체 연령 | 60대 이상     | 전체 연령 | 60대 이상     |
| 청주  | 172   | 61(35.47)  | 180   | 62(34.44)  | 206   | 60(29.13)  | 212   | 75(35.38)  |
| 충주  | 82    | 34(41.46)  | 77    | 29(37.66)  | 81    | 36(44.44)  | 57    | 24(42.11)  |
| 제천  | 67    | 25(37.31)  | 45    | 19(42.22)  | 56    | 23(41.07)  | 54    | 22(40.74)  |
| 보은  | 13    | 7(53.85)   | 21    | 12(57.14)  | 6     | 4(66.67)   | 20    | 14(70.00)  |
| 옥천  | 33    | 20(60.61)  | 20    | 10(50.00)  | 21    | 8(38.10)   | 19    | 7(36.84)   |
| 영동  | 21    | 8(38.10)   | 21    | 12(57.14)  | 16    | 9(56.25)   | 19    | 9(47.37)   |
| 증평  | 63    | 28(44.44)  | 50    | 18(36.00)  | 9     | 4(44.44)   | 14    | 5(35.71)   |
| 진천  | 27    | 15(55.56)  | 27    | 9(33.33)   | 25    | 4(16.00)   | 24    | 5(20.83)   |
| 괴산  | 26    | 18(69.23)  | 14    | 11(78.57)  | 24    | 12(50.00)  | 17    | 6(35.29)   |
| 음성  | 38    | 18(47.37)  | 48    | 17(35.42)  | 35    | 12(34.29)  | 29    | 9(31.03)   |
| 단양  | 16    | 8(50.00)   | 14    | 9(64.29)   | 14    | 8(57.14)   | 12    | 7(58.33)   |
| 총계  | 558   | 242(43.37) | 517   | 208(40.23) | 479   | 232(48.43) | 477   | 183(38.36) |

주: 자료의 기준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설정  
 자료: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내부자료

- 충청북도는 도민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복지체계가 필요한 질환의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고, 충청북도 각 11개 시·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 각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일회성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며, 각 공기업과 마을회관을 돌며 자살예방을 위한 일회성 강연들을 주로 시행
- 제천시는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연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2가지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제천과 같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표 2-9. 시·군별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락처

| 구 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청주  | 충청북도<br>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217-0597   | <a href="http://cbmind.or.kr/">http://cbmind.or.kr/</a>                           |
|     | 청주시 서원·홍덕<br>정신건강증진센터 | 291-0199   | <a href="http://www.cjmental.co.kr/">http://www.cjmental.co.kr/</a>               |
|     | 청주시 상당·청원<br>정신건강증진센터 | 201-3122~9 | <a href="http://www.cheongwoncenter.or.kr/">http://www.cheongwoncenter.or.kr/</a> |
| 충주  | 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 855-4007   | <a href="http://mhc.cj100.net/home/">http://mhc.cj100.net/home/</a>               |
| 제천  | 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 646-3074~5 | <a href="http://www.jcmind.or.kr/">http://www.jcmind.or.kr/</a>                   |
| 보은  | 보은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544-6991~2 | <a href="http://www.goodboeun.com/">http://www.goodboeun.com/</a>                 |
| 옥천  | 옥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730-2199   | <a href="http://www.okmind.or.kr/">http://www.okmind.or.kr/</a>                   |
| 영동  |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740-5613   | -   |
| 증평  |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835-4276   | <a href="http://www.jpmind.net">http://www.jpmind.net</a>                         |
| 진천  |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536-8387   | <a href="http://www.jcmhc.net">http://www.jcmhc.net</a>                           |

| 구 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괴산  |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0832-0330  | www.gsmhc.or.kr          |
| 음성  |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872-1883   | http://www.esmind.or.kr/ |
| 단양  | 단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420-3257~9 | -                        |

## 2.4. 안전

###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CCTV의 방법 효과는 예로부터 많이 입증되었고, 최근에는 특히 인적이 드문 곳과 골목 같은 우범지대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
- 방법효과 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 하였을 시 범인 체포의 단서 제공과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된 CCTV로 경찰 인력의 보완 등 효과가 있음.
- CCTV 설치는 일정 수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제는 해상도를 고화질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나.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법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HD급\ CCTV\ 설치\ 대수}{총\ CCTV\ 설치\ 대수} \times 100$$

- 시·군별 CCTV 설치 대수는 농촌마을(행정리)만 집계한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어린이집과 은행 통계는 제외함.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41만 화소 이상부터의 CCTV를 집계하였고, HD CCTV는 경찰청의 고화질 분류 기준에 따라 120만 화소 이상으로 정의함.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목표연도인 19년까지 HD급 CCTV로 50% 교체토록 한다.
- 충청북도 지자체에 설치된 전체 CCTV는 4,446대이고 이중 3,199대가 HD급 CCTV이며 71.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11개 시·군 중 HD급 CCTV가 100%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음성이 유일하며 청주가 97.49%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 제천은 47.79%, 평균이 52.44%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2015년 대비 음성 85.42%, 청주 70.29%, 괴산 64.87%로 HD급 CCTV 설치율이 현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제천과 증평에서 HD급 CCTV 설치율은 52.21%, 47.56%로 2015년 대비 현격한 감소를 보임.

표 2-10.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단위: 대, %)

| 구 분 | CCTV 설치 현황 |            |                 | HD급 CCTV 비율 | '15년도 HD급 CCTV비율 | '15/'16 비교 |
|-----|------------|------------|-----------------|-------------|------------------|------------|
|     | HD급 CCTV   | 전체 CCTV 설치 | 130만 화소 이하 CCTV |             |                  |            |
| 청주  | 272        | 279        | 130만: 7         | 97.49       | 27.20            | +70.29     |
| 충주  | 594        | 749        | 130만: 155       | 79.31       | 100              | -20.69     |
| 제천  | 552        | 1,155      |                 | 47.79       | 100              | -52.21     |
| 보은  | 162        | 194        |                 | 83.51       | 100              | -16.49     |

| 구 분 | CCTV 설치 현황 |            |                      | HD급 CCTV 비율 | '15년도 HD급 CCTV비율 | '15/'16 비교 |
|-----|------------|------------|----------------------|-------------|------------------|------------|
|     | HD급 CCTV   | 전체 CCTV 설치 | 130만 화소 이하 CCTV      |             |                  |            |
| 옥천  | 214        | 244        | 130만: 20<br>41만:10   | 87.70       | 18.78            | +68.92     |
| 영동  | 400        | 440        |                      | 90.91       | 100              | -9.09      |
| 증평  | 86         | 164        |                      | 52.44       | 100              | -47.56     |
| 진천  | 417        | 587        | 130만: 160<br>41만: 10 | 71.04       | 100              | -28.96     |
| 괴산  | 205        | 316        |                      | 64.87       | 19.29            | +45.58     |
| 음성  | 219        | 219        |                      | 100.00      | 14.58            | +85.42     |
| 단양  | 78         | 99         |                      | 78.79       | 100              | -21.21     |
| 총계  | 3,199      | 4,446      |                      | 71.95       | 40.15            | +31.8      |

주: 안전한 농촌 마을 표 서식을 따름

###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 3.1. 정주환경기반 이행실태

##### 3.1.1. 석면슬레이트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해당 주택 수/총 슬레이트 주택 수) \times 100$$

- 정주환경기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슬레이트 정비를 통한 충청북도 슬레이트 감소율은 평균 2.81%이며, 군지역(4.03%)이 시지역(3.17%)보다 높고, 단양군이 11.57%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1. 주거환경 정비 현황

(단위: %, 호)

| 지표            | 구분   | 평균    | 노후슬레이트<br>정비 현황 | 최댓값             | 최솟값            |
|---------------|------|-------|-----------------|-----------------|----------------|
| 주거환경<br>정비 현황 | 전체   | 2.81% | 77,293          | 11.57%<br>(단양군) | 1.71%<br>(충주시) |
|               | 시 지역 | 3.17% | 23,961          | 5.06%<br>(청주시)  | 1.71%<br>(충주시) |
|               | 군 지역 | 4.03% | 54,352          | 11.57%<br>(단양군) | 1.83%<br>(영동군) |

## 3.1.2. 대중교통

(시·군 전체 마을 수-마을과 버스정류장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  
시·군 전체마을(행정리)수 × 100

- 정주환경기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정비 현황을 보면 대중교통 보급률은 평균 93.64%이며, 시지역(93.64%)이 군지역(92.56%)보다 높고, 괴산군이 97.13%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단위: %, 마을)

| 지표            | 구분   | 평균     | 마을과<br>버스정류장 거리<br>700m 이상 마을 | 최댓값             | 최솟값             |
|---------------|------|--------|-------------------------------|-----------------|-----------------|
| 대중교통<br>정비 현황 | 전체   | 93.64% | 59                            | 97.13%<br>(괴산군) | 85.81%<br>(단양군) |
|               | 시 지역 | 93.64% | 28                            | 96.71%<br>(청주시) | 90.39%<br>(충주시) |
|               | 군 지역 | 92.56% | 31                            | 97.13%<br>(괴산군) | 85.81%<br>(단양군) |

## 3.2. 경제활동/일자리 이행실태

### 3.2.1. 마을기업

(각 유형별 단체수/총 시·군의 읍면수) × 100

- 경제활동/일자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총 마을기업은 453개이며, 시지역이 291개로 군지역 162개보다 많고, 청주시가 202개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이 나타남.

표 2-13.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 지표         | 구분   | 단체현황 | 각 1개 읍, 면, 동 단체 수 | 최댓값          | 최솟값         |
|------------|------|------|-------------------|--------------|-------------|
| 마을기업<br>현황 | 전체   | 453  | 1.42              | 202<br>(청주시) | 13<br>(진천군) |
|            | 시 지역 | 291  | 3.42              | 202<br>(청주시) | 36<br>(제천시) |
|            | 군 지역 | 162  | 2.38              | 34<br>(영동군)  | 13<br>(진천군) |

## 3.3 보건/복지 이행실태

### 3.3.1. 노인 자살

(시·군 60세 이상(노인) 자살 사망자수/시·군 전체연령 자살 사망자 수) × 100

- 보건/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자살비율 현황을 통한 충청북도 노인 자살자 비율은 평균 38.36%이며, 군 지역(41.53%)이 시 지역(39.41%)보다 높고, 보은군이 70.00%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4. 노인 자살비율 현황

(단위: 명, %)

| 지표         | 구분   | 평균     | 노인 자살자 | 최댓값          | 최솟값          |
|------------|------|--------|--------|--------------|--------------|
| 노인 자살비율 현황 | 전체   | 41.00% | 183    | 70.00% (보은군) | 20.83% (진천군) |
|            | 시 지역 | 39.41% | 121    | 42.11% (충주시) | 35.38% (청주시) |
|            | 군 지역 | 41.53% | 62     | 70.00% (보은군) | 20.83% (진천군) |

### 3.4. 안전 이행실태

#### 3.3.1. 방법설비

$$\text{HD급 CCTV설치대수/총 CCTV설치 대수} \times 100$$

- 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HD급 CCTV 보급률은 71.95%이며, 군지역(78.70%)이 시지역(64.96%)보다 높고, 음성군이 100%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5. HD급 CCTV 현황

(단위: %, 대)

| 지표       | 구분   | HD급 CCTV 비율 | CCTV 설치현황 | 최댓값          | 최솟값          |
|----------|------|-------------|-----------|--------------|--------------|
| HD급 CCTV | 전체   | 71.95%      | 4,446     | 100% (음성군)   | 47.49% (제천시) |
|          | 시 지역 | 64.96%      | 2,183     | 97.49% (청주시) | 47.49% (제천시) |
|          | 군 지역 | 78.70%      | 2,263     | 100% (음성군)   | 52.44% (증평군) |



## 4.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 4.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4.1.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 조사범위 선정 기준

- 공간접근성지표의 조사범위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공간 범위인 행정리를 최소단위로 하고, 해당 지표 및 관련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법정리 단위까지로 확대해 적용함.

##### ■ 조사범위 현황

표 2-16.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 구분  |     | 읍면동 | 법정(동)리 | 행정(동)리 |
|-----|-----|-----|--------|--------|
| 전체  | 전체  | 123 | 1513   | 140    |
|     | 읍지역 | 15  | 13     | 12     |
|     | 면지역 | 87  | 1184   | 77     |
|     | 동지역 | 64  | 629    | 109    |
| 시지역 | 전체  | 55  | 624    | 72     |
|     | 읍지역 | 5   | 5      | 2      |
|     | 면지역 | 29  | 292    | 19     |
|     | 동지역 | 51  | 331    | 51     |
| 군지역 | 전체  | 68  | 862    | 68     |
|     | 읍지역 | 10  | 8      | 10     |
|     | 면지역 | 58  | 853    | 58     |

| 구분  |     | 읍면동 | 법정(동)리 | 행정(동)리 |
|-----|-----|-----|--------|--------|
| 청주시 | 전체  | 13  | 321    | 30     |
|     | 읍지역 | 3   | 3      |        |
|     | 면지역 | 10  | 240    |        |
|     | 동지역 | 30  | 82     | 30     |
| 충주시 | 전체  | 25  | 162    | 25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12  | 25     | 12     |
|     | 동지역 | 12  | 136    | 12     |
| 제천시 | 전체  | 17  | 141    | 17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7   | 27     | 7      |
|     | 동지역 | 9   | 113    | 9      |
| 보은군 | 전체  | 11  | 174    | 11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10  | 173    | 10     |
| 옥천군 | 전체  | 9   | 125    | 9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8   | 124    | 8      |
| 영동군 | 전체  | 11  | 131    | 11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10  | 130    | 10     |
| 증평군 | 전체  | 2   | 27     | 2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1   | 26     | 1      |
| 진천군 | 전체  | 7   | 83     | 7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6   | 82     | 6      |
| 괴산군 | 전체  | 11  | 126    | 11     |
|     | 읍지역 | 1   | 1      | 1      |
|     | 면지역 | 10  | 125    | 10     |
| 음성군 | 전체  | 9   | 115    | 9      |
|     | 읍지역 | 2   | 2      | 2      |
|     | 면지역 | 7   | 113    | 7      |
| 단양군 | 전체  | 8   | 108    | 8      |
|     | 읍지역 | 2   | 2      | 2      |
|     | 면지역 | 6   | 106    | 6      |

## 4.2. 정주환경 지표 특성분석

### 4.2.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주택 슬레이트 정비

- 주거환경은 충청북도 환경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정보를 기반으로 함.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 증대와 고가의 처리비용으로 자발적 처리에는 한계가 있음.
-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석면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표 2-17.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단위: 호)

| 구 분 | 슬레이트 사업대상 건물 수 |
|-----|----------------|
| 전 체 | 40,243         |
| 시지역 | 13856          |
| 군지역 | 26,387         |
| 청주시 | 4,319          |
| 충주시 | 5,694          |
| 제천시 | 3,843          |
| 보은군 | 4,060          |
| 옥천군 | 6,685          |
| 영동군 | 5,906          |
| 증평군 | 722            |
| 진천군 | 1,698          |
| 괴산군 | 3,095          |
| 음성군 | 3,476          |
| 단양군 | 745            |

표 2-18. 주거환경 비율

(단위: 호, %)

| 구분  | 사업추진수 | 비율    | 평균    | 최댓값             | 최솟값            |
|-----|-------|-------|-------|-----------------|----------------|
| 전체  | 1,800 | -     | 2.81% | 11.57%          | 1.71%          |
| 청주시 | 350   | 19.44 | 3.17% | 5.06%<br>(청주시)  | 1.71%<br>(충주시) |
| 충주시 | 120   | 6.66  |       |                 |                |
| 제천시 | 120   | 6.66  |       |                 |                |
| 보은군 | 150   | 8.33  | 4.03% | 11.57%<br>(단양군) | 1.83%<br>(영동군) |
| 옥천군 | 220   | 12.22 |       |                 |                |
| 영동군 | 200   | 11.11 |       |                 |                |
| 증평군 | 90    | 5     |       |                 |                |
| 진천군 | 120   | 6.66  |       |                 |                |
| 괴산군 | 220   | 12.22 |       |                 |                |
| 음성군 | 120   | 6.66  |       |                 |                |
| 단양군 | 90    | 5     |       |                 |                |

- 충북 전체의 평균 주거환경 현황은 2.81%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단양군(11.57%), 청주시(5.06%)으로 주거환경개선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주시(1.71%), 영동군(1.83%)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주거환경 현황은 3.17%인데 반해 군지역은 4.03%로 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지원사업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버스정거장 700m 이상인 마을을 기초로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을 발굴 및 운영 하고자 함.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공급하여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

표 2-19. 시·군별 마을회관~700m이상 버스승강장 마을 현황

(단위: 마을)

| 구분  | 시·군별 마을회관~700m이상 버스승강장 마을 현황 |
|-----|------------------------------|
| 전체  | 184                          |
| 시지역 | 63                           |
| 군지역 | 121                          |
| 청주시 | 20                           |
| 충주시 | 32                           |
| 제천시 | 11                           |
| 보은군 | 10                           |
| 옥천군 | 11                           |
| 영동군 | 29                           |
| 증평군 | 7                            |
| 진천군 | 10                           |
| 괴산군 | 8                            |
| 음성군 | 25                           |
| 단양군 | 21                           |

표 2-20.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단위:(단위: 마을, %))

| 구분  | 사업추진수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184   | -     | 93.64% | 97.13%          | 85.81%          |
| 청주시 | 20    | 10.86 | 93.64% | 96.71%<br>(청주시) | 90.39%<br>(충주시) |
| 충주시 | 32    | 17.39 |        |                 |                 |
| 제천시 | 11    | 5.97  |        |                 |                 |
| 보은군 | 10    | 5.3   | 92.56% | 97.13%<br>(괴산군) | 85.81%<br>(단양군) |
| 옥천군 | 11    | 5.97  |        |                 |                 |
| 영동군 | 29    | 15.76 |        |                 |                 |
| 증평군 | 7     | 3.8   |        |                 |                 |
| 진천군 | 10    | 5.3   |        |                 |                 |
| 괴산군 | 8     | 4.34  |        |                 |                 |
| 음성군 | 25    | 13.58 |        |                 |                 |
| 단양군 | 21    | 11.41 |        |                 |                 |

- 충북 전체의 평균 시내버스 운행마을 현황은 93.64%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청주시(93.64%), 괴산군(97.13%)으로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주시(90.39%), 단양군(85.81%)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 현황은 93.64%인데 반해 군지역은 92.56%로 시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3. 경제활동/일자리 지표 특성분석

#### 4.3.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마을기업

표 2-21.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
|-----|--------------|
| 전체  | 453          |
| 시지역 | 291          |
| 군지역 | 162          |
| 청주시 | 202          |
| 충주시 | 53           |
| 제천시 | 36           |
| 보은군 | 19           |
| 옥천군 | 22           |
| 영동군 | 34           |
| 증평군 | 14           |
| 진천군 | 13           |
| 괴산군 | 29           |
| 음성군 | 16           |
| 단양군 | 15           |

표 2-22. 마을기업 비율

(단위: 개, %)

| 구분  |     | 비율    | 현황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453 | -     | 453 | 202          | 13          |
| 청주시 | 202 | 44.59 | 291 | 202<br>(청주시) | 36<br>(제천시) |
| 충주시 | 53  | 11.70 |     |              |             |
| 제천시 | 36  | 7.95  |     |              |             |
| 보은군 | 19  | 4.19  | 162 | 34<br>(영동군)  | 13<br>(진천군) |
| 옥천군 | 22  | 4.86  |     |              |             |
| 영동군 | 34  | 7.51  |     |              |             |
| 증평군 | 14  | 3.09  |     |              |             |
| 진천군 | 13  | 2.87  |     |              |             |
| 괴산군 | 29  | 6.40  |     |              |             |
| 음성군 | 16  | 3.53  |     |              |             |
| 단양군 | 15  | 3.31  |     |              |             |

- 충북 전체의 마을기업 현황은 453개로 조사됨.
- 시·군별로 청주시(202개), 영동군(34개)의 마을기업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천시(36개), 증평군(14개)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마을기업 현황은 291개인데 반해 군지역은 162개로 시지역의 마을기업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4. 보건/복지 지표 특성분석

### 4.4.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노인자살률<sup>7)</sup>

- 보건/복지 지표는 충청북도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현황과 자살 통계자료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함.
- 노인 자살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23.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 노인자살수 |
|-----|-------|
| 전체  | 183   |
| 시지역 | 121   |
| 군지역 | 61    |
| 청주시 | 75    |
| 충주시 | 24    |
| 제천시 | 22    |
| 보은군 | 14    |
| 옥천군 | 7     |
| 영동군 | 9     |
| 증평군 | 5     |
| 진천군 | 5     |
| 괴산군 | 6     |
| 음성군 | 9     |
| 단양군 | 7     |

7) 자살율 자료는 2016년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2015년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음

표 2-24. 노인자살률 비율

(단위: 명, %)

| 구분  | 자살노인수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183   | -     | 41.00 | 70.00%          | 20.83%          |
| 청주시 | 75    | 40.98 | 39.41 | 42.11%<br>(충주시) | 35.38%<br>(청주시) |
| 충주시 | 24    | 13.11 |       |                 |                 |
| 제천시 | 22    | 12.02 |       |                 |                 |
| 보은군 | 14    | 7.65  | 41.53 | 70.00%<br>(보은군) | 20.83%<br>(진천군) |
| 옥천군 | 7     | 3.83  |       |                 |                 |
| 영동군 | 9     | 4.92  |       |                 |                 |
| 증평군 | 5     | 2.73  |       |                 |                 |
| 진천군 | 5     | 2.73  |       |                 |                 |
| 괴산군 | 6     | 3.28  |       |                 |                 |
| 음성군 | 9     | 4.92  |       |                 |                 |
| 단양군 | 7     | 3.83  |       |                 |                 |

- 충북 전체의 노인자살률은 183명(41.00%)로 조사됨.
- 시·군별로 충주시(42.11%), 보은군(70.00%)이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시(35.38%), 진천군(20.83%)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노인자살률 현황은 39.41%인데 반해 군지역은 41.53%로 군지역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5 안전 지표 특성분석

### 4.5.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방법설비

- CCTV는 방법효과 뿐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의 범죄예방에 효과적임.
- 충청북도에서 운행 중인 CCTV 중 HD급 CCTV현황을 점검하여 보급을 목표로 함.

표 2-25. 시·군별 CCTV 현황

(단위: 개)

| 구분  | CCTV설치 현황 |
|-----|-----------|
| 전체  | 4,446     |
| 시지역 | 2,183     |
| 군지역 | 2,263     |
| 청주시 | 279       |
| 충주시 | 749       |
| 제천시 | 1,155     |
| 보은군 | 194       |
| 옥천군 | 244       |
| 영동군 | 440       |
| 증평군 | 164       |
| 진천군 | 587       |
| 괴산군 | 316       |
| 음성군 | 219       |
| 단양군 | 99        |

표 2-26. HD급 CCTV 비율

(단위: 개, %)

| 구분  | HD급 CCTV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3,199    | -     | 71.95 | 100            | 47.79%          |
| 청주시 | 272      | 8.5   | 64.96 | 97.49<br>(청주시) | 47.79%<br>(제천시) |
| 충주시 | 594      | 18.57 |       |                |                 |
| 제천시 | 552      | 17.26 |       |                |                 |
| 보은군 | 162      | 5.06  | 78.70 | 100%<br>(음성군)  | 52.44%<br>(증평군) |
| 옥천군 | 214      | 6.69  |       |                |                 |
| 영동군 | 400      | 12.50 |       |                |                 |
| 증평군 | 86       | 2.69  |       |                |                 |
| 진천군 | 417      | 13.04 |       |                |                 |
| 괴산군 | 205      | 6.41  |       |                |                 |
| 음성군 | 219      | 6.85  |       |                |                 |
| 단양군 | 78       | 2.44  |       |                |                 |

- 충북 전체의 HD급 CCTV 비율은 3,199개(71.95%)로 조사됨.
- 시·군별로 음성군이 100%, 청주시가 97.4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천시(47.79%), 증평군(52.44%)은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군지역의 HD급 CCTV 비율 현황은 78.70%인데 반해 시지역은 64.96%로 시지역의 HD급 CCTV 비율 현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 3 장

### 정책제언

#### 1. 정책적 제언

- 세부기준이 모호해 서비스기준을 점검할 적합한 통계 데이터를 찾기 어렵거나, 점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달성노력 및 이행실태의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적 점검 형태를 모색해야 함.
- 각 정부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별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과정을 협조하는 담당자가 교체되어, 담당자의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구득이 어려워짐.
- 연차별 핵심지표 점검평가 시 항목별 지표 중 정부공식통계로 발표된 통계 적용시점의 차이로 당해 연도의 점검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점검평가기의 조정이 필요
  - 예로 자살률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시점에서 2016년 자살률통계 미발표로 부득이 2015년 자살률 통계를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종합·체계적인 개발촉진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3.8.5.>
2. “농어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3. “농어업인등”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4.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2013.9.10.], 그 외의 동 조례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3조(충청북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이 해당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준과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그 밖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동)** 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2.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생활권 기반 부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 안전 부문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포함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는 지역실정 및 주민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에라도 개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충청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본 조례의[별표]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고시한다.

**제6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보건·복지 부문)

2.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교육 부문)
3. 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생활권 기반 부문)
4.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경제활동일자리 부문)
5.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문화·여가 부문)
6. 농어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환경·경관 부문)
7.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위험 방지와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안전 부문)
8.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 및 운영지원을 위해 총괄·조정·심의, 목표달성의 점검·평가 등을 위한 협의체로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도지사의 각 실·과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농어업인·주민 또는 농어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이나 간사 운용 등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심의 및 점검·평가한다.

1. 제4조의 실태조사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안 심의
4.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총괄·조정
5.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의 주기적인 점검·평가 및 결과에 대한 주민 공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 시책 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권고
7. 그 밖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위원회 행정지원)** ① 충청북도 행정조직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 부서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행정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5조 관련)

## 제 4 장

---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우수사례

#### 1. 안전한 농촌 만들기

##### 1.1. 정책 개요

- 사업명: 「안전한 농촌 만들기」
- 사업내용: 방범용 CCTV 설치 (200만 화소 이상)
- 사업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 사업위치: 230개소 자연마을

##### 1.2. 정책지원 내용

######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비 교부: 30억원 (100%)
- 추진상황: 11시·군 230개소 완료

표 4-1. 방법용 CCTV 성능 비교

| 구 분 | 41만 화소                                 | 130만 화소   | 200만 화소 이상                                  | 비고 |
|-----|--|---|---|----|
| 장 점 | - 사업비 저렴<br>- 유지관리비 저렴                 | - 고화질<br>(차량번호 및<br>사람식별)<br>- 실시간 영상<br>지연이 없음 | - 초고화질(줌기능<br>우수함)<br>- 적외선내장으로<br>야간식별가능   |    |
| 단 점 | - 차량번호·사람식별<br>부정확<br>- 모니터링시 효과<br>낮음 | - 초기 설치비<br>기존대비 고가<br>- 유지관리비가<br>상대적 부담       | - 저장장치(스토리지)<br>비용 고가<br>- 고용량으로<br>서버저장 제한 |    |
| 사업비 | 4백만원                                   | 11백만원   | 13백만원                                       |    |

주: CCTV: 41만, 130만, 200만 화소(도내 CCTV 130만 화소 이상 약 25% 정도)

### ■ 그동안 추진실적('13~'15)

- 사업량: 680개소 ('13년 220개소, '14년 230개소, '15년 230개소)
- 사업비: 86.4억원 (도비 25.9, 시·군비 60.5)
  - ※ 시·군 자체 별도설치 312개소 ('13년 91개소, '14년 141개소, '15년 80개소)

### ■ 향후계획

- '16년 CCTV 정산 및 '17년 사업대상지 선정: '16.12~'17.1
-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도난예방 등 효과 홍보

표 4-2. 2016 추진계획

(단위: 천원)

| 구 분 | 사업량 | 총사업비    | '16년 계획 |    |         |         | 비고   |
|-----|-----|---------|---------|----|---------|---------|------|
|     |     |         | 소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청주시 | 40  | 520,000 | 520,000 | -  | 156,000 | 364,000 | 설치완료 |
| 충주시 | 31  | 403,000 | 403,000 | -  | 120,900 | 282,100 | 설치완료 |
| 제천시 | 21  | 273,000 | 273,000 | -  | 81,900  | 191,100 | 설치완료 |

| 구 분 | 사업량 | 총사업비      | '16년 계획   |    |         |           | 비고   |
|-----|-----|-----------|-----------|----|---------|-----------|------|
|     |     |           | 소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보은군 | 19  | 247,000   | 247,000   | -  | 74,100  | 172,900   | 설치완료 |
| 옥천군 | 15  | 200,000   | 200,000   | -  | 60,000  | 140,000   | 설치완료 |
| 영동군 | 18  | 234,000   | 234,000   | -  | 70,200  | 163,800   | 설치완료 |
| 증평군 | 4   | 52,000    | 52,000    | -  | 15,600  | 36,400    | 설치완료 |
| 진천군 | 15  | 200,000   | 200,000   | -  | 60,000  | 140,000   | 설치완료 |
| 괴산군 | 24  | 312,000   | 312,000   | -  | 93,600  | 218,400   | 설치완료 |
| 음성군 | 27  | 351,000   | 351,000   | -  | 105,300 | 245,700   | 설치완료 |
| 단양군 | 16  | 208,000   | 208,000   | -  | 62,400  | 145,600   | 설치완료 |
| 총계  | 230 | 3,000,000 | 3,000,000 | -  | 900,000 | 2,100,000 |      |

### ■ 도내 자연마을 및 CCTV 설치현황

- 도내 자연마을 현황: 15읍 87개면, 5,608개 마을
- 도내 CCTV 설치현황 ('16. 10월말 기준)

표 4-3. 도내 자연마을 및 CCTV 설치현황('16. 10월말 기준)

(단위: 대, %)

| 구 분        | 설치대수  | 비율    | 구 분          | 설치대수  | 비율   |
|------------|-------|-------|--------------|-------|------|
| 계          | 9,448 | 100.0 | 초등학교 연계      | 769   | 8.1  |
| 읍면동(생활)방법  | 596   | 6.3   | 시설문·문화재관리    | 663   | 7.0  |
| 도로방법·차량판독  | 471   | 5.0   | 산불감시용        | 82    | 0.9  |
| 어린이보호구역    | 1,550 | 16.4  | 재난(하천, 수위감시) | 176   | 1.9  |
| 도시공원 구역내   | 969   | 10.3  | 불법쓰레기 단속     | 113   | 1.2  |
| 주택가 및 시장주변 | 713   | 7.5   | 안전한 농촌마을     | 1,222 | 12.9 |
| 교통 및 불법주정차 | 614   | 6.5   | 마을 자체방법용     | 1,510 | 15.9 |

주: 농촌방법용: 2,732대(28.8%), 안전한농촌마을 1,222대 + 마을자체방법용 1,510대

## ■ 자연마을별 CCTV 현황 및 계획

○ 도내 자연마을 현황: 15읍 87개면, 5,608개 마을

표 4-4. 자연마을별 CCTV 현황 및 계획

(단위: 마을)

| 구 분 | 자연마을수 | 기투자마을<br>(‘15년까지) | 16년<br>설치마을 | 향후계획  | 비 고 |
|-----|-------|-------------------|-------------|-------|-----|
| 청주시 | 974   | 669               | 40          | 265   |     |
| 충주시 | 744   | 108               | 31          | 605   |     |
| 제천시 | 507   | 94                | 21          | 422   |     |
| 보은군 | 468   | 60                | 19          | 389   |     |
| 옥천군 | 375   | 229               | 15          | 131   |     |
| 영동군 | 431   | 240               | 18          | 173   |     |
| 증평군 | 108   | 17                | 4           | 88    |     |
| 진천군 | 355   | 71                | 15          | 269   |     |
| 괴산군 | 600   | 425               | 24          | 151   |     |
| 음성군 | 651   | 542               | 27          | 82    |     |
| 단양군 | 395   | 47                | 16          | 332   |     |
| 총계  | 5,608 | 2,502             | 230         | 2,907 |     |

■ 도내 경찰서별(연도별) 농작물 도난 발생 및 검거수

표 4-5. 도내 경찰서별(연도별) 농작물 도난 발생 및 검거수

(단위: 건)

| 구 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비 고<br>(‘16.9.30. 기준)  |
|--------|------|----|------|----|------|----|------|----|--|
|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
| 계      | 58   | 21 | 71   | 36 | 63   | 27 | 38   | 17 |  |
| 상당구    | 2    | 1  | 14   | 0  | 4    | 0  | 3    | 2  | * 도난발생건수<br>‘15년 대비<br>40% 감소<br>* 농작물도난발생<br>검거율:<br>(‘14) 51%<br>(‘15) 43%<br>(‘16) 45%<br>※보은(‘14.)<br>- 발생: 8,<br>검거: 16<br>보은 외<br>타군에서<br>발생한 사건을<br>보은경찰이<br>검거한 사건 |
| 홍덕구    | 11   | 1  | 8    | 2  | 7    | 7  | 5    | 2  |  |
| 청원구    | 3    | 0  | 3    | 1  | 3    | 1  | 4    | 2  |  |
| 충주시    | 19   | 13 | 9    | 2  | 9    | 2  | 8    | 2  |  |
| 제천시    | 1    | 0  | 4    | 3  | 4    | 4  | 1    | 1  |  |
| 보은군    | 3    | 0  | 8    | 16 | 0    | 0  | 0    | 0  |  |
| 옥천군    | 1    | 0  | 3    | 1  | 1    | 1  | 1    | 0  |  |
| 영동군    | 4    | 0  | 5    | 4  | 4    | 1  | 2    | 2  |  |
| 진천군    | 2    | 0  | 5    | 1  | 4    | 3  | 3    | 2  |  |
| 괴산·증평군 | 4    | 1  | 3    | 2  | 6    | 0  | 2    | 1  |  |
| 음성군    | 7    | 5  | 7    | 4  | 19   | 7  | 7    | 2  |  |
| 단양군    | 1    | 0  | 2    | 0  | 2    | 1  | 2    | 1  |  |

자료: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2016.10.18.)

1.3. 주요 성과(기대효과 등)

- 충주경찰서는 ‘12. 8. 19.’~’13. 3. 3. 까지 충주, 진천, 음성 등 농촌지역 빈집  
만을 골라 8차례 2,505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농촌 빈집털이 50대 검거
- ‘13. 7. 28일 영동 학산면 죽촌리 빈집 휘발류 절도범 검거
- ‘13. 8. 28일 영동 양강면 묵정리 정자 휴식 중인 농민 지갑에서 200만원  
상당 절취 검거

- '14. 3. 30일 영동 양산면 송호리 나무분재(20만원 상당) 절취 피의자 검거
- '14. 6. 4일 14:30분경 괴산 칠성면 사은리 산5-1번지 산양삼 재배지에서 11년근 200뿌리를 캐서 가방에 넣고 내려오는 도난사건 검거
- '14. 8. 9일 단양 적성면 기동리 513번지 조선뽕나무 1톤을 잘라 화물 차량에 적재 도주한 2명 검거
- '14.9 ~ 10. 14일까지 충북지역 인삼밭만 골라 5년근을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피의자 3명 검거
- '15. 6. 14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늘 20kg을 절취하는 등, '13. 7. ~ '15. 6. 14.까지 2년에 걸쳐 농산물 시설하우스에 침입하여 42회에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을 검거
- '15. 8. 8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건고추 100근(4자루)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고추·배추 등 170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한 것을 검거
- '16. 4. 14일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침입하여 농산물 모종(호박, 옥수수 등) 4판을 절취한 것을 검거
- '16. 8. 29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소재 비닐농막에 침입하여 참깨 1자루(30kg, 40만 원 상당), '16. 9. 21일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소재 농막에 침입하여 복숭아 40상자(160만 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검거

표 4-6. 시·군별 방법용 CCTV 관리현황

| 구 분 | 통합관제센터<br>설치여부<br>(설치년도) | CCTV 모니터링 현황                         | 비고                                  |
|-----|--------------------------|--------------------------------------|-------------------------------------|
| 계   | 설 치 8<br>미설치 3           |                                      |                                     |
| 청주시 | 2011년                    | 경찰3 (3교대)<br>모니터요원 12명 (4조 2교대)      | (청원구청 6층/구 상당구청<br>입주)              |
| 충주시 | 2011년                    | 경찰3 (3교대)<br>모니터요원 20명 (4조 2교대)      |                                     |
| 제천시 | 2011년                    | 경찰3 (3교대)<br>모니터요원 20명 (4조 2교대)      |                                     |
| 보은군 | 부                        | 보은경찰서 상황실<br>(상황실관리, 3교대)            | 2016년 관제센터 공사중<br>(군청 3층, 12월 초 준공) |
| 옥천군 | 부                        | 옥천경찰서 상황실<br>(상황실관리, 3교대)            | 2016년 관제센터 공사중<br>(군청 내, 11월 초 준공)  |
| 영동군 | 2016년                    | 경찰 1<br>모니터요원 8명, 직원 1명<br>(4조 2교대)  | 2016년 4월 준공<br><br>(선관위 건물)         |
| 증평군 | 2015년                    | 경찰 1 (주간)<br>모니터요원 12명 (4조 2교대)      | 2015년 12월 개관<br>(도안면사무소 앞 신축)       |
| 진천군 | 2012년                    | 경찰3 (3교대)<br>모니터요원 12명 (4조 2교대)      |                                     |
| 괴산군 | 2016년                    | 경찰1 (주간)<br>모니터요원 8명 (4조 2교대)        | 2016년 3월 개관<br>(군청뒤편)               |
| 음성군 | 2013년                    | 경찰3 (3교대)<br>모니터요원 12명 (4조 3교대)      |                                     |
| 단양군 | 부                        | 단양경찰서 상황실<br>모니터요원 1, 경찰<br>(3조 2교대) | 2017년 관제센터 구축예정                     |

주 1) 통합관제센터 설치시 국비 50%(6억) 지원(방송통신 설비시설 지원)

2) CCTV 유지관리비: 대당 110만원/연 (선로 사용료, 수선비, 인건비 등)



## 2. 옥천 안남면 무료 마을순환버스

### 2.1. 추진배경

- 대청호 인근에 자리한 옥천군 안남면은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두드러지며 주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12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인구가 1천5백 명에도 못 미치는 옥천군에서 가장 작은 면임.
- 2013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주민 비율이 38%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기도 함.
- 안남면은 인구가 적고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지역 공동체 활동이 면 단위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곳임.
- 안남면에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배바우도서관과 연계해서 마을을 순회하는 25인승 커뮤니티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
- 안남면의 마을순환버스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어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볼 가치가 있음.
- 안남면은 대청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년 5억 원 가량 배정받는데, 이 자금으로 마을순환버스를 구입하였고 운영 비용도 여기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마을별 숙원 사업 시행에 투자하거나 물품 구입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남면은 이 사업비를 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도움되는 일에 활용하고자 시도하였음.
- 매년 지원금의 30%~40% 상당을 떼어 면 전체 발전 사업에 투자해오고 있음.
- 2008년부터 마을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일이었음.

## 2.2. 추진경과

- 안남면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도를 모색하고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면 발전 방안에 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농촌 지역개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이장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음
  - 주민지원사업비를 컨설팅 추진에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처음에 반대에 부딪혔는데 대청호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임.
  - 안남면 주민들이 구성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소관 관청에 꾸준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 컨설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마을순환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컨설팅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것임.
  - 주민조사 결과 마을을 순회하는 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존 버스 노선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개별 마을들까지 다 순회할 수는 없었음.

- 버스를 도입하기까지의 난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구입한 버스를 일정 노선을 정해 운영하면서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음.
  - 2007년에 개관한 배바우도서관 버스로 먼내 마을들을 순회토록 하는 것이 타개책이 되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라 하더라도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노선 운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 배바우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책 읽는 사회문화 재단’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조성되었음.
  -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지역농협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주민들도 성금 1천 5백만 원을 전달함.
-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컨설팅, 주민 의견 수렴, 버스 도입 시 각종 절차적 문제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은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담당하였음.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재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2개 마을 이장과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1명 등 당연직 24명과 여기에서 추천한 선출직 12명 등 3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대청대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함.
  -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읍·면장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있음. 안남면의 경우에는 주민 자치기구 성격을

갖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서 매년 1억 5천만 원 내지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3. 추진 성과와 시사점

- 마을순환버스가 운행되면서 가장 큰 성과는 교통 접근성이 열악했던 마을에 미니버스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버스는 안남면 관내 마을을 하루 9회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안남면에는 조손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음. 과거에는 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이 일찍 끊기므로 도서관 시설이나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음.
  - 그러나 배마우도서관과 연계하여 버스가 마을까지 운행함으로 시간 보낼 곳이 없던 학생들도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음.
  - 마을순환버스 운행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게 된 것임.
- 안남면은 작은 인구 규모에도 면 단위의 공동체 활동이 타 지역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순환버스도 그에 기여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어머니학교 사례를 들 수 있음.
  - 안남면에서는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안남어머니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함.
  - 수업은 주 2회 면사무소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자원봉사

로 진행되며, 주로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함.

- 한글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머니학교는 지금껏 지역의 일에 나서지 않던 할머니들이 새로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매년 40~60명가량이 학생으로 입학하고 있는데, 마을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됨.
- 마을 간 화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산수화권역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면 전체 12개 마을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지역 소식이 담긴 ‘배바우마을신문’을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예전에 사라진 오일장을 토요일장터 형태로 되살려서 매월 넷째 주에 개설하고 있음.
- 이런 일련의 지역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마을순환버스 도입이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안남면은 매년 일정액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농촌지역과는 분명 여건이 다른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금을 보다 전략적인 용도에 활용하고자 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나름대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구별됨.
  -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대다수는 각 마을까지 지원금을 나누어서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비교하면 안남면의 사례는 귀감이 됨.

### 3.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 3.1.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여성안심귀가지원 서비스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늦은 귀가를 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이에 비례해 여성대상의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귀가를 도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3.2. 세부추진 현황

- 제천시는 심야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천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연계하여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시행함.

표 4-7.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  |
|-------|--|
| 지원 시간 | 평일(월~금) 심야시간 9시~11시  |
| 추진기관  |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
| 지원인력  | 3인 1조로 구성(여성방범대원 2명 포함)  |
| 지원예산  | 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지원<br>- 운영비(유류비 등): 월 10만원 지원<br>- 간식비: 1인 1일 3,000원 지원 |
| 지원 차량 |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소유 차량<br>5인승 승용차 2대  |

- 201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는 심야인 오후 9시부터 11시에 귀가하는 여성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지점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차량동행을 실시하고 있음.
-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의 민간봉사단체로써, 귀가지원서비스에는 여성방범대원 2명을 포함한 3명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고 있음.
- 귀가지원 차량은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소유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유류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에 놓여준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천시와 자율방범연합대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자율방범연합대 등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놓여준 오지마을 교통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2016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윤 정 미    연구 위 원  
김 정 하    연 구 원



## 차 례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213
- 2. 연구의 범위 ..... 215

### 제2장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 ..... 216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219
-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 222
-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 231

### 제3장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 1. 우리마을주치의제 ..... 251
- 2. 충청남도 ‘효도버스’ ..... 254

- 부록.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257

## 표 차례

---

### 제2장

|                                       |     |
|---------------------------------------|-----|
| 표 2-1. 충청남도 2015년 및 2016년 선택 항목 ..... | 217 |
|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  | 218 |
|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 .....     | 221 |
|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               | 222 |
| 표 2-5.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             | 224 |
| 표 2-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          | 225 |
| 표 2-7.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           | 226 |
| 표 2-8.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 227 |
| 표 2-9. 2016년 행복경로당 운영 .....           | 229 |
|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       | 231 |
|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   | 235 |
| 표 2-12. 주거환경 비율 .....                 | 236 |
| 표 2-13. 시·군별 의료시설 수 .....             | 237 |
| 표 2-14.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    | 238 |
| 표 2-15.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지역) .....    | 239 |
| 표 2-1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지역) .....   | 241 |
| 표 2-17.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지역) .....         | 243 |
| 표 2-18.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시설 수 .....        | 245 |
| 표 2-19. 면지역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 246 |
| 표 2-20.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        | 248 |
| 표 2-21. 행복경로당 운영 .....                | 249 |

### 제2장

|                    |     |
|--------------------|-----|
| 표 3-1. 추진 실적 ..... | 252 |
|--------------------|-----|

## 그림 차례

---

### 제2장

|                                 |     |
|---------------------------------|-----|
| 그림 2-1. 시·군별 주거환경정비 현황 .....    | 223 |
| 그림 2-2. 시·군별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 | 224 |
| 그림 2-3.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     | 225 |
| 그림 2-4. 시·군별 진료서비스 접근성 .....    | 226 |
| 그림 2-5.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 228 |
| 그림 2-6.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현황 .....   | 230 |
| 그림 2-7. 법정동리 및 행정리 .....        | 234 |
| 그림 2-8. 시·군별 주거환경 비율 비교 .....   | 236 |
| 그림 2-9. 의료시설접근성 양호지역(면지역) ..... | 240 |
| 그림 2-10.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지역 .....    | 242 |
| 그림 2-11. 진료서비스 면지역 혜택지역 .....   | 244 |
| 그림 2-12. 진료서비스 접근성 비율 .....     | 244 |
| 그림 2-13.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 247 |
| 그림 2-14. 구조구급출동 비율 비교 .....     | 247 |
| 그림 2-15. 읍·면·동별 행복경로당 운영 .....  | 250 |
| 그림 2-16. 행복경로당 운영 비율 비교 .....   | 250 |

### 제3장

|                              |     |
|------------------------------|-----|
| 그림 3-1.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모습 ..... | 253 |
|------------------------------|-----|



# 제 1 장

---

##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는 실정임.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지표도 포함되어 있기에,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5년 지자체별 선택 항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필요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6년 현재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현황에 대한 점검·평가와 서비스 기준 관련 지자체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의 발굴·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 2.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제고하며, 그 중 지표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으로 범위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함.
- 시간적 범위는 2016년 당해에 대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함.

### 2.2 내용적 범위

- 2015년 충청남도에서 확정된 선택 항목의 2016년 현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2015년 시·도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 항목의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 목표치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 첫째,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둘째,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분석
  - 셋째, 충청남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 제 2 장

###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sup>1)</sup>

##### 1.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 2015년 충청남도의 선택 항목 지표의 선정 기준과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 변경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선택 항목 선정 기준은 목표 적합성, 지속성, 관리가능성 대표성 시급성 5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를 1차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자료의 구득가능성, 농식품부 공통지표 중복성(차별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선택 항목을 선정하였음. 또한 충남 농어촌복지팀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항목의 적합도 판단, 지표별로 중복성이 있는 경우 대체 지표를 통해 유사지표를 통합하였음.
  - 목표 적합성: 삶의 질, 농어촌서비스 기준 목표에 적합하여야 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71~376. 재작성

- 관리가능성: 충남에서 지표 이행제고를 위한 노력 가능성
  - 대표성: 지역을 대표하는 지표
  - 시급성: 빠르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 지속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점
  - 구득가능성: 통계자료 구득 가능
  - 차별성: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지표와의 중복성 배제
- 기준에 의해 충청남도 2015년 선택부문은 주거 부문, 의료 부문, 안전 부문, 복지 부문 4개 부문의 4개 선택 항목이 최종 선정되었음. 그러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 2016년 목표치가 설정되었고, 점검을 위해 지표 항목의 내용에 대한 미미한 변경이 수립되었음.
- 주거 부문: 변경없음
  - 의료 부문: 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한 내용 삭제
  - 안전 부문: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면지역 법정리 95% 이상 향상
  - 복지 부문: 변경없음

표 2-1. 충청남도 2015년 및 2016년 선택 항목

| 부문 | 선택 항목     | 2015년 세부내용  | 2016년 변경 세부내용                         |
|----|-----------|---|---------------------------------------|
| 주거 | 주거환경      |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
| 의료 | 진료서비스 접근성 |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이 40% 이상으로 하고, 어려운 지역은 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
| 안전 | 구조구급출동    | 구조구급신고 발생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복지 | 노인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제공을 받을 수 있다.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 구분 | 항목           | 내용                                       | 점검방법  | '15년 실적   | 목표치   |       |       |       |      |
|----|--------------|--|---|---|-------|-------|-------|-------|------|
|    |              |  |   |   | '16   | '17   | '18   | '19   |      |
| 주거 | 1)주거 환경      |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 7.2%  | 11.7% | 14.0% | 16.9% | 19.8% |      |
| 의료 | 2)진료 서비스 접근성 | 면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 22.1% | 23%   | 24%   | 25%   | 25%  |
|    |              |  | (보완지표)의료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 (우리마을주치의 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 5.6%  | 5.6%  | 6.4%  | 7.2%  | 8.0% |
| 안전 | 3)구조구급 출동    | 구조구급 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 84.4% | 85%   | 86%   | 87%   | 88%  |
| 복지 | 4)노인 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 81.2%   | 85%   | 85%   | 90%   | 95%   |      |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sup>2</sup>

### 2.1 주거 부문

#### ■ 주거환경

-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함.
- 환경부가 실시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전수조사와 충청남도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정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총 석면 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중 2011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누적 사업량의 비율을 분석

### 2.2 의료 부문

#### ■ 진료서비스 접근성

-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40% 이상으로 함.
-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공간접근성 지표(2016년 기준) 활용
-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한 면지역 법정리에 대한 GIS 공간분석 실시
-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한 면지역 법정리 수/총 면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분석
- 의료취약 마을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보완지표로 사용
-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시행중인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법정리에 대해 분석
-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

<sup>2</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77~380 재작성

활권에 속하지 않은 법정리 수' 비율을 분석

- 최종 진료서비스 접근성은 총 면지역 법정리 중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  
활권에 속한 면지역 법정리 또는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의 비율을 분석

## 2.3 안전 부문

### ■ 구조구급출동

-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10분 이내 모든 면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공간접근성 지표(2016년 기준) 활용
- 구조구급시설 공간위치 데이터를 구축하고, 행정리 경계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
  - ※ 구조구급시설은 소방서, 119 안전센터, 출동가능 지역대 총칭
- 구조구급시설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면지역 행정리에 대한  
GIS 공간분석 실시
- 구조구급시설 접근성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조구급센터  
5km 범위 내 위치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 비율'로 계산

## 2.4 복지 부문

### ■ 노인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통하여 점검통계를 구축
-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읍면동 수/총 읍면동 수 비율로 계산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

| 구분 | 항목                                       | 내용                                   |   | 점검방법   | 기준 연도      | 구축 자료      | 조사 범위   | 지표 특성 |
|----|--|--------------------------------------|---|--|------------|------------|---------|-------|
| 주거 | 주거환경                                     |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   | (사업추진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 2016년      | 환경부 내부자료   | 읍면동     | H/W   |
| 의료 | 진료서비스접근성                                 | 면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 2016년      | 공간 데이터 구축  | 면지역 법정리 | H/W   |
|    |  |                                      | (보완지표)의료 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 2016년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 면지역 법정리 | S/W   |
| 안전 | 구조구급 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도착가능한 면지역 행정리 수/ 총 면지역 행정리 수)×100 | 2016년  |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 행정리        | 접근성     |       |
| 복지 | 노인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 2016년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 읍면동     | S/W   |

###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 3.1 주거 부문 이행실태

##### 3.1.1. 주거환경

(사업 추진 수 / 전체 주택 슬레이트 정비 사업 대상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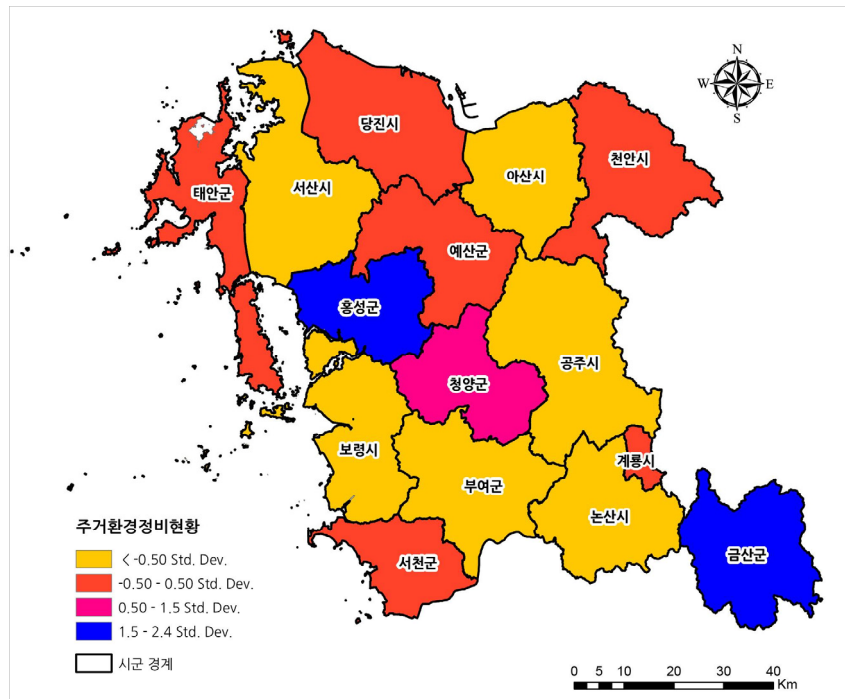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노후슬레이트 정비 현황 비율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 15.0%이고,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산군이 39.6%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 지표         | 구분   | 평균    | 총 정비사업 대상 수 | 노후 슬레이트 정비 현황 | 최대값         | 최소값        |
|------------|------|-------|-------------|---------------|-------------|------------|
| 주거환경 정비 현황 | 전체   | 15.0% | 68,765      | 8,818         | 금산군 (39.6%) | 서산시 (4.2%) |
|            | 시 지역 | 9.5%  | 37,147      | 2,886         | 천안시 (19.3%) | 서산시 (4.2%) |
|            | 군 지역 | 21.3% | 31,618      | 5,932         | 금산군 (39.6%) | 부여군 (7.5%) |



그림 2-1. 시·군별 주거환경정비 현황



주. 범례는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양의 값이 클수록 양호 의미

## 3.2 보건의료 부문 이행실태

### 3.2.1. 진료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 총\ 면지역\ 법정리수) \times 100$$

- 면지역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접근성은 전체 평균 22.4%이고, 시 지역(23.9%)이 군 지역(21.0%)보다는 약간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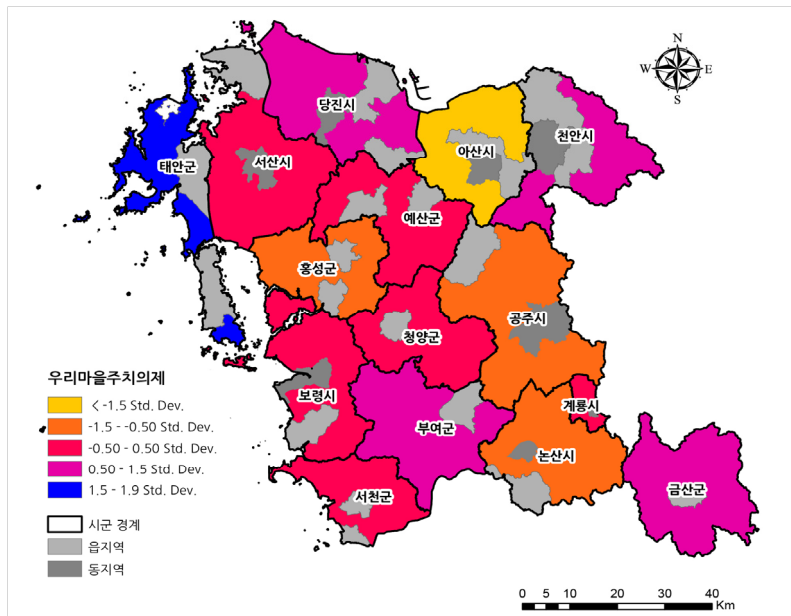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지에 한 달에 3번 의사 혹은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을 받는 면지역 법정리 대비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낮은 면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평가함.

표 2-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 지표        | 구분   | 접근성 낮은 면지역 법정리 수 | 우리마을 주치의 혜택받는 면지역 법정리 수 | 비율   |
|-----------|------|------------------|-------------------------|------|
| 우리마을 주치의제 | 전체   | 1270             | 118                     | 9.3% |
|           | 시 지역 | 619              | 55                      | 8.9% |
|           | 군 지역 | 651              | 63                      | 9.7% |

그림 2-3.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주. 범례는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양의 값이 클수록 양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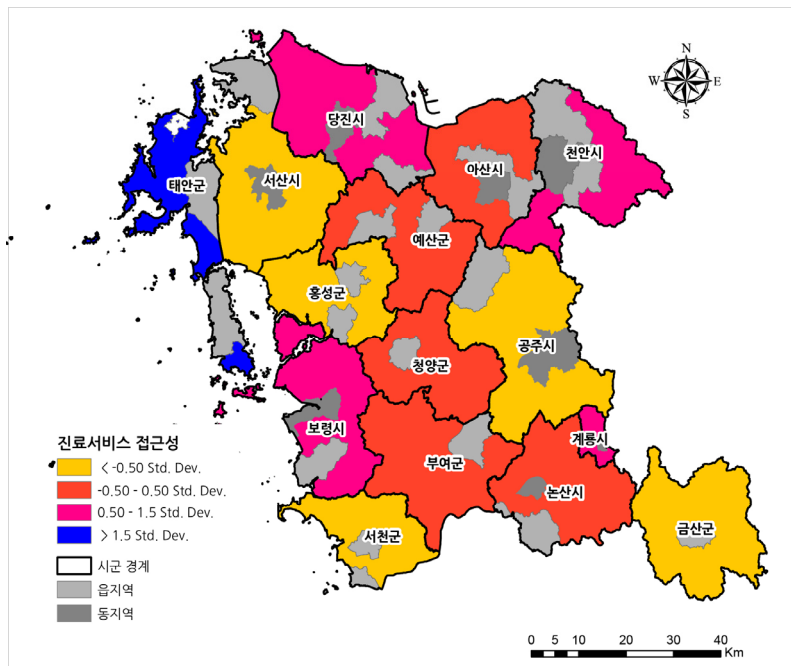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없는 면지역 법정리 중에서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지역 법정리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 의료시설접근성이 양호한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을 받는 법정리를 합하여 진료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면지역 법정리를 조사하였다.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지역 법정리의 비율은 충남 전체 29.6%로 나타남.

표 2-7.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 지표        | 구분   | 비율    | 총 면지역 법정리 수 | 법정리 수 (양호+혜택) | 최대값         | 최소값         |
|-----------|------|-------|-------------|---------------|-------------|-------------|
| 의료 시설 접근성 | 전체   | 29.6% | 1,637       | 485           | 태안군 (43.5%) | 홍성군 (24.5%) |
|           | 시 지역 | 30.6% | 813         | 249           | 계룡시 (35.7%) | 공주시 (25.2%) |
|           | 군 지역 | 28.6% | 824         | 236           | 태안군 (43.5%) | 홍성군 (24.5%) |

그림 2-4. 시·군별 진료서비스 접근성



주. 범례는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양의 값이 클수록 양호 의미

### 3.3 안전 부문 이행실태

#### 3.3.1. 구조구급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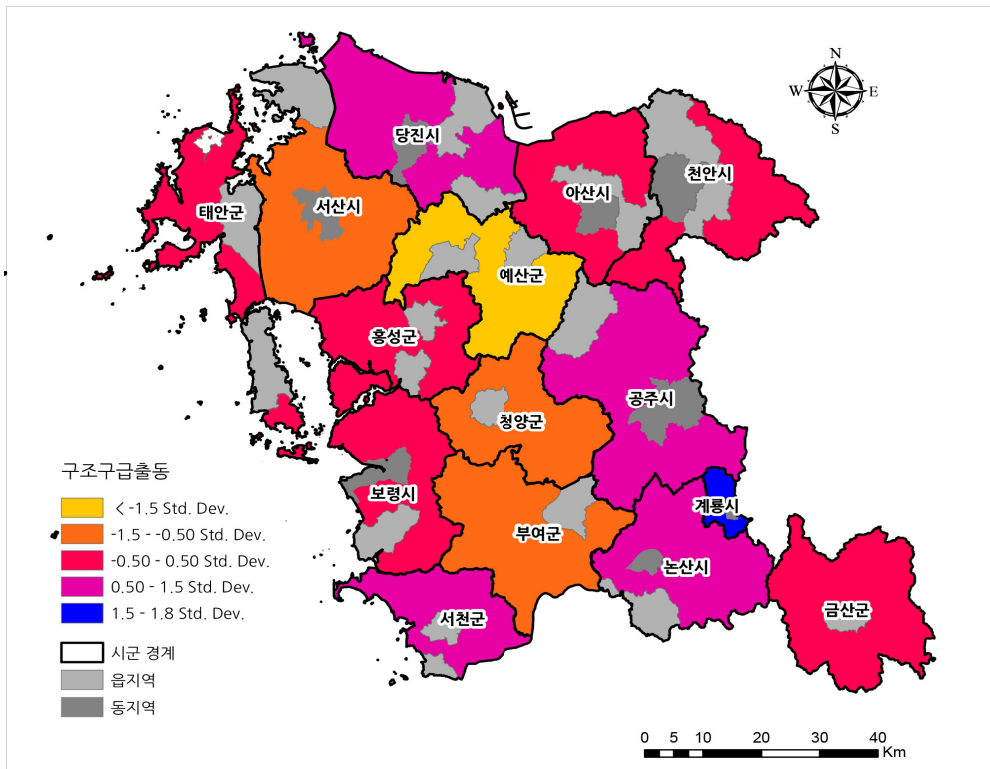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면지역 행정리/ 총 면지역 행정리)×100

- 구조구급센터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면지역 행정리 비율은 충청남도 평균 85.3%이고 시 지역은 89.4%, 군 지역 80.7%로 시 지역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계룡시 100%, 서천군 90.5%순으로 높으며, 군지역에서는 예산군 67.2%, 시 지역에서는 아산시 85.1%로 각각 낮게 나타났다.

표 2-8.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지표         | 구분   | 비율 평균 | 총 행정리 수 | 접근성 양호한 행정리 수 | 최대값          | 최소값         |
|------------|------|-------|---------|---------------|--------------|-------------|
|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전체   | 85.3% | 4,341   | 3,673         | 계룡시 (100.0%) | 예산군 (67.2%) |
|            | 시 지역 | 89.4% | 2,314   | 2,039         | 계룡시 (100.0%) | 아산시 (85.1%) |
|            | 군 지역 | 80.7% | 2,027   | 1,634         | 서천군 (90.5%)  | 예산군 (67.2%) |

그림 2-5.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주. 범례는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양의 값이 클수록 양호 의미

### 3.4 복지 부문 이행실태

#### 3.4.1. 노인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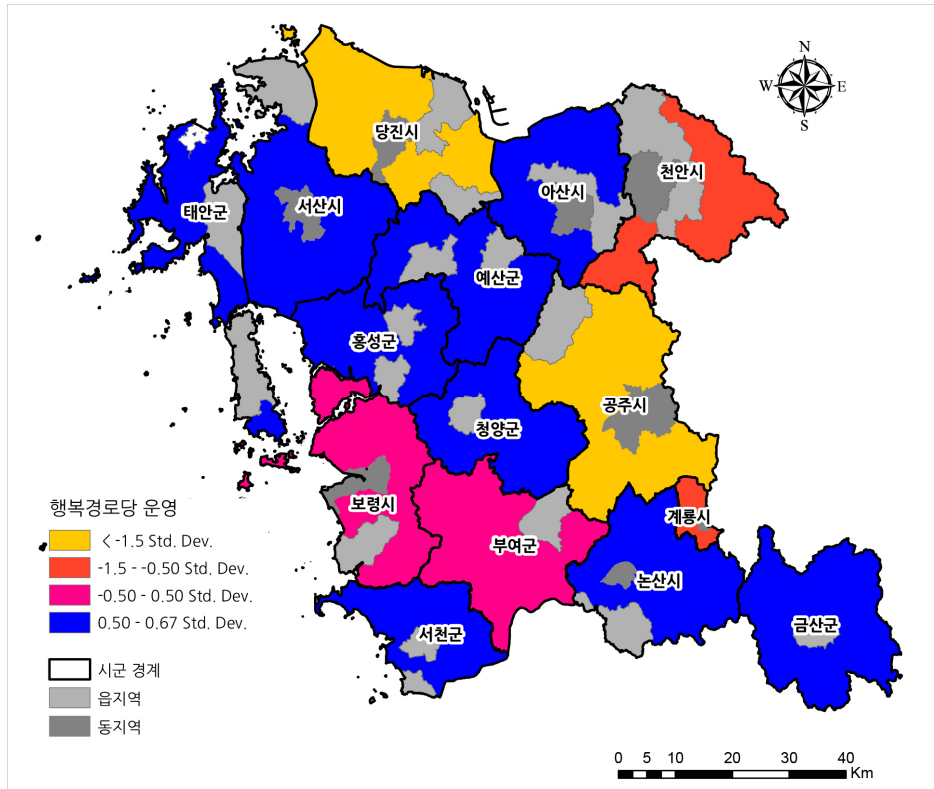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읍·면·동 수/시·군 총 읍·면·동 수)×100

- 행복경로당은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접근을 편리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
-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행정리 분석 충청남도 전체 183개소가 조성 운영 중이며, 천안시가 22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룡시가 2개소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음.

표 2-9. 2016년 행복경로당 운영

| 지표       | 구분   | 비율 평균 | 총 행복경로당 수 | 행복 경로당 운영 중인 읍면동 수 | 총 읍·면·동 수 | 최소값         |
|----------|------|-------|-----------|--------------------|-----------|-------------|
| 행복경로당 운영 | 전체   | 82.1% | 183       | 168                | 207       | 공주시 (25.0%) |
|          | 시 지역 | 69.6% | 101       | 92                 | 127       | 공주시 (25.0%) |
|          | 군 지역 | 96.4% | 82        | 76                 | 80        | 당진시 (75.0%) |

그림 2-6.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현황



주. 범례는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양의 값이 클수록 양호 의미

- 충남 전체의 평균 읍면동별 행복경로당 조성운영현황은 81.2%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 평균 72.4%로 군 지역 95.0%이 높아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읍면동별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 4.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

#### 4.1.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 조사범위 선정 기준

- 공간접근성지표의 조사범위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공간범위인 행정리를 최소단위로 하고, 해당지표 및 관련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법정리 단위까지로 확대해 적용함.
- 공간접근성지표 외에는 조사범위를 시·군단위로 함.

##### ■ 조사범위 현황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 구분  |     | 읍면동 | 법정(동)리 | 행정(동)리 |
|-----|-----|-----|--------|--------|
| 전체  | 전체  | 283 | 2,094  | 4,417  |
|     | 읍지역 | 24  | 335    | 964    |
|     | 면지역 | 137 | 1,637  | 3,331  |
|     | 동지역 | 122 | 122    | 122    |
| 시지역 | 전체  | 203 | 1,126  | 2,390  |
|     | 읍지역 | 13  | 191    | 550    |
|     | 면지역 | 68  | 813    | 1,718  |
|     | 동지역 | 122 | 122    | 122    |

| 구분  |     | 읍면동 | 법정(동)리 | 행정(동)리 |
|-----|-----|-----|--------|--------|
| 군지역 | 전체  | 80  | 968    | 2,027  |
|     | 읍지역 | 11  | 144    | 414    |
|     | 면지역 | 69  | 824    | 1,613  |
| 천안시 | 전체  | 42  | 178    | 457    |
|     | 읍지역 | 4   | 63     | 203    |
|     | 면지역 | 8   | 85     | 224    |
|     | 동지역 | 30  | 30     | 30     |
| 공주시 | 전체  | 37  | 188    | 272    |
|     | 읍지역 | 1   | 18     | 32     |
|     | 면지역 | 9   | 143    | 213    |
|     | 동지역 | 27  | 27     | 27     |
| 보령시 | 전체  | 21  | 111    | 245    |
|     | 읍지역 | 1   | 13     | 35     |
|     | 면지역 | 10  | 88     | 200    |
|     | 동지역 | 10  | 10     | 10     |
| 아산시 | 전체  | 30  | 163    | 417    |
|     | 읍지역 | 2   | 26     | 100    |
|     | 면지역 | 9   | 118    | 298    |
|     | 동지역 | 19  | 19     | 19     |
| 서산시 | 전체  | 24  | 138    | 278    |
|     | 읍지역 | 1   | 10     | 29     |
|     | 면지역 | 9   | 115    | 236    |
|     | 동지역 | 13  | 13     | 13     |
| 논산시 | 전체  | 24  | 185    | 435    |
|     | 읍지역 | 2   | 26     | 86     |
|     | 면지역 | 11  | 148    | 338    |
|     | 동지역 | 11  | 11     | 11     |

| 구분  |     | 읍면동 | 법정(동)리 | 행정(동)리 |
|-----|-----|-----|--------|--------|
| 계룡시 | 전체  | 4   | 15     | 54     |
|     | 면지역 | 3   | 14     | 53     |
|     | 동지역 | 1   | 1      | 1      |
| 당진시 | 전체  | 22  | 148    | 232    |
|     | 읍지역 | 2   | 35     | 65     |
|     | 면지역 | 9   | 102    | 156    |
|     | 동지역 | 11  | 11     | 11     |
| 금산군 | 전체  | 10  | 106    | 255    |
|     | 읍지역 | 1   | 9      | 39     |
|     | 면지역 | 9   | 97     | 216    |
| 부여군 | 전체  | 16  | 191    | 433    |
|     | 읍지역 | 1   | 22     | 53     |
|     | 면지역 | 15  | 169    | 380    |
| 서천군 | 전체  | 13  | 173    | 316    |
|     | 읍지역 | 2   | 24     | 52     |
|     | 면지역 | 11  | 149    | 264    |
| 청양군 | 전체  | 10  | 115    | 183    |
|     | 읍지역 | 1   | 11     | 26     |
|     | 면지역 | 9   | 104    | 157    |
| 예산군 | 전체  | 12  | 141    | 311    |
|     | 읍지역 | 2   | 25     | 83     |
|     | 면지역 | 10  | 116    | 228    |
| 홍성군 | 전체  | 11  | 177    | 342    |
|     | 읍지역 | 2   | 34     | 90     |
|     | 면지역 | 9   | 143    | 252    |
| 태안군 | 전체  | 8   | 65     | 187    |
|     | 읍지역 | 2   | 19     | 71     |
|     | 면지역 | 6   | 46     | 116    |



## 4.2 주거환경 지표 특성분석

### 4.2.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주택 슬레이트 정비

- 주거환경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정보를 기반으로 함.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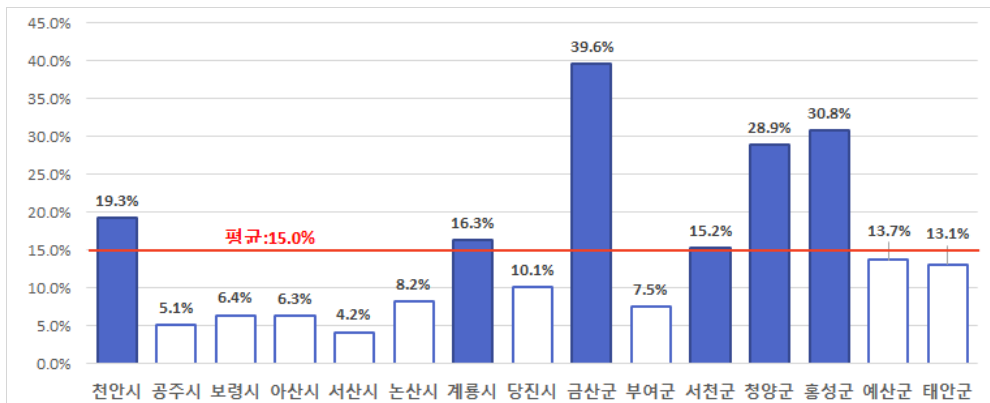
| 구분  | 슬레이트<br>사업대상 건물<br>수 | 2015년까지<br>누적 사업추진<br>수 | 2016년<br>사업추진 수 |
|-----|----------------------|-------------------------|-----------------|
| 전체  | 68,765               | 6,556                   | 2,262           |
| 시지역 | 37,147               | 1,920                   | 966             |
| 군지역 | 31,618               | 4,636                   | 1,296           |
| 천안시 | 3,073                | 438                     | 154             |
| 공주시 | 6,252                | 120                     | 197             |
| 보령시 | 5,432                | 271                     | 78              |
| 아산시 | 6,932                | 269                     | 166             |
| 서산시 | 4,413                | 122                     | 63              |
| 논산시 | 6,080                | 348                     | 149             |
| 계룡시 | 147                  | 15                      | 9               |
| 당진시 | 4,818                | 337                     | 150             |
| 금산군 | 6,446                | 2221                    | 330             |
| 부여군 | 9,841                | 531                     | 205             |
| 서천군 | 6,571                | 655                     | 346             |
| 청양군 | 2,124                | 489                     | 125             |
| 예산군 | 819                  | 194                     | 58              |
| 홍성군 | 2,473                | 241                     | 98              |
| 태안군 | 3,344                | 305                     | 134             |

4.2.2. 주거환경 특성분석

표 2-12. 주거환경 비율

| 구분  | 사업추진수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8,818 | -     | 15.0% | 39.6%          | 4.2%          |
| 천안시 | 592   | 19.3% | 9.5%  | 19.3%<br>(천안시) | 4.2%<br>(서산시) |
| 공주시 | 317   | 5.1%  |       |                |               |
| 보령시 | 349   | 6.4%  |       |                |               |
| 아산시 | 435   | 6.3%  |       |                |               |
| 서산시 | 185   | 4.2%  |       |                |               |
| 논산시 | 497   | 8.2%  |       |                |               |
| 계룡시 | 24    | 16.3% |       |                |               |
| 당진시 | 487   | 10.1% |       |                |               |
| 금산군 | 2,551 | 39.6% | 21.3% | 39.6%<br>(금산군) | 7.5%<br>(부여군) |
| 부여군 | 736   | 7.5%  |       |                |               |
| 서천군 | 1001  | 15.2% |       |                |               |
| 청양군 | 614   | 28.9% |       |                |               |
| 홍성군 | 252   | 30.8% |       |                |               |
| 예산군 | 339   | 13.7% |       |                |               |
| 태안군 | 439   | 13.1% |       |                |               |

그림 2-8. 시·군별 주거환경 비율 비교



- 충남 전체의 평균 주거환경 비율은 15.0%로 조사됨.
- 시·군별로 금산군(39.6%), 홍성군(30.8%), 청양군(28.9%)으로 주거환경개선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산시(4.2%), 공주시(5.1%), 아산시(6.3%)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주거환경현황은 9.5%인데 반해 군지역은 21.3%로 군지역의 주거환경개선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3 진료서비스 접근성 지표 특성분석

#### 4.3.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의료시설 지표평가 기준자료

- 의료시설은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에서 관리하는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함. 의료시설은 보건기관을 포함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병원의 기준을 갖춘 보건소)을 포함함.

표 2-13. 시·군별 의료시설 수

| 구분  | 의료시설 수 | 면지역 의료시설 수 | 접근성 양호한<br>법정리 수(면지역) |
|-----|--------|------------|-----------------------|
| 전체  | 2,017  | 1,637      | 367                   |
| 시지역 | 1,049  | 813        | 194                   |
| 군지역 | 968    | 824        | 173                   |
| 천안시 | 165    | 85         | 21                    |
| 공주시 | 167    | 143        | 27                    |
| 보령시 | 106    | 88         | 24                    |

| 구분  | 의료시설 수 | 면지역 의료시설 수 | 접근성 양호한<br>법정리 수(면지역) |
|-----|--------|------------|-----------------------|
| 아산시 | 150    | 118        | 32                    |
| 서산시 | 130    | 115        | 23                    |
| 논산시 | 176    | 148        | 38                    |
| 계룡시 | 15     | 14         | 4                     |
| 당진시 | 140    | 102        | 25                    |
| 금산군 | 106    | 97         | 17                    |
| 부여군 | 191    | 169        | 39                    |
| 서천군 | 173    | 149        | 28                    |
| 청양군 | 115    | 104        | 22                    |
| 예산군 | 177    | 143        | 26                    |
| 홍성군 | 141    | 116        | 25                    |
| 태안군 | 65     | 46         | 16                    |

### ■ 우리마을주치의제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보건 서비스제공,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독자 사업임.

표 2-14.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 구분  | 우리마을 주치의제<br>시행마을 수 | 면지역 우리마을<br>주치의제 시행<br>행정리 수 | 면지역 우리마을<br>주치의제 시행<br>법정리 수 |
|-----|---------------------|------------------------------|------------------------------|
| 전체  | 170                 | 145                          | 143                          |
| 시지역 | 88                  | 72                           | 70                           |
| 군지역 | 82                  | 73                           | 73                           |
| 천안시 | 14                  | 10                           | 10                           |
| 공주시 | 11                  | 10                           | 10                           |
| 보령시 | 11                  | 10                           | 10                           |
| 아산시 | 12                  | 10                           | 9                            |



| 구분  |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마을 수 | 면지역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수 | 면지역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수 |
|-----|------------------|------------------------|------------------------|
| 서산시 | 11               | 9                      | 9                      |
| 논산시 | 15               | 11                     | 11                     |
| 계룡시 | 2                | 2                      | 1                      |
| 당진시 | 12               | 10                     | 10                     |
| 금산군 | 10               | 10                     | 10                     |
| 부여군 | 16               | 15                     | 15                     |
| 서천군 | 14               | 12                     | 12                     |
| 청양군 | 10               | 9                      | 9                      |
| 예산군 | 12               | 11                     | 11                     |
| 홍성군 | 12               | 9                      | 9                      |
| 태안군 | 8                | 7                      | 7                      |

#### 4.3.2. 진료서비스지표 특성분석

- 면지역 의료시설접근성지표는 면지역 전체 법정리 수에 대한 1차 이상의 의료(진료)시설이 있는 법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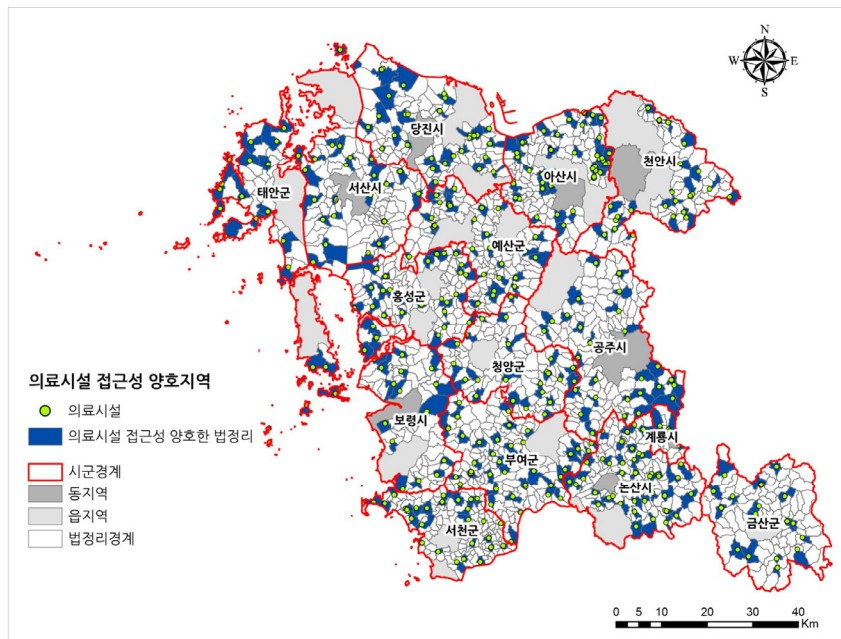
표 2-15.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지역)

| 구분  | 총 법정리 수 (면지역) | 접근성 양호한 법정리 수(면지역) | 비율    |
|-----|---------------|--------------------|-------|
| 전체  | 1,637         | 367                | 22.4% |
| 시지역 | 813           | 194                | 23.9% |
| 군지역 | 824           | 173                | 21.0% |
| 천안시 | 85            | 21                 | 24.7% |
| 공주시 | 143           | 27                 | 18.9% |
| 보령시 | 88            | 24                 | 27.3% |
| 아산시 | 118           | 32                 | 27.1% |
| 서산시 | 115           | 23                 | 20.0% |
| 논산시 | 148           | 38                 | 25.7% |

| 구분  | 총 법정리 수<br>(면지역) | 접근성 양호한<br>법정리 수(면지역) | 비율    |
|-----|------------------|-----------------------|-------|
| 계룡시 | 14               | 4                     | 28.6% |
| 당진시 | 102              | 25                    | 24.5% |
| 금산군 | 97               | 17                    | 17.5% |
| 부여군 | 169              | 39                    | 23.1% |
| 서천군 | 149              | 28                    | 18.8% |
| 청양군 | 104              | 22                    | 21.2% |
| 예산군 | 143              | 26                    | 18.2% |
| 홍성군 | 116              | 25                    | 21.6% |
| 태안군 | 46               | 16                    | 34.8% |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충남 전체 22.4%이고, 시지역 23.9%, 군 지역 21.0%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9. 의료시설접근성 양호지역(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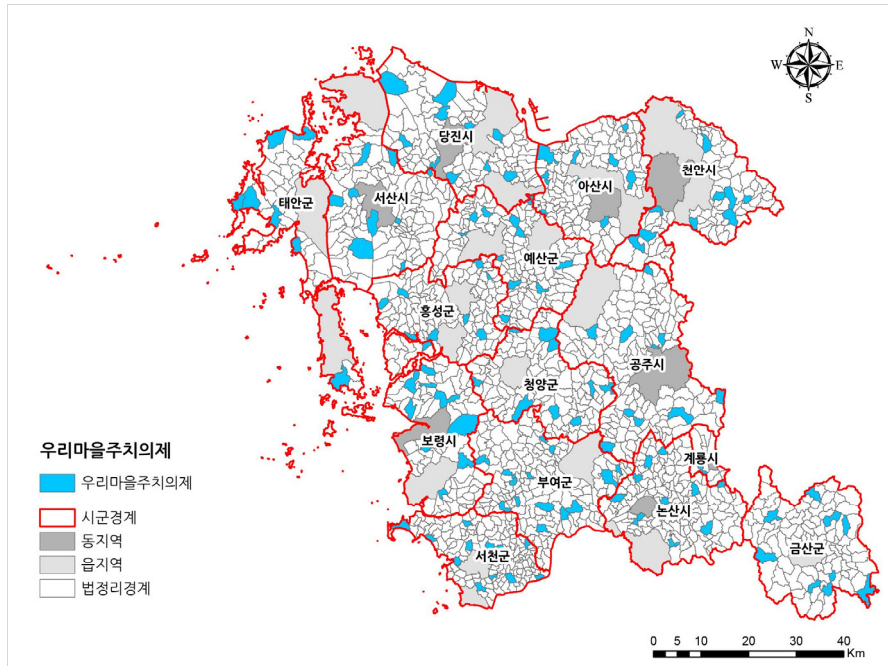


-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완지표로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 우리마을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정리를 포함함.
- 의료시설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는 총 118개로 전체 9.3%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을 받는 법정리 비율은 군지역(9.7%)이 시지역(8.9%) 조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지역)

| 구분  | 접근성 낮은 면지역<br>법정리 수 | 혜택<br>법정리 수 | 비율<br>(%) |
|-----|---------------------|-------------|-----------|
| 전체  | 1,270               | 118         | 9.3%      |
| 시지역 | 619                 | 55          | 8.9%      |
| 군지역 | 651                 | 63          | 9.7%      |
| 천안시 | 64                  | 8           | 12.5%     |
| 공주시 | 116                 | 9           | 7.8%      |
| 보령시 | 64                  | 6           | 9.4%      |
| 아산시 | 86                  | 5           | 5.8%      |
| 서산시 | 92                  | 8           | 8.7%      |
| 논산시 | 110                 | 9           | 8.2%      |
| 계룡시 | 10                  | 1           | 10.0%     |
| 당진시 | 77                  | 9           | 11.7%     |
| 금산군 | 80                  | 9           | 11.3%     |
| 부여군 | 130                 | 14          | 10.8%     |
| 서천군 | 121                 | 11          | 9.1%      |
| 청양군 | 82                  | 8           | 9.8%      |
| 예산군 | 117                 | 9           | 7.7%      |
| 홍성군 | 91                  | 8           | 8.8%      |
| 태안군 | 30                  | 4           | 13.3%     |

그림 2-10.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지역



- 의료시설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보완지표인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 면지역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균은 30.8%로 조사됨.
- 시·군별로 태안군(43.5%), 계룡시(35.7%), 천안시(34.1%), 보령시(34.1%) 순으로 면지역 진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성군(24.5%), 공주시(25.2%), 서천군(26.2%), 금산군(26.8%)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 평균이 31.6% 인데 반해 군지역은 29.9%로 군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지역)

| 구분  | 총 법정리 수<br>(면지역) | 면지역<br>법정리 수<br>(양호+혜택)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1,637            | 485                     | -     | 30.8% | 43.5%          | 24.5%          |
| 천안시 | 85               | 29                      | 34.1% | 31.6% | 35.7%<br>(계룡시) | 25.2%<br>(공주시) |
| 공주시 | 143              | 36                      | 25.2% |       |                |                |
| 보령시 | 88               | 30                      | 34.1% |       |                |                |
| 아산시 | 118              | 37                      | 31.4% |       |                |                |
| 서산시 | 115              | 31                      | 27.0% |       |                |                |
| 논산시 | 148              | 47                      | 31.8% |       |                |                |
| 계룡시 | 14               | 5                       | 35.7% |       |                |                |
| 당진시 | 102              | 34                      | 33.3% |       |                |                |
| 금산군 | 97               | 26                      | 26.8% | 29.9% | 43.5%<br>(태안군) | 24.5%<br>(홍성군) |
| 부여군 | 169              | 53                      | 31.4% |       |                |                |
| 서천군 | 149              | 39                      | 26.2% |       |                |                |
| 청양군 | 104              | 30                      | 28.8% |       |                |                |
| 예산군 | 143              | 35                      | 24.5% |       |                |                |
| 홍성군 | 116              | 33                      | 28.4% |       |                |                |
| 태안군 | 46               | 20                      | 43.5% |       |                |                |

그림 2-11. 진료서비스 면지역 혜택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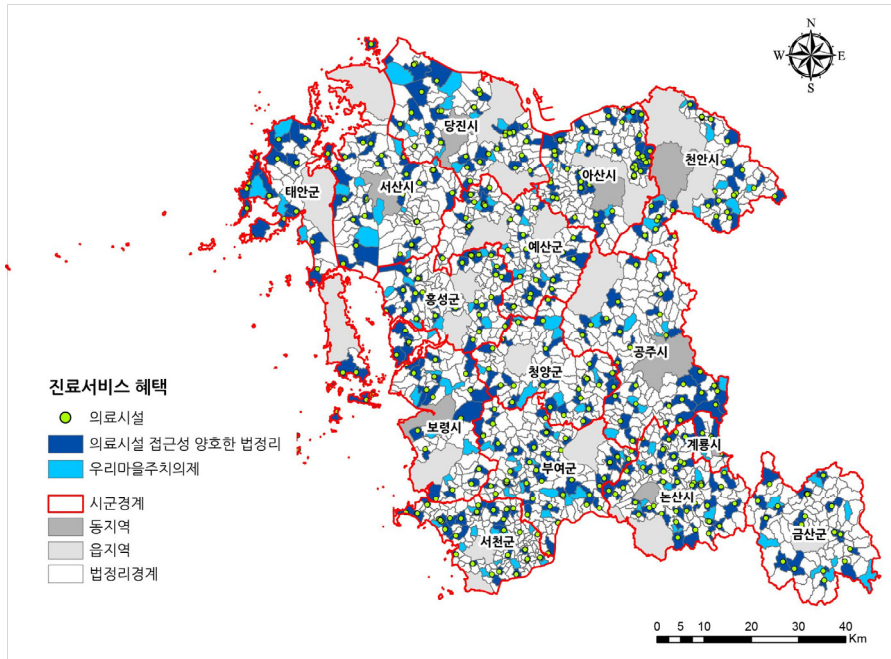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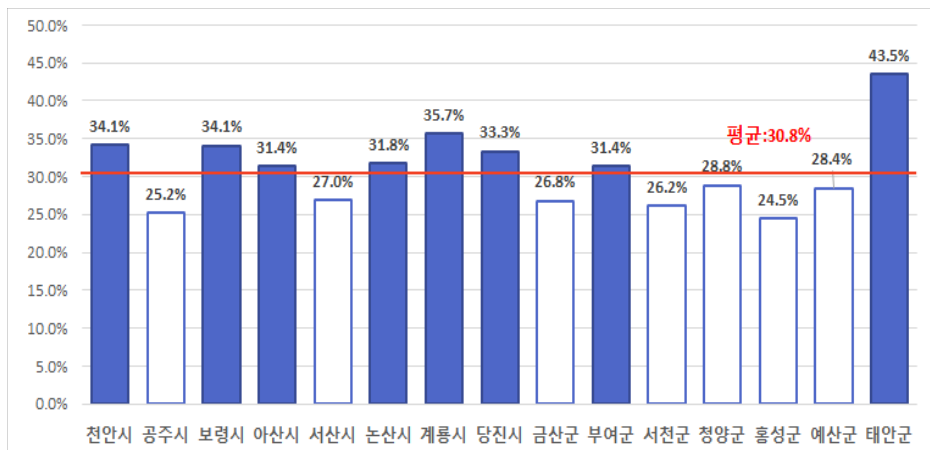


그림 2-12. 진료서비스 접근성 비율



## 4.4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분석

### 4.4.1. 지표평가 기준자료

#### ■ 면지역 구조구급센터

- 충청남도 인력배치된 구조구급센터 수는 전체 93개소이고, 이중 면지역에 구조구급센터 수는 53개소이다. 면지역 구조구급센터 중 시지역은 30개소, 군지역 23개소임.

표 2-18.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시설 수

| 구분  | 구조구급센터 | 면지역 구조구급센터 |
|-----|--------|------------|
| 전체  | 93     | 53         |
| 시지역 | 58     | 30         |
| 군지역 | 35     | 23         |
| 천안시 | 12     | 3          |
| 공주시 | 8      | 5          |
| 보령시 | 6      | 3          |
| 아산시 | 7      | 5          |
| 서산시 | 6      | 3          |
| 논산시 | 7      | 3          |
| 계룡시 | 2      | 2          |
| 당진시 | 10     | 6          |
| 금산군 | 4      | 3          |
| 부여군 | 5      | 4          |
| 서천군 | 6      | 4          |
| 청양군 | 4      | 3          |
| 홍성군 | 6      | 3          |
| 예산군 | 4      | 2          |
| 태안군 | 6      | 4          |

#### 4.4.2.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분석

- 구조구급센터 접근성지표는 전체 면지역 행정리 수에 대한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면지역 행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 구조구급센터 접근성이 양호한 면지역 행정리의 평균은 77.5%로 조사되었다. 시·군별로 예산군(52.6%), 태안군(67.2%)로 낮게 나타남.

표 2-19. 면지역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 구분  | 총 면지역 행정리 수 | 접근성 양호한 면지역 행정리 수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3,331       | 2,582             | -      | 78.2% | 100.0%          | 52.6%          |
| 천안시 | 224         | 156               | 69.6%  | 83.4% | 100.0%<br>(계룡시) | 69.6%<br>(천안시) |
| 공주시 | 213         | 175               | 82.2%  |       |                 |                |
| 보령시 | 200         | 158               | 79.0%  |       |                 |                |
| 아산시 | 298         | 234               | 78.5%  |       |                 |                |
| 서산시 | 236         | 173               | 73.3%  |       |                 |                |
| 논산시 | 338         | 313               | 92.6%  |       |                 |                |
| 계룡시 | 53          | 53                | 100.0% |       |                 |                |
| 당진시 | 156         | 143               | 91.7%  |       |                 |                |
| 금산군 | 216         | 162               | 75.0%  | 72.3% | 88.6%<br>(서천군)  | 52.6%<br>(예산군) |
| 부여군 | 380         | 262               | 68.9%  |       |                 |                |
| 서천군 | 264         | 234               | 88.6%  |       |                 |                |
| 청양군 | 157         | 110               | 70.1%  |       |                 |                |
| 홍성군 | 252         | 211               | 83.7%  |       |                 |                |
| 예산군 | 228         | 120               | 52.6%  |       |                 |                |
| 태안군 | 116         | 78                | 67.2%  |       |                 |                |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83.4%)이 군지역(72.3%)보다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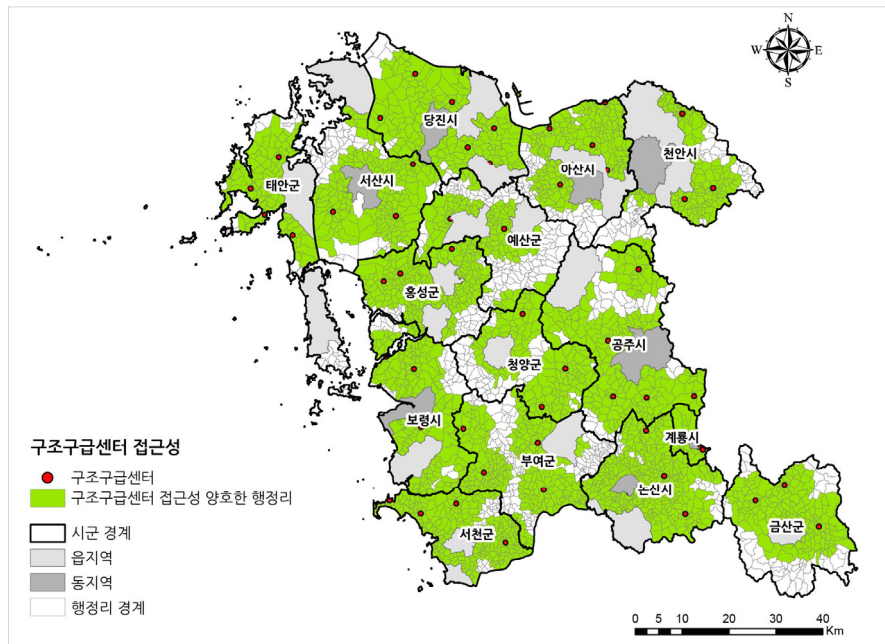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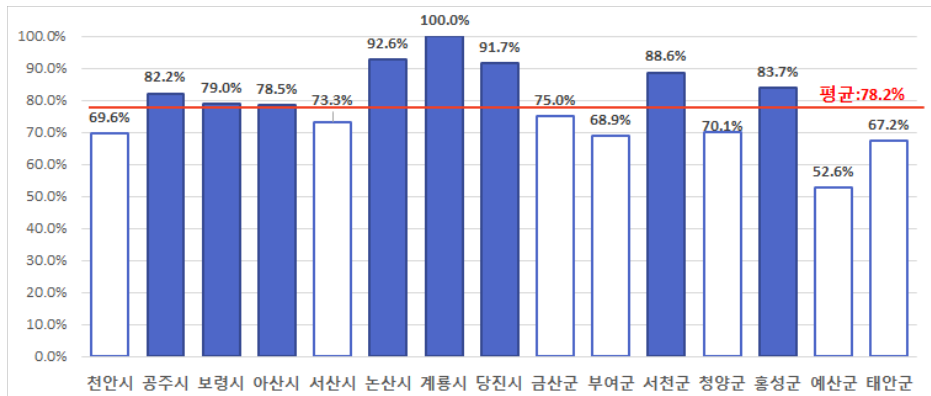


그림 2-14. 구조구급출동 비율 비교



## 4.5 노인복지 지표 특성분석

### 4.5.1. 지표평가 기준자료

- 충청남도 시·군별 행복경로당 조성 및 운영 현황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에서 내부자료를 구득하여 사용함.

표 2-20.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 구분  | 행복경로당 | 행복경로당 운영<br>읍·면·동 수 |
|-----|-------|---------------------|
| 전체  | 183   | 168                 |
| 시지역 | 101   | 92                  |
| 군지역 | 82    | 76                  |
| 천안시 | 22    | 19                  |
| 공주시 | 4     | 4                   |
| 보령시 | 21    | 15                  |
| 아산시 | 17    | 17                  |
| 서산시 | 15    | 15                  |
| 논산시 | 15    | 15                  |
| 계룡시 | 2     | 2                   |
| 당진시 | 5     | 5                   |
| 금산군 | 13    | 10                  |
| 부여군 | 12    | 12                  |
| 서천군 | 13    | 13                  |
| 청양군 | 10    | 10                  |
| 홍성군 | 12    | 11                  |
| 예산군 | 13    | 12                  |
| 태안군 | 9     | 8                   |

- 2016년 현재 충청남도 전체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지역 101개소, 군 지역 8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접근 편리성 분석을 위해 행복경로당이 운영되는 읍·면·동 수를 조사함. 충남 전체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은 168개, 시지역 92개, 군지역 76개임.

#### 4.5.2. 노인복지 특성분석

- 충남 전체의 행복경로당 읍·면·동별 운영 평균은 82.9%로 조사되었다. 시·군별로 공주시(25.0%), 당진시(35.7%)로 낮게 나타남.

표 2-21. 행복경로당 운영

| 구분  | 총 읍·면·동 수 |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 비율(%)  | 평균(%) | 최대값    | 최소값            |
|-----|-----------|------------------|--------|-------|--------|----------------|
| 전체  | 207       | 168              | -      | 83.7% | 100.0% | 21.4%          |
| 천안시 | 30        | 19               | 63.3%  | 72.4% | 100.0% | 25.0%<br>(공주시) |
| 공주시 | 16        | 4                | 25.0%  |       |        |                |
| 보령시 | 16        | 15               | 93.8%  |       |        |                |
| 아산시 | 17        | 17               | 100.0% |       |        |                |
| 서산시 | 15        | 15               | 100.0% |       |        |                |
| 논산시 | 15        | 15               | 100.0% |       |        |                |
| 계룡시 | 4         | 2                | 50.0%  |       |        |                |
| 당진시 | 14        | 5                | 35.7%  |       |        |                |
| 금산군 | 10        | 10               | 100.0% | 96.4% | 100.0% | 75.0%<br>(부여군) |
| 부여군 | 16        | 12               | 75.0%  |       |        |                |
| 서천군 | 13        | 13               | 100.0% |       |        |                |
| 청양군 | 10        | 10               | 100.0% |       |        |                |
| 홍성군 | 11        | 11               | 100.0% |       |        |                |
| 예산군 | 12        | 12               | 100.0% |       |        |                |
| 태안군 | 8         | 8                | 100.0% |       |        |                |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지역의 행복경로당 운영현황은 72.4%인데 반해 군지역은 95.0%로 군지역의 행복경로당 운영 비율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5. 읍·면·동별 행복경로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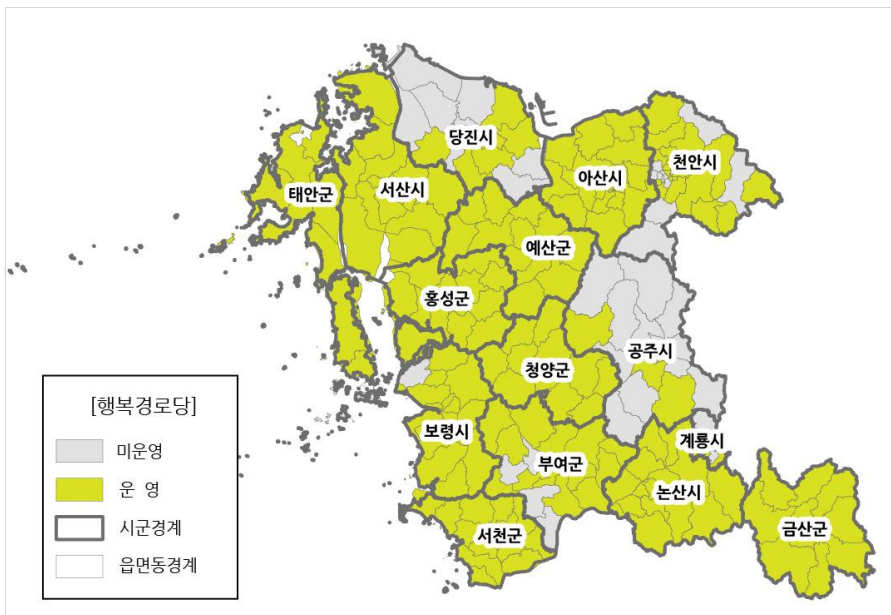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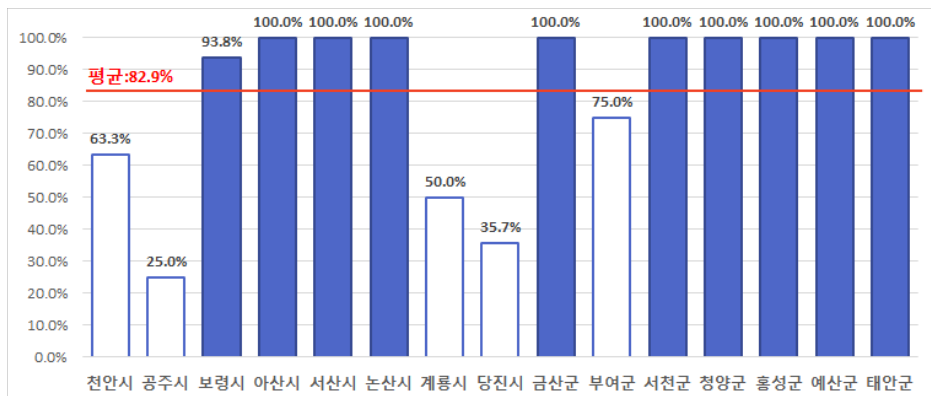


그림 2-16. 행복경로당 운영 비율 비교



## 제 3 장

---

###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 1. 우리마을주치의제

##### 1.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민선5기 공약으로 추진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 독자사업임.
-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보건 서비스제공,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농어촌 지역 의료취약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 마을에 매달 한 차례 이상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 진료·상담은 물론, 각종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

##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1월 ~ 12월
- 사업규모: 273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주관: 도(보건정책과), 시·군(보건소 등)
- 사업내용
  - 마을별 월 3회 이상 방문(월 2회 의사 참여 의무)
  - 내과·한방·치과진료 등
  -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및 65세 이상 우울척도검사 실시
  - 보건교육 실시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또는 선정기준: 의료취약지역 마을(시·군 선정)

## 1.3. 추진실적

표 3-1. 추진 실적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사업개소 | 169개 마을 | 169개 마을 | 170개 마을 |
| 사업비  | 273백만 원 | 273백만 원 | 273백만 원 |

그림 3-1.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모습



자료: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h59&folder=2&list\\_id=12533644](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h59&folder=2&list_id=12533644)

#### 1.4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자가 관리능력 향상 기대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2. 충청남도 ‘효도버스’<sup>3</sup>

### 2.1 사업 목적 및 내용

- 충청남도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Demend Responsive Transport)’가 ‘효도버스’ 운영
- 효도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통시스템으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인 ‘다인 수송’과 ‘문전 서비스’ 결합
-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이 전화로 이용을 신청하면, 효도버스인 중·소형 승합차가 마을로 달려가 읍·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
- 이용 요금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300원)으로 시내버스와 무료 환승 가능
- 도는 농어촌 지역 고령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스템 도입
- 예산: 3억 원 예산 확보, 시·군에 차량 구입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운행 관리비, 모니터링비 등 지원

### 2.2 사업 추진실적

- 충청남도 효도버스는 특히 2015년 당진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해나루 행복버스)을 시작으로 2016년 효도버스 사업을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홍성 등 5개 시·군 8개 지역으로 확대·추진

<sup>3</sup> 충남넷, 도정뉴스, 충남 ‘효도버스’ 올해 더 ‘뽕뽕’해진다, 2016.01.13



- 성과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6년 천안시 북면 8개 마을과 병천면 4개 마을, 동면 4개 마을, 성남면 4개 마을, 보령시 주사면 주야리 일원, 논산시 연무읍 3개 마을,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당진시 대호지면 5개 마을, 홍성군 갈산면 8개 마을에서 호도버스 운영

### 2.3 주요성과

-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5.7점으로 높은 만족도
- 응답자의 86.7%는 호도버스 운영에 따라 외출이 증가했다고 답함
- 예약이 쉽고(97.8%), 환승도 편리하며(100%), 시간을 잘 지켰다고 응답(99.4%)하며, 100%가 DRT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희망
- 호도버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호도버스가 시내버스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충청남도 홍성군 사례

- 홍성군은 교통복지서비스의 최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소형버스인 “마중버스DRT” 운행
- “마중버스DRT”는 노선과 정시성이 없이 승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으로 기존 대중교통체계에 복지개념을 도입 사업
- 홍성군은 2015년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75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8,750만원 투입되어 버스구입 및 운영
- 운행되는 마중버스는 15인승 1대로 결성면 3개 마을(평산, 주교, 원형산), 갈산면 4개 마을(운정, 신곡, 사혜, 원와) 주민들의 집 앞에서 환승거점인 갈산면 소재지 버스승강장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왕복 운행하며, 사전에 콜센터에 전화 예약하면 이용 가능
- 농어촌버스기본요금(1,300원)으로 이용가능하며, 무료 환승으로 타 지역 이동 가능



자료: 충남넷, 시·군뉴스, 홍성 오지마을 마중버스 달린다, 2016.08.29

## 부록.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부문    | 주거부문  | 보건의료부문    |           |         | 응급부문    | 복지부문   |
|-------|-------|-----------|-----------|---------|---------|--------|
| 항목    | 주거환경  | 진료서비스 접근성 |           |         | 구조구급 출동 | 행복 경로당 |
|       |       | 의료시설 접근성  | 우리마을 주치의제 |         |         |        |
| 조사 범위 | 시·군   | 면지역 법정리   | 면지역 법정리   | 면지역 법정리 | 면지역 행정리 | 시·군    |
| 천안시   | 19.3% | 24.7%     | 12.5%     | 34.1%   | 69.6%   | 63.3%  |
| 공주시   | 5.1%  | 18.9%     | 7.8%      | 25.2%   | 82.2%   | 25.0%  |
| 보령시   | 6.4%  | 27.3%     | 9.4%      | 34.1%   | 79.0%   | 93.8%  |
| 아산시   | 6.3%  | 27.1%     | 5.8%      | 31.4%   | 78.5%   | 100.0% |
| 서산시   | 4.2%  | 20.0%     | 8.7%      | 27.0%   | 73.3%   | 100.0% |
| 논산시   | 8.2%  | 25.7%     | 8.2%      | 31.8%   | 92.6%   | 100.0% |
| 계룡시   | 16.3% | 28.6%     | 10.0%     | 35.7%   | 100.0%  | 50.0%  |
| 당진시   | 10.1% | 24.5%     | 11.7%     | 33.3%   | 91.7%   | 35.7%  |
| 금산군   | 39.6% | 17.5%     | 11.3%     | 26.8%   | 75.0%   | 100.0% |
| 부여군   | 7.5%  | 23.1%     | 10.8%     | 31.4%   | 68.9%   | 75.0%  |
| 서천군   | 15.2% | 18.8%     | 9.1%      | 26.2%   | 88.6%   | 100.0% |
| 청양군   | 28.9% | 21.2%     | 9.8%      | 28.8%   | 70.1%   | 100.0% |
| 홍성군   | 30.8% | 18.2%     | 7.7%      | 24.5%   | 83.7%   | 100.0% |
| 예산군   | 13.7% | 21.6%     | 8.8%      | 28.4%   | 52.6%   | 100.0% |
| 태안군   | 13.1% | 34.8%     | 13.3%     | 43.5%   | 67.2%   | 100.0% |



# 2016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이 민 수    연 구 위 원  
이 정 희    전문연구원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 265
-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 266
- 3.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 ..... 266

### 제2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 268
-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272
-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279

### 제3장 요약 및 제언

- 1. 2016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93
- 2.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296

### 제4장 삶의 질 우수사례 - 완주군 로컬푸드

- 1. 사례 개요 ..... 298
- 2. 사례 내용 ..... 299
- 3. 주요 성과 ..... 303
- 4. 시사점 ..... 304

- 참고문헌 ..... 307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2016년) ..... | 272 |
| 표 2-2. 독거노인 돌봄 .....                  | 281 |
| 표 2-3. 노인 치매 돌봄 .....                 | 283 |
| 표 2-4. 어울림학교 .....                    | 285 |
| 표 2-5. 그룹홈 혜택 .....                   | 288 |
| 표 2-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              | 290 |
| 표 2-7.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           | 292 |

### 제4장

|                                       |     |
|---------------------------------------|-----|
| 표 4-1. 완주군 로컬푸드 단계별 추진 내용 .....       | 300 |
| 표 4-2. 완주군 로컬푸드 분야별 정책 추진 체계 .....    | 302 |
| 표 4-3.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2015년)2 ..... | 304 |



## 그림 차례

---

### 제1장

|                                       |     |
|---------------------------------------|-----|
|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 270 |
|---------------------------------------|-----|

### 제4장

|                           |     |
|---------------------------|-----|
| 그림 4-1. 완주군 지역결속 전략 ..... | 302 |
|---------------------------|-----|



# 제 1 장

## 서론

### 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시행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하도록 규정하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립함.
- 전라북도는 정부 계획에 발 맞추어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농어촌 주민의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 2015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4년에 종료, 새로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추진 중
- 2015년 개편안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
  - 핵심 항목은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며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에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
  -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운용

## 3.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

- 핵심 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
  - 핵심 항목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 장기 목표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기간(2015-19) 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제시
  -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점검(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 실태,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용
  - 선택 항목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항목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핵심 항목의 점검방법을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 여건과 선택 항목 기준에 맞게 점검방법을 정해서 운용

## 제 2 장

---

###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 1.1. 목적 및 원칙

###### ■ 전북 특성을 반영한 지표

-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 핵심 정책 아젠다로 선정되어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함
- 전라북도의 모든 실국 사업을 고려하지만, 농수산국의 소관 업무로 구체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타도와 차별화되어 전라북도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를 선택 항목으로 우선 고려
- 과소화 및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에 비해 문화·복지 향유기회가 차단된 전라북도 농촌의 문화·복지 향유 기반 확대와 관련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 ■ 농어촌 주민 체감형 지표

-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시설 중심의 지표를 지양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 및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 개발
  - 농어촌 주민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동호회 활동, 체육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 ■ 국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부합하는 지표

- 국가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함.
  - 국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핵심 목적과 부합되도록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개발
- 전라북도 농어촌 공공 서비스 중에서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지표

### ■ 지표 특성 고려

- 지표 대표성
  - 전라북도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 선정
- 자료 확보 용이성
  - 지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
- 지표 신뢰성
  - 지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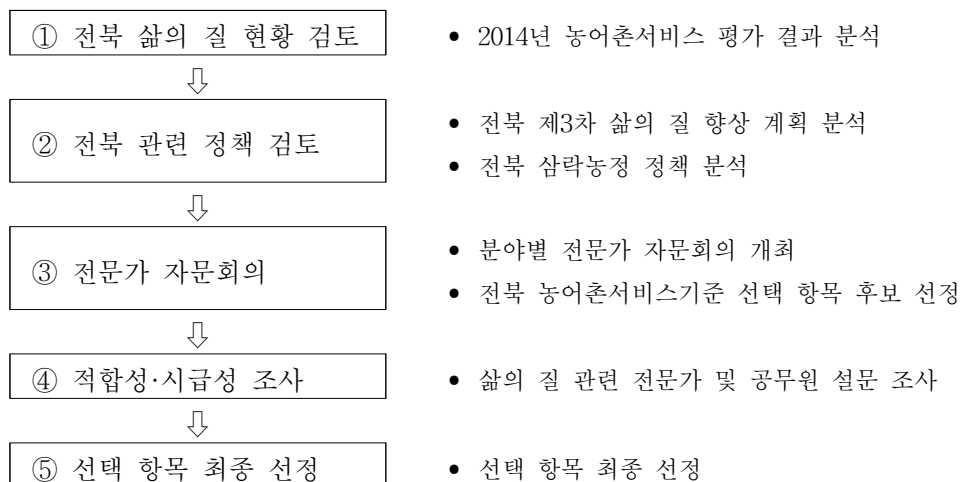
- 지자체 노력 가능성
  -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에서 농어촌서비스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가능성이 높은 지표

## 1.2.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2015년 연구(이민수·이중섭, 2015)를 통해 전라북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은 아래의 5단계를 통해 선정함.
  - [1단계]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분석
  - [2단계]전북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민선6기 핵심 정책인 전북 삼락농정 정책 분석
  - [3단계]전북 선택 항목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4단계]삶의 질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 선택 항목의 적합성과 시급성 조사
  - [5단계]설문 결과와 지표 선정 기준에 부합한 선택 항목 최종 결정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 최종 선택 항목 선정

- 2015년 연구를 통해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후보항목에 대한 적합성, 시급성, 차별성 분석 결과와 자료 확보 가능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6개 부문 8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독거 노인 돌봄, 노인 치매 돌봄을 선정함.
  -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기초 학력, 어울림학교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기초 학력은 자료 미비로 최종적으로 제외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그룹홈, 석면 슬레이트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석면 슬레이트는 자료 미비로 최종적으로 제외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항목을 선정함.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동호인 항목을 선정
  - 안전 부문에서는 어업인 안전 항목을 선정함.
  
- 2015년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모니터링을 위해 2016년에 수행할 본 연구에서는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함.
  -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전북 노인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2015년 통계를 산출하였음. 그러나 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2016년 통계 산출이 불가능 하였음. 따라서 2016년 수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서 삭제함
  - ‘어업인 안전’의 경우 2016년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와 2015년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가 동일하였음. 안전 공제 가입 어업인 수와 행정 예산과 지원 인원은 2015년부터 변화가 없음. 따라서 매년 실적이 동일하므로 2016년 수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서 삭제함.

표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2016년)

| 구분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비고       |
|------------|---------|---|----------|
| 보건<br>복지   | 독거노인 돌봄 |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 노인치매 돌봄 |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 교육<br>여건   | 어울림학교   |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어울림학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정주<br>생활기반 | 그룹홈     |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        |
| 경제·일자리     | 노인 일자리  |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2016년 제외 |
| 문화·여가      | 통합문화이용권 |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 -        |
|            | 문화 동호인  |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
| 안전         | 어업인 안전  | 어업인의 안전 공제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한다.     | 2016년 제외 |

##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2.1. 독거노인 돌봄

#### ■ 선정배경

- 전라북도 농어촌 노인은 전체 인구의 16% 정도이고, 이는 16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비율임. 특히, 전북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임실 등 6개 군부는 노인 인구 30% 초과)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 독거노인은 거동이나 소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전북 농어촌 독거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도모

**■ 내용**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자 / 독거 노인수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 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독거노인<br>돌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li> <li>- 농어촌 노인 자립 생활 지원 강화</li> <li>-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li> <li>-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li> <li>- 고령농가 건강 지원 서비스 확충</li> </ul> |

## 2.2. 노인 치매 돌봄

### ■ 선정배경

- 전라북도 농어촌 노인은 전체 인구의 16% 정도이고, 이는 16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비율임. 특히, 전북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임실 등 6개 군부는 노인 인구 30% 초과)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치매 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치매 노인의 많은 경우가 주변에서 돌봄을 담당할 가족 등이 없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전북 농어촌 치매 독거 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도모

### ■ 내용

농어촌 지역의 중증 치매 노인은 시·군 내에서 치매 극복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점검방법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 중증 치매 환자 노인 수) × 100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노인 치매 돌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li> <li>- 농어촌 노인 자립 생활 지원 강화</li> <li>-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li> <li>-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li> <li>- 고령농가 건강 지원 서비스 확충</li> </ul> |

## 2.3. 어울림학교

### ■ 선정배경

- 전라북도에서 학생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전체 761교 중 213교이며, 이 중 96.2%가 농어촌 학교임.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는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이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
- 따라서 도시와 차별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으로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 내용

읍·면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 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 학교 수) × 100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도 교육청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어울림 학교 | - 어울림학교 지정·운영  |           |

## 2.4. 그룹홈

### ■ 선정배경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 이용 시설의 지역별 설치 비율을 보면, 시부가 총 31개소로 전체 이용시설의 72.1%를 차지하고, 군부는 12개소로 27.9%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부족한 노인 복지 인프라를 해소하려면 경로당을 활용한 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함.

### ■ 내용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점검방법

- (그룹홈 혜택자 수 / 그룹홈 수요자) × 100

## ■ 점검수단

- 행정 자료: 지자체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그룹홈   | -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 |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br>- 고령농가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

## 2.5. 통합문화이용권

### ■ 선정배경

- 농어촌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 향유 접근성도 부족함.
-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 내용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 계층은 문화 관람 및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점검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금액) × 100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통합문화<br>이용권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br>- 생활문화센터 조성 |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br>운영 |

## 2.6. 문화 동호인

### ■ 선정배경

- 농어촌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 향유 접근성도 부족함.
-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따라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가 필요함.

### ■ 내용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점검방법

- (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 농어촌 인구 수) ×100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삼락농정  |
|--------|--|--|
| 문화 동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li> <li>- 생활 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문화예술 기반 확충</li> <li>-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li> </ul> |

##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3.1. 독거노인 돌봄

#### ■ 서비스 기준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자 / 독거노인 수) × 100

#### ■ 자료원

- 독거노인 수: 통계청(KOSIS)
  - 시·군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2016년)
  -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자 수 + 그룹홈 경로당 이용 노인 수(1개소당 10명으로 추정)

##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5년 독거노인 수는 58,214명으로 이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1.5%인 18,310명임.
  - 2016년 독거노인 돌봄 비율은 2015년 24.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돌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음.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 26.2%의 독거노인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음.
  - 2015년 24.1%에 비해 약 2.1%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15.0%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은 도농통합시에 비해 14% 정도 높은 39.9%의 독거노인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음.
  - 2015년 42.3%에 비해 약 2.4% 정도 감소하였으며, 군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 군지역의 경우 진안군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이 100%를 상회하였고, 고창군이 23.3%로 가장 낮았음.

표 2-2. 독거노인 돌봄

| 구분  | 독거<br>노인 수 | 돌봄 서비스<br>혜택자 수 | 비율(%) | 평균(%) | 2015년<br>모니터링 결과 |       |
|-----|------------|-----------------|-------|-------|------------------|-------|
|     |            |                 |       |       | 가입률              | 평균(%) |
| 전체  | 58,214     | 18,310          | -     | 31.5% | -                | 31.5% |
| 군산시 | 8,233      | 1,440           | 17.5  | 26.2% | 20.0%            | 24.1% |
| 익산시 | 9,780      | 1,465           | 15.0  |       | 14.9%            |       |
| 정읍시 | 6,910      | 1,465           | 21.2  |       | 17.2%            |       |
| 남원시 | 5,088      | 1,835           | 36.1  |       | 27.7%            |       |
| 김제시 | 5,954      | 3,220           | 54.1  |       | 46.8%            |       |
| 완주군 | 3,455      | 1,950           | 56.4  | 39.9% | 66.0%            | 42.3% |
| 진안군 | 1,866      | 2,215           | 118.7 |       | 98.0%            |       |
| 무주군 | 1,809      | 725             | 40.1  |       | 89.1%            |       |
| 장수군 | 1,651      | 450             | 27.3  |       | 25.7%            |       |
| 임실군 | 2,256      | 740             | 32.8  |       | 28.3%            |       |
| 순창군 | 2,460      | 660             | 26.8  |       | 24.7%            |       |
| 고창군 | 4,608      | 1,075           | 23.3  |       | 22.5%            |       |
| 부안군 | 4,144      | 1,070           | 25.8  |       | 23.2%            |       |

### 3.2. 노인 치매 돌봄

#### ■ 서비스 기준

- 농어촌 지역의 중증 치매 노인은 시·군 내에서 치매 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점검방법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 중증 치매 환자 노인 수) × 100

## ■ 자료원

- 치매 노인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2014년 시·군별 치매 유병률을 기초로 하여 2015년 치매 노인 수를 추정함.
  - 치매 노인 수 = 중증 치매(SCI) 노인 + 경증 치매(MCI) 노인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내자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

##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치매 노인 수는 80,957명으로 이 중 치매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5.0%인 28,368명임.
  - 2016년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비율은 2015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개선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 34.3%의 치매 노인이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음.
  - 2015년 33.5%에 비해 약 0.8%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정읍시의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30.9%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은 도농통합시에 비해 2% 정도 높은 36.3%의 치매 노인이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음.
  - 이는 2015년 33.1%에 비해 약 1.2% 정도 증가한 비율로, 군지역의 경우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군지역의 경우 순창군의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31.7%로 가장 낮았음.

표 2-3. 노인 치매 돌봄

| 구분  | 치매 노인 수 | 돌봄 서비스혜택자 수 | 비율(%) | 평균(%) | 2015년 모니터링 결과 |       |
|-----|---------|-------------|-------|-------|---------------|-------|
|     |         |             |       |       | 비율(%)         | 평균(%) |
| 전체  | 80,957  | 28,368      | -     | 35.0% | -             | 34.0% |
| 군산시 | 13,139  | 4,061       | 30.9  | 34.3% | 30.3%         | 33.5% |
| 익산시 | 14,954  | 4,891       | 32.7  |       | 32.7%         |       |
| 정읍시 | 8,886   | 3,773       | 42.5  |       | 39.0%         |       |
| 남원시 | 6,509   | 2,291       | 35.2  |       | 35.7%         |       |
| 김제시 | 7,799   | 2,571       | 33.0  |       | 31.9%         |       |
| 완주군 | 5,828   | 2,019       | 34.6  | 36.3% | 31.7%         | 35.1% |
| 진안군 | 2,579   | 970         | 37.6  |       | 36.1%         |       |
| 무주군 | 2,366   | 746         | 31.5  |       | 30.4%         |       |
| 장수군 | 2,173   | 846         | 38.9  |       | 37.0%         |       |
| 임실군 | 3,030   | 1,157       | 38.2  |       | 39.0%         |       |
| 순창군 | 2,921   | 1,268       | 43.4  |       | 41.3%         |       |
| 고창군 | 5,615   | 2,028       | 36.1  |       | 33.8%         |       |
| 부안군 | 5,158   | 1,747       | 33.9  |       | 35.1%         |       |

### 3.3. 어울림학교

#### ■ 서비스기준

- 읍면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함.

##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 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학교 수) × 100

## ■ 자료원

-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 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6), 2016년도 학교 현황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 읍면 초·중학교 수: 전라북도 교육청 통계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6), 시·군별 학교 현황
  - 2016년도 전라북도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수

## ■ 점검결과

- 전라북도 읍·면 지역의 2016년 초·중학교 391개 중에서 2016년까지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 비율은 22.8%인 89개임.
  - 2016년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은 2015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어울림학교가 상당히 증가함.
  - 어울림학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5년부터 기존 농어촌 교육 관련 사업이 어울림 사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2015년부터는 학교군사업, 농어촌 에듀케어,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어울림학교 사업으로 통합됨.
  - 초등학교는 전체 읍면 초등학교 261개 중 77개의 학교가 어울림학교로 지정되었음.
  - 중학교는 전체 읍면 중학교 130개 중 12개의 학교가 어울림 학교로 지정되었음.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32.0%의 읍면 초·중학교가 어울림학교로 지정되었음.
  - 2014년 16.6%에 비해 약 15%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어울림학교 사업이 크게 증가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21.2%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은 도농통합시에 비해 17% 정도 낮은 15.3%의 초·중학교가 어울림학교 혜택을 받음.
  - 이는 2014년 10.2%에 비해 약 5% 정도 증가하였으며, 군지역의 경우도 어울림학교 사업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 군지역의 경우 고창군의 어울림학교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이 4.3%로 가장 낮음.

표 2-4. 어울림학교

| 구분  | 읍·면 학교 수 |         |           | 어울림학교 수  |         |           | 비율<br>(B/A,<br>%) | 평균<br>(%) | 2015년<br>모니터링 결과  |           |
|-----|----------|---------|-----------|----------|---------|-----------|-------------------|-----------|-------------------|-----------|
|     | 초등<br>학교 | 중학<br>교 | 전체<br>(A) | 초등<br>학교 | 중학<br>교 | 전체<br>(B) |                   |           | 비율<br>(B/A,<br>%) | 평균<br>(%) |
| 전체  | 261      | 130     | 391       | 77       | 12      | 89        | -                 | 22.8%     | -                 | 13.0%     |
| 군산시 | 26       | 7       | 33        | 6        | 1       | 7         | 21.2%             | 32.0%     | 12.1%             | 16.6%     |
| 익산시 | 30       | 12      | 42        | 9        | 0       | 9         | 21.4%             |           | 11.9%             |           |
| 정읍시 | 22       | 13      | 35        | 9        | 3       | 12        | 34.3%             |           | 17.1%             |           |
| 남원시 | 19       | 10      | 29        | 8        | 0       | 8         | 27.6%             |           | 17.2%             |           |
| 김제시 | 28       | 8       | 36        | 18       | 2       | 20        | 55.6%             |           | 25.0%             |           |
| 완주군 | 30       | 14      | 44        | 4        | 0       | 4         | 9.1%              | 15.3%     | 4.5%              | 10.2%     |
| 진안군 | 13       | 10      | 23        | 1        | 0       | 1         | 4.3%              |           | 0.0%              |           |

| 구분  | 읍·면 학교 수 |         |           | 어울림학교 수  |         |           | 비율<br>(B/A,<br>%) | 평균<br>(%) | 2015년<br>모니터링 결과  |           |
|-----|----------|---------|-----------|----------|---------|-----------|-------------------|-----------|-------------------|-----------|
|     | 초등<br>학교 | 중학<br>교 | 전체<br>(A) | 초등<br>학교 | 중학<br>교 | 전체<br>(B) |                   |           | 비율<br>(B/A,<br>%) | 평균<br>(%) |
| 무주군 | 10       | 6       | 16        | 2        | 0       | 2         | 12.5%             |           | 6.3%              |           |
| 장수군 | 9        | 7       | 16        | 1        | 1       | 2         | 12.5%             |           | 12.5%             |           |
| 임실군 | 15       | 9       | 24        | 2        | 0       | 2         | 8.3%              |           | 4.2%              |           |
| 순창군 | 15       | 7       | 22        | 2        | 1       | 3         | 13.6%             |           | 13.6%             |           |
| 고창군 | 21       | 14      | 35        | 8        | 2       | 10        | 28.6%             |           | 14.3%             |           |
| 부안군 | 23       | 13      | 36        | 7        | 2       | 9         | 25.0%             |           | 22.2%             |           |

### 3.4. 그룹홈

#### ■ 서비스기준

-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 점검방법

- $(\text{그룹홈 경로당 수} / \text{경로당 수}) \times 100$

#### ■ 자료원

- 그룹홈 경로당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6), 그룹홈 경로당 현황
  - 2016년까지 기존 경로당 중 취사 및 숙식이 가능한 그룹홈으로 전환한 경로당 수



- 경로당 수: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6), 경로당 현황

##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경로당은 5,931개소로 이 중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0.2%인 606개소 임.
  - 2016년 경로당 중 그룹홈을 운영하는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5% 정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경로당 그룹홈 서비스가 약화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10.0%의 경로당이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음.
  - 2015년 6.7%에 비해 약 3.3%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경로당 그룹홈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그룹홈 서비스 혜택율이 27.8%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0.9%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은 도농통합시에 비해 0.4% 정도 높은 10.4%의 경로당이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음.
  - 2015년 14.6%에 비해 약 4.2% 정도 감소하였으며, 군지역의 경우도 경로당 그룹홈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음.
  - 군지역의 경우 진안의 그룹홈 서비스 혜택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은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한 개소도 없음.

표 2-5. 그룹홈 혜택

| 구분  | 경로당 수 | 그룹홈 경로당 수 | 비율(%) | 평균(%) | 2015년 모니터링 결과 |       |
|-----|-------|-----------|-------|-------|---------------|-------|
|     |       |           |       |       | 비율(%)         | 평균(%) |
| 전체  | 5,931 | 606       | -     | 10.2  | -             | 10.7% |
| 군산시 | 456   | 4         | 0.9   | 10.0% | 0.8%          | 6.7%  |
| 익산시 | 658   | 14        | 2.1   |       | 0.6%          |       |
| 정읍시 | 677   | 29        | 4.3   |       | 1.2%          |       |
| 남원시 | 482   | 71        | 14.7  |       | 5.6%          |       |
| 김제시 | 619   | 172       | 27.8  |       | 24.5%         |       |
| 완주군 | 425   | 110       | 25.9  | 10.4% | 35.8%         | 14.6% |
| 진안군 | 327   | 164       | 50.2  |       | 46.6%         |       |
| 무주군 | 270   | 0         | 0.0   |       | 37.3%         |       |
| 장수군 | 273   | 0         | 0.0   |       | 0.0%          |       |
| 임실군 | 341   | 19        | 5.6   |       | 5.3%          |       |
| 순창군 | 368   | 1         | 0.3   |       | 0.0%          |       |
| 고창군 | 573   | 0         | 0.0   |       | 0.7%          |       |
| 부안군 | 462   | 22        | 4.8   |       | 3.7%          |       |

### 3.5. 통합문화이용권

####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 계층은 문화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점검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금액) × 100

## ■ 자료원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금액: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6),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금액: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6),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5년 통합문화권 발급액은 2,878,277천원으로 이 중 문화이용권이 이용된 비율은 92.9%인 2,673,473천원임.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2015년에 비해 9%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통합문화 서비스 이용율이 개선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액 중 93.2%가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84.6%에 비해 약 8.6%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통합문화 서비스 이용율이 개선되고 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남원시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97.0%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92.0%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도농통합시에 비해 1.2% 정도 낮은 92.0%임.
  - 2015년 81.8%에 비해 약 10.2% 정도 증가하였으며, 군지역의 경우도 통합문화 이용과 이용률이 개선되고 있음.
  - 군지역의 경우 무주군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95.7%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89.2%로 가장 낮았음.

표 2-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 구분  | 발급자수   | 발급액<br>(천원,A) | 이용액<br>(천원,B) | 이용률<br>(B/A,%) | 평균(%<br>) | 2015년<br>모니터링 결과 |       |
|-----|--------|---------------|---------------|----------------|-----------|------------------|-------|
|     |        |               |               |                |           | 이용률              | 평균    |
| 전체  | 57,565 | 2,878,277     | 2,673,473     |                | 92.9%     | -                | 83.8% |
| 군산시 | 10,479 | 523,956       | 484,958       | 92.6%          | 93.2%     | 80.4%            | 84.6% |
| 익산시 | 12,043 | 602,174       | 554,246       | 92.0%          |           | 83.5%            |       |
| 정읍시 | 6,869  | 343,455       | 324,403       | 94.5%          |           | 85.4%            |       |
| 남원시 | 4,857  | 242,857       | 235,522       | 97.0%          |           | 88.6%            |       |
| 김제시 | 6,480  | 323,988       | 299,489       | 92.4%          |           | 91.1%            |       |
| 완주군 | 3,424  | 171,200       | 152,671       | 89.2%          | 92.0%     | 80.2%            | 81.8% |
| 진안군 | 1,142  | 57,101        | 51,799        | 90.7%          |           | 84.0%            |       |
| 무주군 | 1,378  | 68,901        | 65,937        | 95.7%          |           | 87.2%            |       |
| 장수군 | 1,332  | 66,598        | 61,943        | 93.0%          |           | 81.9%            |       |
| 임실군 | 1,778  | 88,897        | 84,814        | 95.4%          |           | 85.2%            |       |
| 순창군 | 1,162  | 58,101        | 55,517        | 95.6%          |           | 85.5%            |       |
| 고창군 | 3,565  | 178,253       | 159,384       | 89.4%          |           | 80.9%            |       |
| 부안군 | 3,056  | 152,797       | 142,790       | 93.5%          |           | 77.2%            |       |

### 3.6. 문화 동호인

####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점검방법

- (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 농어촌 인구 수) × 100

## ■ 자료원

- 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전라북도 행정 자료
  - 전라북도(2016), 문화예술과 업무편람
  - 2015년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등록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원 수
- 농어촌 인구 수: 통계청(KOSIS) 자료
  - 2016년 전라북도 시·군별 20~65세 인구 수

##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20-65세의 인구수는 735,520명으로 이 중 생활문화예술 동호인회에 등록된 인구 비율은 2.3%인 15,949명임.
  - 2016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은 2015년에 비해 0.1% 정도 증가하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다소 증가하였음.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 20-65세 인구 중 2.0%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으로 가입함.
  - 2015년 1.5%에 비해 약 0.5%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증가함.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1.2%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20-65세 인구 중 도농통합시에 비해 2% 정도 높은 4.2%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회에 가입함.
  - 2015년 4.1%에 비해 약 0.1% 정도 증가하였으며, 군지역의 경우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다소 증가하였음.

- 군지역의 경우 장수군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9.3%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이 2.5%로 가장 낮았음.

표 2-7.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 구분  | 인구<br>(20-65세,A) | 동호인 수<br>(B) | 가입률<br>(B/A,%) | 평균(%) | 2015년<br>모니터링 결과 |       |
|-----|------------------|--------------|----------------|-------|------------------|-------|
|     |                  |              |                |       | 가입률              | 평균(%) |
| 전체  | 735,520          | 15,949       | -              | 2.3%  | -                | 2.2%  |
| 군산시 | 178,086          | 2,168        | 1.2%           | 2.0%  | 1.3%             | 1.5%  |
| 익산시 | 194,109          | 2,479        | 1.3%           |       | 1.0%             |       |
| 정읍시 | 67,782           | 1,290        | 1.9%           |       | 2.0%             |       |
| 남원시 | 49,128           | 1,103        | 2.2%           |       | 1.7%             |       |
| 김제시 | 51,646           | 1,370        | 2.7%           |       | 2.6%             |       |
| 완주군 | 54,501           | 1,706        | 3.1%           | 4.2%  | 2.7%             | 4.1%  |
| 진안군 | 14,599           | 875          | 6.0%           |       | 8.0%             |       |
| 무주군 | 14,128           | 552          | 3.9%           |       | 4.8%             |       |
| 장수군 | 12,982           | 1,212        | 9.3%           |       | 7.2%             |       |
| 임실군 | 16,400           | 1,126        | 6.9%           |       | 7.1%             |       |
| 순창군 | 16,423           | 859          | 5.2%           |       | 3.4%             |       |
| 고창군 | 33,095           | 824          | 2.5%           |       | 3.3%             |       |
| 부안군 | 32,641           | 1024         | 3.1%           |       | 3.0%             |       |

## 제 3 장

### 요약 및 제언

#### 1. 2016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 1.1. 2016년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2015년 연구를 통해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후보 항목에 대한 적합성, 시급성, 차별성 분석 결과와 자료 확보 가능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6개 부문 8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독거노인 돌봄, 노인 치매 돌봄을 선정함.
  -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기초 학력, 어울림학교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기초 학력은 자료 미비로 최종적으로 제외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그룹홈, 석면 슬레이트 항목이 선정하였으나, 석면 슬레이트는 자료 미비로 최종적으로 제외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항목을 선정함.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동호인 항목을 선정함.
  - 안전 부문에서는 어업인 안전 항목을 선정함.

- 2016년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 미비로 인해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8개 중 2개 항목을 제외함.
  -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전북 노인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2015년 통계를 산출하였음. 그러나 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2016년 통계 산출이 불가능 하였음. 따라서 2016년 수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서 삭제함
  - ‘어업인 안전’의 경우 2016년 수행된 모니터링의 결과와 2015년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와 동일하였음. 안전 공제 가입 어업인 수와 행정 예산과 지원 인원이 2015년부터 변화 없음. 따라서 매년 실적이 동일하므로 2016년 수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서 삭제함.

## 1.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5년 독거노인 수는 58,214명으로 이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1.5%인 18,310명임.
  - 2016년 독거노인 돌봄 비율은 2015년 24.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돌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음.

### ■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치매 노인 수는 80,957명으로 이 중 치매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5.0%인 28,368명임.
  - 2016년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비율은 2015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개선됨.



### ■ 어울림학교 지정률

- 전라북도 읍·면지역의 2016년 초·중학교 391개 중에서 2016년까지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 비율은 22.8%인 89개임.
  - 2016년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은 2015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어울림학교가 상당히 증가함.
  - 어울림학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5년부터 기존 농어촌 교육 관련 사업이 어울림 사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2015년부터는 학교군사업, 농어촌에듀케어,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어울림학교 사업으로 통합됨.

### ■ 그룹홈 이용률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경로당은 5,931개소로 이 중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0.2%인 606개소임.
  - 2016년 경로당 중 그룹홈을 운영하는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5% 정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경로당 그룹홈 서비스가 약화됨.

###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율

-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액은 2,878,277천원으로 이 중 문화이용권이 이용된 비율은 92.9%인 2,673,473천 원임.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률은 2015년에 비해 9%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이용율이 개선됨.

### ■ 문화 동호인 활동률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6년 20-65세의 인구수는 735,520명으로 이 중 생활문화예술 동호인회에 등록된 인구비율은

2.3%인 15,949명임.

- 2016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은 2015년에 비해 0.1% 정도 증가하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다소 증가함.

## 2.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2015년 전라북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8개였으나, 2016년에는 통계자료의 신뢰문제로 2개 항목을 제외함.
  -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어업인 안전’의 경우 선택 항목으로 부적절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서 제외함.
- 그 외 6개 선택 항목의 경우도 행정통계시스템을 통해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통계가 아님.
  - 따라서 공식적으로 행정 내부자료를 획득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행정적으로 산출된 통계자료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못함.
- 전라북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이 신뢰성있는 지표가 되려면 전라북도 조례제정과 국가적 선택 항목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행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 질적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 추진

- 국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 지표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 지역간 비교 등으로 산출 가능한 양적 지표 중심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
- 그러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 사회적 포용, 주민 참여, 소외 계층 참여 등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내 삶의 질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내에 적용하려면 시범적 연구가 필요함.

### ■ 평가가 아닌 모니터링 중심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활용

- 시·군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가 아닌 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전라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시·군 및 주민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아닌 효과적인 기준 충족 방안 모색을 위한 수단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점검·평가

## 제 4 장

### 삶의 질 우수사례 - 완주군 로컬푸드

#### 1. 사례 개요

- 완주군의 농가구성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농가가 가족소농, 고령농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가의 절반 이상이 1ha 내외의 소농이며, 농가경영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농이 60%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정부의 농업 정책은 전업화·전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족소농, 고령농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미함.
- 완주군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다수의 중소가족농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중소가족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 추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완주군 내 5,000여 가구에 이르는 1ha미만의 가족소농, 고령농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품목 소량 생산과 직거래유통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대도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로컬푸드형 관계형 시장을 개척하여 65만 전주권 소비자를 위한 지역산 건강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
  - 로컬푸드 농민가공을 촉진함으로써 밥상공품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얼굴 있는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대면 접촉 확대로 마을 및 지역 공동체의 자립을 촉진하고 나아가 농촌과 도시간 실질적인 상생과 지역 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
-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으로 완주군 농가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농의 소득 증대와 고령농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음.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은 기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소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도임.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은 중소농·고령농 소득 증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례임.

## 2. 사례 내용

### 2.1. 완주군 로컬푸드 추진 과정

- 완주군 로컬푸드 추진 정책은 3단계로 구분하며, 첫 번째 단계는 2009~2011년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정책을 실행하는 로컬푸드 정책 도입기임.
  - 이 기간 동안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민간과 행정 두 축에서 정비하였음.

- 민간 부문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함.
  - 행정 부문에서는 로컬푸드팀을 중심으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으며, 로컬푸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로컬푸드 육성 조례’를 제정함.
- 두 번째 단계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매장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주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12~2013년 기간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기임.
- 2012년 완주 로컬푸드 1호점인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시작으로 효자동 직매장과 모악산 구이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인 해피스테이션을 설립함.
  - 이와 함께 개별 농가의 로컬푸드 가공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거점 농민가공센터를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함.
- 세 번째 단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완주 로컬푸드 시스템을 완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활성화하는 기간임.
- 2016년 현재 3,000여 농가가 참여하는 11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 완주군 로컬푸드 단계별 추진 내용

| 단계 구분              | 핵심과제           | 사업 내용                                    |
|--------------------|----------------|--|
| 제1기<br>(2009~2011) | 종합 전략 및 정책 도입기 | - 관련 조례의 제정(2010. 10)<br>- 건강밥상꾸러미 사업 시작 |

| 단계 구분              | 핵심과제  | 사업 내용   |
|--------------------|---|---|
| 제2기<br>(2012~2013) | 각종 사업장별 하드웨어 및<br>운영 주체 확보<br>- 1,000농가 참여<br>- 300억 원 매출달성 | - 용진 직매장 가동 (2012.4)<br>- 거점 농민 가공센터 (2012.7)<br>- 통합 지원 센터 (2012. 10)<br>- 효자동 직매장 (2012. 10)<br>- 모악산 스테이션 (2013. 7)<br>- 하가지구 직매장(2014. 1)<br>- 공공급식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
| 제3기<br>(2014~2015) | 완주로컬푸드 시스템 구축<br>- 3,000농가 참여<br>- 500억 원 매출 달성             | - 직매장의 안착화 (5개소)<br>- 농식품 마켓 건립(혁신도시권/16년)<br>-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활성화<br>- 서울 및 수도권 연계 사업   |

자료: 완주군, 완주군 로컬푸드사업 추진현황(2016.1)

## 2.2.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추진 체계

- 완주군은 기존 상업농 육성 정책에서 소외된 중소농, 고령농을 고려한 지역 결속 전략<sup>4</sup> 속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
  - 단일작목 중심의 시장지향형 품목은 상업농을 대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하여 산지유통종합계획과 통합마케팅추진체계를 통해 정책 지원
  - 다품목 소량 생산 중심의 로컬푸드 품목은 3섹터형 농업 법인을 통해 중소·고령농과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관계 마케팅으로 육성
  - 즉, 산지유통 종합 계획과 로컬푸드 시스템을 양측으로 지역 농가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임.

<sup>4</sup> 완주군은 상업농, 소농의 공존을 추진하는 전략을 ‘투트랙 조직화 전략’으로 표현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정책 추진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결속전략’으로 명명함

그림 4-1. 완주군 지역결속 전략  
완주군 농업 정책은 투트랙 전략



자료: 완주군, 완주군 로컬푸드사업 추진현황(2016.1)

- 완주군은 중소농, 고령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 로컬푸드 통합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정책 추진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2. 완주군 로컬푸드 분야별 정책 추진 체계

| 구분    | 정책명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정책 목표 | 조직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가족소농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li> <li>- 0.5ha미만 농가 3,412농가(1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1ha미만 농가 참여</li> <li>※ 상업농과 협력·보완 관계 초기단계 분리대응</li> </ul>                          |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소득 1백만 원 보장 (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 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평균 소득 1,000만 원 기준</li> </ul>   |
| 정책 수단 | 기획생산 체계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농식품 기획 생산</li> <li>- 다품목, 연중 출하시스템</li> <li>농민 가공 활성화</li> <li>- 마을 공동사업/ 거점농민가공센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단위 가족소농 공동 작업</li> <li>※ 주체: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li> <li>※ 제1호 거점농민가공센터(2012. 6)</li> </ul> |
|       |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확보 (관계, 공공)</li> <li>- 꾸러미/직매장/스테이션</li> <li>- 학교급식/ 공공조달/ 복지분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매장, 로컬푸드 스테이션이 1차 추진과제</li> </ul>   |



| 구분       | 정책명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정책<br>수단 | 통합물류<br>시스템<br>구 축 | • 공공형 통합물류체계 구축<br>-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br>※ 완주-전주권 공공급식센터로 활용           | 2012. 10 봉동읍 울소리 완공<br>: 1,980㎡규모                           |
| 추진<br>조직 | 민 간                | • 완주로컬푸드 영농법인, '건강한밥상'<br>•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br>• 생산자단체(농협 등)   | 2010. 5 발족/ 마을공동체 중심<br>2012. 6 발족/ 행정, 농축협 출자<br>※ 협동조합 전환 |
|          | 관(행정)              | • 농촌활력과 내 로컬푸드 담당   | 2010. 8 농촌활력과 신설<br>2015. 1월 농업농촌정책과로 통합                    |
| 제도<br>정비 | 조 제<br>레 정         | •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br>• 완주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br>(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 ※로컬푸드 유통안정기금조성 추진   |

자료: 완주군, 완주군 로컬푸드사업 추진현황(2016.1)

### 3. 주요 성과

-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2015년에 11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약 41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
  - 전체 매출액 중 원예농산물은 약 53%인 218억 원, 축산물은 26%인 107억 원, 가공품은 약 22%인 8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
  -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통해 관계형 시장을 창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3만명의 충성고객을 확보
  - 이와 함께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약 1,000여명의 중소, 고령농 참여 농가를 확보<sup>5</sup>

<sup>5</sup> 완주군청,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용진농협 내부자료를 통해 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자료 취합함. 용진농협을 제외한 4개 농협(고산, 상관, 소양, 봉동) 직매장은 전체 매출액 자료만 있어, 용진농협의 분류별 비중을 적용하였음.

표 4-3.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2015년)2

| 구분       | 전체     | 원예     | 축산물    | 가공품   |
|----------|--------|--------|--------|-------|
| 매출액(백만원) | 41,435 | 21,779 | 10,721 | 8,935 |
| 비중       | 100.0% | 52.6%  | 25.9%  | 21.6% |

자료: 완주군, 완주군 내부자료(2016.1)

-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요 추진 성과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완주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개설되어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1일 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 현재 3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함.
  - 전주시 효자 직매장은 2012년 전주시 도심내 거점 직매장으로 개설하였으며, 운영 주체가 농협이 아닌 3섹터 방식으로 운영된 직매장이며, 2015년 현재 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약 92억원의 매출을 달성함.
  - 모약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전라북도 6차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로컬푸드 식당을 겸비한 직매장 형태로 2013년 개설하였으며, 2015년 현재 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약 5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함.

#### 4. 시사점

-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로컬푸드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중소, 고령농의 농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올림.
  - 이와 함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 경영의 안정화, 지역 식량자급력 향상, 마을의 활력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옴.

- 특히 로컬푸드는 승수효과를 통해 로컬푸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지역 생산-지역 소비의 선순환으로 기존 농식품 유통 구조에 비해 2-3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Sonntag, 2008; Hesterman, 2013)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는 완주군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임. 완주군은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로컬푸드 담당 조직을 행정 조직 내에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고 시설 설치, 농가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두 번째 성과 요인은 장기간 계획에 의한 농가조직화임. 직매장 개설 전에 국내외 벤치마킹,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임시 매장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 세 번째는 농가-소비자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판매 농가 실명제와 ‘1일 유통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판매 가격 역시 지속적인 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함.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 요인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성적, 연성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함. 현재 중소, 고령농의 경우 새로운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직매장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 이와 함께 다품목·소량 생산 체계인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소고령농을 조직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임.
  -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소비자와의 교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제도 측면에서는 로컬푸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 검사, 1일 유통 원칙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교류 증대 측면에서는 직매장을 매개로 농촌 체험 투어, 소식지 발간, 요리교실 개설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교류 강화할 수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 여성 농가 등 농촌사회의 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소규모 농가, 고령농은 대형 유통 시스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음. 이와 함께 전업농 위주의 농업정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로컬푸드는 소규모, 고령농가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 이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됨.
-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생산자 네트워크, 또는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등의 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음. 직매장 개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해 행정의 영향력이 과다해 질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자체적인 매장 운영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김광선 등.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1-5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등. 2012.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2-5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등. 2013.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3-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등. 2014.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4-6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이민수 등. 2015.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 전북도청. 2014. 「삼라농정 기본계획」.
- 전북도청. 2015.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행정자치부. 2015.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Viki Sonntag, Why Local Linkages Matter: Findings from the Local Food Economy Study (Seattle, WA: Sustainable Seattle, April 2008)
- Oran Hesterman. Buying Local Makes Economic Sense.<http://zesterdaily.com/world/buying-local-makes-economic-sense> (Accessed 2013. 1. 30)



# 2016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채 종 현 부 연구 위원  
장 진 희 연 구 원





## 차 례

---

### 제1장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15

### 제2장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1. 복지 통합시스템 ..... 319
2. 교육 다양성 ..... 321
3. 교통정보 ..... 323
4. 귀농·귀촌 ..... 324
5. 농업 일자리 정보 ..... 325
6. 생활체육 ..... 327

### 제3장 점검·평가 결과

1. 복지 통합시스템 ..... 332
2. 교육 다양성 ..... 334
3. 교통정보 ..... 338
4. 귀농·귀촌 ..... 340
5. 농업 일자리 정보 ..... 342
6. 생활체육 ..... 343

**제4장 지역 우수사례: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                                       |     |
|---------------------------------------|-----|
| 1. 사례 개요 .....                        | 346 |
| 2. 주요 내용 .....                        | 347 |
| 3. 주요 성과 .....                        | 352 |
| 4. 한계 및 과제 .....                      | 354 |
| <br>                                  |     |
| 부록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 356 |
| 부록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조사표 ..... | 357 |

## 표 차례

---

### 제2장

|                                |     |
|--------------------------------|-----|
|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 318 |
|--------------------------------|-----|

### 제3장

|   |     |
|---|-----|
|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 | 330 |
|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    | 332 |
|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33 |
|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35 |
|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         | 336 |
|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39 |
|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41 |
|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42 |
|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            | 344 |

### 제4장

|  |     |
|--|-----|
| 표 4-1. 상주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2주기: 2013~2015) ..... | 348 |
| 표 4-2. 상주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3주기: 2016~) .....        | 349 |
| 표 4-3. 상주시 귀농·귀촌 관련 성과 지표 .....                | 352 |



# 제 1 장

---

##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규정
  - 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부족한 상황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에서 수립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계획들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워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 1.2. 연구 목적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실시
  - 2015년 시도연구원과 함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 2016년에는 2015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들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점검·평가와 더불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삶의 질 계획 지원 연구를 추진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

### 1.3. 연구 내용

#### ■ 2016년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2015년 연구를 통해 확정된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2016년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2015년 연구에서 확정된 점검 및 평가방식에 따라 2016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조사 진행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경상북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중기 목표치를 제시
  - 선택 항목 이행실태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수범사례 발굴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 발굴하여 확산
  - 경상북도 내의 선택 항목 이행실태가 양호한 사례 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조사 진행

## 제 2 장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 선택 항목 선정

- 경북에서는 경북 삶의 질 현황 검토, 관련 정책 사업 검토, 전문가 자문회, 적합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선정
  - ‘경북 삶의 질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경북 삶의 질 계획을 반영한 실용적 지표’를 원칙으로 선택 항목 선정
  
- 삶의 질 정책의 총 7개 부문 중 환경·경관과 안전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경북의 선택지표를 선정
  - 복지 통합시스템(보건복지), 교육 다양성(교육), 교통 정보(정주생활 기반), 귀농·귀촌(경제활동·일자리), 농업 일자리 정보(경제활동·일자리), 생활 체육(문화·여가)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구분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
| 보건복지 | 복지 통합시스템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구분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
| 교육       | 교육 다양성   |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정주생활 기반  | 교통 정보    |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경제활동·일자리 | 귀농·귀촌    |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          | 농업 일자리정보 | 일 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문화·여가    | 생활체육     |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1. 복지 통합시스템

### ■ 선정배경

- 현장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 기능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일이 빈번 - 교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 경북의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통합적·종합적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
- 농어촌 인구 고령화,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변화하는 농어촌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복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북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보다 대상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욱 적합하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경북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 도모

## ■ 내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점검방법

-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 \left( \frac{(a) \times 5.0 + (b) \times 0.5 + (c) \times 0.1}{\text{④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 ① 사례관리 실적: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② 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③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한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 ④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충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 행정자료: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복지 통합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li> <li>-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li> <li>-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 없는 복지시스템 구축</li> </ul> |

## 2. 교육 다양성

### ■ 선정배경

- 농어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부족. 정규교과 이외에도 특히 문화, 체험, 특기 적성, 진로·적성 교육 등 다양한 학습 기회 부족이 심각
  - 교육 문제는 농어촌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을 저해
-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의 교육 다양성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 경북에서는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 수업, 진로체험 버스 등 다양한 교육 사업 개발에 노력

### ■ 내용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점검방법

- 지표: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충족 기준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 ○ 교육 서비스 유형

- 교육시설 및 조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립된 상시적 교육 시설 혹은 조직
- 적성교육: 원어민 교사, 청소년 오케스트라, 특기적성 교육 과정,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상시 교육 지원 서비스
- 진로교육: 진학지도 컨설팅, 맞춤형 입시 상담, 진로체험센터 등 진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체험교육: 여름과학캠프, 영어체험센터,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등 일주일 이내의 이벤트성 체험 교육 서비스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교과부, 지자체
- 행정조사: 시·군별 교육서비스 사업 수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교육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li> <li>-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li> <li>-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 경진대회 개최</li> <li>- 방과 후 학교 운영</li> <li>- 농촌전원학교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문화복지사다리 구축</li> <li>- 어린선비(경북혼) 교실 운영</li> </ul> |

### 3. 교통정보

#### ■ 선정배경

- 농어촌에서의 접근성 문제는 도시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 노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도시의 기준으로 교통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 야기 가능
- 하지만 효율성 문제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이미 진행 중
  - 수요응답형 버스, 마중택시 등 농어촌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방안
- 특히 농어촌의 특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공급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 ■ 내용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점검방법

-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충족 기준: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 교통정보 홈페이지, 교통정보 제공 앱, 전광판, 기타(상담인력 운영, 안내책자 등)

## ■ 점검수단

- 행정조사: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교통정보  | -              | -               |

## 4. 귀농·귀촌

### ■ 선정배경

- 고령화되고 과소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중요성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향후 귀농·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북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

### ■ 내용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 점검방법

-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100
- 충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 인력 지원센터,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의 집 등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귀농·귀촌 관련 사업 시행 현황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귀농·귀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인 정착금 지원</li> <li>-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li> <li>-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li> <li>-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5만 명 유치</li> </ul> |

## 5. 농업 일자리 정보

### ■ 선정배경

-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농업·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정보 부족으로 농촌·농업 노동 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업 노동력 수요와 공급 간의 원활한 정보 공급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농업 일자리 정보과 관련한 정책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

## ■ 내용

일 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점검방법

-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충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 일자리 공급 서비스 예시
  -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 중개창구 등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농업 일자리 정보 |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br>-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일 자리 창출 | -               |

## 6. 생활체육

### ■ 선정배경

- 고령자 증가, 은퇴자의 귀농·귀촌 등 농어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보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농어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미진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원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강화
- 하드웨어 기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어촌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

### ■ 내용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점검방법

-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체육교실 운영 읍면 현황

### ■ 관련정책

| 선택 항목 |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
|-------|--|-----------------|
| 생활체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확충</li> <li>- 생활체육교실 운영</li> <li>- 생활체육지도자 배치</li> </ul> | -               |

## 제 3 장

### 점검·평가 결과

#### ■ 점검·평가 방법

-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를 위해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와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점검은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를 활용
  - 교육 다양성, 교통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항목 점검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점검·평가 결과를 엄격한 시·군 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항목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설문조사의 한계 존재

#### ■ 점검·평가 결과

- 2016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교육 다양성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지표값 및 충족 시·군 비율이 증가
  - 2016년 복지 통합시스템의 충족 시·군 수는 5개(21.7%)로 2015년과 동일
  - 교육 다양성의 충족 시·군 수는 13개(56.5%)로 2015년에 비해 2개 시·

군이 감소

- 교통 정보의 충족 시·군 수는 16개(69.6%)로 2015년에 비해 5개 시·군이 증가
- 귀농·귀촌에서는 2015년 16개(69.6%)에 비해 1개 시·군이 늘어난 17개(73.9%)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농업 일자리정보에서는 2015년 6개(27.3%)에 비해 5개 시·군이 늘어난 11개(50.0%)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정에서 제외)
- 생활체육의 충족 시·군 수는 17개(77.3%)로 2015년에 비해 2개 시·군이 증가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 부문       | 선택 항목    | 총 시·군 | 2015년  |       | 2016년  |       |
|----------|----------|-------|--------|-------|--------|-------|
|          |          |       | 충족 시·군 | 비율(%) | 충족 시·군 | 비율(%) |
| 보건복지     | 복지 통합시스템 | 23    | 5      | 21.7  | 5      | 21.7  |
| 교육       | 교육 다양성   | 23    | 15     | 65.2  | 13     | 56.5  |
| 정주생활기반   | 교통 정보    | 23    | 11     | 47.8  | 16     | 69.6  |
| 경제활동·일자리 | 귀농·귀촌    | 23    | 16     | 69.6  | 17     | 73.9  |
|          | 농업 일자리정보 | 23    | 6      | 27.3  | 11     | 50.0  |
| 문화·여가    | 생활체육     | 23    | 15     | 65.2  | 17     | 77.3  |

○ 교통 정보, 농업 일자리정보 항목의 지표값이 크게 개선

- 교통 정보 항목의 지표값은 2015년 47.8%에서 2016년 69.6%로 크게 증가. 읍면사무소 상담인력 배치, ARS 등 기타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 특히 많이 증가
- 농업 일자리정보 항목의 지표값은 2015년 27.3%에서 2016년 50.0%로 크게 증가. 다수의 시·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

- 교육 다양성 항목에서는 지표값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
  - 교육 시설 및 조직 보다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수가 다수 감소
  - 교육 서비스 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진로교육과 체험교육 등 이벤트성 교육 서비스는 감소한 반면, 적성교육 등 상시 교육 서비스의 수는 증가

### ■ 목표치 설정

- 2015년, 2016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지표값의 목표치를 설정
  - 복지 통합시스템에서는 2016년 41.2의 지표값을 2019년 50까지 증대
  - 교육 다양성에서는 2016년 56.5%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교통정보 항목에서는 2016년 69.6%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귀농귀촌에서는 2016년 73.9%의 지표값을 2019년 87.0%까지 증대하여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등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농업 일자리 정보에서는 2016년 50.0%의 지표값을 2019년 54.5%까지 증대하여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2019년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17년, 2018년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
  - 2019년 목표를 기준으로 2017년, 2018년 목표치를 설정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 구분       | 선택 항목    | 점검결과  |       | 목표    |       |       |
|----------|----------|-------|-------|-------|-------|-------|
|          |          | '15   | '16   | '17   | '18   | '19   |
| 보건복지     | 복지 통합시스템 | 41.2  | 41.2  | 44.1  | 47    | 50    |
| 교육       | 교육 다양성   | 65.2% | 56.5% | 76.8% | 88.0% | 100%  |
| 정주생활기반   | 교통정보     | 47.8% | 69.6% | 75.0% | 82.6% | 100%  |
| 경제활동·일자리 | 귀농·귀촌    | 69.6% | 73.9% | 75.4% | 81.2% | 87.0% |
|          | 농업 일자리정보 | 27.3% | 50.0% | 50.0% | 50.0% | 54.5% |
| 문화·여가    | 생활체육     | 83.6% | 88.2% | 86.9% | 90.2% | 93.6% |
|          |          | 56.7% | 31.5% | 60.0% | 63.3% | 66.7% |

## 1. 복지 통합시스템

- 경북의 복지 통합시스템 지표값은 41.2로 기준값(50)을 미충족
  - 경북의 통합사례관리중점대상자는 156,274명이며 사례관리실적은 2,531건, 서비스연계 건수는 24,263건, 단순서비스연계 건수는 395,716건
- 경북에서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은 5개(21.7%)로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성주군 등
  - 최대 117.9에서 최소 24.1으로 시·군별로 지표 값의 차이가 큰 편
- 2019년까지의 목표는 지표값 50을 달성하여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시·군별로도 지표값 10 상승을 목표로 설정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충족 여부 | 지표값       |            |              |                 | 2019년 목표 |      |
|------|-------|-----------|------------|--------------|-----------------|----------|------|
|      |       | ㉠ 사례관리 실적 | ㉡ 서비스 연계건수 | ㉢ 단순서비스 연계건수 | ㉣ 통합사례 관리중점 대상자 |          |      |
| 경상북도 | ×     | 41.2      | 2,531      | 24,263       | 395,716         | 156,274  | 50.0 |
| 포항시  | ×     | 24.2      | 308        | 1,512        | 44,676          | 27,936   | 34.2 |
| 경주시  | ×     | 45.5      | 115        | 904          | 48,650          | 12,940   | 50.0 |
| 김천시  | ×     | 39.8      | 70         | 710          | 29,135          | 9,088    | 49.8 |
| 안동시  | ○     | 117.9     | 340        | 6,090        | 81,716          | 10,956   | 50.0 |
| 구미시  | ×     | 24.1      | 82         | 789          | 22,743          | 12,753   | 34.1 |
| 영주시  | ×     | 28.8      | 68         | 335          | 18,766          | 8,288    | 38.8 |
| 영천시  | ○     | 52.9      | 70         | 1,223        | 35,787          | 8,575    | 50.0 |
| 상주시  | ×     | 25.6      | 118        | 777          | 7,141           | 6,608    | 35.6 |
| 문경시  | ×     | 38.7      | 189        | 902          | 6,872           | 5,379    | 48.7 |
| 경산시  | ○     | 59.2      | 313        | 3,638        | 37,774          | 12,089   | 50.0 |
| 군위군  | ○     | 51.6      | 32         | 623          | 3,409           | 1,573    | 50.0 |
| 의성군  | ×     | 26.6      | 55         | 541          | 6,273           | 4,417    | 36.6 |
| 청송군  | ×     | 46.2      | 68         | 311          | 4,802           | 2,114    | 50.0 |
| 영양군  | ×     | 29.5      | 41         | 268          | 1,942           | 1,808    | 39.5 |
| 영덕군  | ×     | 28.7      | 56         | 267          | 8,708           | 4,481    | 38.7 |
| 청도군  | ×     | 30.7      | 108        | 490          | 2,553           | 3,389    | 40.7 |
| 고령군  | ×     | 22.7      | 34         | 131          | 3,313           | 2,501    | 32.7 |
| 성주군  | ○     | 53.2      | 107        | 756          | 6,137           | 2,869    | 50.0 |
| 칠곡군  | ×     | 40.2      | 88         | 2,974        | 4,604           | 5,932    | 50.0 |
| 예천군  | ×     | 31.2      | 129        | 233          | 3,635           | 3,610    | 41.2 |
| 봉화군  | ×     | 46.1      | 93         | 633          | 5,428           | 2,872    | 50.0 |
| 울진군  | ×     | 23.9      | 31         | 147          | 10,576          | 5,388    | 33.9 |
| 울릉군  | ×     | 27.1      | 16         | 9            | 1,076           | 708      | 37.1 |

주 1) 지표값 50 이상일 경우 충족으로 간주

2) 지표값 산출 공식

$$\left( \frac{(\text{㉠} \times 5.0) + (\text{㉡} \times 0.5) + (\text{㉢} \times 0.1)}{\text{㉣ 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5개(21.7%)

## 2. 교육 다양성

- 2016년 경북의 교육 다양성 지표값은 56.5%로 13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5.2%(15개 시·군)에서 2016년 56.5%(13개 시·군)으로 지표값이 다소 하락
  - 경주시, 영양군, 예천군은 2015년에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2016년에는 기준을 미충족
  - 봉화군은 2015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2016년에는 기준을 충족
  
- 교육시설 및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교육 서비스의 수가 다소 감소
  - 새롭게 건립 혹은 설립하거나 폐쇄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시설 및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교육 서비스의 수는 2015년 79개에서 2016년 67개로 감소
  
- 지표값은 하락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다양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적성교육 등 상시 교육 서비스의 수는 2015년 39개에서 2016년 42개로 증가
  - 진로교육과 체험교육 등 이벤트성 교육 서비스는 각각 14개에서 7개, 26개에서 18개로 감소
  
- 2019년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교육시설<br>및 조직 | 교육 서비스 합계 |          |          | 2019년<br>목표 |      |
|------|----------|-------|--------------|-----------|----------|----------|-------------|------|
|      | 2015     | 2016  |              | 적성<br>교육  | 진로<br>교육 | 체험<br>교육 |             |      |
| 경상북도 | 65.2%    | 56.5% | 56           | 67        | 42       | 7        | 18          | 100% |
| 포항시  | ○        | ○     | 2            | 5         | 0        | 4        | 1           | ○    |
| 경주시  | ○        | ×     | 2            | 3         | 3        | 0        | 0           | ○    |
| 김천시  | ×        | ×     | 2            | 2         | 1        | 0        | 1           | ○    |
| 안동시  | ○        | ○     | 4            | 1         | 0        | 0        | 1           | ○    |
| 구미시  | ○        | ○     | 3            | 2         | 2        | 0        | 0           | ○    |
| 영주시  | ○        | ○     | 3            | 2         | 1        | 0        | 1           | ○    |
| 영천시  | ○        | ○     | 5            | 1         | 1        | 0        | 0           | ○    |
| 상주시  | ○        | ○     | 4            | 2         | 2        | 0        | 0           | ○    |
| 문경시  | ○        | ○     | 5            | 5         | 2        | 1        | 2           | ○    |
| 경산시  | ○        | ○     | 3            | 0         | 0        | 0        | 0           | ○    |
| 군위군  | ×        | ×     | 2            | 0         | 0        | 0        | 0           | ○    |
| 의성군  | ○        | ○     | 2            | 10        | 6        | 1        | 3           | ○    |
| 청송군  | ×        | ×     | 2            | 3         | 2        | 0        | 1           | ○    |
| 영양군  | ○        | ×     | 0            | 3         | 0        | 0        | 3           | ○    |
| 영덕군  | ○        | ○     | 2            | 7         | 5        | 0        | 2           | ○    |
| 청도군  | ×        | ×     | 1            | 0         | 0        | 0        | 0           | ○    |
| 고령군  | ×        | ×     | 2            | 3         | 3        | 0        | 0           | ○    |
| 성주군  | ○        | ○     | 3            | 1         | 1        | 0        | 0           | ○    |
| 칠곡군  | ○        | ○     | 1            | 7         | 6        | 0        | 1           | ○    |
| 예천군  | ○        | ×     | 2            | 1         | 1        | 0        | 0           | ○    |
| 봉화군  | ×        | ○     | 2            | 9         | 6        | 1        | 2           | ○    |
| 울진군  | ×        | ×     | 2            | 0         | 0        | 0        | 0           | ○    |
| 울릉군  | ×        | ×     | 2            | 0         | 0        | 0        | 0           | ○    |

주 1) 지표: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혹은 교육 서비스 5개 이상일 경우 기준 충족 시·군  
으로 간주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3개(56.5%)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 시·군명 | 교육시설 및 조직   | 교육서비스   |  |                            |
|------|---|---|--|----------------------------|
|      |   | 적성 교육   | 진로 교육  | 체험 교육                      |
| 포항시  | 청소년 수련관<br>청소년 문화의 집  |   | 진학지도컨설팅<br>맞춤형 입시상담<br>거점별 진로별 컨설팅<br>테마가 있는<br>진로상담 | 영어캠프 실시                    |
| 경주시  | 청소년 수련관<br>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청소년 특기적성<br>교육과정<br>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br>청소년 동아리<br>활동지원 |  |                            |
| 김천시  | 청소년 문화의 집<br>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센터  | 농어촌어린이<br>진화영어회화 프로그램                               |  | 농어촌어린이<br>영어캠프             |
| 안동시  | 청소년수련관<br>안동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br>청소년 공부방 운영<br>청소년 문화의 집                   |   |  | 영어마을 운영                    |
| 구미시  |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br>청소년 수련관,<br>청소년 문화의 집                                  | 농어촌 방과후 학교<br>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                            |
| 영주시  | 통합 도서관,<br>청소년 문화의 집<br>청소년 수련관                                       | 농어촌 어린이<br>진화영어회화                                   |  | 농어촌 어린이<br>영어캠프            |
| 영천시  | 청소년수련관,<br>영천시립도서관<br>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br>Wee센터, 인재양성원                    |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  |                            |
| 상주시  | 청소년 수련관,<br>특수교육지원센터<br>Wee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 상주 영어타운<br>발명교육센터                                   |  |                            |
| 문경시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br>상담복지센터<br>문경 교육지원청 Wee센터<br>청소년 문화의 집<br>청소년 웹툰 창작체험관 | 청소년 방과후<br>아카데미<br>농어촌어린이<br>진화영어회화 프로그램            | 고3 청소년<br>사회적응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강좌<br>농어촌어린이<br>영어캠프 |
| 경산시  | 경산시립도서관,<br>청소년 문화의 집<br>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   |  |                            |

| 시·군명 | 교육시설 및 조직                              | 교육서비스  |                             |   |
|------|--|--|-----------------------------|---|
|      |  | 적성 교육  | 진로 교육                       | 체험 교육   |
| 군위군  | 군위 공공도서관,<br>청소년 문화의 집                 |  |                             |   |
| 의성군  | 의성향토인재양성원,<br>청소년센터                    | 중학생 방과후<br>영어심화학습 운영<br>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br>고등학교 방과 후<br>수업비 지원<br>초중학교 1:1 화상영어<br>지원<br>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br>농어촌어린이<br>전화영어회화 프로그램 | 우수대학생 초청<br>멘토링 및 명문대<br>견학 | 초중학생 영어<br>체험학습 지원<br>초중학생 영어<br>말하기대회 지원<br>농어촌어린이<br>영어캠프지원                                   |
| 청송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br>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br>농어촌어린이<br>전화영어회화 프로그램  |                             | 농어촌어린이<br>영어캠프지원  |
| 영양군  |  |  |                             | 안동대학교<br>영어마을 초등학생<br>영어체험학습지원<br>안동대학교<br>영어마을 중학생<br>영어체험학습지원<br>대구경북영어마을<br>초등학생<br>영어체험학습지원 |
| 영덕군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br>청소년 문화의 집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br>운영<br>고교기숙사 생활비 지원<br>초등학생 중국어원어민<br>교육<br>초등학생 다중지능<br>프로그램 지원<br>농어촌어린이<br>전화영어지원                            |                             | 초등학생<br>영어체험학습지원<br>농어촌어린이영어<br>캠프지원  |
| 청도군  | 청소년 수련관                                |  |                             |   |
| 고령군  | 대가야교육원<br>고령군민독서실                      | 교육여건개선사업<br>방과후 학교지원<br>프로그램<br>전화영어 지원사업  |                             |   |
| 성주군  |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br>청소년 문화의 집,<br>향토생활관 운영 | 영어체험학습지원   |                             |   |

| 시·군명 | 교육시설 및 조직             | 교육서비스  |       |         |
|------|-----------------------|--|-------|---------|
|      |                       | 적성 교육  | 진로 교육 | 체험 교육   |
| 칠곡군  | 청소년 수련관               | 어린이 방학특별강좌<br>고3, 레크레이션<br>자격취득과정<br>논술아카데미,<br>뮤지엄스토리<br>청소년 창의체험<br>열린교실<br>음악이 있는 힐링이야기                                       |       | 문화체험캠프  |
| 예천군  |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 영어회화지원   |       |         |
| 봉화군  | 봉화인재양성원<br>청소년센터      | 명문고교 육성사업<br>자율형공립고 지원<br>학교특성화<br>교육프로그램 지원<br>초중학교 방과후<br>학습비 지원<br>창의적 진로직업<br>체험프로그램 운영<br>학생승마체험지원<br>농어촌어린이<br>진화영어회화 프로그램 |       | 영어말하기대회 |
| 울진군  | 청소년 수련관,<br>청소년 문화의 집 |  |       |         |
| 울릉군  | 청소년 수련관,<br>청소년 문화의 집 |  |       |         |

### 3. 교통정보

- 2016년 경북의 교통정보 지표값은 69.6%로 16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47.8%(11개 시·군)에서 2016년 69.6%(16개 시·군)으로 지표값이 개선
  -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은 2015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2016년에는 기준을 충족

- 경상북도의 전체 교통정보 서비스는 2015년 40개에서 2016년 53개로 증가
  - 홈페이지, 교통앱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교통앱 서비스가 1개 증가
  - 전광판을 이용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시·군은 2015년 7개 시·군에서 2016년 11개 시·군으로 증가
  - 읍면사무소 상담인력 배치, ARS 등 기타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 2015년 15개에서 2016년 23개로 특히 많이 증가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교통정보 서비스 합계 |      |     |    |    | 2019년 목표 |
|------|----------|-------|-------------|------|-----|----|----|----------|
|      | 2016     | 2016  | 홈페이지        | 교통 앱 | 전광판 | 기타 |    |          |
| 경상북도 | 47.8%    | 69.6% | 53          | 12   | 7   | 11 | 23 | 100%     |
| 포항시  | ○        | ○     | 2           | 1    | 0   | 1  | 0  | ○        |
| 경주시  | ○        | ○     | 4           | 1    | 1   | 1  | 1  | ○        |
| 김천시  | ○        | ○     | 3           | 0    | 1   | 1  | 1  | ○        |
| 안동시  | ×        | ○     | 2           | 1    | 0   | 0  | 1  | ○        |
| 구미시  | ○        | ○     | 3           | 0    | 1   | 1  | 1  | ○        |
| 영주시  | ○        | ○     | 5           | 1    | 1   | 1  | 2  | ○        |
| 영천시  | ×        | ○     | 2           | 1    | 0   | 1  | 0  | ○        |
| 상주시  | ○        | ○     | 2           | 0    | 0   | 0  | 2  | ○        |
| 문경시  | ×        | ○     | 2           | 1    | 0   | 0  | 1  | ○        |
| 경산시  | ×        | ○     | 2           | 0    | 1   | 1  | 0  | ○        |
| 군위군  | ×        | ×     | 1           | 1    | 0   | 0  | 0  | ○        |
| 의성군  | ×        | ○     | 2           | 0    | 0   | 1  | 1  | ○        |
| 청송군  | ×        | ×     | 0           | 0    | 0   | 0  | 0  | ○        |
| 영양군  | ○        | ○     | 4           | 1    | 1   | 1  | 1  | ○        |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교통정보 서비스 합계 |      |     |    |   | 2019년<br>목표 |
|-----|----------|------|-------------|------|-----|----|---|-------------|
|     | 2016     | 2016 | 홈페이지        | 교통 앱 | 전광판 | 기타 |   |             |
| 영덕군 | ○        | ○    | 3           | 1    | 0   | 0  | 2 | ○           |
| 청도군 | ×        | ×    | 1           | 0    | 0   | 0  | 1 | ○           |
| 고령군 | ×        | ×    | 1           | 1    | 0   | 0  | 0 | ○           |
| 성주군 | ×        | ×    | 1           | 0    | 0   | 0  | 1 | ○           |
| 칠곡군 | ○        | ○    | 5           | 1    | 1   | 1  | 2 | ○           |
| 예천군 | ○        | ○    | 4           | 1    | 0   | 0  | 3 | ○           |
| 봉화군 | ○        | ○    | 3           | 0    | 0   | 1  | 2 | ○           |
| 울진군 | ×        | ×    | 0           | 0    | 0   | 0  | 0 | ○           |
| 울릉군 | ×        | ×    | 1           | 0    | 0   | 0  | 1 | ○           |

주 1)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일 경우 충족 시·군으로 간주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6개(69.6%)

#### 4. 귀농·귀촌

- 2016년 경북의 귀농·귀촌 지표값은 73.9%로 17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9.6%(16개 시·군)에서 2016년 73.9%(17개 시·군)으로 지표값이 다소 개선
  - 문경시, 청송군에서는 새롭게 귀농·귀촌 서비스를 시작한 반면, 청도군은 귀농·귀촌 서비스를 중단
- 귀농귀촌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큰 편
  -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등에서는 연 이용객이 1,000명을 넘는 반면,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등에서는 연 이용객이 50명 이하로 적은 편

- 2019년까지의 목표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등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87.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 귀농·귀촌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군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시설/서비스명             | 연이용객  | 귀농·귀촌인 수 | 2019년 목표 |
|------|----------|-------|---------------------|-------|----------|----------|
|      | 2015년    | 2016년 |                     |       |          |          |
| 경상북도 | 69.6%    | 73.9% |                     | 5,524 | 5,658    | 87.0%    |
| 포항시  | ×        | ×     |                     |       | 497      | ×        |
| 경주시  | ×        | ×     |                     |       |          | ×        |
| 김천시  | ×        | ×     |                     |       |          | ×        |
| 안동시  | ○        | ○     | 귀농의 집, 귀농귀촌학교       | 179   | 329      | ○        |
| 구미시  | ○        | ○     | 귀농귀촌교육              | 52    | 179      | ○        |
| 영주시  | ○        | ○     | 귀농귀촌 체험센터           | 53    | 38       | ○        |
| 영천시  | ○        | ○     | 귀농상담실               | 413   |          | ○        |
| 상주시  |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 1,250 | 461      | ○        |
| 문경시  | ×        | ○     | 귀농귀촌정보센터            | 1,200 | 700      | ○        |
| 경산시  | ○        | ○     |                     |       | 382      | ○        |
| 군위군  | ×        | ×     |                     |       |          | ○        |
| 의성군  | ○        | ○     | 귀농귀촌 정보센터           | 1,089 | 661      | ○        |
| 청송군  | ×        | ○     | 귀농귀촌센터,<br>귀농귀촌인의 집 | 20    | 200      | ○        |
| 영양군  | ○        | ○     | 영양군 귀농인의 집          | 15    | 290      | ○        |
| 영덕군  | ○        | ○     | 귀농인의 집              |       | 464      | ○        |
| 청도군  | ○        | ×     |                     |       | 294      | ○        |
| 고령군  | ○        | ○     | 귀농귀촌지원센터            | 375   | 228      | ○        |
| 성주군  | ○        | ○     | 귀농귀촌상담실             | 445   | 445      | ○        |
| 칠곡군  | ×        | ×     |                     |       | 80       | ○        |
| 예천군  | ○        | ○     | 귀농인의 집              | 10    | 334      | ○        |
| 봉화군  | ○        | ○     | 귀농인의 집              | 372   |          | ○        |
| 울진군  | ○        | ○     | 귀농귀촌 상담센터           |       | 25       | ○        |
| 울릉군  | ○        | ○     |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 51    | 51       | ○        |

주 1)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100

2) 귀농·귀촌인 수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7개(73.9%)

## 5. 농업 일자리 정보

- 2016년 경북의 농업 일자리 정보 지표값은 50.0%로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27.3%(6개 시·군)에서 2016년 50.0%(11개 시·군)으로 지표값이 크게 개선
  -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예천군 등에서 새롭게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
  - 반면, 울진군에서는 2016년에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단
  
- 농업 일자리 정보 서비스 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편
  - 영덕군, 봉화군, 성주군의 실적 건수가 다소 큰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200건 이하로 적은 편
  
- 2019년까지의 목표는 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54.5%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은 낮은 우선순위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시설/서비스명 | 실적건수   | 2019년 목표 |
|------|----------|-------|---------|--------|----------|
|      | 2015년    | 2016년 |         |        |          |
| 경상북도 | 27.3%    | 50.0% |         | 8,539명 | 54.5%    |
| 포항시  | ×        | ×     | 일자리지원센터 | 233명   | ×        |
| 경주시  | ×        | ×     |         |        | ×        |
| 김천시  | ×        | ○     |         |        | ×        |
| 안동시  | ×        | ×     |         |        | ×        |
| 구미시  | ×        | ×     |         |        | ×        |
| 영주시  | ×        | ×     |         |        | ×        |



| 구분  | 지표값/충족여부 |       | 시설/서비스명        | 실적건수   | 2019년 목표 |
|-----|----------|-------|----------------|--------|----------|
|     | 2015년    | 2016년 |                |        |          |
| 영천시 | ×        | ×     |                |        | ×        |
| 상주시 | ×        | ○     | 농촌인력지원센터       | 150명   | ×        |
| 문경시 | ○        | ○     | 농촌일손돕기중개창구지원   | 30명    | ○        |
| 경산시 | ×        | ×     |                |        | ×        |
| 군위군 | ○        | ○     | 도농순환생명공동체      | 21명    | ○        |
| 의성군 | ×        | ○     |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257명   | ○        |
| 청송군 | ×        | ○     | 민간(유목민의 집)     | 100명   | ○        |
| 영양군 | ○        | ○     | 농촌일자리지원센터      | 100명   | ○        |
| 영덕군 | ○        | ○     | 농촌인력지원센터       | 6,382명 | ○        |
| 청도군 | ×        | ×     |                |        | ○        |
| 고령군 | ×        | ×     |                |        | ○        |
| 성주군 | ×        | ○     | 농협농정지원단 인력중개센터 | 540명   | ○        |
| 칠곡군 | ×        | ×     |                |        | ×        |
| 예천군 | ×        | ○     | 농촌일손돕기 인력연결    | 45명    | ○        |
| 봉화군 | ○        | ○     |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 927명   | ○        |
| 울진군 | ○        | ×     |                |        | ○        |
| 울릉군 | -        | -     | -              | -      | -        |

주 1)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출에서 제외함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1개(50.0%)

## 6. 생활체육

- 2016년 경북의 생활체육 지표값은 체육시설이 83.6%, 체육교실이 56.7%
  - 체육시설 지표값은 2015년 83.6%에서 2016년 88.2%로 다소 개선
  - 체육교실 지표값은 2015년 56.7%에서 2016년 31.5%로 크게 저하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경우, 경북에서는 17개(77.3%)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체육시설 설치 읍면 수 증가로 2015년 15개에서 2016년 17개로 충족 시·군 수가 증가
  - 2016년에 경주시, 문경시, 청송군은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반면, 영주시는 2015년과 달리 미충족<sup>6</sup>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지표값을 10% 높이는 것으로 설정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 구분   | 지표값(%) |       |       |       | 읍면 수 |       |       | 2019년 목표(%) |       |
|------|--------|-------|-------|-------|------|-------|-------|-------------|-------|
|      | 2015년  |       | 2016년 |       | 총읍면  | 체육 시설 | 체육 교실 | 체육 시설       | 체육 교실 |
|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       |       |             |       |
| 경상북도 | 83.6   | 56.7  | 88.2% | 31.5% | 238  | 210   | 75    | 93.6        | 66.7  |
| 포항시  | 84.6   | 15.4  | 84.6  | 15.4  | 13   | 11    | 2     | 94.6        | 25.4  |
| 경주시  | 91.7   | 91.7  | 100.0 | 100.0 | 12   | 12    | 12    | 100.0       | 100.0 |
| 김천시  | 100.0  | 86.7  | 100.0 | 0.0   | 15   | 15    |       | 100.0       | 96.7  |
| 안동시  | 100.0  | 7.1   | 100.0 | 0.0   | 14   | 14    |       | 100.0       | 17.1  |
| 구미시  | 100.0  | 37.5  | 100.0 | 37.5  | 8    | 8     | 3     | 100.0       | 47.5  |
| 영주시  | 100.0  | 100.0 | 50.0  | 0.0   | 10   | 5     |       | 100.0       | 100.0 |
| 영천시  | 81.3   | 81.3  | 68.8  | 31.3  | 16   | 11    | 5     | 91.3        | 91.3  |
| 상주시  | 38.9   | -     | 38.9  |       | 18   | 7     |       | 48.9        | -     |
| 문경시  | 77.8   | 66.7  | 100.0 | 55.6  | 9    | 9     | 5     | 87.8        | 76.7  |
| 경산시  | 100.0  | 87.5  | 100.0 | 100.0 | 8    | 8     | 8     | 100.0       | 97.5  |

<sup>6</sup> 설문조사의 한계로 2015년에 청송군과 영주시의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두 시·군 모두 체육시설 수가 1년 사이에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 혹은 감소했기 때문임

| 구분  | 지표값(%) |       |       |       | 읍면 수 |      |      | 2019년 목표(%) |       |
|-----|--------|-------|-------|-------|------|------|------|-------------|-------|
|     | 2015년  |       | 2016년 |       | 총읍면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체육시설  | 체육교실  |      |      |      |             |       |
| 군위군 | 100.0  | 100.0 | 100.0 | 100.0 | 8    | 8    | 8    | 100.0       | 100.0 |
| 의성군 | 100.0  | 55.6  | 100.0 | 55.6  | 18   | 18   | 10   | 100.0       | 65.6  |
| 청송군 | -      | -     | 100.0 | 37.5  | 8    | 8    | 3    | 10.0        | 10.0  |
| 영양군 | 100.0  | 100.0 | 100.0 | 0.0   | 6    | 6    |      | 100.0       | 100.0 |
| 영덕군 | 100.0  | 100.0 | 100.0 | 22.2  | 9    | 9    | 2    | 100.0       | 100.0 |
| 청도군 | 22.2   | 66.7  | 88.9  | 0.0   | 9    | 8    |      | 32.2        | 76.7  |
| 고령군 | 100.0  | 37.5  | 100.0 | 0.0   | 8    | 8    |      | 100.0       | 47.5  |
| 성주군 | 60.0   | 60.0  | 60.0  | 20.0  | 10   | 6    | 2    | 70.0        | 70.0  |
| 칠곡군 | 87.5   | 100.0 | 100.0 | 100.0 | 8    | 8    | 8    | 97.5        | 100.0 |
| 예천군 | 100.0  | 8.3   | 100.0 | 41.7  | 12   | 12   | 5    | 100.0       | 18.3  |
| 봉화군 | 100.0  | 16.7  | 100.0 | 33.3  | 6    | 6    | 2    | 100.0       | 26.7  |
| 울진군 | 100.0  | 100.0 | 100.0 | 0.0   | 10   | 10   |      | 100.0       | 100.0 |
| 울릉군 | 100.0  | 33.3  | 100.0 | 0.0   | 3    | 3    |      | 100.0       | 43.3  |

주 1)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2)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3) 2016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7개(77.3%)

## 제 4 장

### 지역 우수사례: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 1. 사례 개요

##### ■ 민간 주도의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 상주에서는 2009년 민간 귀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비의 대부분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당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작
  - 상주에서는 2010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받기 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구상을 시작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가 설립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1,279가구 2,627명의 귀농인이 이주
-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청과 협의 진행
  - 업무량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행정에서는 귀

농·귀촌 정책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음.

- 하지만 논의와 협의를 통해 도시민유치지원사업도 가져오고 새로운 사업들도 시도하며 지금까지 운영

###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목표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설립 목적은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부의 재생산구조를 갖추는 것
  - 귀농·귀촌인이 고립된 점이 아닌 지역 네트워크 내에 포함된 하나의 점으로서 역할 하도록 하는 것이 귀농귀촌정보센터의 목표
  - 귀농·귀촌인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활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설립 동기
- 상주시 귀농귀촌정책에서는 귀농귀촌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귀농귀촌은 과정일 뿐이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이상은 귀농·귀촌을 넘어 지역 밀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
  -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시행

## 2. 주요 내용

###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정보센터

- 상주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귀농·귀촌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을 실시

-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귀농·귀촌 현장 컨설팅, 상주 귀농귀촌포털시스템 운영, 귀농인 사랑방, 공동체 귀농학교, 귀농건축학교,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귀농·귀촌인 지도 등의 사업을 시행
-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의 대부분은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담당
- 행정에서는 도시민 유치 설명회, 귀농귀촌포털시스템 관리, 귀농귀촌인 지도,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등 일부 사업만을 담당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핵심이 되는 다양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은 대부분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추진

표 4-1. 상주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2주기: 2013~2015)

| 구 분                  | 프로그램                    | 사업비현황(단위: 백만원) |      |      |      | 비고<br>(추진주체)   |
|----------------------|-------------------------|----------------|------|------|------|----------------|
|                      |                         | 총 계획           | 2013 | 2014 | 2015 |                |
| 계                    |                         | 610            | 205  | 205  | 200  |                |
| 전담기구 및<br>전문인력<br>운영 | 소 계                     | 85             | 35   | 25   | 25   |                |
|                      | 귀농귀촌정보센터<br>운영비         | 85             | 35   | 25   | 25   | 귀농귀촌<br>정보센터   |
| 하드웨어                 | 소 계                     | 0              | 0    | 0    | 0    |                |
| 소프트웨어                | 소 계                     | 525            | 170  | 180  | 175  |                |
|                      | 귀농귀촌현장<br>컨설팅           | 20             |      | 10   | 10   | 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상주귀농귀촌포털<br>시스템(SRPS)운영 | 50             | 10   | 20   | 20   | 상주시<br>(농업정책과) |
|                      | 귀농인 사랑방                 | 32             | 12   | 10   | 10   | 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공동체 귀농학교                | 90             | 30   | 30   | 30   | 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귀농·귀촌인 교육               | 142            | 50   | 46   | 46   | 상주시<br>(농업정책과) |
|                      | 귀농건축학교운영                | 90             | 30   | 30   | 30   | 귀농귀촌<br>정보센터   |

| 구분 | 프로그램             | 사업비현황(단위: 백만원) |      |      |      | 비고<br>(추진주체)   |
|----|------------------|----------------|------|------|------|----------------|
|    |                  | 총 계획           | 2013 | 2014 | 2015 |                |
|    | 도시민유치설명회         | 87             | 32   | 30   | 25   | 상주시<br>(농업정책과) |
|    | 귀농·귀촌인<br>선진지 견학 | 9              | 5    | 2    | 2    | 상주시<br>(농업정책과) |
|    | 귀농귀촌인 지도         | 5              | 1    | 2    | 2    | 상주시<br>(농업정책과) |

표 4-2. 상주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3주기: 2016~)

| 구분                | 항목         | 프로그램명            | 사업비현황(단위: 백만 원) |          |          |          | 비고<br>(추진주체)       |
|-------------------|------------|------------------|-----------------|----------|----------|----------|--------------------|
|                   |            |                  | 총 계획            | 1차<br>년도 | 2차<br>년도 | 3차<br>년도 |                    |
|                   | 합계①+②      |                  | 600             | 200      | 200      | 200      |                    |
| 전담기구<br>및<br>하드웨어 | 전담기구       | 상주귀농귀촌<br>정보센터운영 | 120             | 40       | 40       | 4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소 계        |                  | 120             | 40       | 40       | 40       |                    |
|                   | 하드웨어       | -                | 0               | 0        | 0        | 0        |                    |
|                   | 소 계        |                  | 0               | 0        | 0        | 0        |                    |
|                   | 계①         |                  | 120             | 40       | 40       | 40       |                    |
| 소프트<br>웨어         | 정주의향<br>단계 | 도시민유치설명회         | 75              | 25       | 25       | 25       | 농업정책과              |
|                   |            | 귀농귀촌포털<br>시스템관리  | 60              | 20       | 20       | 20       | 농업정책과              |
|                   |            | 공동체귀농학교<br>운영    | 60              | 20       | 20       | 2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 청년귀농학교           | 30              | 10       | 10       | 1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소 계        |                  | 225             | 75       | 75       | 75       |                    |

| 구분 | 항목         | 프로그램명         | 사업비현황(단위: 백만 원) |          |          |          | 비고<br>(추진주체)       |
|----|------------|---------------|-----------------|----------|----------|----------|--------------------|
|    |            |               | 총 계획            | 1차<br>년도 | 2차<br>년도 | 3차<br>년도 |                    |
|    | 이주준비<br>단계 | 귀농건축학교운영      | 90              | 30       | 30       | 3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 공동체창안학교       | 60              | 20       | 20       | 2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소 계        |               | 150             | 50       | 50       | 50       |                    |
|    | 이주실행<br>단계 | 지역공동체<br>창업학교 | 45              | 15       | 15       | 15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 소 계           | 45              | 15       | 15       | 15       |                    |
|    | 이주정착<br>단계 | 귀농인사랑방운영      | 30              | 10       | 10       | 10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 공동체발전포럼<br>운영 | 18              | 6        | 6        | 6        | 상주<br>귀농귀촌<br>정보센터 |
|    |            | 귀농귀촌인지도       | 6               | 2        | 2        | 2        | 농업정책과              |
|    |            | 귀농귀촌<br>선진지견학 | 6               | 2        | 2        | 2        | 농업정책과              |
|    | 소 계        | 60            | 20              | 20       | 20       |          |                    |
|    | 계②         | 495           | 160             | 160      | 160      |          |                    |

### ■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새로운 시도

- 상주시 귀농귀촌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귀농·귀촌 이외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공동체 귀농학교 뿐만 아니라 상주시 귀농포털시스템 사업에서도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도시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강조
  - 귀농인 사랑방도 귀농인만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민과의 소통 통로, 지역민 융화 프로그램 운영(재능기부, 직거래장터)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



- 2016년 이후에는 귀농귀촌인과 공동체의 연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더욱 증가
  - 공동체 귀농학교외에도 공동체 창안 학교와 지역공동체 창업학교를 새롭게 포함
  - 귀농인 사랑방만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포럼 운영 사업을 새롭게 계획
- 청년 귀농인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여 새롭게 청년귀농학교 계획을 수립
  - 공동체 귀농 학교 외에 정주의향 단계 사업으로 청년귀농학교 운영을 새롭게 포함

#### ■ 귀농귀촌과 공동체 연계 사업

- 상주에서는 귀농귀촌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인 사랑방을 운영. 귀농인 사랑방은 일종의 지역소모임으로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모임
  - 귀농인 사랑방은 마을 공동체 지원과 깊게 연계. 귀농인 사랑방에서 논의된 마을 공동체 관련 아이디어는 귀농인 창안 학교를 통해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계획은 귀농인 창업 학교를 통해 실제 진행 단계를 추진
  - 귀농인 창안 학교의 실제 사업 계획은 공동체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 소득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한 사업
  - 행정리 단위의 생산기반과 귀농귀촌인의 마케팅, 6차 산업화 역량을 융합해 마을 단위 소득 기반을 마련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협력소득사업 우수 마을 선정과 시상도 함께 진행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
  -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시·군 자체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과 공동체 주도의 개발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가능

- 귀농·귀촌인 패키지 멘토링 지원 사업은 농업 전반에 대한 멘토-멘티의 집단학습방식을 실시해 귀농·귀촌인을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 선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연계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 육성을 목표로 제시
- 귀농귀촌 창농창업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사업
  -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평가 가능

### 3. 주요 성과

#### ■ 귀농·귀촌인 증가

- 상주시에서는 각종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목표한 것 이상의 성과를 달성
  - 2013~2015년 간 목표로 한 귀농·귀촌 인구는 1,200명 이었으나 실제 귀농·귀촌 인구는 1,450명으로 120% 추가 달성
  - 귀농·귀촌 가구 중에서도 귀농 가구 비율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

표 4-3. 상주시 귀농·귀촌 관련 성과 지표

| 성과지표명                | 사업명       | 목표(명) | 실적(명) | 달성도(%) | 자료출처 |
|----------------------|-----------|-------|-------|--------|------|
| 귀농·귀촌 인구<br>목표대비 달성률 | 계         | 1,200 | 1,450 | 120    |      |
|                      | '13년      | 400   | 586   | 130    | 통계청  |
|                      | '14년      | 400   | 462   | 115    | 통계청  |
|                      | '15년(11월) | 400   | 402   | 100    | 행정통계 |

## ■ 귀농·귀촌 정책과 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활성화

- 귀농·귀촌인을 넘어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귀농·귀촌 사업이 조금씩 활성화
  -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 중 귀농귀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다수
  - 사업 추진이 원활한 마을들은 귀농·귀촌인이 참여하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귀농귀촌인을 별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
- 귀농·귀촌인도 지역 주민의 한명으로써 구분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이 바람직
  -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귀농귀촌협의회가 지역에서 또 다른 이익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 ■ 귀농귀촌정보센터와 상주군 행정의 협력 강화

-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자생’, 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각종 정책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여 군청 행정 공무원에게 활발히 건의
  - 상주군 행정에서는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 지원하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
  -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민간 정책 건의와 협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
  - 청년 귀농,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을 민간에서 건의하여 시행하려 준비 중

## 4. 한계 및 과제

###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지속성 강화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운영의 불안정성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에는 사무국장, 교육팀장의 2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대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
  - 귀농귀촌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나,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나 향후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
  - 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이 절실
  - 도시민유치지원사업비 지원이 끝나게 되면 운영비 예산이 없어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는 형편
  - 시·군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 ■ 귀농·귀촌인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중심의 귀농·귀촌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귀농·귀촌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 존재
  - 도시 생활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공동체라는 보다 밀접한 인간관계를 다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나의 주체적 삶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
  - 공동체도 먼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농인에게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할 필요도 있음

-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의 활동들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
  - 공동체 귀농학교의 교육에서는 공동체, 마을, 친환경, 유기농, 생태 교육 등이 주요 내용
  -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 존재. 농업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평가
  - 마을보다 법인체를 중심에 놓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과 학습 및 지원이 필요

#### ■ 상주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상주귀농귀촌지원센터는 ‘공동체·귀농지원센터, 다움센터’로 명칭 변경을 계획 중
  - 귀농인과 주민의 구분 없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공동체의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모색
  - 다움센터에서는 역량강화교육, 소액지원 사업, 창의마을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구상 중
- 상주귀농귀촌지원센터와 관련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자들의 상주 내부에서의 역할찾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한 것이 사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각 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의 대표 리더들과 권역사업, 체험휴양마을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마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을 연결시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리더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귀농귀촌인과 연대하여 마을의 계획과 사업을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
  -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마을(지역)공동체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 부록1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구분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 점검방법  | 2019 목표치 |
|--------------|-----------------|---|---|----------|
| 보건<br>복지     | 복지통합시스템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li> <li>충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li> </ul>  | 50.0     |
| 교육           | 교육 다양성          |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li> <li>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충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li> <li>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li> </ul> </li> </ul> | 100%     |
| 정주<br>생활기반   | 교통 정보           |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li> <li>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충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li> </ul> </li> </ul>   | 100%     |
| 경제활동<br>·일자리 | 귀농·귀촌           |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li> <li>충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li> </ul>   | 87.0%    |
|              | 농업<br>일자리<br>정보 |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li> <li>충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li> </ul>   | 54.5%    |
| 문화<br>·여가    | 생활체육            |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li> <li>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li> </ul>   | 66.7%    |

## 부록2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조사표

|                                |                |
|--------------------------------|----------------|
| <b>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평가</b> | <b>대구경북연구원</b> |
|--------------------------------|----------------|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 2015년부터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
- 국가관리 핵심 항목은 삶의 질 계획과 매칭하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개편(기존: 9개 부문, 32개 항목)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자체 기준 마련 유도

2016년부터 삶의 질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6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6년 동안 6개 선택 항목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목표 설정과 정책 사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선정한 6개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복지통합시스템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한 조사입니다.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구분       | 선택 항목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
| 보건복지     | 복지 통합시스템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교육       | 교육 다양성    |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정주생활 기반  | 교통 정보     |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경제활동·일자리 | 귀농·귀촌     |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          | 농업 일자리 정보 |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문화·여가    | 생활체육      |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시 군 명: ( )시/군

■ 작성부서: ( )



## 1. 교육 다양성

귀하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 혹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최대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사업, 시설명 | 교육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예시)

| 사업, 시설명      | 교육 내용                             | 비고 |
|--------------|-----------------------------------|----|
|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    |
| 청소년 수련관      | 6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
| 청소년 진로 상담 버스 | 연 2회 진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 2016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철민 연구위원



## 차 례

---

### 제1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 1. 연구 필요성 ..... 369
- 2. 연구 목적 ..... 371
- 3. 연구 추진 방법 ..... 372

### 제2장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선택항목 선정 ..... 373
- 2.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 377

### 제3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사례

- 1. 브라보 택시 운영 ..... 399
- 2.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 400
-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401

## 표 차례

---

### 제2장

|  |     |
|--|-----|
|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             | 375 |
| 표 2-2.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           | 376 |
|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인원) .....       | 378 |
|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신부 진료실적(실인원) .....        | 379 |
|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             | 380 |
|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       | 381 |
|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            | 383 |
|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         | 384 |
|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             | 386 |
|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   | 387 |
|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      | 388 |
|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 | 390 |
|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                      | 391 |
|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                | 391 |
|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          | 393 |
|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2015년 기준) .....      | 394 |
|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     | 396 |



## 그림 차례

---

### 제3장

|                                 |     |
|---------------------------------|-----|
|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 | 377 |
| 그림 3-1.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        | 398 |
| 그림 3-2. 브라보 택시 운영 방안 .....      | 399 |



# 제 1 장

##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 1. 연구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년)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현실 반영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 이 연구는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년차 연구로서 선택항목 이행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이나 정책의 실효성 평가 등 개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선택항목의 변경, 선정된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수정, 이행실태 점검 방법의 개선 그리고 각 선택항목별 목표치에 대한 수정 등이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격차가 큰 부분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치가 달성되고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으로 변경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사업시행 초기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
  - 이행실태의 점검 방법은 처음 적용하였던 것보다 더 쉽게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함.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선택항목을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선택항목 선정을 위해 ① 삶의 질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협의체(경우에 따라 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를 구성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② 지역주민의 수요조사 및 관련 전문가(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을 논의·확정함.
  - 시·군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년)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

### 3. 연구 추진 방법

#### ■ 포괄적 의견수렴

- 담당자 인터뷰 조사 실시: 관련전문가(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 자문회의 및 워크숍 실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 타당성 논의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논의

#### ■ 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공식통계를 제외한 내부 자료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 현장방문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 현장 조사(필요시) 및 수범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 제 2 장

---

#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선택항목 선정

#### 1.1. 선택항목 지표 선정

##### ■ 목적 및 원칙

- 경상남도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과 지표를 선정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삶의 질과 관련한 농어촌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의 선택항목과 지표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경남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② 경남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
  - ③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 ④ 경남의 각 시·군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사업
  - ⑤ 달성률 등 정량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사업

## ■ 선정배경

- 선택항목 지표 선정 방법
  - 경상남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사업 분석
  - 경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검토
  - 경남 도정 복지보건 정책 분석
  -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
- 수범사례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의 모범 사례 발굴



## ■ 선택항목 선정

○ 경상남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선정됨.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 부문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
|-------------|-----------------|--|
| 1. 보건복지     | 1) 찾아가는 산부인과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와 출산을 돕는다. |
| 2. 교육여건     |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 대학생 멘토링 대상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주 1회 학생 개별 방문 지도를 제공한다.        |
|             | 3) 서민자녀 교육지원    |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
| 3. 정주생활 기반  | 4) 독거노인 공동생활    |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한다.           |
| 4. 경제활동 일자리 | 5) 농가도우미        |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
| 5. 문화·여가    | 6) 실내수영장 설치     | 지역에서 수영활동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이 있고, 수영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

## ■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선택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과 점검 수단은 다음과 같음.

표 2-2.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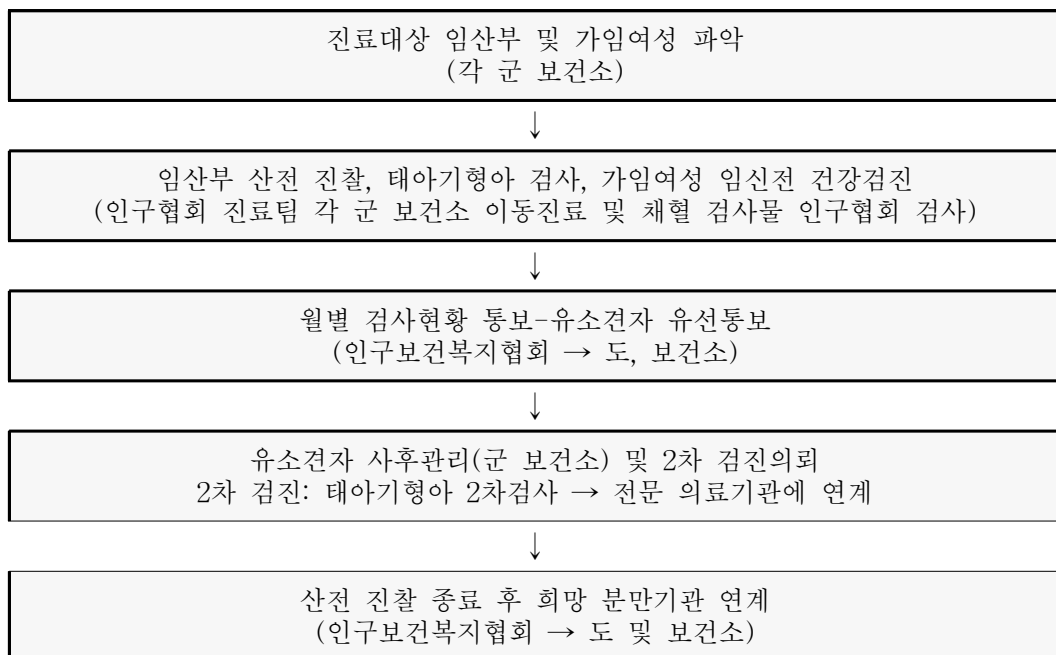
| 선택항목            | 점검 방법                                    | 점검 수단          |      |
|-----------------|--|----------------|------|
| 1) 찾아가는 산부인과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산 건수 / 그 지역의 출산 건수)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  | 통계청 출생 자료      | 공식통계 |
|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 (멘토링 지원학생 수 / 멘토링 지원대상 학생 수)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  |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공식통계 |
| 3) 서민자녀 교육지원    | (사업예산 증감액 / 전년도 사업예산)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4) 독거노인 공동생활    | (공동생활 독거노인 수 / 공동생활을 원하는 독거노인 수)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  | 시·군 조사         | 협조자료 |
| 5) 농가도우미        |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 /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  | 통계청 출생 자료      | 공식통계 |
| 6) 실내수영장        | (시·군별 수영장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 경상남도 자료        | 협조자료 |
|                 |  | 시·군 조사         | 협조자료 |

## 2.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 2.1. 임산부 관리(찾아가는 산부인과)

-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임산부의 산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산부에게 찾아가는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돕는 등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 경상남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당초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의 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3년 합천에 산부인과가 개원됨에 따라 합천을 제외한 5개 군 지역으로 축소됨.
  - 진료를 위해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월 2~4회 순회검진을 실시함
  - 운영인력: 6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원)
  
- 검진내용은 임신부 무료 산전 진찰, 가임기 및 비가임기여성 부인과 검진 등임.
  - 태아 초음파 등 산전 진찰(표준 산전 의료서비스 1인 총 13회)
  - 가임 및 비가임여성 부인과 검진 등
    - ※ 연간 평균 검진 횟수 150여 회, 검진건수 2,500여건(일반가정 2,000여건, 다문화 500여건)
    - ※ 이동검진차량: 1일 기준 평균 18명 정도 검진
  
-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실적은 가임 여성의 수나 출산율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 다음 표와 같음.
  - 가임여성을 진료한 연인원은 2012년 500명에서 2105년 328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가임여성의 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임.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인원)

단위: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의령 | 71    | 83    | 49    | 48    |
| 고성 | 165   | 127   | 34    | 54    |
| 하동 | 152   | 155   | 129   | 71    |
| 산청 | 112   | 81    | 41    | 80    |
| 함양 |       |       | 26    | 75    |
| 계  | 500   | 446   | 279   | 865   |

- 임산부를 진료한 실인원 수는 2011년 693명이었으나 2013년 592명으로 감소하였고 5개 군 지역을 진료한 2013년에는 402명으로 감소하다 2014년 530명으로 증가하고 2105년 419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진료실적(실인원)

단위: 명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의령 | 69    | 74    | 69    | 60    | 107   | 54    |
| 고성 | 175   | 165   | 172   | 117   | 131   | 123   |
| 하동 | 128   | 144   | 114   | 81    | 121   | 58    |
| 산청 | 64    | 59    | 53    | 43    | 67    | 93    |
| 함양 | 135   | 126   | 133   | 101   | 104   | 91    |
| 합천 | 109   | 125   | 51    |       |       |       |
| 계  | 680   | 693   | 592   | 402   | 530   | 419   |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가 필요한 산전관리 서비스를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가 될 것임.
  -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지역 또는 대도시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게 됨.
  -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 임산부의 절반인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설정함.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 임신부의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혜택을 받는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행실태 점검은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산부 실인원의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단위: 명, %

| 지 역   | 출생아 수(A) |        | 찾아가는 산부인과<br>이용 출생 수(B) |      | 이용률(B/A) |      |
|-------|----------|--------|-------------------------|------|----------|------|
|       | 2014     | 2015   | 2014                    | 2015 | 2014     | 2015 |
| 창원시   | 9,684    | 9,526  |                         |      |          |      |
| 진주시   | 2,737    | 2,687  |                         |      |          |      |
| 통영시   | 1,273    | 1,233  |                         |      |          |      |
| 사천시   | 1,024    | 968    |                         |      |          |      |
| 김해시   | 5,287    | 5,182  |                         |      |          |      |
| 밀양시   | 562      | 617    |                         |      |          |      |
| 거제시   | 3,389    | 3,533  |                         |      |          |      |
| 양산시   | 2,961    | 3,079  |                         |      |          |      |
| 시 합계  | 26,917   | 26,825 |                         |      |          |      |
| 의령군   | 180      | 141    | 107                     | 54   | 59.4     | 38.3 |
| 함안군   | 490      | 510    |                         |      |          |      |
| 창녕군   | 380      | 374    |                         |      |          |      |
| 고성군   | 349      | 315    | 131                     | 123  | 37.5     | 39.0 |
| 남해군   | 192      | 182    |                         |      |          |      |
| 하동군   | 224      | 240    | 121                     | 58   | 54.0     | 24.2 |
| 산청군   | 225      | 234    | 67                      | 93   | 29.8     | 39.7 |
| 함양군   | 223      | 209    | 104                     | 91   | 46.6     | 43.5 |
| 거창군   | 376      | 338    |                         |      |          |      |
| 합천군   | 207      | 169    |                         |      |          |      |
| 군 합계  | 2,846    | 2,712  | 530                     | 419  | 18.6     | 15.4 |
| 경남(계) | 29,763   | 29,537 | 530                     | 419  | 18.6     | 15.4 |

- 산부인과가 없는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산부의 실인원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연도별 군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함.
- 2014년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생아 수는 530명이었고 2015년에는 41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서비스기준(5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2014년 하동군으로 54.0%를 나타내었고 그 외에는 없었으며 2015년에는 하나도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이 없었음.
  - 함양군의 진료 실적은 2014년 2015년 모두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43.5 | 24.2 | 15.4 | 0/5         | 0         |    |
| 도농복합시 | -    | -    | -    | -           | -         |    |
| 전체 경남 | 43.5 | 24.2 | 15.4 | 0/5         | 0         |    |

## 2.2. 교육기회(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부모의 빈곤, 저학력, 결손 등으로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 조언·조력이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활력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업 증진과 함께 건전한 사회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임.
  - 멘토 대학생의 자격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또는 졸업생도 포함
  - 멘토 대학생과 멘티를 동성조합으로 1:1로 매칭
  - 멘토가 선정된 멘티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1회 2시간) 개별 방문하여 지도하는데 월 1회는 문화체험을 하도록 함.
  - 멘토에게는 실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되고 멘티에게는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됨.

멘토링 지원 대상자의 10% 이상이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멘토링 지원 학생 수 / 시·군별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6 ~ 고1 학생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멘토링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멘토링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산출함.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단위: 명, %

| 지 역   | 대상 학생 수(A) |       | 지원 멘티 수(B) |      | 지원 비율(B/A) |      |
|-------|------------|-------|------------|------|------------|------|
|       | 2015       | 2016  | 2015       | 2016 | 2015       | 2016 |
| 창원시   | 3342       | 3103  | 139        | 139  | 4.16       | 4.48 |
| 진주시   | 1760       | 1503  | 0          | 0    | 0.00       | 0.00 |
| 통영시   | 728        | 626   | 7          | 7    | 0.96       | 1.12 |
| 사천시   | 573        | 492   | 20         | 20   | 3.49       | 4.07 |
| 김해시   | 1936       | 1969  | 70         | 80   | 3.62       | 4.06 |
| 밀양시   | 550        | 521   | 25         | 18   | 4.55       | 3.45 |
| 거제시   | 403        | 384   | 3          | 3    | 0.74       | 0.78 |
| 양산시   | 897        | 878   | 15         | 16   | 1.67       | 1.82 |
| 시 합계  | 10189      | 9476  | 279        | 283  | 2.74       | 2.99 |
| 의령군   | 104        | 89    | 10         | 5    | 9.62       | 5.62 |
| 함안군   | 238        | 212   | 10         | 10   | 4.20       | 4.72 |
| 창녕군   | 282        | 234   | 7          | 4    | 2.48       | 1.71 |
| 고성군   | 180        | 197   | 7          | 6    | 3.89       | 3.05 |
| 남해군   | 207        | 181   | 10         | 10   | 4.83       | 5.52 |
| 하동군   | 213        | 215   | 13         | 7    | 6.10       | 3.26 |
| 산청군   | 171        | 144   | 6          | 6    | 3.51       | 4.17 |
| 함양군   | 195        | 180   | 10         | 11   | 5.13       | 6.11 |
| 거창군   | 327        | 292   | 10         | 9    | 3.06       | 3.08 |
| 합천군   | 199        | 179   | 10         | 10   | 5.03       | 5.59 |
| 군 합계  | 2116       | 1923  | 93         | 78   | 4.40       | 4.06 |
| 경남(계) | 12305      | 11399 | 372        | 361  | 3.02       | 3.17 |

- 2016년 경상남도 기초수급자 자녀 초6~고1 학생의 수 11,399명의 3.2%인 361명이 멘토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나누면, 군 지역은 78명이 지원을 받아 4.1%, 도농복합시는 283명이 지원을 받아 3.0%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1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6.11 | 1.71 | 4.06 | 0/10        | 0.0       |    |
| 도농복합시 | 4.48 | 0.0  | 2.99 | 0/8         | 0.0       |    |
| 전체 경남 | 6.11 | 0.0  | 3.17 | 0/18        | 0.0       |    |

### 2.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바우처 사업) 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서민자녀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시·군 자율 시행으로 시·군비로 추진
  - 사업 대상은 소득하위계층 3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임.

7)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제3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 사례,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 바람.

- 당초 서민자녀 교육지원 분야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과 학생안전 개선 등의 3개로 나누어 시작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세 종류로 나누어짐.
  - 바우처 사업은 EB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학습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비 지원 등임.
  -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으로 학기중 수시로 실시함.
  -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짐.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1인당 지원 액수를 증액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 말 조사결과 만족도가 98%로 높게 나타나 만족도를 서비스 기준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둘 다 사업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정 수준까지의 사업예산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서비스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 이상 증액한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사업예산 증감액: 계획년도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 - 전년도 사업예산) / 전년도 사업예산)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자료는 경상남도과 각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이용함.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 역   | 2015   | 2016   | 증감율(%) |
|-------|--------|--------|--------|
| 창원시   | 4,798  | 6,125  | 27.7   |
| 진주시   | 4,295  | 4,505  | 4.9    |
| 통영시   | 1,775  | 2,650  | 49.3   |
| 사천시   | 1,455  | 1,810  | 24.4   |
| 김해시   | 5,597  | 5,800  | 3.6    |
| 밀양시   | 1,471  | 1,989  | 35.2   |
| 거제시   | 1,972  | 1,660  | -15.8  |
| 양산시   | 4,083  | 4,408  | 8.0    |
| 시 합계  | 25,446 | 28,947 | 13.8   |
| 의령군   | 712    | 935    | 31.3   |
| 함안군   | 892    | 1,476  | 65.5   |
| 창녕군   | 1,293  | 1,155  | -10.7  |
| 고성군   | 1,044  | 1,080  | 3.4    |
| 남해군   | 948    | 965    | 1.8    |
| 하동군   | 1,346  | 1,105  | -17.9  |
| 산청군   | 567    | 655    | 15.5   |
| 함양군   | 754    | 913    | 21.1   |
| 거창군   | 1,243  | 1,420  | 14.2   |
| 합천군   | 1,411  | 1,100  | -22.0  |
| 군 합계  | 10,210 | 10,804 | 5.8    |
| 경남(계) | 35,656 | 39,751 | 11.5   |

○ 경상남도 서민 자녀 예산지원액은 2015년 357억 원에서 2016년 398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하여 증액율은 11.5%이었음.

- 지역별로 나누면 시 지역은 35억 원 증가하여 13.8%, 군 지역은 6억 원이 증가하여 5.8%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서비스기준(사업예산 5% 이상 증액)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8개 도농 복합 시 가운데 5개 시이고, 10개 군 지역 가운데 5개 군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65.5 | -22.0 | 5.8  | 5/10        | 50.0      |    |
| 도농복합시 | 49.3 | -15.8 | 13.8 | 5/8         | 62.5      |    |
| 전체 경남 | 65.5 | -22.0 | 11.5 | 10/18       | 55.6      |    |

## 2.4.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은 홀로어르신 생활편의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 거주를 통한 홀로어르신 소외감 극복, 정서적 안정감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전국 최초로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만상, 용덕면 용소리 상용소의 2개소에서 시범실시 되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
  - 독거노인 5~10인 공동생활가정(숙식)
  - 도는 공공생활가정 시설보수비 지원 및 총괄 관리하고 시·군과 읍·면·동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과 건강관리, 생활지원, 노노케어, 자원봉사 연계 등을 추진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홀로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의 일정 수준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홀로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공동생활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초기에 수요가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단계에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서비스기준은 시·군 당 일정 수의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함.
-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생활가정을 홍보 수단으로 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단위: 개소, %

| 지 역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A) | 읍면동 수<br>(B) | 달성률<br>(A/B) |
|------|-------|-------|-------|-------|--------------|--------------|
| 창원시  | 3     | 1     | 0     | 4     | 62           | 6.5          |
| 진주시  | 1     | 1     | 1     | 3     | 32           | 9.4          |
| 통영시  | 1     | 1     | 1     | 3     | 15           | 20.0         |
| 사천시  | 1     | 1     | 1     | 3     | 14           | 21.4         |
| 김해시  | 1     | 0     | 0     | 1     | 19           | 5.3          |
| 밀양시  | 1     | 1     | 1     | 3     | 16           | 18.8         |
| 거제시  | 1     | 0     | 0     | 1     | 19           | 5.3          |
| 양산시  | 1     | 0     | 0     | 1     | 13           | 7.7          |
| 시 합계 | 10    | 5     | 4     | 19    | 190          | 10.0         |
| 의령군  | 1     | 6     | 3     | 10    | 13           | 76.9         |
| 함안군  | 1     | 1     | 2     | 4     | 10           | 40.0         |

| 지역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A) | 읍면동 수<br>(B) | 달성률<br>(A/B) |
|-------|-------|-------|-------|-------|--------------|--------------|
| 창녕군   | 1     | 6     | 6     | 13    | 14           | 92.9         |
| 고성군   | 1     | 2     | 2     | 5     | 14           | 35.7         |
| 남해군   | 1     | 1     | 1     | 3     | 10           | 30.0         |
| 하동군   | 1     | 2     | 2     | 5     | 13           | 38.5         |
| 산청군   | 1     | 2     | 5     | 8     | 11           | 72.7         |
| 함양군   | 1     | 2     | 1     | 4     | 11           | 36.4         |
| 거창군   | 1     | 2     | 3     | 6     | 12           | 50.0         |
| 합천군   | 1     | 2     | 0     | 3     | 17           | 17.6         |
| 군 합계  | 10    | 26    | 25    | 61    | 125          | 48.8         |
| 경상남도계 | 20    | 31    | 29    | 80    | 315          | 25.4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한다.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 / 시·군별 행정 읍·면·동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읍·면·동수는 경상남도의 통계자료를 이용함
-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하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공동가정 설치 필요성이 떨어져 달성률이 낮았음. 군 지역은 창녕군이 92.9%의 달성률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합천군이 17.6%로 가장 낮았음.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92.9 | 17.6 | 48.8 | 0/10        | 0.0       |    |
| 도농복합시 | 21.4 | 5.3  | 10.0 | 0/8         | 0.0       |    |
| 전체 경남 | 92.9 | 5.3  | 25.4 | 0/18        | 0.0       |    |

## 2.5. 농가도우미

-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자 함.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의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나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임.
  - 지원내용은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90일 까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할 경우, 도우미 1일 기준 단가의 85%를 지원
  -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29명 까지 지원하였으나 이후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2011년 286명, 2013년 73명, 2015년에는 127명을 지원하였음.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단위: 명

| 지역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104 | 2015 |
|---------|-------|-------|-------|------|------|
| 시 합계    | 66    | 63    | 37    | 36   | 30   |
| 군 합계    | 220   | 155   | 136   | 122  | 97   |
| 경상남도 합계 | 286   | 218   | 173   | 158  | 127  |

-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음.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단위: 명, %

| 지역   | 출생아 수(A) |        | 지원 인원 수(B) |      | 지원 비율(B/A) |      |
|------|----------|--------|------------|------|------------|------|
|      | 2014     | 2015   | 2014       | 2015 | 2014       | 2015 |
| 창원시  | 9,684    | 9,526  | 0          | 2    | 0.00       | 0.02 |
| 진주시  | 2,737    | 2,687  | 12         | 10   | 0.44       | 0.37 |
| 통영시  | 1,273    | 1,233  | 0          | 0    | 0.00       | 0.00 |
| 사천시  | 1,024    | 968    | 5          | 1    | 0.49       | 0.10 |
| 김해시  | 5,287    | 5,182  | 0          | 2    | 0.00       | 0.04 |
| 밀양시  | 562      | 617    | 18         | 15   | 3.20       | 2.43 |
| 거제시  | 3,389    | 3,533  | 0          | 0    | 0.00       | 0.00 |
| 양산시  | 2,961    | 3,079  | 1          | 0    | 0.03       | 0.00 |
| 시 합계 | 26,917   | 26,825 | 36         | 30   | 0.13       | 0.11 |
| 의령군  | 180      | 141    | 8          | 6    | 4.44       | 4.26 |
| 함안군  | 490      | 510    | 0          | 1    | 0.00       | 0.20 |
| 창녕군  | 380      | 374    | 8          | 4    | 2.11       | 1.07 |
| 고성군  | 349      | 315    | 3          | 2    | 0.86       | 0.63 |
| 남해군  | 192      | 182    | 0          | 0    | 0.00       | 0.00 |
| 하동군  | 224      | 240    | 28         | 18   | 12.50      | 7.50 |
| 산청군  | 225      | 234    | 7          | 11   | 3.11       | 4.70 |

| 지 역   | 출생아 수(A) |        | 지원 인원 수(B) |      | 지원 비율(B/A) |       |
|-------|----------|--------|------------|------|------------|-------|
|       | 2014     | 2015   | 2014       | 2015 | 2014       | 2015  |
| 함양군   | 223      | 209    | 38         | 28   | 17.04      | 13.40 |
| 거창군   | 376      | 338    | 18         | 20   | 4.79       | 5.92  |
| 합천군   | 207      | 169    | 12         | 7    | 5.80       | 4.14  |
| 군 합계  | 2,846    | 2,712  | 122        | 97   | 4.29       | 3.58  |
| 경남(계) | 29,763   | 29,537 | 158        | 127  | 0.53       | 0.43  |

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여성농업인의 20% 이상이 지원을 받는다.

- 농가도우미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는 먼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서 시·군별 출생수를 가져옴.
  - 다음으로 시·군별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자비율을 산출함.
  - 시·군별 전체 출생 수에 여자 농가인구의 비율을 곱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 건수를 추정함.
- 2015년 경상남도 군 지역 출생아 수 2,712명의 3.6%인 97명이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도농복합시는 0.1%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2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없었음.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13.4 | 0.0 | 3.6 | 0/10        | 0.0       |    |
| 도농복합시 | 2.4  | 0.0 | 0.1 | 0/8         | 0.0       |    |
| 전체 경남 | 48.0 | 0.0 | 0.4 | 0/18        | 0.0       |    |

## 2.6.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의 배치

### ○ 사업개요

-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운영·관리되는 체육시설임.
-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참가자가 적극적이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 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
-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음.

### ○ 여기서는 여러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경상남도 시·군 수영장의 설치 개소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함.

- 수영장은 수도권 지역과 대구,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불균형이 큰 체육시설의 하나임.

- 수영장은 서비스 거리 반경 5km로 분석했을 때 도시지역의 상당수가 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농어촌지역은 비혜택 인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 지역에 인구 4.5만 명당 1개소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다.

- 수영장 배치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수영장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수영장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5년 말 기준)”를 이용함.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조사하여 수영장의 설치 수를 평가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인구 수로 대신함.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만 명

| 지 역  | 수영장 수(A) | 인구 수(B)<br>(2014년 기준, 만 명) | 배치 비율(A/B) |
|------|----------|----------------------------|------------|
| 창원시  | 9        | 109.1513                   | 0.371      |
| 진주시  | 1        | 34.4547                    | 0.131      |
| 통영시  | 2        | 14.3545                    | 0.627      |
| 사천시  | 1        | 11.9639                    | 0.376      |
| 김해시  | 1        | 54.4972                    | 0.083      |
| 밀양시  | 1        | 10.9547                    | 0.411      |
| 거제시  | 1        | 26.2011                    | 0.172      |
| 양산시  | 0        | 29.7607                    | 0.000      |
| 시 합계 | 16       | 291.3381                   | 0.271      |
| 의령군  | 1        | 3.0014                     | 1.499      |
| 함안군  | 0        | 7.2330                     | 0.000      |
| 창녕군  | 0        | 6.5376                     | 0.000      |

| 지 역   | 수영장 수(A) | 인구 수(B)<br>(2014년 기준, 만 명) | 배치 비율(A/B) |
|-------|----------|----------------------------|------------|
| 고성군   | 1        | 5.7659                     | 0.780      |
| 남해군   | 2        | 4.7402                     | 1.899      |
| 하동군   | 0        | 4.9783                     | 0.000      |
| 산청군   | 1        | 3.6363                     | 1.238      |
| 함양군   | 0        | 4.1070                     | 0.000      |
| 거창군   | 0        | 6.3622                     | 0.000      |
| 합천군   | 1        | 5.1035                     | 0.882      |
| 군 합계  | 6        | 51.4654                    | 0.630      |
| 경남(계) | 22       | 342.8035                   | 0.289      |

- 2015년 말 기준 경상남도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전체 22개로 창원시에 9개소가 있는 등 주로 시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음.
  - 경남의 시 지역에서 수영장이 없는 시는 양산시 하나이고,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이 수영장이 없는 지역임.
  -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이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비스기준(100.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3곳으로 주로 군 지역에 있음.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5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구분  | 최대값   | 최소값 | 달성률  |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           | 비고 |
|-------|-------|-----|------|-------------|-----------|----|
|       |       |     |      | 달성 시·군 수    | 달성 시·군 비율 |    |
| 군     | 189.9 | 0.0 | 27.1 | 3/10        | 30.0      |    |
| 도농복합시 | 62.7  | 0.0 | 63.0 | 0/8         | 0.0       |    |
| 전체 경남 | 189.9 | 0.0 | 28.9 | 3/18        | 16.7      |    |

## 제 3 장

---

###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수사례

#### 1. 브라보 택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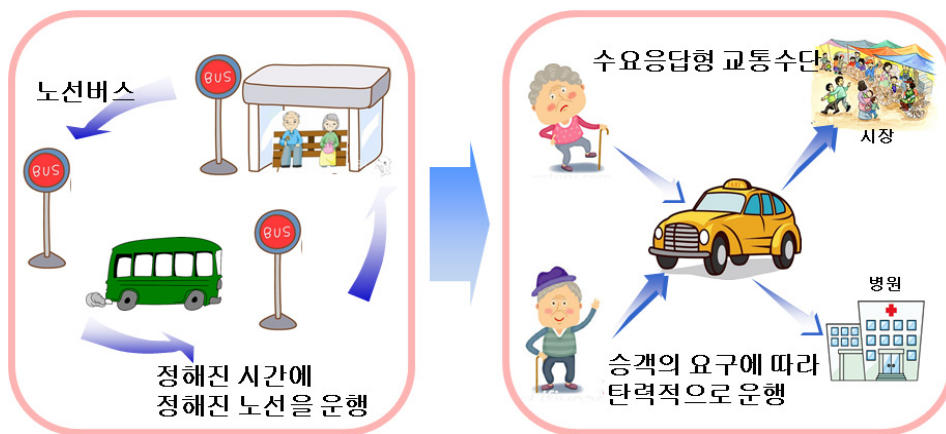
##### 1.1. 추진배경

- 고령화로 인한 교통소외 지역의 주민 불편 가중
  - 병원방문, 생필품 구입 불편 등으로 벽지노선 추가 지정 지속 요구
-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
  - 노선 수 270개 → 595개 ('06년 대비 '15년)
  - 손실보상금 26억 원 → 86억 원 ('06년 대비 '15년)
-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벽지노선을 개편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경남형 벽지교통 대책'이 필요

## 1.2. 주요사업 내용

- 경남은 벽지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벽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주민이 신청하면 이용 가능한 브라보 택시로 이원화 함.
- 브라보 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로 정해진 노선을 스케줄대로 운행하는 일반 정규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각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이용자 맞춤형 교통시스템임.

그림 3-1.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개 시·군 98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투입해 도내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소함.
-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및 기존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해 브라보 택시로 전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그림 3-2. 브라보 택시 운영 방안

|                    |                                   |
|--------------------|-----------------------------------|
| <b>1. 대상마을</b>     |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노선조정마을) |
| <b>2. 운행구간</b>     | 마을에서 생활권이 가까운 읍·면 소재지             |
| <b>3. 운행횟수</b>     | 마을당 월 30회(편도) 기준(인구수에 비례해 조정)     |
| <b>4. 이용요금</b>     | 대당 1,200원(4인 탑승시 1인당 300원 수준)     |
| <b>5. 이용방법</b>     | 주민의 요청(콜)에 따라 운행                  |
| <b>6. 요금 청구·정산</b> | 이용권 및 운행기록을 매월 취합하여 시장·군수에게 청구    |

- 마을당 월 평균 30회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마을이장에게 이용권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용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회당 1,200원(4인 이용 시 1인당 3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경남도 및 시군에서 보조하게 됨.

### 1.3. 기대효과

- 브라보 택시를 통해 놓여촌 주민의 교통복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자체 벽지노선 재정부담을 경감
-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를 기대

## 2.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 2.1. 추진배경

- 홀로어르신의 안정된 생활환경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임.
- 노인 자살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노인의 4고(苦/ 질병, 고독, 빈곤, 무위)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2.2. 주요사업 내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시설을 설치(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활용)하고 개소당 5~9명이 공동으로 생활함.
- 시·군은 운영비와 비품구입비, 화재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도는 시설비를 지원
  - 건강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 2007년 최초 의령읍 만상, 용덕면 상용소의 2개소 시범 운영
  - 2009년: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및 14개소로 확대 운영
  - 2010년: 28개소로 확대 운영
  - 2012년: 36개소로 확대 운영

- 2013년: 49개소로 확대 운영
- 2014년: 53개소로 확대 운영
- 2015년: 54개소 342명 운영 중

### 2.3. 사업성과

- 본 사업 시행 후 경남 전역으로의 확산이 본격화 되었으며, 경상남도의 핵심정책인 ‘경남미래 50년’사업에 포함되는 등 수범사례로 활용되고 있음.
- 경남도 추진 ‘경남미래 50년’사업에서는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개·보수비(시설비) 1.5~2천만 원/개소를 2016년부터 도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어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의 복지향상에 일조하고 있음.

##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3.1. 추진배경

#### ■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서민자녀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
- 서민자녀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별 자율 시행 추진
  - 기초학력의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학생안전 개선

### ■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실현

-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교육복지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순수 교육예산 감소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민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복지 모델의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의 실현
  - 학력향상 자율맞춤형 복지
  - 서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

## 3.2. 주요사업 내용

### ■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주요사업은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3가지로 구분

-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총사업비는 2015년 357억 5,600만원, 2016년 397억 5,100만 원이었음.
  - 2016년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바우처 사업 290억 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57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51억 원임.
- 사업대상자는 서민자녀 위주로 중위소득 100%이하 경상남도 내 서민 자녀 (초·중·고 학생)이고 신청은 3월에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함
  - \* 중위소득 100%(2016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439만 원, 실 소득액 약 260만 원)
- 수혜인원은 2015년 약 5만 8천 명에서 2016년 7만 1천 명으로 증가
  - 2015년: 67,087명 신청 → 57,758명 선정
  - 2016년: 89,271명 신청 → 70,788명 선정

## ■ 세부사업 추진내용

### ① 바우처 사업

- 서민자녀에게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여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학습 수강,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 특성화 고교생의 기술습득 학원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 중순경에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 및 사용 시작하여 사용기간은 11월 말까지임.
- 사업운영업체 선정과 시스템 구축
  - 사업체 역할: 홈페이지 관리, 교육복지카드 발급·배송, 사용 내역 정산, 가맹점별 사용금액 청구 등 바우처 사업 전반 관리
    - \* 수수료: 온라인 1.8%, 오프라인(지역서점) 1%
  - 공고(20일)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업체결정 → 시스템 구축 완료
    - \* 운영업체 선정후 우수 온라인학습 콘텐츠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가맹점 승인
  - 가맹점 종류: 온라인(강의, 인터넷 서점 등), 오프라인(지역서점 등)
    - \* '16년 가맹점: 222개(지역서점 172, 학습지 10, 온라인학습 36, 온라인서점 4)
  - 모집 공고: 도 및 시군, 여민동락 홈페이지
  - 접수 및 승인: 온라인(도), 오프라인(영업장 소재지 시·군)
    - \* 기 선정 가맹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종료 시까지 유효

### ②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사업내용: 5개 사업을 주로 하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
  - ①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 ② 진로 프로그램 지원
  - ③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 ④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⑤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 지원

- 학기 중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 영어캠프 등 집중 실시

③ 교육여건 개선 사업

- 사업내용은 진로체험관 조성, 기숙사 신축, 급식 및 방송시설 개선, 다목적 강당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등임.
- 이 사업은 시군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곳도 있음.
  - 2016년에는 9개 시군에서 11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7년 계획에는 5개 사업이 5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임.

■ 사업추진 실적

-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년도에는 67,087명이 신청해서 57,758명이 선정되었으며 356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음. 2016년에는 89,271명이 신청하여 70,788명이 선정되었고 390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음.
  - 이 기간 인원은 1만 3천 명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34억 정도 증가
-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편리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의 절차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
  - 2015년에서 2016년에 달라진 사항

- ▶ 서민자녀 선정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기준 418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439만 원)
- ▶ 신청 절차 간소화
  - 재산, 소득 등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만 제출(초·중·고 교육비 신청기간과 연계, 행복e음 활용)
- ▶ 우수 온라인 강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16. 2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서민자녀에게 양질의 학습콘텐츠 제공
- ▶ 서민자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16.1~2월, 만족도·신규 학습콘텐츠 개발 등)

- 2016년에서 2017년에 달라진 사항

- ▶ **여민동락카드 조기 사용 추진('16년 3월 ⇒ '17년 2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2월, 교육비 지원 대상자 3월초, 그 외 3월 중순
- ▶ **여민동락카드 가맹점 확대**
  - 재특성화 교교생의 기술 습득 학원 등 가맹점 추가
- ▶ **대상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중위소득 60% 이하 기존 선정자는 신청서류 생략(전년도 신청서 활용)
- ▶ **기준 중위소득 100%(서민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변경**
  - 4인 가족 기준 439만 원 → 447만 원

### 3.3. 사업성과

-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8%였으며 학습향상 및 학습동기 부여 도움 여부도 99%로 높았음.
  -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대상자 7만 여명 가운데 2,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
  -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81%, 조금만족 13%, 보통 4%, 조금불만족 2%로 나타났음.
  - 학습향상 및 동기부여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 80%, 조금 도움 15%, 보통 4%, 별 도움 안됨 1%로 조사되었음.
  - 학습에 도움을 준 분야는 학습교재 등 구입(60%) > 학습지(20%) > 온라인강의(17%) > 맞춤형 교육지원(3%)의 순서였음.
  - 2016년 2년차 정착단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학습향상 및 학습동기 부여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 여민동락카드로 학습교재와 학습지, 온라인학습 등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임.

- 신규콘텐츠 추가 의견에는 학원비 지원, 학용품구입, 교통카드 구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기타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여민동락카드를 새 학기 전부터 조기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문자로 서비스해 달라는 개선사항 요구도 있었음.



# 2016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 승 철    책임연구원



## 차 례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413
- 2. 연구의 목적 ..... 415
- 3. 연구의 범위 ..... 415

### 제2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

-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416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421

### 제3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 분석

-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 423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 425
-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 437
-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 446

### 제4장 수범사례 발굴

-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추진 ..... 448
- 2.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455

## 표 차례

---

### 제2장

|   |     |
|---|-----|
|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        | 417 |
| 표 2-2.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 420 |
| 표 2-3. 2015년도 및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 | 420 |
| 표 2-4. 선택 항목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               | 421 |

### 제3장

|  |     |
|--|-----|
| 표 3-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재정투입 계획 .....         | 425 |
| 표 3-2. 2015년도 읍면지역 학교별 교통비 및 통학수단 지원 평가결과 .... | 427 |
| 표 3-3.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계획 .....               | 431 |
| 표 3-4.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재정투입계획 .....          | 432 |
| 표 3-5. 2015년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실적 .....              | 436 |
| 표 3-6. 2016년도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지원 현황 .....           | 438 |
| 표 3-7. 2015년도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현황 .....              | 442 |
| 표 3-8. 2016년도 귀농인 교육계획 .....                   | 443 |
| 표 3-9.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형태 .....                    | 443 |
| 표 3-10.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여부 .....      | 447 |

### 제4장

|                      |     |
|----------------------|-----|
| 표 4-1. 코칭 지원분야 ..... | 456 |
|----------------------|-----|

## 그림 차례

---

### 제3장

|                                 |     |
|---------------------------------|-----|
| 그림 3-1. 제주도 농어촌 12개 읍·면지역 ..... | 424 |
| 그림 3-2.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도 .....     | 428 |



# 제 1 장

---

##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필요
  - 2015년 시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6년 현재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현황에 대한 점검, 평가와 서비스 기준 관련 지자체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의 발굴·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하고, 사례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 2. 연구의 목적

- 광역 자치단체별로 확정된 선택 항목의 2016년 현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시·도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 항목의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 목표치 제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 발굴하여 확산함.

## 3. 연구의 범위

-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 2016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내용적 범위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분석
  - 제주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 제 2 장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

####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1.1. 선택 항목 선정 목적 및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지표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함.
  - 농어촌서비스의 기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동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투입의 요구가 높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선정의 목표와 원칙을 정리하면 표 2-1. 과 같음.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 구분       | 내용   |                                       |
|----------|--|---------------------------------------|
| 지표 선정 목표 | -수혜자: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 제공<br>-공급자: 정책 투입 정도의 정확한 진단 |                                       |
| 지표 선정 원칙 | 부문   | -전체의 부문이 아닌 핵심부문 및 항목을 선정하여 지표 설정     |
|          | 영역   |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 |
|          | 자료   |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내부자료 기초          |
|          | 지자체 차별성  | -지자체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 첫째,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 제주도가 수립한 ‘제3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15. 4. 16.)상의 세부 추진과제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도출함.
  - \* 이 계획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되 H/W 중심이 아닌 S/W중심 지표를 선정함.
- 셋째, 점검 용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자료 기초로 획득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넷째, 공급자의 노력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평가의 목표는 제주도 농어촌 주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임. 부문별 발전목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맞춤형·밀착형 복지의료서비스 구현
  - 농어촌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 공교육서비스 및 인적역량 강화
  - 주민 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 및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 농어촌 소득의 다각화 및 상생경제 실현
  - 풀뿌리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성 문화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 기반구축 및 보전
  - 지역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1.2. 선정 절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부서 담당자회의를 거쳐 선택 항목을 조정·확정하였음.
  - 선택 항목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협의회에 참석한 후에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선택 항목 선정을 위한 관련부서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상황 설명 및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1차안을 확정하였음.
- 2015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실무담당자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체하였음.
  - 1차안으로 확정된 제주도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2015년에 선정됐던 4개 부문 8개 항목(보건복지부문의 의료시설 접근성, 재가노인 복지, 교육부문의 원어민교사 배치,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및 통학수단 지원, 경제활동일자리부문의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구인구직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비율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문화여가부문의 문화체육시설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여부)이었으나, 회의결과 교육부문의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과 제주지역 귀농귀촌인창업지원의 조정건이 반영되고, 신규로 5개가 포함된 최종 4개 부문 7개 항목으로 선택항목을 확정하였음.

- 위의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선정 및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에 의거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자료수합이 수월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우선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 보건복지 등 전적으로 타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료협조의 곤란 및 연락체계의 혼선 등의 어려움이 많아 농축산국에서 관여하는 사업위주로 선택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판단되어 주로 농축산국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시행취지에 충분한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됨.

### 1.3. 선택 항목 선정

-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교육여건,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4개 부문임.
-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2015년 제주도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분석 및 도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 인식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선택 항목에 대해,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문을 안전부문으로 대체하여 4개 부문 7개 항목을 선정하였음.(표 2-2. 참조)

표 2-2.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 부문          | 선택 항목                         | 세부 내용  |
|-------------|-------------------------------|--|
| 1. 교육       |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 농어업인 자녀 중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100% 제공한다.                   |
| 2. 경제활동·일자리 | 2) 6차산업화 활성화                  |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3) 6차산업화 매출확대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의 실질적 매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
|             | 4) 농가도우미                      |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도우미를 100% 지원한다. |
|             |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서비스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 및 주택구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 3. 문화·여가    | 6) 행복바우처 카드                   |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
| 4. 안전       | 7) 재해보험료 지원                   |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                      |

표 2-3. 2015년도 및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 2015년도   |                            | ⇒ | 2016년도                               |                             |
|----------|----------------------------|---|--------------------------------------|-----------------------------|
| 부문       | 선택 항목                      |   | 부문                                   | 선택 항목                       |
| 보건복지     | 1) 의료시설 접근성                |   | 교육                                   |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계속) |
|          | 2) 노인방문의료서비스               |   |                                      | 2) 6차산업화 활성화(신규)            |
| 교육       | 3) 원어민교사 프로그램              |   | 3) 6차산업화 매출확대(신규)                    |                             |
|          | 4)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   | 4) 농가도우미(신규)                         |                             |
| 경제활동·일자리 |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및 구직구인서비스 |   |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서비스(수정·계속) |                             |
|          | 6)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비율운영 지원 프로그램 |   | 문화·여가                                | 6) 행복바우처 카드(신규)             |
| 문화·여가    | 7) 문화체육시설 여부               |   | 안전                                   | 7) 재해보험료 지원(신규)             |
|          | 8)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                                      |                             |

- 7개 항목의 내용은 교육여건부문에 1개 항목, 경제활동·일자리부문에 4개 항목, 문화여가부문에 1개 항목, 안전부문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항목을 보면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계속), 2) 6차산업화 활성화, 3) 6차산업화 매출확대, 4) 농가도우미,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 지원서비스(계속), 6) 행복바우처 카드, 7) 재해보험료 지원임.(표 2-3. 참조)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표 2-4와 같음.

표 2-4. 선택 항목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부문                  | 선택 항목                | 목표치(%) |     |     |     | 점검방법   |
|---------------------|----------------------|--------|-----|-----|-----|--|
|                     |                      | 16     | 17  | 18  | 19  |  |
| 1. 교육               | 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 100    | 100 | 100 | 100 |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br>*교통비 지원학교수 및 수혜학생 수/신청학생수×100<br>※ 고등학교에 한정      |
| 2. 경제<br>활동·<br>일자리 | 2) 6차산업화 활성화         | 10회    | 10회 | 10회 | 10회 | -컨설팅, 교육서비스<br>*실적 총인원/인증업체수<br>※ 6차산업 교육 아카데미<br>-목표:업체당 10회          |
|                     | 3) 6차산업화 매출확대        | 100    | 102 | 104 | 105 | -6차산업 안테나숍 매출액<br>*(매출액/(인증업체수×30백만원))×100<br>※목표매출액:인증사업자 1개소당 30백만 원 |

| 부문           | 선택 항목                                       | 목표치(%)     |            |            |             | 점검방법  |
|--------------|---|------------|------------|------------|-------------|---|
|              |   | 16         | 17         | 18         | 19          |   |
|              | 4) 농가도우미                                    | 100        | 100        | 100        | 100         | 농가도우미 지원<br>*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신청자 수×100<br>※ 지원일수 확대 개선 점검                 |
|              | 5) 제주지역<br>귀농귀촌인<br>창업지원 및<br>주택구입지원<br>서비스 | 45<br>(세대) | 60<br>(세대) | 80<br>(세대) | 100<br>(세대) | 귀농귀촌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지<br>원 서비스<br>*창업자금 지원 및 주택구입 지원<br>서비스 수혜 실적           |
| 3. 문화<br>·여가 | 6) 행복바우처<br>카드                              | 8          | 10         | 12         | 15          | 행복바우처 지원<br>행복바우처 신청 수혜농가/신청가<br>능 여성농업인자X100                           |
| 4. 안전        | 7) 재해보험료<br>지원                              | *+2%       | +2%        | +2%        | +2%         | 안정적인 농업활동 보장<br>*재해보험 가입실적<br>*(전년도가입율 +2%)<br>※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완화 여부<br>점검 |



## 제 3 장

---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 분석

###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 1.1. 점검 방법

-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실태 정도를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목표치를 설정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실태 정도를 파악함.
  - 서비스기준 내용에 따라 점검하는 공간 단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통계조사의 경우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 내부자료 활용
  - 통계조사의 경우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노력으로 파악함.

##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소프트웨어 특성을 지닌 지표를 많이 포함.
  -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4개 부문 7개 항목으로 구성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지자체 행정조사 7개 자료로 구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특성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특성에 대한 지표 보다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가진 지표가 많이 구축됨.

##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범위는 읍면지역으로 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 범위는 12개 읍면으로 구성됨.
  - 제주시지역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등 4읍3면과 서귀포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등 3읍2면이 있음.
  - 제주시지역 읍면지역 마을 수는 7개 읍면 96개 리이고, 서귀포지역 읍면지역 마을 수는 5개 읍·면 72개리가 있음.

그림 3-1. 제주도 농어촌 12개 읍·면지역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 2.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 ■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에서 농어업인 자녀 통학비 지원으로 변경

- 도내 농어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5년도까지는 농어촌학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이 조례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 내용은 표 3-1.과 같음.

표 3-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재정투입 계획

(단위: 명, 백만 원)

| 구 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br>이후 |
|-----|-------|-------|-------|-------|-------|-------|-------------|
| 사업량 | 4,746 | 504   | 470   | 472   | 1,100 | 1,100 | 1,100       |
| 도 비 | 2,356 | 111   | 193   | 236   | 516   | 650   | 650         |

-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및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농어업인이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어업인을 포함함.
- 제외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제외대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보 통학 및 무료 통학버스 이용 학생</li> <li>▶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li> <li>▶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li> <li>▶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보유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li> </ul> </li> <li>▶ 부·모 (또는 부모이외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외 소득: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li> <li>**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li> </ul> </li> <li>▶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 중 1인만 다른 전업적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li> <li>② 직장 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li> </ol> </li> </ul> |

- 지원내용은 시내외버스 왕복 통학교통비 전액임.
- 지원일수는 240일 내외(학기+방학 방과후 수업기간)임.
- 재원부담은 전액 도비 100% 부담
- 1일 지원단가는 시내외버스 청소년요금임.

|                          |                         |
|--------------------------|-------------------------|
| - 기본구간: 1,000원×2회=2,000원 | - 4구간: 2,200원×2회=4,400원 |
| - 2구간: 1,400원×2회=2,800원  | - 5구간: 2,600원×2회=5,200원 |
| - 3구간: 1,800원×2회=3,600원  |                         |

- 통학수단이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이외의 수단에 의한 경우에도 시내외버스 청소년요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함.
- 통학구간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거주지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상 거주지로 통학 구간을 정할 수 있음.
- 2015년도 읍면지역 학교별 교통비 및 통학수단지원내용은 표 3-2.와 같음.

표 3-2. 2015년도 읍면지역 학교별 교통비 및 통학수단 지원 평가결과

| 구분   | 학교 및 지원 학생 수(명)  | 전체 초중학교 수 중 통학수단 제공하는 학교 비율(%) |
|------|--|--------------------------------|
| 제주시  | 함덕고등학교(21), 세화고등학교(79), 한국뷰티고등학교(36), 한림고등학교(67), 한림공업고등학교(72), 애월고등학교(32) | 12.96                          |
| 서귀포시 | 성산고등학교(37), 표선고등학교(33), 대정고등학교(36), 대정여자고등학교(57)                           | 21.06                          |
|      | 10개교(4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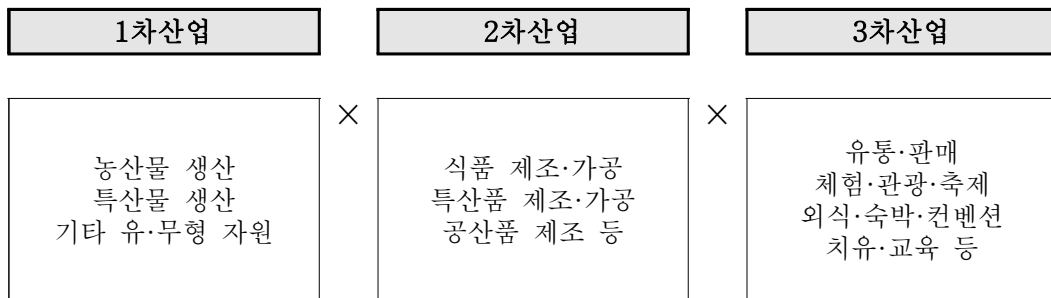
주: 제주지역 고등학교 수는 30개로, 이중 읍·면지역 학교 수는 10개임

## 2.2. 6차산업화 활성화

### ■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강화

- 농업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에 기초한 6차 산업화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의 6차산업은 지역의 향토자원, 특화자원 등을 바탕으로 1차는 농산물 생산, 2차는 가공·유통, 3차는 관광·휴양·레저·체험 등으로 이들을 융·복합화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말함.(농림축산식품부, 2014)
- 제주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융복합 관리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와 농업의 지역연계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3-2.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 2014년 5월 2일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14년 6월 3일에 법률 제12730호로 제정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출범시킴과 아울러,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 발굴, 인증을 통해 선도적인 역

할을 추진, 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독려 및 현장 맞춤형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음.

- 최근 도내 6차산업화 인증 사업자는 신규 신청 공모를 통해 모두 50여 곳이 늘어나는 등 2016년 말 기준 모두 73곳이 선정되어 있음.

### 2.3. 6차산업 매출확대

#### ■ 안테나숍을 통한 6차산업화 인증업체 제품의 매출 확대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2015년 4월 전국 최초로 도내 이마트 3개점에 6차산업 전용 판매점인 안테나숍을 설치하였고, 지금은 서울목동점, 서울용산점, 그리고 한림공원내 안테나숍까지 모두 6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 당시 14개 업체에서 2016년 말 현재, 모두 35개 업체의 131개 품목이 전시·판매 중임.
- 인증업체의 매출증대야말로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매출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안테나숍 운영 목적이 있음.

## 2.4. 농가 도우미

### ■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중단 방지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어)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어)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출산농어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어)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사업의 법적 근거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과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액 및 기준
  - 지원 단가는 1일 60천원 (지방비 48천원, 자부담 12천원)
  - 지원일수는 45일 이내
  -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어)을 실시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표 3-3.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계획

(단위: 명, 백만 원)

| 구 분          | 계     | 2012년 이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이후 |
|--------------|-------|----------|-------|-------|-------|-------|----------|
| 인 원          | 5,512 | 4,558    | 208   | 146   | 200   | 200   | 200      |
| 합 계          | 7,193 | 5,311    | 340   | 303   | 481   | 379   | 379      |
| 국 고<br>(분 권) | 2,069 | 1,812    | 136   | 121   | -     | -     | -        |
| 지방비          | 3,648 | 2,399    | 136   | 121   | 386   | 303   | 303      |
| 자부담          | 1,476 | 1,100    | 68    | 61    | 95    | 76    | 76       |

## ○ 지원기간

- (지원기간)사업신청일 ~ 출산(예정)후 90일까지
- (지원범위)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농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농작업에 필요한 도우미 인건비 중 80%인 48,000원 지원

## 2.5.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서비스

## ■ 농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서비스 강화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 근거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임.
-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지원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표 3-4와 같음.

표 3-4.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재정투입계획

(단위: 억 원)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이후 |
|-----|-------|-------|-------|-------|-------|----------|
| 합 계 | 500   | 600   | 700   | 1,000 | 1,500 | 1,500    |
| 용 자 | 500   | 600   | 700   | 1,000 | 1,500 | 1,500    |

##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임.

## ○ 지원재원은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는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 용자 추천: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2.6. 행복바우처 카드

### ■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비용 일부 지원

-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에 문화, 스포츠, 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관련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복지향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추진 방향
  - 읍·면지역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sup>8</sup>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sup>8</sup> 가구원(부부) 가운데 30일 이상(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농업 이외의 분야에 취업한 사람이 없는 농가

- 대상자 적격여부 사전 검증(선정) 및 여성농업인의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 시범사업 평가 후 발전방안 마련 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 지원분야는 문화·스포츠·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2개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 도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중 만 3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 2016년도 사업량은 6,300명(제주시 3,200명, 서귀포시 3,100명)
- 농업경영체등록 전업농가 14,011명×60%(읍면지역)×75%(30~65세) = 6,300명
- 사업비는 630백만 원(도비 80%, 자부담 20%) - 1인당 사업비는 연간 10만원(도비 8, 자부담 2)
- 카드 발급 및 수령(여성농업인 ⇔ 읍·면사무소 ⇔ 농협 시지부)
- 카드 발급 방법
    -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시 본인확인 신분증, 자부담 2만원 납부
    - 읍·면사무소 위탁 발급시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자필 작성 및 자부담 2만원 납부
  - 카드 수령 방법
    -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시 현장 발급 수령
    - 읍·면사무소 위탁 발급시 신청서 접수일로 15일 이내 읍·면 사무소 직원이 수령 후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 카드 사용
  - 사용처는 문화, 스포츠, 여행분야 18개 업종
    - 문화의 경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회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문화센터,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 스포츠의 경우 요가, 스포츠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 여행의 경우, 기타관광호텔(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기타 숙박업(모텔/여관 등)

## 2.7. 재해보험료 지원

###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 가중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지원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임.
- 2016년도 총사업비는 8,000백만 원(2016년도 사업량 2,800여건 예측)
  - 국비 4,000백만 원( 50%), 지방비 2,000백만 원(25%), 자부담 2,000백만 원(25%)
- 지원내용: 농가부담 보험료(50%) 중 25% 지원
- 2015년도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808건(1,475ha)로 지방비 지원 실적은 2,000백만 원에 달함(표 3-5. 참조)

표 3-5. 2015년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백만 원)

| 구 분   | 건 수   | 면 적   | 보 험 료   |
|-------|-------|-------|---------|
| 감 곶   | 58    | 45    | 12      |
| 단 감   | 2     | 1     | 1       |
| 뽕 은 감 | 5     | 13    | 7       |
| 참 다 래 | 2     | 3     | 7       |
| 가을감자  | 28    | 26    | 70      |
| 원예시설  | 2,541 | 1,041 | 7,487.7 |
| 콩     | 172   | 346   | 434     |
| 합 계   | 2,808 | 1,475 | 8,018.7 |

## ○ 보험료 지급선: NH손해보험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시행기관)

## ○ 보험 가입대상: 51개 품목

- (본사업: 33개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 감, 참다래, 콩, 감자, 양과, 고구마,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밤, 대추, 포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농업용 시설
- (시범사업: 18개 품목) 벼,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차, 표고버섯, 인삼, 오디, 느타리버섯, 복분자, 복숭아, 양배추, 밀, 오미자

## ○ 사업추진 절차

- ① 재해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신청 접수(지역농협대행사무소) → 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전체 보험료중 농업인 부담보험료) → ③ 청약사항 통보(대행 취급사무소 → 농협NH보험사) → ④ 청약사항 수합 가입현황서 작성(농협NH보험사) → ⑤ 보험료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농협NH보험사 → 제주특별자치도) → ⑥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⑦ 보험료 정산(농협NH보험사) →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농협NH보험사) → ⑨ 보조사업 정산검사(제주특별자치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가입현황서, 사업자 통장사본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 3.1.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의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2015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로 개정된 바 있음.
  -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어촌 지역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농어업인 자녀가 시내권 학교로 등교하는 경우에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 학생 범위가 넓어졌음.
- 이 조례에 의한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은 타 시도에는 없는 특수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들의 통학 교통비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
| <p>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br/>100% 제공한다.</p> <p><b>총 농어업인 자녀의 통학 교통비지원 신청 학생수 및 학교수</b></p> |

- 2016년도의 경우,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로서 교통비 지원을 받은 학생 수는 총 28개교에 861명으로 집계되었음. 2015년에 지원받은 학생수 470명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실적을 보임.

표 3-6. 2016년도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지원 현황

| 학교 수 | 학교명 및 지원자 수   |
|------|---|
| 28개교 | 대정고등학교 18명, 대정여자고등학교 38명, 성산고등학교 28명, 세화고등학교 58명, 애월고등학교 16명, 표선고등학교 28명, 한국부티고등학교 24명, 한림고등학교 77명, 한림공업고등학교 77명, 함덕고등학교 16명, 제주사대부고 10명, 서귀포고등학교 29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2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6명, 제주고등학교 54명,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7명, 제주제일고등학교 70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0명, 중문고등학교 11명, 남녕고등학교 32명, 남주고등학교 32명, 대기고등학교 17명, 삼성여자고등학교 39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7명, 영주고등학교 8명, 오현고등학교 7명, 제주여자고등학교 46명, 제주중앙고등학교 24명 |
| 합계   | 861명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 따라서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은 신청가능 학생의 신청 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 100%를 달성함.



### 3.2. 6차산업활성화(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는 2016년에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현장코칭, 순회설명회 및 전문교육, 안테나숍 운영, 판매플랫폼 구축, 홍보마케팅추진, 기초실태조사, 디렉토리 구축, 협업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였음.
- 이 중 6차산업화 인증기업에는 컨설팅 또는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전문교육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인증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육내용은 소비트랜드 및 유통업체 입점 프로세스, 농업가정신 및 핵심 역량, 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전략, 6차산업 성공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 SNS마케팅 성공비법, 6차산업 마케팅을 위한 서비스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로 교육 실시
- 점검내용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컨설팅 교육서비스 실적 총 인원/인증업체 수**

- 점검결과 2016년에 현장코칭 145회, 코칭단운영 행사 2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교육 2회 실시하여 190명 참석, 순회설명회 11회 실시하여 522명 참석, 창업교육은 12명이 수료하였음.

- 따라서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실적을 점검방법인 컨설팅 교육서비스 실적 총인원/인증업체 수에 의거하여 계산하여보면, 업체당 11.9회 가량 서비스 받은 것으로 추산되어 목표치 10회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3.3. 6차산업화 인증업체의 매출확대(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현재 6차산업화 인증업체는 총 73개에 달하고, 이 중 안테나숍 입점업체는 35개에 달하고 있음.
  - 안테나숍 입점매장은 이마트로서,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 제주에 3개소, 서울용산, 서울목동점 등 서울에 2개소 등 5개 매장에 달함.
  - 최근에는 제주한림공원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매출이 나올 예정임.
- 성공적인 안테나숍 운영을 위해 입점상담회 개최, 소비자 반응조사, 안테나숍 실무간담회 개최, 품평회 개최,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추진해왔으며, 기획판매전, 우수상품 판촉전 참가 등을 실시하였음.
-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의 실질적 매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안테나숍 매출액/(인증업체수 × 30백만원) × 100**

※ 목표매출액: 인증사업자 1개소당 30백만 원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안테나숍 총매출은 11월 말 현재 2,17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음.
- 입점업체 수를 감안하여 한 개의 입점업체당 평균 매출은 목표매출액의 300%를 훨씬 초과한 6,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점검방법인 매출액/(인증업체 수×30백만 원)×100에 의한 계산결과는 99.3%로 나타남.

### 3.4. 농가도우미 지원(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출산농가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을 대신하도록 하는 복지시책임
  -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있음.
  -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 부담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비를 전액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지방비 300백만 원을 확보하여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100% 도우미를 지원한다.

- \*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
- ※ 지원일 수 확대 개선 점검

- 2016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와 지원액은 모두 95가구에 235백만 원에 달함
  - 시별로는 제주시는 36가구에 90백만 원(보조금 72백만 원, 자담 18백만 원), 서귀포시 59가구에 145백만 원(보조금 116백만 원, 자담 29백만 원)이 지원되었음.
- 따라서 농가도우미 신청 가구는 100% 농가도우미를 지원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계획대비 지원인원이 적어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데 차질을 빚음.

- 2017년에는 지원일수도 45일 이내에서 50일까지 확대하여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모두를 적용할 방침임

### 3.5.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 지원(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귀농·귀촌에 뜻을 둔 도시민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제주지역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회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표 3-7. 2015년도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현황

(단위: 가구/명, %)

| 구 분 | 제주             |       |
|-----|----------------|-------|
|     | 가구             | 비율    |
| 합 계 | 7,537 / 11,002 | 100.0 |
| 귀 농 | 390 / 656      | 6.0   |
| 귀 촌 | 7,147 / 10,346 | 94.0  |

- 2015년 제주지역 귀농귀촌인구는 7,537가구에 11,002명에 달함. 이 중 귀농인은 390가구에 656명이며, 귀촌인은 7,147가구에 10,346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귀농인 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기관: 농업기술원·서귀포시·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 '15년 실적: 3개 기관·9개 과정에 815명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됨.
- 2016년도 귀농인 교육계획: 3개 기관·10개 과정·1,435명

표 3-8. 2016년도 귀농인 교육계획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 교육내용           | 소요예산                      | 인원    |     |
|-----------|----------------|---------------------------|-------|-----|
| 합 계       | 3개 기관          | 210                       | 1,435 |     |
| 농업<br>기술원 | 기술원            | - 귀농 및 영농 정착 기술교육(4개 과정)  | 60    | 585 |
|           | 기술센터           | - 영농 및 품목별 재배 기술교육(4개 센터) | 80    | 390 |
| 서귀포시청     | - 귀농귀촌 기본교육 과정 | 40                        | 300   |     |
| 농협중앙회     | - 귀농귀촌 교육      | 30                        | 160   |     |

- 2015년도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 신축사업 추진 실적은 귀농창업 46세대·6,703백만 원과 귀농주택 16세대·661백만 원에 달함.
- 지원형태는 다음과 같음.

표 3-9.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형태

| 구분        | 농업 창업자금  | 주택구입·신축자금   |
|-----------|--|---|
| 지원<br>형태  | ○ 재원: 금융자금 100%(농협)<br>○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br>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br>(만 65세 이하인 자) | ○ 재원: 금융자금 100%(농협)<br>○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br>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지원<br>한도액 | ○ 세대당 3억 원 한도이내  | ○ 세대당 5천만 원 한도 이내   |

- 점검 내용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와 주택구입 지원서비스가 있다.

\* 창업자금 서비스 및 주택구입 지원 수혜 실적

※창업자금 서비스 목표치 40세대, 주택구입 지원목표치 5세대

- 2016년도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지원실적은 49세대·9,277백만 원에 달함.
- 귀농 창업자금: 45세대·9,077백만 원(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제주시: 20세대·4,013백만 원
  - 서귀포시: 25세대·5,064백만 원
- 귀농 주택 구입자금: 4세대·200백만 원(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제주시: 1세대·50백만 원
  - 서귀포시: 3세대·150백만 원
- 이외에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세대·20백만 원,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 지원 37명·51백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서귀포시 1개소·200백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1개 과정·766명, 귀농귀촌인 고충상담 132명·110건 상담처리,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대외 홍보 5회, 귀농인의 집 조성(서귀포시) 2개소·60백만 원, 2016년 제주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135백만 원 등을 추진하였음.
- 따라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지원서비스 지원 실적은 45세대로 목표치인 40세대를 초과 달성하였고, 귀농주택구입자금은 지원 실적 4세대로 목표치인 5세대에 1세대가 못 미쳤음

### 3.6.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문화·여가 부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에 504백만 원을 확보하여 제주지역 12개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음.
  - 1농가당 100,000원으로 자부담 20%를 감안하면, 제주시 3,200명, 서귀

포시 3,100명 등 모두 6,3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량임.

- 점검 내용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행복바우처 신청수/ 신청가능 여성농업인수)X100

- 2016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인원은 550명에 달하고, 총 지원액은 550백만 원(보조금 44백만 원, 자담 11백만 원)에 달함.
- 제주지역에서 행복바우처 신청가능 여성농업인수는 읍면지역 전업농가중 30~6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6,300명임.
- 따라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실적율 (행복바우처 신청 수/신청가능 여성농업인 수)X100에 의해 계산하면 8.7%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0.7% 포인트 추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3.7. 재해보험료 지원(안전 부문)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2015년에는 감귤, 단감, 뽕, 참다래, 가을감자, 원예시설, 콩 등 7개 품목에 2,808건에 1,475ha가 가입하였음.
- 2016년에 8,0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확보하여 2,800여건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점검내용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

**\* (재해보험 추가품목 수/재해보험 품목 수) × 100**

**※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완화 여부**

-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2,377농가에 면적은 1,106.5ha에 달함.
- 2016년에 신규로 재해보험 추가품목 수는 양배추, 마늘 2품목인데, 마늘은 농작물 수입보장보험으로 추가되었음.
- 따라서 재해보험추가 품목 수는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전년보다 -15.3%로 감소하였으므로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보험료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에는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지방비를 확대 지원함.

####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분석 종합하면, 목표치는 달성하는 선택 항목은 5개 항목, 6차산업화 매출확대, 재해보험료 지원은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0. 2016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여부

| 부문          | 선택 항목                                | 목표치(%) | 달성률/달성여부                                      |
|-------------|--------------------------------------|--------|---|
| 1. 교육       | 1) 농어업인자녀 통학<br>교통비 지원               | 100%   | 100%<br>목표치 달성                                |
| 2. 경제활동·일자리 | 2) 6차산업화 활성화                         | 10회    | 10회 이상<br>목표치 달성                              |
|             | 3) 6차산업화 매출확대                        | 100%   | 99.3%<br>목표치 미달                               |
|             | 4) 농가도우미                             | 100%   | 100%<br>목표치 달성                                |
|             |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br>창업 및 주택구입<br>지원 서비스 | 45세대   | 49세대<br>목표치 달성<br>(다만 주택구입지원은<br>목표치에 1세대 미달) |
| 3. 문화·여가    | 6) 행복바우처 카드                          | 8%     | 8.7%<br>목표치 달성                                |
| 4. 안전       | 7) 재해보험료 지원                          | *+2%   | 목표치 미달  |

## 제 4 장

---

### 수범사례 발굴

####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추진

##### 1.1. 사례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 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 지원 신설 등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2013.9.10.], 그 외의 동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

표치'를 말한다.

제0장(제00조부터 제0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0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이 해당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0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준과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조(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2.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생활권 기반 부문, 문화·여가 부문, 일자리 창출 부문, 환경·경관 부문, 안전 부문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포함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는 지역실정 및 주민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0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교육 부문)
2. 6차 산업 활성화 지원(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
3. 농가 도우미 지원(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
4.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지원 서비스(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
5.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문화여가 부문)
6. 재해보험료 지원(안전 부문)
7.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
| 제2조(정의) (생략) |   | 제2조(현행과 같음) |   |
| 1. (생략)      |   | 1. (현행과 같음) |   |

|  |   |
|--|---|
| <p>2. (생략)</p> <p>3. (생략)</p> <p>4. &lt;신설&gt;</p> |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
| <p>5. &lt;신설&gt;</p>                               | <p>5.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p>   |
| <p>6. &lt;신설&gt;</p>                               | <p>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2013.9.10.], 그 외의 동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p>   |
| <p>제5장 &lt;신설&gt;</p>                              | <p>제5장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 지원</p> <p>제00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p> |

내용이 해당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신 설>

제0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준과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그 밖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2.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                    |  |
|--------------------|--|
| <p>&lt;신 설&gt;</p> | <p>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p> <p>3.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생활권 기반 부문, 문화·여가 부문, 일자리 창출 부문, 환경·경관 부문, 안전 부문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포함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는 지역 실정 및 주민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p> <p>③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p> <p>제0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교육 부문)</li> <li>2. 6차 산업 활성화 지원(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li> <li>3. 농가 도우미 지원(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li> <li>4.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지원 서비스(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부문)</li> <li>5.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문화여가 부문)</li> <li>6. 재해보험료 지원(안전 부문)</li> <li>7.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



## 1.2. 성과

-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제주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맞는 이행실태 점검 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2.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2.1. 사업 개요

-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지역의 경우, 풍부한 6차산업화 자원을 융복합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절실함.
  - 6차산업화 선도 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지원,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판로 확보 등 영세한 경영체의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임.
- 2014년에 6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
  - 5년마다 6차산업기본계획 수립 시행, 6차산업화지원센터 설치, 6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담고 있음.
  - 이에 앞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으로써 6차산업화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2015년 3월에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가 설치 완료되어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음.
  - 6차산업화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안테나 슝), 제품의 홍보 강화, 6차산업화 현장에 대한 관광객 유치, 전시 판매 강화, 민박 체험 마을 등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인증사업자 제도를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는 현장코칭사업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등의 경영 및 기술애로, 현장형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 및 농업관련 경영체의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기술분야의 애로 해소 및 성장 도모
  - 기술,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4-1. 코칭 지원분야

| 분야 | 지원 대상 분야   |
|----|--|
| 경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세무, 법률, 금융 등</li> <li>○(경영) 경영전략, 생산성 향상, 지적재산권 등</li> <li>○(제품) 디자인, 유통, 체험프로그램, 메뉴개선 등</li> <li>○(홍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li> </ul> |
|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생) HACCP,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li> <li>○(인프라) 공장신설·신축, 인테리어, 공정개선 등</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분야 외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li> </ul>   |

- 두 번째는 안테나슝 운영으로,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유통품평회 개최, 우수제품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및 유통채널입점 추진
  - 현재 6차산업 제품 안테나숍은 제주지역 소재 이마트 3개점과 한림공원, 서울목동점, 서울용산점을 운영하고 있음.
- 셋째, 인증경영체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순회설명회 및 전문교육을 실시함
  - 넷째, 6차산업 판매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획판촉전, 우수상품 판촉전, 한가위명절상품전 참가, 농수산물 서울장터 참가, 미국 오렌지카운티 다민족 축제 6차산업 상품 특별홍보관 참가, 농어촌체험페스티벌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매출 교두보 확보
  - 다섯째, 6차산업화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문화센터 연계 체험행사, 초등학교 체험교실, 홍보쇼핑백 제작, 인증경영체 홍보용 모바일 웹구축, 디렉토리 북과 홍보리플렛 제작, 동영상 제작, 안테나숍 판촉행사 추진
  - 여섯째, 제주지역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추진, 제도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2.2. 주요 성과

- 농가 및 제조업체 등의 6차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설명회,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이마트에 6차산업화 경영체가 생산한 제품 안테나숍 개설 및 상설화를 통해 6차산업화 참가업체 생산품의 판매 신장을 도모하고 있음.
  - 제주지역 농업의 6차산업화로, 6차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농업·농촌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안테나숍 총매출은 11월 말 현재 2,17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음.
  - 입점업체수를 감안하여 입점업체 1업체당 평균 매출은 목표매출액의 300%를 훨씬 초과한 6,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안테나숍 운영 성과로는 입점제품의 홍보 노출 효과로 대형유통채널 입점하는 것이 성사되고, 타 지역 경영인 전문가 과정 학생들의 견학장으로 인기를 얻음.
  
- 안테나숍 운영 외에 6차산업 제품 품평회를 개최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우수제품에 한해 이마트온라인몰, 11번가, G마켓, 카카오파머제주 등에 입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였음.
  
- 또한 홈플러스 전국매장에 신호생활개선회가 유통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현장코칭을 통해 제주지역 양배추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판로 다변화를 도모

---

E20-2016-7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인 쇄 2016. 12.

발 행 2016. 12.

발 행 인 김창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